

주요 국가의 청소년활동 정책

- I. 연구 개요
- II. 각국의 청소년 활동 정책
- III. 청소년 활동 정책의 특성 비교
- IV. 결론 및 제언

I. 연 구 개 요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연구내용과 방법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I. 연구 개요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청소년활동(Youth Activity)이란 청소년들이 주어진 환경 속에서 개인적 또는 사회적 가치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정신적·육체적 행위 일반을 지칭하는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청소년정책의 측면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해 체계적으로 계획된 체험중심의 활동”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청소년 수련활동”으로 제도화되고 있다.

청소년 활동정책은 지난 1992년 부터 시행된 청소년기본법에 의해 청소년복지, 청소년교류 등과 함께 청소년육성 정책의 주요 영역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이 보다 유익한 체험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반정책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수련활동의 실시를 담당할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전문지도자의 양성과 지원, 수련시설의 제공, 활동에 필요한 재원조달과 기금의 조성 등에 관한 각종 제도와 법규 및 활동 프로그램 사례 등이 모두 포함 되고 있다.

그러나 현행의 정책은 개념적 범위와 실제적 성격 및 내용상의 차별적 특성 등에 대한 합의적 규명이 없이 개별적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법적 규정에 따른 청소년활동을 위한 각종 기구 조직과 정책적 지원체계 등의 미비와 학업중심의 교육제도적 특성의 요인으로 청소년활동의 활성화가 저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는 청소년 활동정책의 효율적 실시를 위해 청소년활동 선진국의 주요정책에 대해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첫째, 각국의 청소년활동 관련 정책, 제도 및 사업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활동 정책의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검토하고 둘째, 각국의 청소년관련 기관 단체와의 상호 정보교환 및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연구의 주요내용은 외국의 청소년활동관련 정책의 주요 내용과 지원체계, 청소년 수련활동 주체인 청소년단체와 시설·기관 등의 주요 현황 및 청소년수련활동의 대표 사업과 프로그램의 사례와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진국 청소년관련 기관·시설을 방문하여 각국의 정책, 제도, 시설·프로그램 등에 관한 문헌,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활동 시책의 개선 방향을 탐색하는 것이 중심이 된다.

청소년정책의 국제적인 추세를 비교·연구함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은 여러 나라의 정책을 특징짓는 포괄적인 배경에 대한 이해이다. 여기서는 청소년활동 선진국 중에서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등을 중심으로 청소년정책 일반 현황을 분석하고 그 특성을 고찰한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인 선진외국의 수련활동에 관한 자료·문헌은 거의 찾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며 문화, 전통, 경제 및 사회적 배경이 다른 여러 나라의 정책을 분석한다는 것은 비교 방법상의 많은 어려움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가능한 한 피하면서 일관성 있는 분석을 가능케하기 위하여 각국의 청소년활동 정책은 ① 청소년의 일반 현황 및 청소년활동 정책의 기본 성격, ② 청소년활동의 정책체계와 내용, ③ 청소년활동 주체의 현황과 특성, ④ 대표적인 청소년활동 사업과 주요 프로그램 사례 등을 연구의 분석틀로 사용하고자 한다. 청소년정책의 포괄적인 배경을 제시하고 이러한 분석틀에 의해서 외국의 청소년활동정책을 소개하며, 나아가 각국의 청소년활동 특성을 비교·분석하므로써 우리나라 청소년 활동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구대상 국가들의 청소년활동 정책은 일반현황으로서의 청소년인구 현황과 청소년문제 실태, 정책체계로서의 청소년행정조직, 교육제도, 그리고 청소년활동정책의 내용으로서의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시설, 활동사업과 프로그램, 청소년단체 등의 현황과 실태 및 특성 등을 구체적인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보고서 구성은 크게 연구 개요, 각국의 청소년활동 정책, 청소년활동 정책의 특성 비교 그리고 결

론 및 제언의 4부분으로 구성된다.

〈표 I - 1〉 각국의 청소년활동 정책 분석기준

항 목	청소년	청 소 년	학교교육	청 소 년	청 소 년	청소년	청소년
국 가	현 황	정책기구 (제도)	제 도	수련시설	수련 프로그램	단 체	지도자
미 영 독 프 랑 스 일 본	국 ○ 현황 ○ 문제 일 실태 랑 스 본	○ 기구 ○ 기능	○ 중학교·고등 학교 ○ 교육문제	○ 현황 ○ 기준 ○ 형태	○ 현황 ○ 여가활동 ○ 단체활동	○ 현황 ○ 특성	○ 현황 ○ 자격 ○ 임무 ○ 활동

연구의 방법은 문헌연구와 현지방문조사의 2가지 방법이 중심이 되었다. 문헌연구는 청소년활동 정책의 개념과 관련된 연구와 외국의 청소년정책 일반에 대한 내용 및 수련활동 관련 각국 문헌자료를 조사·정리·분석하는 것이며, 현지기관방문 조사는 외국에서 실제 어떠한 청소년활동 정책이 운용되고 있는가를 파악하고 관련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분석 대상 국가의 청소년활동 정책의 결정과 시행에 관련된 공공 행정부서와 민간 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주요업무, 사업현황 및 수련활동 내용을 조사하였다. 각국의 청소년활동 정책에 관한 국가별 내용은 대부분 집필자들이 이러한 현지방문 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집필되었다.

각국의 청소년활동 정책의 집필을 위해 분석한 주요 문헌과 자료 가운데 대표적으로 인용된 것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미 국)

- Standards for Day and Resident Camps : the Accreditation Programs of the American Camping Association (American Camping Association, 1994)
- Directory of American Youth Organizations (Judith B. Erickson, 1990)
- NYC-ICC Annual Report 1993-1994 (N. Y. C Interagency Coordination Council On Youth, 1994)
- KIDS COUNT DATA BOOK, 1994 : State Profiles of Child Well-Being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1994).

(영 국)

- The Time of Your Life? : The Truth about Being Young in 90's Britain (British Youth Council, 1992)
- Young People in Britain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1993)
- the NYA Guide to Initial Training Course in Youth and Community Work (National Youth Agency, 1994)
- Taking Shape : Development in Youth Service Policy and Provision (National Youth Bureau, 1989)

(독 일)

- Youth Organization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Deutscher Bundes Jugendring, 1993)
- Initiative zur Aufbauhite nittel-und Osteuropaischer Jugendstrukturen (Deutscher Bundes Jugendring, 1993)
- Basic and Structural Data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1993)
- Growing Up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Chance and risk in a modern Sozialstaat (Rene Bendit, Wolfgang Gaise and Ursula Nissen, 1993)

(프랑스)

- Livret d'Accueil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1993)
- Rapport d'activiees annee 1993 (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education populaire, 1993)
- Reglementation, (Union Francaise des centres de vacances et de loisirs, 1994)
- Vacances ete 94, (Ufcv, 1994)

(일 본)

- 國立中央青年の家 利用案内 (國立中央青年の家, 1994)

- 日本の 青少年團體（中央青少年團體連絡協議會, 1994）
- 我が國の 青少年行政と 青少年對策本部の業務（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 1993）

다음의 〈표 I-2〉는 현지방문 일정 및 조사기관을 국가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I-2〉 현지기관 방문조사일정 및 주요 방문기관

국 명	지 역	주 요 방 문 기 관	비 고
프 랑 스	파 리	청소년종합정보센터(CIDJ) 프랑스바캉스센터(UFCV) 청소년체육부 청소년/대중교육연구원(INJEP)	(9. 6-9. 9)
미 국	뉴 욕	뉴욕시 청소년국 Community Board Service Unit American Camping Association(N.Y Section)	(8.13-8.19)
	L.A	Korean Youth & Community Center	
영 국	London	Commonwealth Youth Program London Union of Youth Clubs British Youth Council	(9. 6-9. 9)
	Leicester	National Youth Agency	
일 본	동 경	총무청 청소년대책본부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터 중앙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	(8.20-8.25)
독 일	문 헨	독일청소년연구소(DJI)	(9.12-9.14)
	본	연방정치교육센터 독일연방청소년연맹	

II. 각국의 청소년활동 정책

영국의 청소년정책과 활동 / 도종수, 김혁진

프랑스의 청소년활동 정책 / 한승희

미국의 청소년활동과 정책사업 / 천정웅

독일의 청소년활동 정책 / 노 혁, 김경준

일본의 청소년활동 정책 / 천정웅

LA지역 청소년시책과 한인청소년 사업 / 원영준

1. 영국의 청소년정책과 활동

이 글에서는 영국 청소년정책의 특징을 중심으로 하여 정책의 일반적인 현황과 청소년활동이 전개되는 상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정책의 개념과 방향, 정책의 대상이 되는 청소년의 인구학적 분포와 특징, 청소년서비스를 중심으로 한 청소년정책의 역사적인 전개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 다음으로는 청소년들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 시설, 지도자의 양성과정 그리고 청소년들이 참여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활동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영국 청소년정책의 현황은 주로 England를 중심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영국(United Kingdom: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을 구성하는 England, Wales, Scotland, Northern Ireland별로 청소년정책이 집행되고 이들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England가 가장 대표적인 형태를 가지기 때문이다.

가. 청소년과 청소년정책의 현황

1. 청소년정책의 개요

영국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서비스(Youth Service)의 전달과 지원을 중심으로 계획되고 집행된다. 청소년서비스는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개인적 발달과 비공식적 사회교육의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NYA(a), 1994). 즉 청소년서비스란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이를 통해서 청소년들은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받는데 그것은 그 자체가 더 넓은 발달 과정의 한 부분이 되며 그 안에서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과 그들이 살고 있는 사회에 대해서 배운다.

* 도종수,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 김혁진, 한국청소년개발원 연수원

그리고 청소년서비스의 전달체계는 전통적으로 ‘지방정부(local authority, 주로 교육당국)’를 포함하는 법적인 기구와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이 시기에 뿌리를 두고 있는 조직화된 조직체로부터 새로 형성된 독립적인 단체들에 이르는 수 많은 다양한 형태의 ‘자원단체(voluntary organization)’와의 동반관계에 의존하고 있다. 특히 자원영역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데 청소년활동의 약 90% 가량을 이들이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구체적인 활동은 지방 수준 또는 개별적인 자원조직체 내에서 결정되어진다.

이와 같은 청소년서비스의 변화에 따라 현재 많은 단체들은 1991년에 정부의 후원하에 개최된 국가적인 차원의 회의에서 합의된 성명서(Statement of Purpose) 위에서 그들의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의 기초를 설정하고 있다. 이 성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Islington Education Department, 1993).

“청소년활동의 목표는 불평등의 모든 형태를 바로 잡고, 모든 청소년들이 개인으로서나 집단과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그들의 가능성을 충족시킬 수 있도록 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며, 성인으로 자라는 동안에 청소년들을 지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 성명서에서는 자원단체와 지방정부와의 동반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청소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기회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첫째, 교육적인 활동의 기회로서 청소년들이 개인으로서 그리고 집단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장하며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기술, 지식, 태도를 습득케 한다. 둘째,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고안된 기회로서 문화, 인종, 언어, 성별, 장애, 연령, 종교 그리고 계층의 차이에서 오는 모든 압박에 대한 도전을 통해서 그리고 이러한 차이점으로부터 발생하는 힘과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함으로써 기회의 평등을 증진시킨다. 셋째, 참여의 기회로서 청소년들 자신과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과정과 의사결정구조에서 청소년들이 동반자가 되는 자원조직과의 관계를 통해 참여의 기회를 증진시킨다. 넷째, 사회적인 능력의 제공으로서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 다른 사람들의 삶 그리고 그들이 한 부분을 차지하는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적, 사회적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들을 이해하고 행동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사회적인 능

력을 제공한다.

그리고 자원단체와 지방정부와의 동반관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청소년활동을 통해서 제공되는 청소년활동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비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informal education program)의 제공으로 청소년들에게 도전을 주고 그들의 개인적이고 영적인 개발과 사회적이고 정치적인 교육을 증대시킬 비공식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둘째, 시설과 인간관계로서 청소년들은 그들에게 제공되는 시설과 다른 사람들과의 인간관계 속에서 즐거움을 갖고 안정감과 가치로움을 느끼며, 자신들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배우며 자신들에게 미치는 악영향에 대항할 수 있게 된다. 셋째, 적절한 정보와 자문 그리고 상담을 얻고 이를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이 제공된다. 넷째, 청소년들의 필요에 따른 다른 분야의 서비스들을 지원한다. 다섯째,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인 경향과 법률체계에 대한 연구, 모니터와 각종 출판물이 제공된다.

최근에 수년동안의 움직임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는 청소년서비스를 위한 종합적인 표준을 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즉 청소년활동을 위한 중핵 교육과정(core curriculum)의 발달을 통해서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관련 요소들의 결합력을 더 크게 만들어내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표준적인 교육과정은 의무적인 것은 아니다. 다만 청소년서비스가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제공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의 결과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방향으로 전개되는 청소년서비스의 다양한 모든 사업들은 영국 전체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생활과 기회를 개선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적어도 지방정부와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들에게 그들 스스로 즐기고 자신의 지역사회에 대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2. 청소년인구의 현황

1990년의 국가적인 회의에서 11세에서 25세까지를 청소년의 연령으로 하기로 합의 되었으나 이중에서 13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우선적인 서비스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지방별로 구체적인 서비스대상의 연령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구체적인 인구 규모를 살펴보면 25세 이하의 인구가 거의 18,600,000명에 이르며 이 중에서 10세와 20세 사이는 7백만명 그리고 청소년정책의 주요 대상이 되는 13세와 19세 사이는 약 4,800,000명이 있다. 이 연령 집단 가운데에서 약 51%는 남자이고 49%가 여자이다(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1993). 그리고 전체 인구에서 청소년들이 차지하는 비율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래서 1980년에는 전체인구중 11.6%가 16세 이하였으나 1985년에는 10.9% 였고 1995년에는 8.3%가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영국은 다민족사회로서 300만명 이상의 소수인종 집단이 있으며 이 인구중 청소년들의 인구 비율이 다른 연령층의 비율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 인구집단은 유럽의 다른 나라, 아프리카-카리브해 연안, 아시아 지역의 여러나라로부터 온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러한 다인종사회라는 배경 때문에 조화롭고 다원적인 문화를 가진 사회를 형성하기 위해서 모든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통합시키는데 강조점을 두고 있다.

영국 청소년들의 처한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BYC, 1992). 첫째, 보건문제에서 영국의 청소년들은 마약이나 성적인 행위의 높은 비율 때문에 AIDS 문제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991년의 보고에 의하면 15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중 AIDS에 감염된 인구는 299명으로 전체 5411명 중 5.5%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1990년의 보건교육국(Health Education Authority)의 보고에 따르면 16세에서 19세까지의 청소년들중 단지 44%만이 AIDS의 위험에 대해서 충분히 알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같은 연령의 청소년들 중 52%가 성교의 경험이 있으며 16세는 31%, 19세는 70%가 경험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마약남용의 경우 17세에서 19세의 20%가 마리화나를 피운 경험이 있고, 아편흡연자의 약 32%가 25세 이하였다. 1990년에 영국 전체의 마약범죄자 중 62%가 25세 이하이고 그들중의 90%가 남자였으며 80-90%가 마리화나와 관계되어 있었다.

둘째,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 이후 18세까지 교육과 훈련과정에 참여하는 청소년

년들의 비율은 1986년의 경우 전일제로 참여하는 비율이 33%, 시간제까지 포함하면 64%로 다른 비슷한 수준의 나라들에 비해서 낮은 편이다. 1988년에서 1989년의 경우 ‘청소년훈련(YT: Youth Training)’ 프로그램에 참여한 16, 17세의 청소년들은 314,700명으로 직업현장에 참여할 학교졸업자의 61%에 해당한다.

셋째, 실업 상황을 보면 1992년의 경우 전체 실업인구는 2,600,000명이며 이중 25세 이하의 청소년은 864,000명으로 33%를 차지했다. 16-17세의 청소년들의 실업상황은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1992년의 경우 103,000명으로 나타났다.

넷째, 수입과 빈곤의 측면에서 볼 때 국민전체로는 1981년에서 1989년 사이에 평균적으로 실질소득이 약 1/3 가량 증가했지만 부유층과 빈곤층의 격차는 더 커져서 빈곤층의 수입은 악화되었다. 청소년들의 경우 1987년에서 1990년 사이에 일반인들의 평균적인 소득은 증가했던 반면에 18세에서 24세까지의 청소년들중 실질적인 측면에서 가장이 아닌 경우는 3%, 가장인 경우는 27%, 독신으로 장애를 가진 경우는 29%의 손실을 보았다.

다섯째, 주택문제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16세에서 25세경 사이에 가정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된다. 그리고 1990년의 조사에 따르면 매년 16세에서 19세까지의 156,000명이 무주택 상황을 경험한다고 보고된다.

여섯째, 청소년범죄 문제의 경우 21세 이하의 약 30,000명의 청소년들이 수감되어 있고 매년 약 10세에서 17세의 청소년들중 1,300명 가량이 성인 교도소에 수감된다고 한다. 그러나 영국전체에서 청소년들의 보고된 범죄는 감소하고 있는데 1979년에는 164,200명에서 1989년에는 99,300명으로 25%가량이 감소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9년에는 모든 범죄자의 21%가 청소년으로 나타나며 남자는 18세, 여자는 15세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보고된다.

이상에서 살펴 본 각종 통계수치는 청소년들이 처한 사회적 상황을 나타내준다. 많은 청소년들이 당면한 문제는 결국 청소년정책을 통하여 수행할 사업의 방향을 제시해준다. 따라서 정부와 각종 청소년단체에서는 마약, 성, 에이즈, 실업과 직업교육, 빈곤, 무주택, 범죄의 문제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고 이를 위한 각종 대책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3. 청소년서비스의 역사

청소년서비스의 기원은 19세기말에서 비롯되어 100여년 동안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이 시대에는 새로운 산업시대의 냉혹한 조건에 부응하여 인간주의적인 의무감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많은 수의 그리고 다양한 범위의 단체들이 설립되었다. 그리고 20세기 초반의 10년동안 보이스카우트, 걸 가이드, 전국소년클럽(현 Youth Clubs UK)등이 19세기에 설립된 YMCA나 Boy's Brigade의 뒤를 이어서 설립되었고 이후로도 많은 자원청소년단체들이 설립되었다(W.E.Baugh,1992;NYA(a), 1994).

그러나 교육의 한 부분을 형성하면서 지방교육담당 부서의 지원을 받는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정부의 첫번째 명시적인 정의는 1939년에 이루어졌고 이 때에 이르러서야 자원적인 청소년단체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게 되었다. 1차세계대전 동안 정부는 지방정부에서 지방교육당국(LEAs : Local Education Authorities), 자원조직체 그리고 청소년활동을 증진 시키는데 관심이 있는 개인들에 의한 대표자들로 구성된 청소년조직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권장하였다. 이러한 위원회들은 전쟁기간동안에 여러 영역에서 기능을 계속해서 담당하였는데 서비스의 대부분은 YMCA, YWCA, Girl Guides, Boy Scout등과 같은 자원조직체에 의해서 제공되어졌다.

2차세계대전 동안에 교육위원회(Board of Education, 1944년에 교육성 - Ministry of Education이 됨)에서 청소년서비스를 책임지게 되었다. 지방의 교육국에서는 청소년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지방청소년위원회에 의해 자원조직체와 협력하도록 하였는데, 지방의 정부는 토지, 건물과 기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후에 청소년자문회의(Youth Advisory Council)로 대치된 국가청소년위원회(National Youth Committee)가 설치되었는데 여기에서는 청소년활동이 교육서비스의 필수적인 부분이라는 가정하에서 청소년활동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하였다. 전쟁기간동안 청소년서비스는 급속하게 확장되었다.

1944년의 교육법(Education Act)하에서 청소년서비스는 계속교육의(further education) 의 통합적인 한 부분이 되었고 공식적으로 지방교육당국에 의해서 집행

되는 청소년서비스의 법적인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는 지방정부가 단지 학교를 졸업하는 연령의 사람들을 위한 교육을 제공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요구에 적합한 훈련과 레크리에이션 활동과 같은 여가시간의 활동도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1950년대 중반에는 청소년서비스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로부터 예산을 충분하게 지원받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한 한가지의 이유는 큰 규모의 정부지출을 요구하는 중요한 개발사업들이 많았기 때문이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원은 제한되고 청소년서비스는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1958년에 Albermarle 위원회에서는 다음과 같은 문제들을 다루도록 하였다. 즉 ‘청소년들이 지역사회와 생활가운데에서 그들의 역할을 감당하도록 돕는데 있어서 잉글랜드와 웨일즈에서의 청소년서비스가 할 수 있는 공헌의 검토와 재정적인 지출을 위해서 가장 우선적으로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자문’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 위원회에서는 1960년에 ‘The Youth Service of England and Wales’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여기에서 강조된 것은 청소년서비스는 단지 청소년의 여가 시간을 충족시켜주는 단순한 측면보다는 청소년들의 전반적인 성장,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었다. 이러한 새로운 권고와 함께, 지방정부에서는 청소년단체들에게 재정적인 측면에서나 건물과 같은 시설의 측면에서 더 많은 도움을 주었다. 청소년서비스개발위원회(Youth Service Development Council)가 교육성장관에게 자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설치되었고, 청소년지도자 교육을 위한 과정이 대학에 설치되었다. 자격을 갖춘 청소년지도자들은 시간제의 비상근지도자들에 의해서 보조를 받는다. YSDC는 1971년에 해체되었고 현재 자문역할은 Youth Service Review Group에서 담당하고 있다.

Albermarle 보고서 이후로 1960년대에는 청소년서비스가 상당한 정도로 확대되었지만 이 기간 동안 이빈으로 인한 문제들과 사회적인 박탈과 관련된 문제들이 전면에 나타나게 되었다. 1970년대에는 경제와 관련된 문제들이 재정적인 압박을 초래하였고 청소년서비스는 방향감각을 잃어버리는 듯 하였다.

이에 따라 Review Group에서는 청소년서비스를 연구하였고 그 결과가 1982년도에 발간된 Thompson 보고서였다. 이 보고서에서는 ‘청소년서비스의 전반적인 목

적은 개인의 자신에 대한 믿음을 굳게 하고 사회 참여를 북돋우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하였다. 또한 ‘청소년서비스는 그것을 필요로 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도움 기회와 의무를 가지고 있다. 어떤 청소년들에게는 그 서비스가 단순히 그들의 경험을 확대하는 수단으로 보일 수 있는 반면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진정한 보장서비스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라고 말하였다. 그리고 청소년서비스의 첫번째 임무로 청소년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청소년들을 돕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이는 세가지의 중요한 도움 형태를 가져오는데 첫째,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레크리에이션, 둘째, 불행한 처지에 처한 그리고 거의 절망가운데 빠진 청소년들을 위한 구제 서비스, 셋째, 사회교육의 제공이다. 사회교육이란 개인적인 관계에서 더 큰 신뢰를 줄 수 있는 다른 청소년들과의 연합적인 활동, 책임감을 개발할 수 있는 집단안에서 의사결정과정에서의 참여,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정치적 활동과 지역사회와 관련된 사항들에 대한 참여를 이끌 수 있는 지역사회서비스 등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사회의 그리고 민주적인 과정의 활동에 대한 더 훌륭한 지식을 제공한다.

이 보고서는 청소년들이 충분히 사회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했다. 재정의 부족은 기부자의 부족에 근거할지도 모르지만 중요한 이유들은 사회교육의 중요성을 과소평가 하고 있고 그것이 의미하는 바를 정확하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청소년서비스는 지역사회와 관계를 맺는데 실패해 오고 있었다. 사람들은 청소년서비스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다른 조직체들과 협력하는데 실패해오고 있었고 16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필요를 채우기에는 설비가 불충분하였다. 이러한 지적과 함께 이 위원회에서 제기한 중요한 제안은 지도자 연수과정의 국가적인 차원의 수준의 감독자 모임에 의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과 교육성에서 장관은 청소년업무와 관련이 있는 모든 부서들의 활동을 조직화하고 행정부내에서 청소년서비스를 위해 대변자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마침내 정부는 교육성(당시는 교육과학성 DES : Department of Education and Science)에서 회람(Circular 1/85)을 발간하여 이 보고서에 응답을 하였다. 여기에서는 청소년서비스를 국가에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고 청소년서비스의 주요 제공자로서 자원봉사 영역에 높은 평가를 하고 있다. 정부는 청소년들

과 관련된 다양한 조직체들과의 협력에 대한 요구를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서 정부는 보고서에서 제기된 바와 같이 청소년들 자신을 포함하여 청소년 단체들의 대표자들로 구성되는 청소년서비스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자문회의를 설립하였다. 또한 정부에서는 청소년업무에 관심을 갖고 있는 각 부서의 활동의 조정을 위해서 교육청내에 Review Group의 권고와 부합할 수 있는 방법으로 청소년서비스국(Youth Service Unit)을 설치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지방정부가 청소년조직체와의 연계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활동을 조정하고 개선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연수과정을 개선시킬 목적으로 지도자 연수에 관심있는 사람들은 1982년 겨울에 설치된 ‘청소년과 지역사회사업에서의 교육과 연수를 위한 협의회(Council for Education and Training in Youth and Community Work)’와 협력하도록 하였다. 지방정부에는 교육성 장관에게 그들의 현재의 조정을 위한 준비, 그들 지역에서의 청소년 조직체의 계획과 운영등에 대해 보고할 것과 이러한 준비가 효과적인 연수를 위해서 어떻게 공헌할 것인가에 대한 관점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자원단체는 그들의 운영능력을 개선시키도록 격려되며, 운영의 혁신 과정에서 단기간의 실험적인 사업을 위해서 기금의 지원을 이용할 수 있다.

청소년단체들은 1986년 3월에 연합 성명서를 통해 교육성의 회람에 응답을 하였다. 그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시설을 보장할 책임을 지고 있는 지방정부와의 밀접한 연계를 위한 요구를 강조하였다. 그들은 또한 효과적인 청소년서비스는 적절한 재정에 달려있음을 강조하였다. 이는 청소년조직체들은 그들의 관점에서 재정적으로 불충분하다는 점과 몇몇의 지방정부는 청소년서비스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지 못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재정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청소년서비스는 중앙이나 지방정부로부터 어떠한 여분의 지원을 받은 것 같지는 않다. 회람의 서두에서 경제적인 원칙을 유지하면서, 정부는 이용할 수 있는 재원의 한계를 지적하였다. 앞으로 지방정부는 그들의 전체적인 지출상에서 다른 요구들과 비례하여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예산에 대한 주의깊은 평가를 계속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청소년서비스의 전개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환경의 하나는 영국이 처한 사회적인 상황과 이에 따른 국가적, 사회적 요구이다. 1980년대의 진전에 따라

서 청소년서비스는 점차로 청소년들의 삶의 사회적, 정치적 상황 특히 다른 사회적, 인종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직면한 문제들 그리고 남자 청소년들과 비교하여 여자청소년들이 직면하는 상대적인 어려움을 중요시하게 되었다.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과 마찬가지로 영국도 1990년대 초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순환적인 침체에 영향을 받은 노동시장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1993).

노동시장은 또한 지난 10년간 점차로 정교하고 기술적으로 숙달된 노동력을 요구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의 변화에 청소년들이 대비할 수 있도록 고안된 청소년 훈련프로그램들이 제공되고 있다. 1990년대 동안에 영국정부는 청소년훈련을 더 개선시키도록 하고, 직업적인 능력을 향상시키며 청소년들에게 성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노동시장에 대한 더 나은 인식과 지식 그리고 기술을 제공하는 교육적인 배경을 계속해서 세워나가는데 전념하고 있다.

좋은 교육과 활동을 위한 최적의 훈련은 청소년들의 미래에 매우 중요하지만 중앙정부와 청소년서비스에 의해서 탐색되는 다른 목표들이 있다. 여기에는 청소년들이 야외활동을 통하여 더 넓은 지평을 갖도록 돕는 것과 국제간의 교류활동, 스포츠, 드라마, 연극, 음악과 다른 예술활동과 같은 문화적 활동에 대한 참여도를 높이는 것, 다른 사회경제적 지위를 가진 집단의 청소년들과 종교적, 문화적 배경이 다른 집단의 청소년들 사이에서 이들이 서로에게 관대한 마음을 갖도록 하는 것, 무주택이나 마약, 장애와 같이 특별한 서비스와 자원을 요구하는 심각한 문제들을 다루는 것들을 포함한다.

나. 청소년정책의 체계

1. 교육체제와 청소년들의 진로

1) 교육행정조직

영국의 교육행정조직의 특성은 지방분권적이라는데 있다. 즉 각 지방별로 교육을

담당하는 지방교육당국들(LEAs:Local Education Authorities)에 의해서 실질적인 교육시설의 설립이나 교육과정, 학교의 운영 등 초,중등교육이 관리되고 지원되고 있다. 지방교육당국은 이러한 실질적인 사항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리고 중앙의 교육성(DFE :Department for Education)에서는 영국교육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 내용으로는 교육 재정, 교육 시설, 국가의 기본적인 교육수준의 지도, 교사양성 등과 같은 것들이다. 이러한 교육체제가 법적인 체제로 확립된 것은 1944년의 교육법(Education Act)을 근거로 한 것이며 이 교육법을 통해서 영국에서는 근대적인 교육제도를 확립하였다(차경순,1991).

2) 학교체제

영국의 학제는 [그림 II-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초등교육, 중등교육 그리고 고등교육의 체제로 이루어지며 학문과 직업의 두 분야의 진로가 일찍 결정되는 복선형의 교육체제로 되어 있다. 즉 학생들의 진로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1세에 치르는 국가시험에 의해서 일찍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육체제는 폐쇄형의 다소 비민주적인 특징을 갖는다.

다음으로는 각 급별 학교체제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이는 다음에 설명할 청소년정책과 활동을 위한 배경적인 지식을 제공한다. 즉 중등교육의 경우는 청소년들의 진로와 이에 따른 정책이나 지원활동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 대학교육의 체제는 청소년지도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대부분의 과정이 대학을 통해서 제공된다는 점에서 청소년지도자 양성 체제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준다.

우선 초등교육기관으로는 5세에서 7세까지 다니는 유아학교(infant school)와 8세에서 11세까지의 초등학교(junior school)가 있다. 중등학교는 크게 그램머 스쿨(grammar school), 기술학교(technical school), 현대학교(modern school)의 3분체제(tripartite system)로 이루어진다. 11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면서 치르는 일레븐 플러스라는 국가 시험의 성적과 지능검사, 교사 추천 등에 의해서 상위성적의 학생들은 인문계 중학교인 그램머 스쿨에 진학하여 정규대학으로 가고 그 다음

성적의 학생들은 기술학교에 진학하여 이공대학이나 기술계통의 학교로 진학하며 나머지 학생들은 현대학교에서 고등학교 졸업후 사회로 나가게 된다.

의무교육이 끝나는 16세는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 청소년들은 자신이 학교에 머물 것인지 아니면 대학입시를 위한 준비를 할 것인지, 전임제로 일자리를 구할 것인지 아니면 직업훈련을 위한 청소년프로그램에 참여할 것인지 결정해야 한다. 그래머 스쿨과 기술학교 졸업생들은 2년간 학교(school and college)에서 대학입시를 준비할 수 있다. 이들은 GCE-O(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Ordinary)시험을 거쳐 자신의 선택에 따라서 2년간을 학교에 더 남아 있거나 'six-form college'라는 대학입시 준비반에 진학하여 대학 입학에 필요한 GCE-A(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Advanced) 시험을 준비하여 18세에 이 시험을 치르고 난 후 고등교육기관인 대학에 진학한다. 현대학교(modern school) 졸업생들은 의무교육이 끝나면서 CSE(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시험을 치르고 사회로 진출한다.

정부에서는 학문적인 활동 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위한 실제적인 기능을 얻도록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1993). 그래서 학업과 직업교육을 연계시키는 과정이 제공되는데 계속교육학교(colleges of further education)는 16세에서 18세 사이의 청소년들을 위한 직업교육과정을 제공한다. 그리고 14세부터 18세까지의 청소년들의 직업 생활을 도울 수 있도록 학교(school and college)에서 더 많은 직업적인 자격과정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에 의해서 집행되어지는 TVEI(Technical and Vocational Education Initiative)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학습을 직업세계와 연결시킴으로써 학교 교육 안에서 직업세계에 준비케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TVEI프로그램 하에서 청소년들은 GCSE,GCE-A(Advanced Level상급수준), A수준과가 동등한 Scottish Highers 그리고 BTEC(Business and Technology Education Council), RSA(Royal Society of Arts), City and Guilds, and SCOTVEC(Scottish Vocational Education Council)로부터 주어지는 직업적인 연구수료자격(diploma)과 직업자격증을 위한 공부를 할 수 있다. TVEI프로그램은 청소년들에게 그들이 졸업할 때 성취 기록을

제공하고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청소년들이 학교에 머물 수 있도록 돕는 것 뿐만이 아니라 GCSE의 개선에도 공헌해오고 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얻은 자격증들이나 다른 직업자격증은 청소년들이 사업, 엔지니어링, 행정, 음식점, 여행등과 같은 다양한 직업을 준비하게 한다. 그리고 직업적인 자격증들은 NVQs(National Vocational Qualifications)와 General NVQs로 대형성된다. NVQs란 청소년들이 대학이나 학교에서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을지라도 직장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여 고안되어진다. 작업 경험을 포함하면서 공부의 단위가 구분되고 학생들에게 특정분야에서 직업적인 능력을 갖추 수 있도록 한다. 학생들은 시간의 제한없이 자신의 수준에 맞추어서서 NVQs를 구성할 수 있다.

1992년 9월에 도입된 GNVQs(General NVQs)는 학교(school and college)에서 전일제(full time)로 공부하는 청소년들을 주요 대상으로 고안되었다. 이는 GCE-A수준에 대한 대안이 되고 사업, 예술과 디자인, 건강과 사회적 관심사와 같은 직업적인 영역내에서 관련된 직업 범위를 위한 폭넓은 직업교육을 제공한다. 또한 고등교육과 취업을 포함하면서 높은 수준의 연구를 위한 통로를 제공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후에 청소년들은 그들의 GCE-A 시험이나 BTEC 국가자격과 같은 직업적인 자격증의 취득을 통해 종합대학, 단과대학, 폴리테크닉과 같은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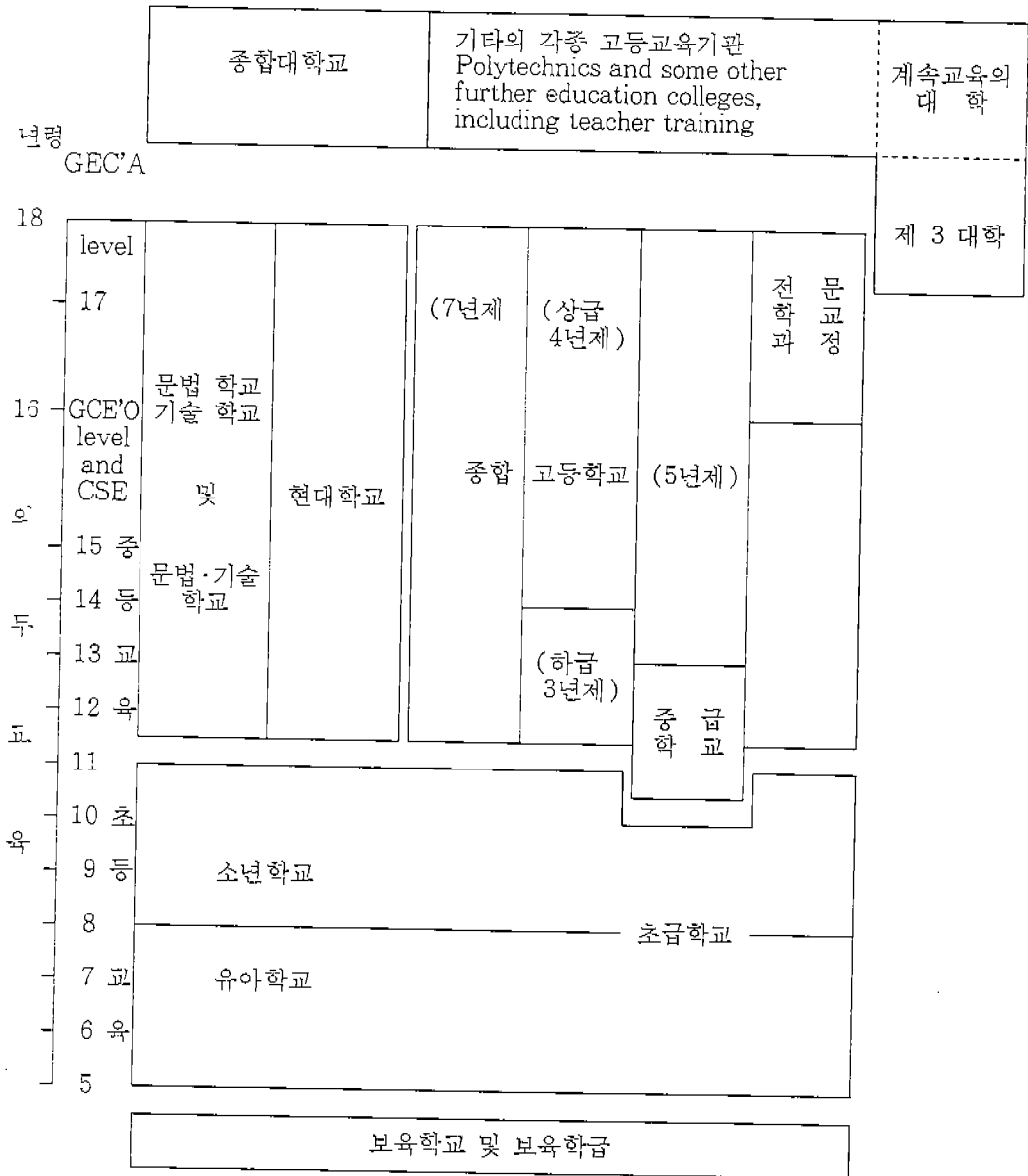
GCE-A 등의 시험을 거쳐서 진학하게 되는 고등교육기관인 종합대학은 모두 46개가 있으며, Univ. of Buckingham을 제외하고는 모두 공립대학이다. 그리고 국립의 고등기술대학인 Polytechnics이 30개 있으며 두 유형의 대학 모두 동일한 학사학위(BA, BS)를 수여한다. 그러나 Polytechnic에서는 고급직업기술교육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각종 이수과정과 시간제 과정도 많이 개설하고 있다. 기간은 대개 3년간이지만 산업현장이나 EC내의 외국에서 보내는 1년간의 기간을 포함하여 운영되는 4년 과정도 있다. 교육비는 지방교육국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얼마만큼 받고 나머지는 부모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중앙정부에서 설립한 Students Loans Company를 통하여 지원된다. 어떤 경우에는 학위과정

을 통하여 대기업에서 학생들을 후원한다.

대학원과정의 경우 석사과정과 박사과정이 있으며 석사과정의 경우 1년내지 2년간의 기간이 걸리며 taught course(강의와 세미나에 출석, 필기시험이나 논문으로 학위부여)와 research course(독창적인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를 지도교수의 지도하에 수행)의 형태가 복합된 과정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두 형태로 나뉘어져 운영된다. 또한 diploma(수료자격과정으로 학위를 수여하는 것이 아니고 수료를 기준으로 하며 우리나라의 연구과정과 유사한 형태)과 degree(학위취득과정)이 있으며 degree과정은 1년내지 2년이 걸리고 일반적으로 연구수료(diploma)과정은 학위(degree)과정보다 더 짧게 걸린다.

영국의 전통적인 교육체제는 계급주의에 바탕을 두면서 상류사회와 엘리트 중심으로 하는 고전교육의 전통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라틴어 중심의 고전교육은 과학기술의 발달과 대중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서 현대적인 과학기술 중심의 대중교육으로 그 방향이 바뀌어야만 했다. 또한 11세에 학생들의 진로가 결정된다는 데에도 많은 비판이 일어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비판의 결과로 1960년대 부터 교육개혁이 일어났고 1965년 교육성장관령에 의해서 일레븐플러스 시험의 폐지를 각 지방교육당국에 요청하였다(조용하, 1988). 그리고 그래머스쿨에서도 자연과학 과목이 증가되고 많은 공과계 전문학교가 대학으로 승격하였고, 인문계와 실업계가 구분되지 않고 18세까지 공부를 계속하는 미국식 종합학교가 많이 세워지고 있다. 또한 직업교육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면서 특히 16세에 끝나는 의무교육 이후에 청소년들이 직업세계에 적절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학교등을 통하여 많은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또한 대학에서는 정상적인 학위취득과정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연구과정이나 자격취득과정을 개설하여 제공하고 있다.

[그림 II-1] 영국의 학제



2. 청소년서비스의 행정체계

청소년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체계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은 교육성(DFE:Department for Education)에 의해서 세워지며 그 안에서 지방정부와 자원단체들은 함께 활동한다. 시설,장비 그리고 재정적인 지원을 자원단체에 제공하는 것과는 별개로 많은 지방정부에서는 청소년센터와 그들이 소유한 클럽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조직체의 활동을 보충한다. 대부분의 지역정부에서는 상근의 그리고 유급의 청소년담당 공무원(officer)들에 의해서 자문을 받는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는데 이 위원회는 지방정부 뿐만이 아니라 자원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다. 지방정부의 기금지원에도 불구하고 자원단체들은 그들이 필요로 하는 자금의 대부분을 그들 스스로 제공한다. 잉글랜드에서는 그 자원단체의 대부분이 ‘자원청소년서비스를 위한 국가협의회 (National Council for Voluntary Youth Service)’의 구성원들이다. 이러한 체제로 구성되는 청소년서비스를 중앙정부의 수준과 지방정부의 수준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중앙정부 영역을 살펴보면 청소년서비스에 관한 정책의 수행과 자원조직체들을 위한 지원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는 교육성내에 설치된 청소년서비스국(Youth Service Unit)이다. 청소년서비스국에서는 지방의 교육담당부서들, 전국적 자원 청소년단체들, 청소년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에 관련된 다른 정부부처와 관련기구들을 연결한다. 토론,협의 그리고 보조금을 통하여서 정부 정책과 우선적인 영역에서의 변화와 이니셔티브를 유지하려 한다. 또한 청소년서비스에 관심을 두고 있는 국제적인 조직체의 제안에 대한 영국정부의 공식적인 답변을 제공한다.

청소년서비스국은 1993년에서 1994년 회기동안에 5,300,000 파운드에 이르는 보조금을 전국적인 청소년단체, NYA와 다른 조직체에 대하여 집행하는데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청소년서비스 활동은 또한 교육성 안에서 직접 기금을 주관하는 다른 프로그램도 포함한다. 1993-1994년의 교육지원과 훈련을 위한 보조금(GEST: Grants for Education Support and Training) 프로그램은 정부의 청소년활동계획

하에 있는 29 지방의 교육국에 대한 4백만 파운드 이상의 지원을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기금은 위험에 처해 있는 대부분의 청소년들을 돕기 위한 다양한 사회적, 개인적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그리고 청소년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지원을 받는 국립청소년국(NYA:National Youth Agency)이 1991년에 설치되어(1973년에 설립된 National Youth Bureau에서 개편됨) 청소년서비스를 위한 중앙적인 지원기구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NYA는 잉글랜드내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서비스의 전체적인 측면에 초점을 두고 있는데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는 Wales Youth Agency, Scottish Community Education Council, Youth Council for Northern Ireland가 있다.

NYA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는 모든 사람을 지원하는데 그 내용으로는 우선 청소년지도자들을 위한 도서대출, 전화 문의 응답, 도서, 잡지, 게임 집 그리고 다른 자료들의 출판을 통하여 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청소년활동개발팀은 청소년활동을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자원단체와 함께 밀접하게 활동한다. 여기에는 교육과정의 개발, 조직적인 구조에 대한 조사 관찰, 요원(지도자)의 질적 수준 향상 등과 같은 업무를 포함한다. 그리고 자원봉사활동을 증진시키고 지도자 연수과정의 자격인증(endorsement)제도와 요원(staff)들의 자질 개발 정책을 통하여 청소년활동 연수과정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는 것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교육성을 대신하여 혁신적인 프로젝트를 개발하려는 자원단체에 제공되는 청소년활동개발기금으로 400,000파운드의 집행을 담당하고 있다.

지방정부는 런던의 구(區,borough), 각 시군지역과 대도시의 지방정부를 포함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영국의 발전과 이에 따른 지방 정부의 재조직계획에 따라서 변화할 수 있다. 이러한 지방정부의 서비스는 조직 체계면에서 다양한 형태를 가지게 된다. 어떤 지역에서는 청소년서비스로 영역이 분리되어 있거나 ‘청소년과 지역사회서비스’로 되어 있으면서 교육부문안에 청소년서비스가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어떠한 지역에서는 더 광범위한 지역사회 교육서비스를 통해서 청소년서비스를 지

원하고 있고, 몇몇 지역의 정부에서는 레크리에이션 또는 여가 부문안에 청소년서비스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이와 같이 지방별로 차이가 나는 체제는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명칭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1989년의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과 지역사회서비스(youth and community service)’가 44.4%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는 ‘청소년서비스(youth service)’가 34.7% 그리고 ‘지역사회교육(communitry education)’이 12.5%, ‘청소년과 지역사회 교육(youth and community education)’과 기타가 각각 4.2%로 나타났다(Smith,1989). 명칭에서도 볼 수 있듯이 지역사회와의 연결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일반적으로는 청소년과 지역사회라는 개념의 틀 속에서 청소년서비스를 고려하게 된다.

1944년 이래로 지방정부는 자원봉사 영역에 대하여 청소년서비스 시설들의 직접적인 설비와 기금 및 다른 자원의 제공을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지방정부가 직접적인 서비스의 제공자가 아니라 지원자가 되라는 압력이 커짐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 많은 지방정부들은 현재 위탁, 계약 또는 서비스 협정의 설정을 통하여 그들의 청소년서비스에 대한 지출이 자원봉사 영역에서 제공자로서의 역할을 개발하는 방식들을 찾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청소년서비스의 동반관계는 대다수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클럽, 프로젝트, 기금, 보조적인 지도자 그리고 다른 형태의 지원을 받는 자원단체로 이루어져 있다. 때때로 배분의 측면에서 볼 때 지방정부의 영역과 자원단체의 영역을 구분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된다.

그리고 이외에도 지역사회내에서 독립적인 자원조직체가 있다. 이러한 그룹은 청소년활동에 참여하기는 하지만 공식적인 청소년서비스 체제와는 거의 연결되어 있지 않다. 런던의 Croydon구에서 “A Thousand Links”라는 제목으로 1986년에 수행된 한 연구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실시되는 청소년서비스의 사업들이 독립적인 자원조직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고된다.

다. 청소년활동의 내용

1. 청소년단체

자원청소년단체의 조직망을 통해서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들에게 그들 자신과 다른 청소년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문제들에 대한 이해와 행위에 대한 능력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그들은 청소년들과 비공식적인 학습과정에서 동반자가 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청소년들이 개인이나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들의 잠재력을 실현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청소년단체는 조직적인 체계면에서 크게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Baugh, 1992).

첫째는 스카우트연맹(Scout Association)이나 걸가이드연맹(Girl Guide Association)과 같이 잘 갖추어진 조직체제를 갖추고 있는 단체들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전국적인 수준의 자원 청소년단체들로서 자체적인 정책을 세우고 지역적인 수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매우 조직적인 행정체계를 갖고 있다. 그리고 지역별로도 하위조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체들로서 Guides Association, Scouts Association, Venture Scouts, Boys' Brigade, Girls' Brigade 등이 있으며 'uniformed organization(이러한 단체들은 유니폼을 착용한다는 특징이 있음)'으로도 지칭된다. 이들중 많은 단체들은 지역환경의 유지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노약자를 돌보는 사업 등에 직접적으로 참여한다.

둘째는 조직적인 측면에서 다소 느슨하고 지방 클럽들의 연합체 성격을 갖는 단체들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전국적인 연계조직을 갖기도 하지만 지역적인 수준에서 활동을 중심으로 하는 경우가 많다. Youth Clubs UK와 같은 단체는 일반적인 지역 클럽들의 연합체적인 성격을 갖고, 청소년농민클럽(Young Farmers' Club, 감리교청소년클럽연맹(the Methodist Association of Youth Clubs), 회교도청소년연합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Muslim Youth)와 같이 유사한 활동에 관여하거나 같은 신앙과 문화를 가진 사람들의 클럽을 대표하는 단체도 있다.

또한 단체의 성격에 따라서 LEA클럽, 민간유지청소년단체, 국방성후원단체, 청소년활동장려단체, 복지적 청소년단체로 구분된다(조용하,1988). 첫째 LEA 클럽이란 지방교육당국에 의해서 설립 또는 지원되는 각종 청소년클럽과 청소년센터가 해당된다. 둘째 민간유지청소년단체는 민간에 의해서 자원적인 조직체로 설립,운영되는 청소년단체들로서 자원청소년서비스전국회의에 가입된 단체들(회원수 1만명 이상이 되어야 자격이 주어짐)이 주를 이루며 종교적인 배경을 가진 경우가 많다. 이러한 단체들로는 Scout Association, Girl Guide Association, Boys' Brigade, Girls' Brigade, YMCA, YWCA, Youth Hostel Association 등이 있다. 셋째 국방성 후원단체는 국방성에서 보조금을 후원하는 단체로서 육해공군의 예비소년단, 공군훈련단 등이 있으며 병역전의 병영생활 체험을 통해 여왕과 국가에 봉사하는 정신을 기르고자 한다. 넷째 청소년활동장려단체는 각종의 청소년단체들의 활동의 발전을 장려하는 기금과 재단으로서 조오지5세기념사업, 에딘버러공작포상계획,외향단 등이 있다. 다섯째, 복지적 청소년단체는 청소년들 자신이 서비스의 제공자로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들로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을 하는 청소년자원봉사대, 지역사회사업자원봉사단 등이 있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청소년단체들 중에서 청소년서비스 영역의 가장 일반적이고 친숙한 형태로서 지방정부를 통한 청소년서비스가 이루어지는 주요한 통로가 되는 것은 지방의 각종 청소년클럽(youth club)들이다(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1993). 이들은 지방교육당국(LEAs)이나 자원조직체에 의해서 설립되고 이들에 의해 운영된다. 자원클럽들은 교회나 지역사회 구성원들에 의해서 세워지고 소수의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운영되는 순수한 지역 조직일 수도 있고, 또한 Boys' Brigade나 Woodcraft Folk과 같이 국가적인 조직체의 한 지역적 단위일 수도 있다. 한 지방내에서도 매우 많은 수의 청소년클럽들이 있으며 특히 규모상 작은 지역사회(communitiy)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을 담당케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청소년클럽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여가시간을 보내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제반 환경과 청소년지도자들이 비공식적인 교육 기회를 조직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청소년클럽은 유형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역사회센터나 마을회관, 교회, 모슬렘 사원과 그 밖의 예배 장소 등을 이용하여 모이고 자원조직체의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운영되며 1주일에 1-2일간 밤시간 동안 모이는 작은 규모의 클럽으로부터 지방정부로부터 고용된 상근 및 비상근 유급 요원(스텝)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클럽활동을 목적으로 자체적인 설비와 장비를 갖춘 건물을 사용하면서 활동하는 전일제 형태의 대규모 클럽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범위를 갖는다. 대부분의 클럽에서는 활동을 통해서 그 클럽의 시설에서 음악, 피로를 풀 수 있는 기회, 게임을 제공하고, 문화 또는 스포츠를 위한 방문 기회를 제공하며, 야외 모험활동에 참여케 하고 다른 청소년 그룹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와 유사한 형태로 수행되는 토론집단과 프로젝트 활동이 있다.

이러한 지방의 다양한 청소년클럽들의 가입으로 구성되어 이들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Youth Clubs UK는 영국 전체를 통해 6,500여 이상의 클럽들에서 약 600,000명 가량의 청소년들을 포함하면서 밀접하게 연계된 조직망이다. 활동의 예로는 PHAB(Phisically Handicapped and Able-Bodied)와 함께하는 주말 프로젝트, 소녀들을 위한 숙박 생활과 사회적 기능 훈련과정, 무직 청소년들과 기능을 가진 성인들을 연결하는 기술공유계획, 외국으로의 여행 등을 포함한다. 1990년대 초기 동안에 Youth Clubs UK에서는 건강, 예술, 스포츠, 참여 그리고 여자청소년들과 함께 하는 활동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활동은 각 소속 클럽별로 이루어지며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공통적인 활동을 계획하고 제공하는 것이다.

그 다음으로 자원단체로서 청소년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단체들은 종교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단체들이다. 이들은 민간유지청소년단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특정종파를 배경으로 하는 경우와 비종파적인 모임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있다.

종파를 배경으로 하는 청소년단체의 예를 들면 Methodist Association of Youth Clubs(감리교), Religious Society of Freinds(Quakers, 웨이커교), Salvation Army(구세군), Presbyterian Church of Wales(장로교), Catholic Youth Service Council(카톨릭), Association for Jewish Youth(유대교), National Associa-

tion of Muslim Youth(이슬람교) 등이 있다. 이러한 단체들은 때로는 다른 종교집단의 청소년들도 포함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특정한 공동사회에 초점을 두면서 스포츠 행사, 음악축제, 아마추어 극장 등과 같은 활동을 즐기도록 한다.

그러나 Boys' Brigade, Girls' Brigade의 경우에는 특별한 중파를 배경으로 하지는 않지만 교회의 소속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역시 기독교를 배경으로 하지만 비종파적인 단체로 활동하는 YMCA는 매년 750,000명의 청소년들과 접촉하고 있고 남녀 모두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 단체는 청소년들을 위한 숙박시설과 훈련을 제공하는 가장 큰 자원조직인데 특별히 무주택, 실직이나 다른 측면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 대상이다. 또한 많은 스포츠와 여가 시설 그리고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있다. YWCA는 호스텔 시설을 제공하고 특별히 무직 여자 청소년들을 돕는 프로젝트와 다양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 20년 동안에 많은 수백가지의 사업을 담당한 자원자들이 수백만의 시간을 봉사하면서 지역사회 서비스 조직체들이 설립되고 있다. 자원봉사조직을 이끌어가는 단체로는 Community Service Volunteers, International Voluntary Service, National Trust Acorn Projects 등이 있다.

2.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의 유형은 우리나라의 생활권시설과 자연권시설의 유형구분과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마을의 청소년센터(youth center)가 있으며 다른 청소년들과 숙박을 하면서 함께 집단활동을 할 수 있는 숙박활동시설(residential center)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다.

우선 청소년센터는 청소년클럽과 함께 청소년서비스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청소년센터는 학교나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비공식적인 사회교육 보다는 구체적인 활동에 치중하고 있다. 이러한 곳에서는 특정한 활동에 숙련된 지도교사(tutor)를 활용하면서 기관장에 의해서 운영되기도 한다. 활동내용에는 스포츠, 음악, 연극과 공예등이 포함된다. 'drop-in' 센터로 알려진 주간 센터(day centres)들은 전형

적으로는 실업이나 사회적인 문제들이 자주 발생하고 또 한편으로는 상근지도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몇몇의 학교에서는 자신의 청소년센터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에서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활동과 수업 사이에서 자신의 시간을 나누어 사용한다. 또한 학교 자체가 청소년의 활동을 위한 시설이 될 수도 있다. 학교는 청소년들의 학문과 직업 교육을 보충하는 다양한 활동을 위한 중요한 장소이다. 여기에는 스포츠, 연극, 음악 그리고 창조적인 활동이나 특별한 취미를 즐기는 것을 포함한다. 이러한 많은 활동들은 학교교육과정의 일부를 형성하지만 또한 학교수업 이외의 시간에도 이러한 활동을 즐길 수 있다. 부모들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개인적인 기금의 모금 뿐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와 중앙정부의 지원을 통해서 많은 학교들은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그리고 교육과정외의 활동을 위한 훌륭한 시설과 장비를 개발해오고 있다.

그리고 전국에 걸쳐 있는 숙박활동시설(residential centers)에서는 숙박을 하면서 시내의 실내 청소년센터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일상생활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가운데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활동의 내용은 집단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야외모험활동,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이 있을 수 있다. NYA에서 발간한 보고서에서 지역별로 소개한 400여개의 영국 전체의 숙박활동시설 이외에도 Accessibility, British for Conservation Volunteers, Youth Hostels Association 등과 같이 숙박활동시설을 운영하는 단체들이 있다(NYA(c),1993).

3. 청소년지도자

1)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현황

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칭을 일반적인 의미로 ‘청소년지도자’로 부르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서비스의 명칭과 마찬가지로 이들에 대한 명칭도 중점적인 활동과 역할에 따라 다양하다(NYA(d),1994). 즉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 청소년과 지역사회지도자(youth and community worker), 지역사회지도자

(community worker) 등과 같은 명칭이 사용된다. 그리고 youth leader라는 명칭도 사용되곤 한다. 여기에서 청소년지도자, 청소년과 지역사회지도자, 지역사회지도자는 중점적인 활동이 다르기는 하지만 이들을 명확히 구별한다는 것은 사실상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이는 청소년활동과 지역사회활동과의 차이점에 그 구별의 근거를 두고 있다. 일반적으로 보자면 지역사회지도자들이 활동의 한 부분으로서 청소년들과 직접적으로 활동하는 반면에 청소년지도자들은 청소년들의 발달적인 특정한 필요에 초점을 맞춘다. 그래서 청소년지도자의 활동은 비공식적 교육을 통하여서 청소년들이 개인으로서나 집단과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자신의 가능성을 충족시키는 것을 보장하려는 목적을 갖는다. 그들은 청소년센터, 거리현장 프로젝트, 학교 그리고 계속교육대학(further education college)와 같은 다양한 환경이나 상담서비스, 개입치료와 같은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활동한다. 그러나 청소년서비스가 지역사회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청소년과 지역사회지도자(youth and community worker)’가 청소년지도자에 대한 구체적인 의미의 명칭이나 교육과정에서 많이 쓰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영국에서의 청소년지도자의 대부분은 유급 또는 자원의 시간제 비상근 지도자(part-time worker)들이다. 특히 자원단체들은 큰 프로젝트나 전국적 또는 지방의 본부조직에는 상근요원을 채용하지만 청소년들과 직접 접촉하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원지도자들에게 의존한다. 그리고 지도자의 수를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1989년에 발간된 청소년서비스 요원에 관한 보고서에는 지역 정부와 자원단체 영역내의 4,898명의 상근지도자(full-time worker)와 723명의 사무직원(officer: 각 지방의 청소년서비스를 관리하고 지원하는 공무원)과 자문위원(adviser)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시간제지도자와 자원지도자의 정확한 수를 말하기란 어렵지만 비상근지도자(part-time worker)는 31,500명, 자원지도자(volunteers)는 약 500,000명으로 추산하고 있다(NYA(b), 1994). 그러나 공식적인 통계 이상으로 상근지도자의 경우 약 7,000명으로 추산되며 약 3분의 1은 전국 또는 지방의 자원청소년단체들에 의해서 고용되고 있다. 그리고 성비는 남자가 65%로 더 많지만 최근에 들어서는 여자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리고 연령으로는 62%가 35세 이상으로

나타났다(NYA(d),1994).

2) 지도자 양성체제

청소년지도자가 되는 경로는 상근지도자와 비상근지도자를 구분해서 살펴볼 수 있다. 비상근지도자나 지원지도자가 일정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에 상근지도자가 될 수 있고 최근에는 이러한 경력을 인정하는 새로운 체제가 개설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상근지도자가 될 수 있는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NYA에서 인증하는 자격취득과정(initial training course)을 이수해야만 한다. 예외적인 경우도 있지만 상근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격취득이 기본적인 조건이 된다.

(1) 상근지도자가 되기 위한 자격취득과정

(initial training course in youth and community work)

상근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과정은 다양하며 그 명칭도 ‘청소년과 지역사회활동’, ‘지역사회와 청소년활동’, ‘청소년과 지역사회연구’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러한 모든 과정은 청소년지도자로서 자격을 부여하는 NYA에 의해서 인증(endorsement)을 받아야 한다.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수할 수 있는 과정의 유형은 다음과 같다(NYA(d),1994).

- ① 청소년과 지역사회 지도자를 위한 2년간의 전일제(full-time) 자격취득과정
- ② 청소년과 지역사회지도자를 위한 3년간의 시간제(part-time) 자격취득과정
- ③ 청소년과 지역사회 지도자를 위한 1년간 전일제 또는 2년간 시간제 대학원과정
- ④ 청소년과 지역사회에서의 학위취득과정(degree)
- ⑤ 견습 계획(apprenticeship schemes)
- ⑥ 경력인정제(validating learning from experience)
- ⑦ 관련학위과정의 인정(일부에 제한됨)
- ⑧ 교사자격증의 인정(일부에 제한됨)

이중에서 ⑦, ⑧ 두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과정들은 NYA의 인증을 받는다. 그렇지 않다면 직업적인 자격증이 주어지지 않는다. 각각의 경우에 연수과정은 인증을 위한 기준을 설정하는 NYA의 ‘교육과 연수 표준 소위원회(Education and Train-

ing Standards Subcommittee)’의 기준을 만족시켜야만 한다. 학위(degree), 수료자격(diploma), 인증자격(certificate) 등 어떠한 형태의 자격이 주어지든지 직업적인 지위는 같다.

NYA에 의한 인증을 받는 과정들은 청소년과 지역사회활동에서 자격을 인정받는 과정을 포함하기 위해서 JNC(Joint Negotiating Committee)에 의해서 공식적으로 발표되고 수용된다. 소위원회의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과정은 이수해도 자격을 부여 받지 못하는 과정이 된다.

이와 같이 NYA에서 인증하는 과정들을 통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데 각 과정에 대한 내용을 좀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자격취득과정은 대학에서의 2년간의 연구과정(diploma course), 3년간의 학사학위 취득과정(degree course), 1-2년간의 대학원과정(학위과정이나 연구과정, 인증과정)등을 포함한다. 이러한 과정을 이수한 후에는 과정에 따라서 학사(BA등) 및 석사학위(MA등), 수료자격(diploma), 인증된 자격(certificate)을 부여 받는다. 앞의 과정 유형중 A, B 과정을 이수하고서 학사학위취득을 원할 경우 전일제로 1년간의 과정을 거치거나 시간제로 2년간 과정을 거치도록 한 경우도 있다.

입학자격은 대개 18세 이상을 요구하는 학위과정을 제외하면 자격인증과정(certificate course)이나 수료과정(diploma course)은 정상적으로는 최소 연령으로 19세에서 21세까지를 입학조건으로 요구한다. 그리고 청소년과 지역사회활동에서 유급이든지 자원이든지 활동한 경력이 요구되기도 하며 이러한 경력은 청소년클럽이나 다른 활동 현장에서 얻을 수가 있다. 이러한 경력을 갖는 경우에 시간제 비상근 지도자를 위한 연수과정에 참여할 기회를 많이 갖게 된다. 이는 학생으로서의 자격을 받지는 못하지만 계속적인 연수를 위한 좋은 기반을 제공한다. 비상근지도자들을 위한 기본적인 연수과정을 인정하는 새로운 체제는 이러한 과정이 국가적인 인정을 받음을 의미한다.

또한 자격인증과정(certificate course)이나 수료과정(diploma course)은 특히 나이 어린 지원자들에게는 최소한의 학문적인 수준을 갖추는 것을 입학 조건으로 한다. 대개는 중등학교자격시험 GCE-O(16세에 치르는 시험: Ordinary Level), GCSE

나 이와 유사한 수준의 시험에서는 5과목, GCE-A(18세에 치르는 시험:상급수준 Advanced level)에서는 2과목에서 합격하는 수준을 포함한다.

그러나 최근에는 공식적인 학문적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자격취득과정에 입학하는 가능성을 더 많이 개방시키고 있다. 공식적인 학문적 수준의 자격은 없더라도 관련 경력이 있는 성인 지원자들의 입학을 허용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과 지역사회활동에서의 인접과정(access course)의 수료나 국가적인 인정을 받는 RAMP(Regional Accreditation and Moderation Panel)로 알려진 증명을 받는 것은 이제 전통적인 조건과 함께 청소년과 지역사회활동 과정에 입학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간주되고 있다.

견습계획(apprenticeship schemes)으로 알려진 과정들은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공식적인 자격보다는 청소년과 지역사회에서의 경력에 근거하여 입학할 수 있다. 현직에서의 활동과 연구를 겸하는 이러한 과정들은 특히 흑인들과 여자들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 몇몇의 영역에서는 일정한 경력을 갖춘 청소년지도자들은 경력인정제(validating learning from experience)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을 통하여 유급 또는 자원의 경력있는 지도자들이 전통적인 연수프로그램을 통하여 얻어지는 지식과 기능에 대응하는 실천으로부터의 학습과 그들의 경험을 토대로 자격을 취득토록 하고 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존에 취득한 자격을 청소년지도자 자격으로 인정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1988년 이전에 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의 경우에 해당된다. 1988년 이전에 교육성장관 인정 교사자격을 취득한 교사들의 경우 청소년과 지역사회 지도자로 자동적으로 인정된다. 그 이후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는 교사연수과정의 한 부분으로 청소년과 지역사회에 관한 적절한 내용이 포함되어야만 자격을 인정 받는다. 그리고 1977년 이전에 사회과학의 연구과정이나 학위과정을 시작했고 1981년경에 끝마친 경우나 다른 나라에서 관련자격증을 취득한 사람들도 개별적으로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한 청소년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과정은 여러 대학과 지역사회기관등에서 제공되고 있는데 다음에는 사례를 통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Leicester에 있는 De Monfort University에서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첫째 직업적인 자격을 얻는 과정으로는 전일제의 2년간 연구과정, 시간제로 참여하는 3년간의 연구과정이 있다. 그리고 2년간 시간제로 참여하는 석사학위(MA)과정 또는 대학원 연구과정이 있는데 이는 참조과정(referred course)으로 공식적인 인증은 받지 못한 과정이다. 그리고 학사학위(BA hons) 취득과정으로는 ‘응용 사회와 지역사회분야’와 ‘보건연구 분야’의 두 과정을 두고 있다. 이 과정은 이수후 수료자격(diploma)이 주어지는 2년간의 전일제 연구과정과 연계되어 학위 취득을 원하는 지원자가 1년간의 전일제 과정이나 2년간의 시간제 과정을 추가적으로 이수하는 것이다. 즉 연구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은 계속해서 학위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것이다.

이외에도 기간면에서 다른 예로는 Bradford and Ilkley College에서는 4년간의 전일제 학위과정이 있고, University of London의 Goldsmith College에서는 1년간의 전일제 석사학위(MA) 과정을 개설하고 있다. 그러나 각 대학에 따라서 연구과정이나 학위과정이 운영되는 과정은 조금씩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각 지방에서 활동하는 지방 소속의 시간제-비상근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하여 현장 고용과 연구를 결합시키는 견습계획(apprenticeship scheme)의 예를 들면 Dudley구에서 이 지역내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상근지도자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Dudley Apprenticeship Scheme’란 명칭으로 운영하는 2년간의 전일제 과정이 있다. 이외에도 Rotherham Youth Service와 공동으로 Leeds Metropolitan University에 개설되어 3년간 실시되는 고등교육에서의 수료자격(Diploma of Higher Education : Youth and Community Work) 과정이 있으며 이는 상근직원으로서의 고용을 근거로 하며 현직 근무의 일부로서 주당 1일간 교육을 실시한다.

다음으로 경력을 인정하는 경력인정제(validating learning from experience)의 경우를 예로 들면 Avon Community and Work Accreditation Unit에서 ‘Avon Accreditation Process’라는 명칭으로 운영하며 ‘지역사회와 청소년활동’에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형태가 있다. 이는 전통적인 형태의 연수과정에 참여할 수 없는 지도자들의 필요에 부응하기 위해서 고안되었으며 지원자들은 21세 이상으로 3년 이상

의 상근 또는 비상근 지도자 경력이 있어야 하고 자격부여는 지도자로서의 경험, 지식과 이해의 정도, 기능 등에 대한 평가로 이루어진다.

이와 같은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외에도 청소년과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자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현직연수과정(In-Service Training)을 제공한다. 자격취득과정은 일반적으로 지도자가 자격을 얻고 새로운 위치에서 활동을 시작할 때 훌륭한 실천을 준비케 하지만 현직연수란 현 위치에서 개인적인 전문적인 실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그들의 경험을 충분히 이용하고 새로운 기능을 시험해 볼 수 있다. 그리고 지도자들이 필요로 하는 최소한의 학습을 제공하는 공식적인 프로그램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개인이나 집단이 독자적으로 기능을 개발하고 계속 연구할 수 있는 태도를 형성시켜야만 한다. 그리고 현직연수과정도 NYA의 인증을 거침으로써 일정한 높은 수준의 과정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대상은 60시간 이상의 학습시간을 갖는 연수과정으로 한다.

(2) 비상근지도자(part-time worker)

앞서 언급하였듯이 청소년지도자의 대부분은 유급의 또는 자원으로 일하는 비상근지도자들이다. 어떤 경우는 상근지도자가 되기도 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연수를 받기는 하지만 대부분은 다른 활동과 청소년활동을 겸하고 있다.

많은 비상근지도자들은 자신의 서비스 시설을 이용하거나 종교단체 가입이나 지역사회 집단의 회원으로서 비상근청소년지도자가 된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지 못하지만 비상근지도자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은 활동의 기회를 갖기 위해서는 지방정부(대개는 교육부서)와 접촉해야만 한다. 지방의 자원 청소년 집단의 보호자의 역할을 하는 ‘자원청소년활동을 위한 위원회’는 이러한 기회에 있어서 좋은 출발점을 제공한다.

연수는 비상근지도자들이 청소년들과 효과적으로 활동하는데 필요한 기능과 자신감을 얻도록 돕는다. 비상근지도자들은 대개 기본적인 입문과정을 거치고 청소년활동의 특정한 측면에서 현직연수과정을 통하여 보충받을 수 있다. 점차로 연수과정들은 참가자들의 기능과 경험 위에서 과정을 개설하고 그리고 개인적인 필요에 부응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최근까지 비상근지도자를 위한 연수는 단체나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과정으로 되어있었지만 이들을 위한 기본적인 연수과정의 인증이라는 새로운 체제는 이러한 연수과정들이 국가적인 인정을 받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3) 취업 기회

상근지도자 활동인력이 상대적으로 작은규모인 점에서 본다면 취업 기회는 상당히 제한된다. 어떤 경우는 몇년간 지도자로 일한 후에 청소년서비스 담당 공무원(youth officer)이나 자문가(adviser)가 되고 그들중의 일부는 책임자가 된다. 마찬가지로 전국적인 자원 청소년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에게도 그들 지방에서나 국가적인 수준에서 일할 기회는 제한되어 있다. 최근에는 서비스의 자원영역과 법적영역 사이에서 큰 이동이 있어왔다.

우선 청소년과 지역사회활동에서의 전문적인 자격을 가진 개인들은 지방정부나 자원단체에서 청소년서비스와 관련된 직업기회를 가질 수 있다. 지방정부는 청소년지도자와 지역사회지도자를 채용한다. 청소년서비스는 몇 지방에서는 여가 또는 레크리에이션부서에서 담당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교육담당부서의 부분이다. 이는 지역사회지도자들이 사회사업, 여가, 주택과 같은 다양한 부서에서 고용될 수 있다는 것과 다른 점이다.

그리고 다양한 수준의 지도요원(staff)을 고용한다. 청소년서비스의 요원에는 서비스의 전반적인 면을 책임지는 사무장(principal officer)과 함께 대부분의 정부에서는 관할구역내의 각 지역이나 특별한 분야의 서비스를 담당하는 공무원(officer)과 상근지도자(full-time worker), 비상근지도자(part-time worker) 그리고 수많은 자원지도자(volunteers)를 포함한다.

자격을 갖춘 실무자들을 위해서는 다양한 활동 기회가 있다. 청소년센터를 근거로 하는 지도자(center-based youth worker)들은 청소년들과의 직접적인 활동에 추가해서 비상근지도자에 대한 그리고 건물의 유지와 관리 등에 대한 행정적인 책임을 진다. 최근에는 청소년센터가 아닌 거리의 청소년들과의 접촉을 위해서 거리 현

장의 청소년지도자(detached youth worker)들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전문적인 분야에 대한 수 많은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장애청소년, 흑인청소년, 여자청소년과 같은 특정집단에 초점을 맞춘 전문가나 예술, 스포츠, 건강교육과 같은 특별한 활동을 담당할 전문가를 배치한다.

다른 분야에서처럼 지도자들에게도 직접 청소년들을 지도하는데서 부터 관리와 지원을 담당하는 위치로 승진할 기회가 부여된다. 선임지도자나 청소년과 지역사회 담당 공무원들은 특정한 활동의 운영(예를 들면 앞서 언급한 전문적인 활동, 연수와 요원개발, 자원영역의 연결) 또는 특정한 지리적인 영역에서의 활동의 분배에 대한 책임을 진다. 그들의 역할은 정책개발, 전략적인 계획,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자원할당과 같은 분야를 담당한다. 그들은 또한 요원에 대한 관리와 지원 그리고 모니터링을 도우며 서비스활동에 대한 평가도 담당한다.

그리고 ‘청소년과 지역사회지도자’들은 지방정부와 중앙정부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는 전국적인 자원단체와 지방의 지역사회집단에서 고용할 수도 있다. 전국적인 자원단체들은 지방적, 지역적 그리고 전국적인 수준에서 요원을 채용할 수 있는데 실제로 자원영역에서 활동하는 지도자들의 대부분은 무급으로 일하는 자원자이다.

자격을 소유한 청소년과 지역사회지도자들은 청소년과 지역사회 이외의 수많은 기관에 고용될 수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놀이, 건강교육, 여가활동과 같이 그들의 특별한 기능이 요구된다. 조사에 따르면 유자격 지도자의 40%가량이 청소년과 지역사회서비스의 외부 영역에서 고용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한다.

4) 활동프로그램

청소년들의 활동은 청소년클럽과 청소년센터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단체에서의 활동이 중심이 된다. 청소년들은 어떤 의무나 책임에서가 아니라 스스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와 청소년단체에서는 여가활동, 봉사활동, 직업에 대한 준비, 건강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의 개인적 사회적 발달을 도모하는 비공식적 사회교육인 청소년

서비스의 주요 프로그램이 청소년클럽과 센터를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이외에도 다른 여러가지 형태의 프로그램과 지원체제를 통하여 청소년들의 발달을 돕고 있다. 여기에서는 이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의 사례들을 중심으로 하여 영국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되는 활동을 살펴보고자 한다(Foreign and Commonwealth Office, 1993).

(1) 청소년들이 당면한 사회적 문제들에 대한 프로그램

청소년서비스에서는 특별히 청소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여기에는 앞의 청소년인구의 현황에서 살펴본 실업, 무주택, 마약, 인종적 긴장, 장애의 문제 등이 주요한 사항이 된다.

① 실업과 훈련(unemployment and training)

영국에서는 실업상황에 있어서 다른 연령 집단보다도 청소년집단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고 청소년들의 취업 지원은 지난 10년 동안 중요한 문제가 되어 왔다. 중앙정부의 기금이 기술적, 행정적 그리고 다른 기술을 개발하고 청소년들이 장기간의 고용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특별한 훈련계획에 지원된다. 이러한 청소년 직업훈련 프로그램에 대한 책임은 노동성에서 담당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정부에서 설립한 YT(Youth Training) 프로그램에 참여하는데 그 대상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거나 직장을 가지지 못한 16-17세에 이르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실시 한다. YT 프로그램을 통해 청소년들은 국가직업자격(NVQs) 취득 기회와 다른 적절한 훈련을 받는다. 그 범위는 머리손질부터 엔지니어링에 이르는 다양한 직업적인 기능을 다룬다. 그리고 훈련을 받는 청소년들의 대다수는 그들이 YT 과정을 이수한다면 일자리를 찾을 수가 있다.

YT의 성공을 기반으로 하여 점점 더 자주 소개되는 청소년신용장(youth credits)는 청소년들에게 자신의 직업훈련을 선택할 능력을 준다. NVQs를 이끄는 높은 수준의 훈련을 위해서 고용주나 훈련제공자에게 제시될 수 있다. 정부의 목표는 1996년까지 청소년신용장을 16세와 17세의 학교를 졸업하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것이다. 취업의 기회를 얻지 못할 경우 취업을 원하는 청소년들은 우선 지역의 노동센터나 직업안내소를 방문해야 한다. 학교의 직업상담자들이나 청소년단체

에 있는 청소년지도자들도 자문과 상담을 한다. 그리고 YMCA나 Community Service Volunteer와 같은 청소년서비스 단체들은 청소년들에게 고용이나 일시적인 지역사회사업에서 일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취업에 있어서 또 다른 선택은 자영업을 하는 것이다. 이는 실패의 위험도 가지고 있는 일이지만 정부와 여러 청소년단체에서는 이를 지원하고 있다. 우선 소규모 자영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정부새사업계획(Government New Business Scheme)은 많은 청소년들이 자영업을 시작하도록 돕고 있다. 그리고 많은 단체들은 창업 상담 뿐만이 아니라 보조금도 제공한다. 예를 들어서 Prince's Business Trust(Prince's Trust의 자매 단체)는 18세에서 29세까지의 실업 청소년들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돕고 개인과 단체에 보조금과 대출금을 제공한다. Shellsponsored Livewire 계획은 16세에서 25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사업을 시작하도록 자문과 재정적인 측면에서 돕는다. 상공성에 의해서 조정되고 전문적인 자문가와 사업가에 의해서 운영되는 '훈련과 기업 협의회(TECs : Training and Enterprise Councils)'에서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자문을 한다. 또한 Business Enterprise Programme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기술의 훈련을 제공한다. Prince's Trust나 Young Enterprise와 같은 수 많은 단체들도 이처럼 소규모의 자영업을 시작하는 청소년들에게 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상담을 하고 있다.

② 무주택(Homelessness)

주택은 청소년들이 가정으로부터 독립할 때 그리고 특히 실업상태의 청소년의 경우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된다. 고용주들이 주소가 없는 청소년들에게는 직장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실업상태의 무주택자는 가장 크게 고생을 하게 된다. 가장 나쁜 경우에는 무주택은 청소년들이 아무렇게나 생활하고 범죄를 저지르며 매춘이나 마약에 빠지는 악순환을 가지고 온다는 점이다. 영국의 무주택의 많은 비율은 런던과 다른 큰 도시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청소년서비스단체들은 무주택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하고 가정으로부터 독립할 때 무주택의 위험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자문을 하려고 한다. 청소년클럽과 거리현장의 지도자들은 종종 비공식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지원형태가 되곤

한다. YMCA, YWCA, Girls' Christian Society는 오랫동안 숙소를 제공해 오고 있다. 런던이나 맨체스터와 같이 문제가 가장 심각한 대도시에서는 수 많은 단체들이 일시적으로 머물거나 하룻밤을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제공하고 있다. Alone in London, Picadilly Advice Centre Project in Manchester, Stopover in Edinburgh와 같은 자문서비스기관에서도 도움을 제공한다.

무주택청소년그룹은 청소년들의 주택요구에 대한 정보의 교환을 위한 포럼을 제공하고, National Union of Students, British Youth Council, Shelter, National Association for the Care and Settlement of Offenders, CHAR(Housing Campaign for Single People), National Youth Agency, British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등과 같은 단체들과 함께 활동한다.

③ 마약(Drug)

정부의 사회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들중의 하나가 점차 증가되는 마약과 흡입제(solvent)의 남용을 막는 것이다. 대책에는 처치와 복귀(treatment and rehabilitation) 프로그램 뿐만이 아니라 잠재적인 마약 사용 집단을 대상으로 하거나 마약 실험의 시도를 약화시키는 건강교육 프로그램을 포함한다.

마약남용을 취급하는데 있어서 전문화되고 지도자들이 직접적으로 마약 사용의 문제를 다루는 수 많은 단체들이 있다. 대부분의 상담서비스들은 청소년들에게 필요 시 전문기관을 소개하면서 마약문제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자문을 하고 도움을 주고 있다. 현재 헤로인과 같은 마약을 이미 복용하거나 새로운 유혹의 위험에 빠진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해오고 있다.

④ 여자청소년 지원 활동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들 보다 불리한 위치에 처해 있으며 사회에서 여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려는 방향은 청소년단체에서 여자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에 노력하도록 하고 있다. 남자청소년들은 여전히 활동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약 3:2로 여자들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 회원들이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Guides Association과 같은 전통적인 단체들 뿐만이 아니라 NOWGYW(National Organization for Work with Girls and Young Women)과 같은 새로운 단체들

은 여자청소년들을 위한 기회의 개발과 특별히 자신감과 자존감을 세우는데 초점을 맞춘다. 청소년클럽에서의 상담과 다른 활동들은 남녀 모두 사회에서 여성의 위치를 고려하고 뿌리깊은 태도에 도전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Youth Clubs UK 등과 같은 단체에서도 여자청소년을 위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프로그램을 개발해오고 있다.

⑤ 다인종적인 공동사회의 형성

청소년서비스를 통하여 특별히 강조되는 것 중의 하나는 인종차별주의의 영향력을 감소시키고 다른 인종집단과 문화에 대한 청소년들의 이해와 포용력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지역주민들에 의해서 시작된 ‘자조사업(self-help project)’은 소수민족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대개 다양한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고 지방정부(도시환경정부의 지원을 포함),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 자선기금과 개별적인 기금모금활동을 통하여 지원이 된다. St. John Ambulance, British Red Cross Society와 같은 조직적인 단체 뿐만이 아니라 Youth Clubs UK같은 많은 중요한 전국적인 단체들 또는 Pony Club과 같이 특별한 형태의 레크리에이션 훈련을 제공하는 단체들은 소수민족집단의 청소년들이 서로 결합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어떤 청소년과 지역사회 단체는 특별히 청소년들이 정체감을 얻도록 도우면서 소수민족 집단의 필요에 봉사한다. 그리고 수 많은 소수민족 청소년단체들은 Commission for Racial Equality에 의해서 보조를 받는다.

⑥ 장애청소년의 지원

청소년서비스내의 모든 중요한 전국적인 청소년단체들은 프로그램 가운데에서 장애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관심을 둔다. 어떤 장애인들은 특별한 형태의 조직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자원조직과 지방정부는 이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기금과 인적지원의 양측면에서 공헌하고 있다. 적어도 정부는 장애청소년들 가운데에서 실업의 문제를 제기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이는 고용주들 사이에서 장애청소년들에 의해 제공되는 기능과 재능을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은 16세 이하의 청소년들을 위한 주니어 클럽 회원권을 가지고 있는 Gateway Clubs를 통하여 만들어진다. 그들은 여

가활동을 제공하고 클럽 안팎에서 개인적인 발달을 성취하고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청소년들이 매일 돕는 이들과 접촉하도록 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Gateway Clubs처럼 PHAB(Physically Handicapped and Bodied Club) 모든 종류의 활동을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

(2) 야외중심의 활동

청소년서비스에서는 야외에서의 활동도 매우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야영 활동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주로 실내의 일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보다는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도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자신감을 개발하며, 팀워크와 훌륭한 지도력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돕는 활동들을 말한다. 모든 중요한 청소년단체들은 특별한 숙박 코스를 개발한다든지 또는 회원들이 이미 실시중인 코스에 참여하거나 그 목적을 위한 기금 모금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야외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다.

지방정부와 수 많은 다원적 목적을 가진 청소년단체들은 카누, 항해, 스키와 같은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한다. 다른 단체들도 독도법, 오리엔티어링, 생존을 위한 요리 등을 포함하면서 캠핑이나 등반 등을 제공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자신감을 보여주고 독창성, 창의성과 자기 훈련을 고무시킨다.

야외활동 센터의 제공자들로써 Sports Council, Outward Bound Trust, OceanYouth Club, Sailing Training Association, National Training Corps 등이 있다.

① 외향단(Outward Bound Trust)

외향단은 영국에서 가장 오래전에 설립된 훈련 단체로서 잉글랜드의 Lake District와 Wales, Scotland에 5개의 센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세계의 38개 센터에서도 활동하는데 유럽의 연결망은 벨기에,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헝가리의 센터를 포함하고 있다. 외향단은 두가지의 단순한 원리에 기초하여 활동에 임하고 있다. 첫째는 모든 사람은 자신이 실현할 수 있는 것 보다도 더 많은 것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는 팀워크나 상호간의 도움을 통해서 성취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진정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매우 적다는 것이다.

외향단 센터에서 청소년들은 8일, 12일 또는 20일간 계속되고, 영국에서 가장 거칠고 극적인 지역들을 통과하는 모험적인 육로 또는 해로 여행을 포함하는 ‘탐험코스(expedition course)’에 참여할 수 있다. 또한 생존훈련코스과 같은 특별한 코스와 17세나 그 이상의 청소년들이 무주택자, 노약자와 같은 집단과 함께 활동하는데 참여하는 ‘도시모험City Challenge’으로 불리는 사업 등이 있다.

② 에딘버러공작 포상계획(The Duke of Edinburgh's Award Scheme)

청소년클럽이나 단체들에서 즐기는 많은 활동들은 청소년활동장려단체의 하나로 시작된 ‘에딘버러공작 포상 계획’ 내에서 이루어지며 1956년에 시작된 이후로 200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해오고 있다. 이 계획은 청소년들이 세심하게 고안된 활동 프로그램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른 금, 은, 동상을 획득하도록 도전케 한다. 그리고 이 계획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들은 장소에 있어서 단순히 자연환경이라는 야외 환경을 배경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상황을 배경으로 하게 된다. 이 프로그램에는 장애청소년들도 참여할 수 있으며, 영국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55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각각의 포상은 청소년 발달의 여러 측면들을 반영하도록 고안된 4가지 영역을 포함한다. 첫째, 봉사영역은 병원 자원봉사 활동 등과 같은 실질적인 지역사회봉사나 응급구조 또는 동물보호활동 등을 포함한다. 둘째, 탐험 영역은 소그룹에 의해서 계획되고 수행되는 시골지역에서의 여행과 등반이나 동굴탐험과 같은 전문적인 활동을 포함하는 높은 수준의 활동을 포함한다. 셋째, 기능영역은 예술, 목공, 컴퓨터 기술과 같은 다양한 범위의 200여 이상의 다양한 기능들 중의 하나를 선택하고 개발하며 유지하는데 참여한다. 마지막으로 신체적인 레크리에이션 영역은 육상, 궁도, 구룡, 승마, 자전거 그리고 대부분의 스포츠와 게임과 같은 활동에서의 성취를 요구한다. 이 계획은 영국에서 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55개국에서 실시되고 있다.

③ The Prince's Trust

The Prince's Trust와 The Royal Jubilee Trust는 특별히 가장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을 개발하고 지역사회에 봉사하도록 북돋우는 활동을

전개하는 개별적으로 독립된 단체이다. 여기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모든 종류의 사업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개인과 단체들에게 재정적인 지원과 실제적인 도움을 제공한다. 특별한 관심의 영역들에는 무주택, 무직, 예술, 소수민족집단, 비행청소년과 장애인들을 포함한다.

Prince's Trust에서는 60일간 계속되는 코스를 위해서 취업 상태의 그리고 실직 상태의 청소년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계획인 Prince's Trust Vounteers를 포함하는 수 많은 혁신적인 사업들을 후원한다. 또한 18세에서 25세 사이의 무직청소년들을 위한 자체의 전문화된 숙박 훈련 코스를 운영한다. Trust의 우선적인 목적은 청소년들에게 활동, 스포츠, 예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신감을 그들 자신이 개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④ 국제교류활동

점점 더 많은 청소년들이 여행이나 해외에서의 활동을 통하여 세계에 대한 경험을 확대하고 있다. 유럽의 단일시장화와 함께 유럽공동체(EC)의 다른 나라에서 얼마의 기간동안 활동할 기회가 증대되고 있으며 그 예를 들면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 Central Bureau for Educational Visits & Exchanges에 의해서 조직되는 PETRA프로그램은 16세에서 27세 연령의 청소년들이 다른 EC내의 국가에서 훈련과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평균 3주 또는 3개월간 머물 수 있고 훈련, 생활뿐만이 아니라 여행경비의 75%가 기금에서 제공된다.

— ERASMUS(European Community Action Scheme for the Mobility of University Students)는 학위과정의 일부로서 대학생들이 유럽공동체내의 다른 국가에서 3개월에서 12개월간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국제로터리클럽은 14세에서 22세까지의 청소년들이 외국에서 2주 또는 3주간 민박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Gap Activity Projects는 학교를 졸업한 청소년들을 위한 해외활동기회를 제공하고 생활비를 지원한다.

— The Experiment in International Living은 4주간 이상을 약 50개국 이상의

외국 가정에서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학위를 얻을 기회도 제공한다.

— Raleigh International은 청소년들에게 영국과 다른 나라에서 환경적인 그리고 지역사회의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발달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매년 17세에서 25세에 이르는 약 1,000명의 청소년들을 위한 10주간의 여행을 조직하고 있다.

(1) 청소년교류센터(YEC: Youth Exchange Center)

청소년교류센터는 자문, 정보, 연수, 보조금의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국제교류를 증진시키는 영국협의회의 한 부서이다. YEC는 EC국가들간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Youth in Europe을 후원하는 EC에 대한 영국의 대표 기구이다. 정상적으로는 국제적인 교류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청소년집단이 우선적인 대상이 된다.

YEC는 EC, 나머지 서구유럽국가, 중부 및 동부 유럽, 미국과 일본 사이의 교류를 위해서 15세에서 25세까지의 청소년집단에 보조금을 제공한다. 모든 청소년집단은 YEC의 기본적인 기준에 적합하다면 지원할 수 있다.

(2) 지역사회자원봉사활동(CSV: Community Service Volunteers)

CSV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다른 나라와 지역을 방문하는 16세에서 25세 사이의 2,5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모든 사람은 자원봉사활동으로부터 주고 받을 것이 있다는 원칙 위에서 CSV는 자격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모든 지원자들에게 수 많은 자원봉사활동중의 한 가지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자원봉사자의 65%는 최소 4개월에서 최대 1년간 고국을 떠나서 활동을 하고 숙소, 식사, 주별로 주는 용돈과 여행 경비가 제공된다. 프로젝트에는 노인 일가 또는 장애인이 있는 가족을 지원하고 돌보고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돕는 일, 무주택 청소년을 돕는 일을 포함한다. 나머지 35%는 CSV 지역활동 프로그램과 연결하고 적어도 매주 10시간을 그들의 고국에서 운영되는 유사한 프로젝트에 보낸다. CSV는 프랑스, 독일, 그리스, 네덜란드, 아일랜드 그리고 스페인에서 그들의 지식과 언어 기능을 증진시키는 훈련자들과 함께 유럽과 연계를 맺고 있다.

4) 상담과 정보의 제공

모든 유형의 청소년단체들은 상담, 자문 그리고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많은 청소년들이 가족, 친구, 직업안내인, 학교선생님으로부터 이러한 정보를 얻고 있지만 이를 통해서만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할 수가 없다. 많은 자원봉사자들 뿐만 아니라 상근 또는 비상근지도자들은 정기적으로 직업, 교육, 연수기회 등에 대하여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한다. 그들은 또한 성, 가족생활, 가족관계의 문제와 그 밖의 다른 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개인적인 상담도 한다.

대부분의 지방 정부는 청소년들을 위한 특별한 청소년정보자문과 상담 프로젝트를 가지고 있다. 지난 15년 동안 120여 이상의 센터들이 이러한 종류의 도움을 주고자 그리고 편지나 전화에 의해서 개인적인 문제들에 대한 상담을 제공하고자 설립되었다.

특히 최근에 설립되기 시작한 변화가의 'Information Shop for Young People'은 청소년들이 쉽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NYA에서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세워진 10여군데의 Information Shop의 출범을 관장하였다. 모든 Information Shop은 청소년들이 그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전체적인 범위의 문제들에 대한 정보와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그리고 센터의 형태나 운영방식이 동일한 표준적인 지침기준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여기에서 취급되는 주제들은 AIDS, 건강문제, 스포츠, 교육, 성, 노동, 면접기술, 장애인 교육프로그램, 국제교류활동, 특별훈련과정 등이 포함된다. 또한 여기에서도 청소년들에게 상담을 제공한다. 최초의 Information Shop은 1991년 5월 22일에 Bradford에서 설립되었으며 모든 지역사회 Information Shop 설립을 돕도록 계획되어 있다.

5) 거리현장에서의 청소년활동(detached youth work)

많은 청소년지도자들은 특별한 '거리현장의 활동(전형적인 청소년시설을 기반으로 하지 않으면서 비조직적인 형태로 이루어지는 활동)'을 수행한다. 그들은 청소년

클럽활동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청소년들과 접촉하기 위해서 거리로 나서는데 유동적인 인구가 있는 도심에서 가장 적합한 활동으로 보인다. 그들의 활동은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청소년들이 모이는 선술집, 카페, 광장과 같은 곳에서 활동한다. 그 결과로 그들은 무주택이나 마약과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과 더 쉽고 도움을 줄 수 있는 환경과 분위기에서 만날 수 있다. 이러한 활동에 의해서 거리현장의 청소년지도자들은 그들이 만나는 청소년들의 요구에 융통성을 보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이 활동의 바탕에 깔린 정신은 청소년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들은 청소년들과의 관계를 상호간의 수용, 즉 전통적인 성인의 힘과 권위가 아닌 타협 관계로서 간주한다.

6) 청소년들의 여가활동

대부분의 청소년들은 가정에서 TV 시청, 집안일이나 음악, 독서등과 같은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여가시간을 보낸다. 다른 나라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영국의 청소년들도 그들의 많은 시간을 뚜렷한 여가활동을 조직하고 참여하는데 사용하지는 않는다. 몇몇은 자신의 여가시간을 보낼 취미를 가지고 있지만 많은 청소년들은 쉽게 참여할 수 있고 특별한 의무나 계획이 주어지지 않으며 비용이 들지 않는 일반적인 활동에 참여하는데 더 관심이 있다.

대부분의 남자 청소년들과 약 반수의 여자 청소년들은 스포츠에 관심을 갖거나 규칙적으로 스포츠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청소년들은 실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범위의 스포츠활동이나 게임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축구, 럭비, 크리켓, 수영, 스쿼시, 테니스, 달리기, 육상, 승마, 볼링, 궁도, 다트, 체스 등이 있다. 이러한 많은 활동들은 학교나 클럽을 통해서 조직되고 학교나 지역정부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다른 학교, 클럽과의 경기를 위해서 팀이 형성된다. 대규모의 상업적인 스포츠와 여가 센터들은 스포츠를 위한 좋은 시설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들에게는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제공한다.

라. 맺 음 말

이상에서 살펴본 영국의 청소년정책이 갖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중앙의 관리와 통제보다는 지방별로 각 지방정부당국의(특히 지방교육국) 책임과 지원하에 자원단체와의 동반적인 협력관계를 기반으로 하여 지방분권적으로 이루어지므로 지방별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둘째, 지역사회와 자원청소년단체 그리고 자원지도자의 역할이 중요시되면서 동시에 높은 수준의 교육과정을 통하여 전문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려 한다.

셋째, 구체적인 활동에 있어서는 단순한 여가활동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사회교육의 일환으로서 서비스가 제공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상황(실업, 무주택, 보건 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의 바탕위에서 청소년들의 생활과 진로에 관련된 전반적인 측면을 지원하여 훌륭한 시민(good citizen)으로 생활하는데 필요한 내용이 청소년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된다.

이러한 영국의 청소년정책과 활동에 대한 고찰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사회적인 상황과 변화에 따라서 가정, 교육, 노동, 건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전개되는 청소년들의 삶을 배경으로 청소년정책이 수립되고 활동이 지원되어야 한다. 영국에서는 사회적인 문제들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다양한 범위의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물론 영국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되어있는 문제들이 바로 우리의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마약, 건강, 취업 등과 같은 문제들에 관심을 갖고 소외된 청소년들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을 주려고 노력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참고할 만하다.

그리고 이러한 제언은 청소년활동의 범위가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학교단체 수련활동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점을 말하고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는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를 위한 시설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진 상황은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활동,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야외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러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이러한 일반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삶 전체, 즉 건강, 진로, 취업 등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활동에 대한 인식의 확대를 통하여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자원활동에 대한 강조이다. 현재 우리의 경우도 자원봉사활동이 매우 강조되고 학교에서도 교과목화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강제된 자원봉사는 자원적인 것이 될 수 없다. 청소년들의 수준에 있어서는 모든 활동의 참여가 자발적이 되도록 기회를 보장하고 단체의 수준에서는 자원자들로 이루어지는 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실질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청소년단체들의 경우 상근인력만으로는 운영이 거의 불가능하며 자원자의 역할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이므로 이를 위한 적절한 지원은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다.

셋째, 지역사회활동의 개발이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역사회라는 개념이 많이 약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농촌 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적 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청소년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결시킨다면 청소년과 지역사회 양자 모두의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 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 역으로 지역의 청소년기관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청소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

넷째, 청소년지도자 양성에 있어서 지도자 양성과정의 전문화와 함께 과정 유형의 다양화를 고려해야 한다. 우선 전문화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업결과 뿐만이 아니라 현장에서의 경력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영국에서는 주로 대학교육을 통해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을 가진 전문지도자를 양성하며 지도자 연수과정에 대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질적인 수준이 유지되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함께 비상근 또는 자원지도자 경력을 인정하여 경력에 의한 자격취득을 가능하게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국가기관에 의해 인증을 받는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이처럼 대학교육과 현장경력의 인정 그리고 연수과정의 국가기관에 의한 인증제도를 통하여 지도자의 질적인 수준을 높이면서 동시에 자격을 취득하는 과정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 이러한 두가지 측면에서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나 전문화와 다양화를 배경으로 하는 영국의 지도자 양성체제는 앞으로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체제에 있어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참 고 문 헌

유네스코청년원, 「청소년활동연구 I」, 1980.

조용하, 「청소년교육의 동향」, 교육과학사, 1988.

차경수, 「교육학개론」, 학연사, 1991.

한국청소년연구원, 「외국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1990.

Baugh, W. E., 「Introduction to Social and Community Services(6th ed.)」,
London:MacMillan Press, 1992.

BYC : British Youth Council, 「The Time of Your Life? : the Truth about
Being Young in 90's Britain」, 1992.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Young People in Britain」, 1993.

Islington Education Department, 「Islington Youth Service Information Park」,
1993.

NYA : National Youth Agency (a), 「What is the Youth Service?」.

_____ (b), 「the NYA Guide to Becoming a Youth
Worker」.

_____ (c), 「the NYA Guide to Residential Cen-
ters」, Leicester:Youth Work Press,
1993.

_____ (d), 「the NYA Guide to Initial Training
Course in Youth and Community Work
(2nd ed.)」, Leicester : Youth Work
Press, 1994.

Smith, Douglas I, 「Taking Shape : Development in Youth Service Policy
and Provision」, National Youth Bureau, 1989.

2. 프랑스의 청소년활동 정책

가. 일반 현황

프랑스에서는 보통 13세에서 20세까지의 시기를 청소년기로 인식한다. 이 경우에 프랑스의 청소년의 수는 전체인구 5천 6백만 중 약 12%정도에 해당하는 650만 이상이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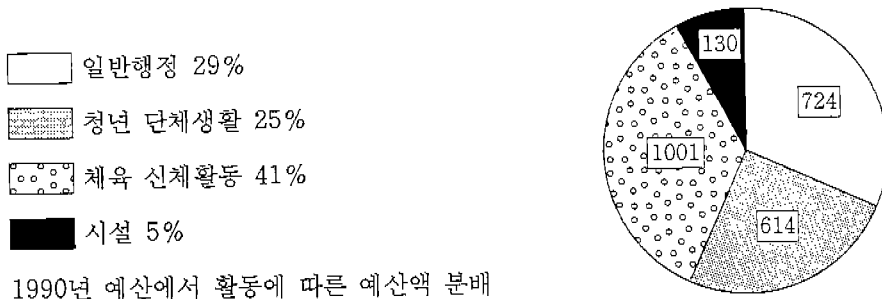
이들에 대한 프랑스 정부의 정책은 「청소년체육부」의 정무차관실에서 주로 담당한다. 체육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청소년 관련부분은 정무차관실의 「청소년단체생활국」에서 관장하는데, 이는 우리의 경우 문화체육부의 청소년정책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프랑스 정부의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구분될 수 있는데 첫째, 청소년들을 사회와 직업에 적응시키는 것, 둘째, 청소년들에게 여가와 문화에 접근시키는 것, 그리고 셋째,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방향은 국가의 여러 법령 예컨대, 가족법, 대중위생법, 사회복지법 등의 사회법 체계에 의해 보장되며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조정한다.

프랑스 정부의 청소년정책의 전체 흐름은 정부예산이 청소년부분에 어떻게 배분되는지 살펴봄으로써 대체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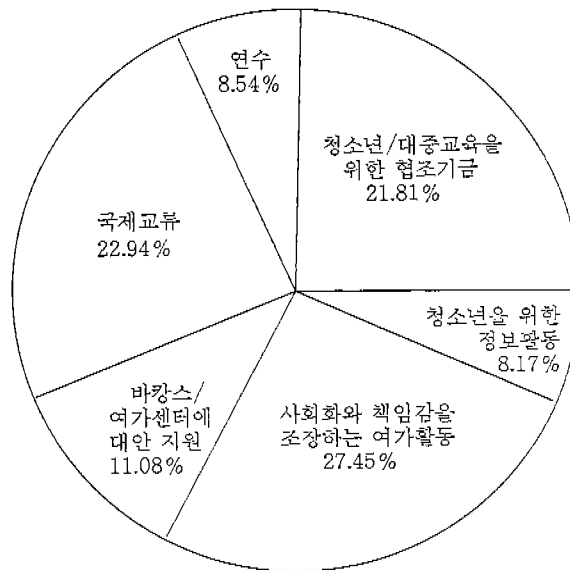
1990년 현재 프랑스의 청소년체육부의 예산은 2,469(백만 F)으로 정부예산의 0.20%이다. 그리고 청소년체육부의 예산중 약 1/4이 청소년부분에 투입되었다.

* 한승희,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위원



[그림 II-2] 청소년 체육부의 예산분배 (1990)¹⁾

한편 청소년부분의 예산(「청소년단체생활국」의 예산)은 다음의 [그림 II-3]과 같이 청소년정책 부분에 배분된다.



[그림 II-3] 청소년단체생활국의 예산 (1989)²⁾

- 1) 이 통계와 그림은 프랑스 청소년 체육부의 공식 홍보자료인(Livret d'Accueil, Secretariat D'Etat Charg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1990 : p. 31)에 제시된 내용을 인용한 것임.
- 2) 이 통계는 프랑스 청소년 체육부의 1989년 공식 홍보자료 Actions pour les Jeunesse에서 인용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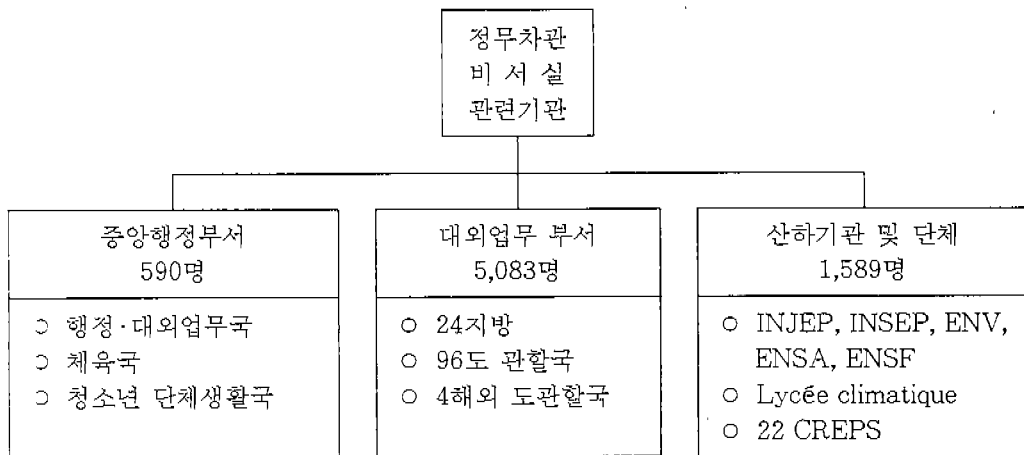
이 그림에서 보여주듯이 청소년분야의 예산은 사회진출 및 직업적 적응에 30% 이상(청소년/대중교육과 연수) 여가문화활동 부분에 27.45%, 그리고 정보 및 국제교류활동의 지원에 30% 이상(정보활동과 교류)에 분배되어 있다.

나. 정책 체계

1. 행정조직³⁾

프랑스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청소년체육부의 조직은 다음과 같다.

7,269명의 직원(1989년 현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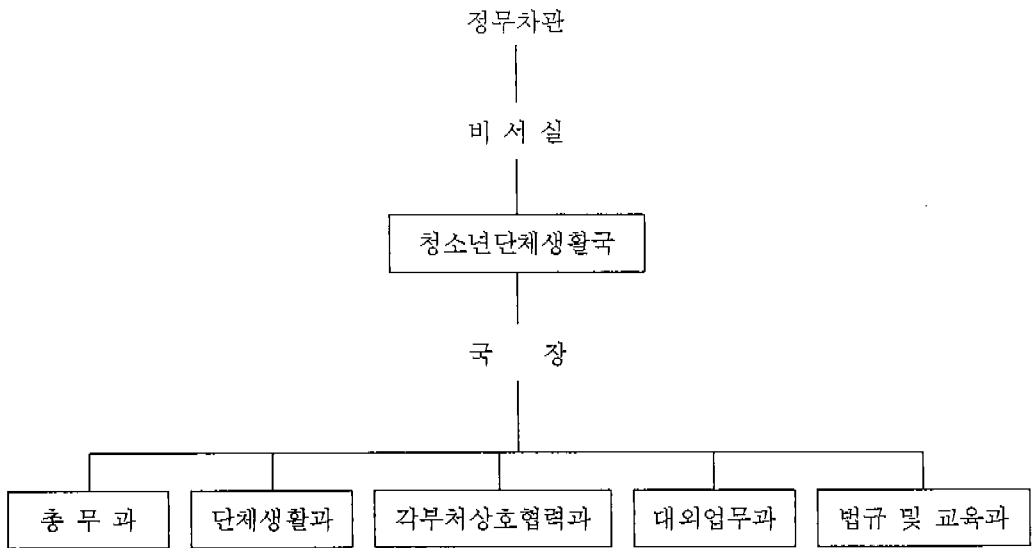
〔그림 Ⅱ-4〕 청소년체육부의 조직⁴⁾

청소년체육부의 정무차관실에서 스포츠 부분을 제외한 순수한 청소년관련 부분은 청소년단체생활국에서 관장한다.

다음은 청소년단체생활국의 조직이다

3) 이 부분은 앞의 자료 Livert d' Accueil, Secretariat D. Etat Charg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1990)에서 관련 내용을 번역 발췌한 것임.

4) Ibid., p. 12.



[그림 II-5] 청소년단체생활국의 조직⁵⁾

1) 청소년단체생활국의 정책방향

청소년단체생활국의 임무는 청소년과 일반대중 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청소년단체생활국의 정책기본방향은 다음의 3가지로 요약된다.

- 청소년들의 자율적 행동과 그들의 의식과 열망을 높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갖게 함.
- 청소년들의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을 제고시킴
- 청소년들에게 국제감각을 높이고 개방된 태도를 향상시킴

2) 청소년단체생활국 각과의 업무

단체생활과 :

- 예산 법률분야의 조정
- 청소년과 대중교육에 관한 승인된 단체들에 대한 국가 프로그램 활용
- 단체생활의 발전을 위한 기금관리

5) Ibid., p. 12.

- 단체생활 증진을 위한 정책개발

각부처 상호협력과 :

- 각 부처의 청소년관련 국가 프로그램의 조정
- 청소년의 여가, 문화, 과학, 기술을 발전시키는 일
- 청소년들에게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일
- 청소년들이 사회와 직업에 적응시키는 일
- 마약중독에 대처하도록 하기 위해 예방 및 정보제공

대외업무과 :

- 청소년에 대한 정보제공과 국제협력 정책을 조정

법규 및 교육과 :

- 청소년지도 업무에 관한 연수 및 자격검정 업무
- 바캉스센터와 여가센터들의 활동을 증진시키고 통제하는 일

2. 학교 교육제도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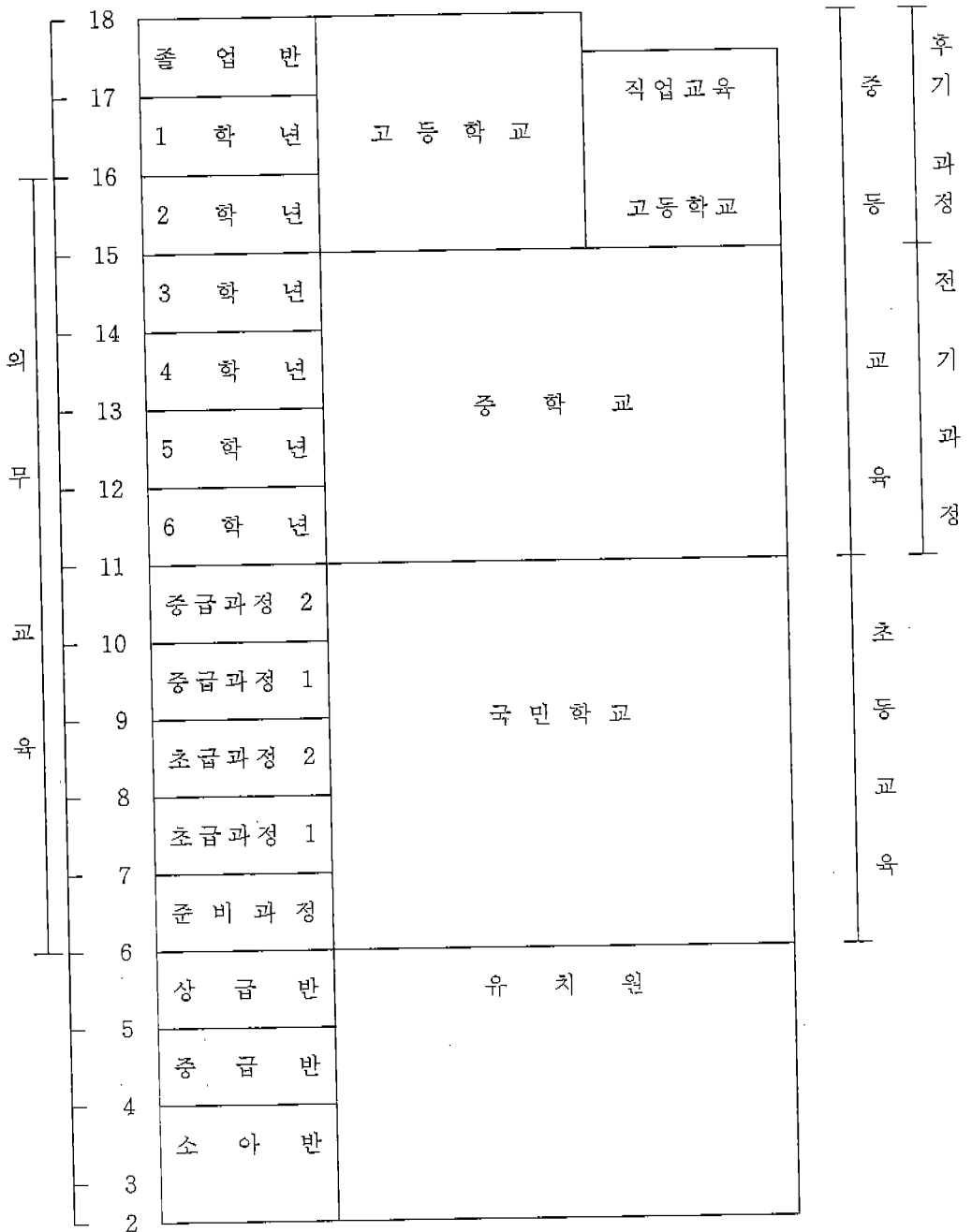
프랑스의 교육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중앙집중형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대학교육부터는 매우 복잡한 교육구조를 갖는다.

취학전 교육은 유치원에서 실시하는데 만 2세부터 시작하여 국민학교 입학연령인 6세전까지의 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유치원은 연령에 따라 3개학년 소아반, 중급반, 상급반으로 나뉜다.

초등교육은 국민학교에서 실시하며 5년과정으로 1학년을 준비과정, 2,3학년은 초급과정 1·2, 4·5학년은 중급과정 1·2라고 한다. 중등교육은 전기중등교육과 후기중등교육으로 나뉘어 전기중등교육은 중학교에서 후기중등교육은 고등학교에서 한다. 중학교는 4년과정으로 처음 2년간은 전학생 모두에게 공통교육을 실시하며 3년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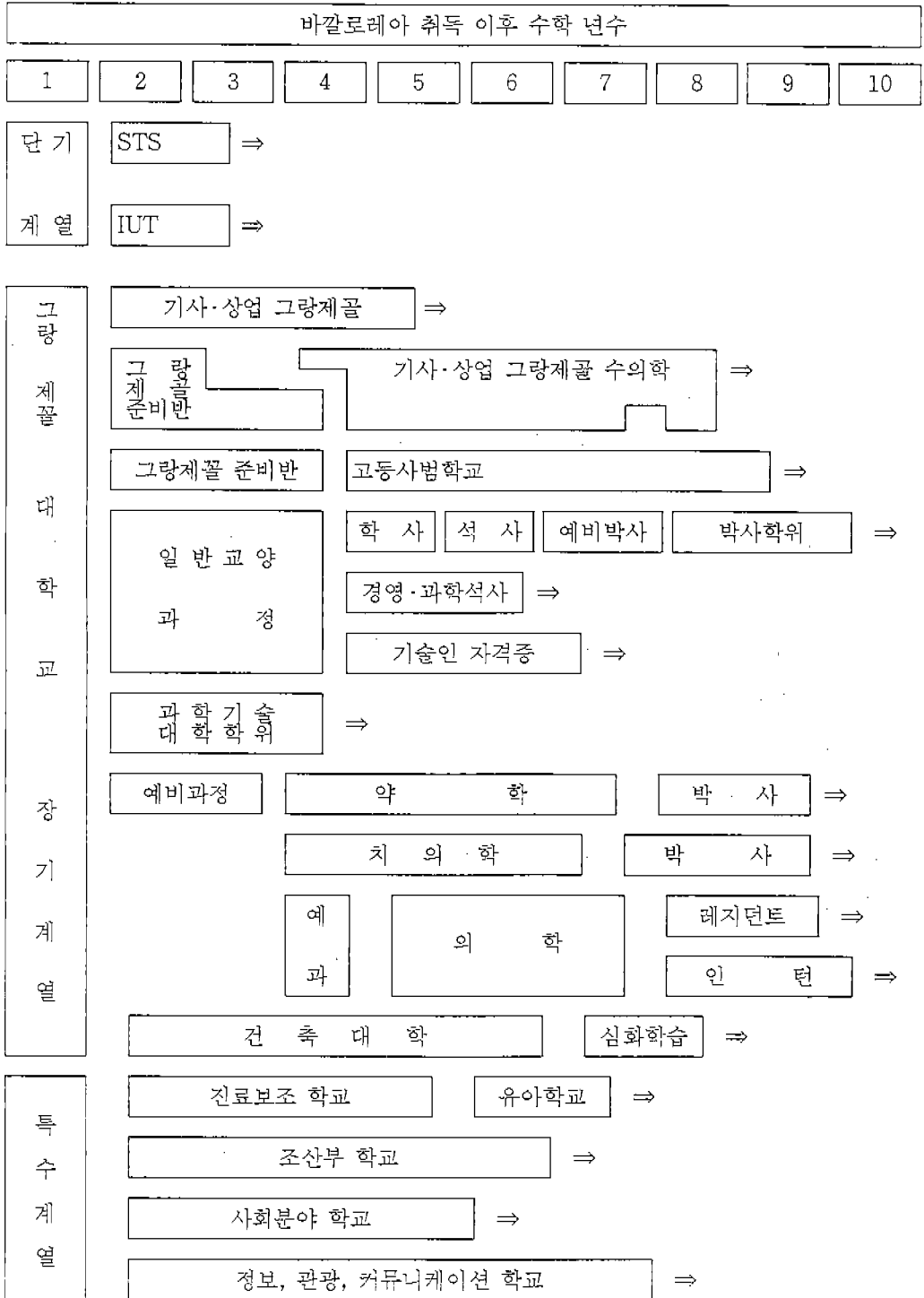
6) 이 부분은 교육개혁위원회에서 '94년에 발간한 연구자료 94-1 「선진외국의 교육개혁 동향」의 프랑스편(pp.100-101)에서 발췌 인용한 것임.

[그림 II-6] 프랑스의 학교제도(유치원-고등학교)



나이

[그림 II-7] 프랑스의 학교제도(고등교육)



부터는 각 학생의 진로에 따라 여러 갈래로 나뉜다. 많은 학생들이 일반고등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일반교육을 계획하며 직업고등학교에 진학하거나 사회생활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별도의 직업교육을 받는다.

고등학교 교육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3년과정으로 대학(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하기 위한 바칼로레아를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프랑스는 전통적으로 조기에 진로교육을 실시하는 나라로 유명하다. 국민학교를 졸업한 모든 학생들이 중학교에 진학하여 공통의 기본문화를 제공받고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게 되어있다. 따라서 학생들에게 진로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에서는 전국적 망을 가지고 있는 정보진로센터(CIO), 국립교육 및 직업정보국(ONISEP), 청소년정보센터(CIJ) 등을 두고 학생들이 언제든지 필요한 정보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프랑스의 교육문제는 다른나라와 마찬가지로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어 한 두 가지로 요약하기는 어려우나 청소년활동 정책과 관련하여 지적해보면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청소년들의 과외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여가 문화활동 중시와 정보자료의 제공 그리고 국제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 같다. 즉 중.고등학교는 스포츠 단체, 과학.예술.문화협회, 지역사회 등과 협력하여 학생들이 과외활동등을 강화하고 있으며 중.고등학교에 자료정보실(CDI) 및 청소년정보센터(CIJ)을 두어 학생들에게 학습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통합 유럽시대에 대비한 국제화교육을 강조하고 있다.

다. 청소년활동 정책의 내용

1. 지도자⁷⁾

프랑스의 청소년활동을 지도하는 지도자를 이해하려면, 애니메이션(Animation)이라고 부르는 활동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애니메이션이란 사회교육의 원리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인간생활에 혼을 불어 넣는다는 의미로서 현대 기계문명에 의해 손상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 정부는 사회교육의 측면에서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 여러가지 활동들을 지원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특히 실천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서 바로 Animateur로 불리우는 청소년지도자들이다. Animateur는 법규로 제정된 것은 아니나 그들을 필요로하는 시설과 단체에 의해 Animateur의 기술적 능력이나 전문능력에 따라 우선적으로 충원된다. Animateur 자격이 법으로 규정된 것은 아닐지라도 이 자격증은 관련직업에 대한 공식적인 승인의 의미를 가지고있다. 따라서 Animateur는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자격으로 청소년 체육부의 도관할 기관(장)에 의해 교부되며 청소년활동을 위한 시설이나 단체의 『관리자』들의 자격은 도 단위 관청 소속의 심사위원들의 제안에 의해 지방관청장들에 의해 교부된다. 매년 약 100,000명의 Animateur들과 10,000여명의 관리자들이 연수를 받으며 이중 약 35,000여명의 Animateur들과 2,000여명의 바캉스 센터의 관리자들이 자격증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Animateur들은 3단계의 자격이 있다.

7) 이 부분은 프랑스 바캉스 여가센터 협의회에서 발행한 규정집 REGLEMENTATION, UNION FRANCAISE DES CENTRES DE VACANCES ET DE LOISIRS(1994)에서 지도자에 관련된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임.

1) 자격(Animateur 자격)

B.A.S.E 자격(사회교육 애니메이션 자격)

이 자격은 1970년 청소년체육부 정부차관실에 의해 개설되었다. 이 자격은 성인 또는 청소년단체의 전문 Animateur들이나 자원봉사 Animateur들에게 각도위원회의 사회교육과에 의해 교부된다. 이 자격은 18세이상의 연령조건 및 2년이상의 활동경험이 요구 된다.

- 18세이상
- 2년이상의 활동경험

B.E.A.T.E.P. 자격(대중교육 기술 애니메이션 자격)

이 자격은 1986년 애니메이션의 전문적 훈련의 필요에 의해 만들어졌는데 자격수준은 B.A.S.E 보다 상위수준이다. 이 자격을 위한 조건은 첫째, 18세이상의 연령조건과, 둘째, 다음의 자격증 BEP(1968), BEP(1985), BASE, BEES(체육교사 국가자격)중 한 가지를 소유할 것과, 셋째, 애니메이션 분야나 선택된 전문분야에서 2년이상의 경험을 갖고 있을 것과, 넷째, 기술시험과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자격의 연수과정은 최대 3년동안에 총 650시간으로 다음과 같다.

- 120시간의 일반연수
- 160시간의 기술연수
- 160시간의 교육학 연수
- 210시간의 실기실습(선택분야에서 part time 또는 full time 형식)

이 연수후에 치르는 일반연수에 관한 필기시험, 기술시험 및 교육학 자격시험이 끝난 다음 자격증이 부여된다.

이 자격은 세 가지 활동, 즉 과학기술활동, 문화표현활동, 사회활동 영역으로 구분되며 이 자격증은 고용자들에게 Animateur들의 전문능력을 보장해주며 공식적인 인정을 주게 된다.

D.E.F.A.(관리책임자 자격)

이 자격은 1979년(법령 78500)부터 시행되었다. 이 자격은 가장 상위의 자격으로 Animateur들에게 단체를 활성화시키며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적 능력을 키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 자격을 위한 조건은 3년 이상의 전문적 활동경험, 스포츠, 대중교육 또는 사회교육 관련기관에서 애니메이션활동 3년 이상의 경력이 있거나, BASE 자격이나 선발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이 자격의 연수과정은 5개과정으로 총 800시간 이상으로

- 160시간이상의 애니메이션의 사회환경
- 160시간이상의 관리.행정.조직
- 160시간이상의 교육학.인간관계
- 160시간이상의 애니메이션기술
- 160시간이상의 선택연수(선택된 분야에서 part time 또는 full time 형식)

이 3종류의 자격이외에도 책임자 자격인 B.A.F.D⁸⁾(Brevet d'aptitude aux fonctions de directeur)와 지도자(Animateur) 자격인 B.A.F.A⁹⁾(Brevet d'Aptitude aux fonctions d'animateur) 등의 자격이 있다.

2. 시 설¹⁰⁾

프랑스의 대표적인 청소년 전용시설은 「바캉스센터」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약 100만명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바캉스철에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 있는 바캉스센터나 이동캠프장으로 떠나며 수 많은 어린이들이 부근의 여가센터에 수용되며 또 수 천의 청소년들이 해외로 떠나는 현상을 볼 때 더욱 명확해 진다. 한 마디로

8) 이 자격종은 바캉스센터의 장에 해당하는 것으로 B.A.F.A. 자격을 취득하고 25세이상의 연령조건과 2회이상의 애니메이션활동경험이 있어야한다.

9) 이 자격종은 애니메이션에관한 이론, 바캉스 (여가)센터에서의 실습, 그리고 일정기간의 숙련기간을 거쳐 부여된다.

10) 이 부분은 앞의 자료 REGLEMENTATION, UNION FRANCAISE DES CENTERS DE VACANCES ET DE LOISIRS(1994)에서 시설관련 내용을 발췌 번역한 것임.

프랑스의 모든 청소년들이 국내, 국외의 바다, 산, 전원 등으로 대이동을 하는 것이다. 그들은 이 바캉스에서 단체수련, 다른 어린이, 청소년, 성인과의 교체와 이해, 진취성과 책임감 연마, 새로운 활동훈련, 그리고 환경변화를 경험한다.

바캉스를 즐기는 청소년들을 수용하는 시설은 크게 숙박시설이 있는 여가센터(시설)와 숙박시설이 없는 시설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숙소가 있는 시설들은 유아(4-6세) 대상시설과 청소년대상(6-18세)로 구분되어 있다.

유아 및 청소년대상의 이런 시설들에서 관리 및 청소년들의 지도를 위한 조건들은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고 있다.

1) 청소년시설에 관한 관리규정 및 지도자의 일반 조건

- 시설 관리책임자는 21세이상
- 관리책임자는 18세이상의 지도자들의 보조를 받음
- 이 시설의 지도자들의 수는 청소년(참가자) 10명당 1명이상의 비율로 확보되어야 함

그러나 보이스카웃연맹의 승인을 받은 협회들이 설립한 시설에는 15명당 1명의 비율도 가능

책임자의 자격:

- 1987년 8월 28일 87-716호 시행령 10조에 의한 책임자 자격증 소지자
- 1993년 3월 26일 법령 19조에 따른 준책임자 자격증 소지자
- 지난 5년 사이에 적어도 전체기간이 28일이상 바캉스센터나 여가센터에서 청소년 지도 경험자
- 교육기관(학교 등)의 책임자직을 수행하는 정규교원은 이 직무를 담당할 수 있음(2조)

지도자의 자격:

시설의 청소년지도자의 3/4이상은,

- 다음의 지도원직 자격중 하나를 가져야 함

- 지도자에 관한 국가자격
- 대중교육과 청소년교육의 전문지도원 국가자격
- 2급 또는 3급의 체육교사 국가자격
- 특수교사 자격
- 특수 전문교사 자격
- 청소년 범정보호 교사자격
- 장애인 교사자격

2) 유아바캉스센터

이 시설은 4-6세의 어린이를 수용하고 숙식을 제공하는데 60명이상은 초과하지 않는다. 4-6세 어린이와 그보다 더 높은 연령의 어린이를 함께 수용하는 시설을 원한다면 40명을 초과하지 않는 하나의 독립적인 단위가 구성되어야 한다. 숙식은 위생과 안전이 충분히 보장된 조건아래서 어린이들을 위한 여러가지 준비여건이 갖추어진 지역안에서 행하여 진다. 어린이와 성인들을 위한 의무실과 의료담당진이 갖추어져야 한다. 이 시설에서의 지도자는 18세이상 이 되어야 하며 8명의 어린이당 1명의 지도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이 센터 안에서는 가구를 포함하여 모든 시설들이 어린이들에게 적합해야 하고 프로그램은 나이를 고려해야 한다.

일반조건 :

- 4세부터 6세의 유아들만을 받는 유아 바캉스센터의 수용인원은 60명이내
- 4세부터 6세 유아들을 나이가 더 많은 시설(예, 청소년바캉스센터)에서 받을 경우 40명이내로 제한
- 지도원은 유아 교사자격을 소지

책임자의 자격 :

- 유아 바캉스센터의 책임자는 25세이상
- 이 책임자는 18세이상된 지도원들의 보조를 받음
- 지도원들의 수는 참가자 8명당 1명이내의 비율로 확보

- 바캉스시설의 운영에 참여하는 모든 직원은 3개월전에 건강진단서를 제출

숙식 규정 :

- 4세부터 6세의 유아들은 고정건물에 유숙시켜야함

* 텐트에서 유숙하는 경우는 짧은 시간동안 위생과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조건에서 예외로 허용됨

- 바캉스센터의 시설이나 숙박지에는 전화시설을 갖추어야함
- 아이들 10명당 의료용 침대 1개를 준비
- 아이들의 수는 식당에서 20명이하, 한 테이블은 6명이하
- 4세부터 6세 아이들의 생활리듬에 적합한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함

3) 청소년바캉스센터

이 시설은 「청소년센터」와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최대의 자율성을 허용하면서 숙박을 제공한다. 프랑스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1,000여개의 청소년센터는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년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정부에 의해 인가된 단체들에 의해 관리되는 이 센터들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지식(know-how)을 가진 Animateur¹¹⁾ 둘을 고용하고 있다.

이 센터의 형태는 단체나 개인들이 원하는 날짜에 도착해 짧은 기간동안 체류한 후 원하는 날짜에 떠나는 「일시적 수용」의 형태와 개인이나 단체들이 정해진 날짜와 정해진 기간동안 참여하는 「체류센터내의 수용」 그리고 특수목적으로 특수인(예, 학생, 근로자, 소년, 소녀 등)들에게 1년단위의 기간으로 제공되는 상설센터내의 「1년단위의 수용」의 3가지 수용형태가 있다.

청소년바캉스센터의 일반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다.

11) 이들은 바캉스동안 바캉스센터나 스카우트 캠프등에서 part time으로 일하며 또한 수입이 없는 날과 방과후 저녁시간에 어린이들을 수용하는 센터나 야외장소(바다교실, 산교실, 자연교실)의 애니메이션활동을 주도한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BAFD 나 BAFA의 자격증을 가졌으며 수당을 지급 받는다. 이곳에서의 애니메이션의 주요활동은 책임감에 대한 교육활동이다.

참가자 :

- 40명이하의 14세미만의 미성년자

책임자 :

○ 주최자들과 책임자는 단체생활의 경비와 위생과 교육에 관련된 조건들을 미리 부모들에게 알림

○ 시설운업을 시작하기 1개월전에 14세이상인 미성년자 12명이상 그리고 5일 이상의 숙박기간을 포함하는 활동에 대해서는 관할 도지사에게 신고

○ 시설의 위생과 진료감독은 위생조건에 관한 1977년 2월 25일의 법령 23-25를 따름

○ 간부진들중 적어도 한 사람은 응급처치 국가자격증을 소지해야함

시설의 조건 :

○ 시설과 숙박장소는 건강에 좋고 위험이 없는 평평한 지대에 위치해야함

○ 깨끗한 식수를 갖추어야 함

○ 신체의 청결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수단들을 갖고 있어야 함

○ 쓰레기와 하수는 건강과 환경에 오염되지 않도록 모으고 배수해야 함

책임자의 자격 :

○ 책임자는 21세이상

○ 책임자를 포함한 지도자들은 참가자 12명당 1명의 비율로 확보

○ 책임자는 바캉스센터와 여가센터의 책임자직 자격을 갖고 있거나 수습책임자 자격을 소지하고 수습기간에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지도한 경험이 있어야함

○ 도지사나 위원회, 관할도의 청소년 체육담당 감독관은 이 시설이 제공한 교육과 경험의 질을 평가함

○ 책임자를 포함한 간부진들의 절반이상은 지도자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현재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함

○ 특별한 규정의 대상이 되는 여러종류의 신체활동과 체육활동을 위해 이를

담당하는 지도자는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거나 자격있는 전문가들로 구성함

시설외 체류 활동 :

- 14세이상의 미성년자들의 소집단은 지도자없이 짧은 기간(2일에서 4일)동안 시설의 중요한 곳에서 외부체류를 할 수 있음. 이 경우 책임자는 여행코스과 장소를 허가할 수 있음

- 수영은 관할관청이 금지한 지역이나 위험하다고 인정한 곳을 제외하고 충분한 안전조건에 따라 가능함

4) 숙소없는 여가시설

이 시설은 어린이와 청소년단체들을 주간에만 수용한다. 다양한 기능을 갖추고 일년내내 운영되며 어린이들의 거주지 근교에 위치해 있다. 학교수업 전후, 수요일, 토요일, 바캉스 동안, 특별한 장소나 학교시설 안에서 모든 어린이들에게 개방되어 있으며(특히 4-14세의 아이들) 장애청소년도 이용할 수 있다. 여기에는 보통 중식이 제공된다.

이 시설의 이용자가 10년전부터 계속 증가하는 데, 그 이유는 첫째, 경제적인 측면에서 전통적인 바캉스센터보다 비용이 저렴하기 때문이며 둘째, 심리적인 측면에서 어린이와 부모들이 서로 단절되어 있지 않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이며 셋째, 교육적인 측면에서 이 여가센터는 3-4일의 아주 짧은 미니캠프의 가능성과 다양한 활동(스포츠, 과학, 기술) 등을 제공해 주기 때문이다.

다음은 숙소없는 여가센터에 대한 규정을 요약하여 제시한 내용이다.

시설기준:

숙소없는 여가센터의 자격을 위해서 다음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 교육목표
- 프로그램
- 교육계획안
- 책임자와 자격있는 지도자들

- 수용인원 최소 8명부터 최대 300명의 아이들
- 교육계획안은 가능한한 부모와 협력하여 결정

책임자 :

- 수용인원이 50명미만인 시설의 책임자는 지도자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들을 교육해본 경험을 갖고 있어야 함
- 수용인원이 51명이상 150명미만 규모의 시설 책임자는 책임자(directeur)나 준책임자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함
- 수용인원이 151명부터 300명미만 규모의 시설 책임자는 책임자 자격을 갖고 있어야함

지도자 :

- 지도자들중 3/4은 성년이어야 함. 17세의 미성년자들은 지도원 자격이수 교육을 받으면 지도자 자격이 있는 것으로 간주
- 나머지 1/4은 어떤 교육도 받지 않은 미성년자들로 구성
- 시설의 지도자들과 수용인원의 비율은 적어도 1/12이하가 되어야 함. 7세 이하의 아이들 경우에는 1/8 이하가 되어야 함

지금까지 살펴본 바캉스센터의 중요내용은 다음의 <표 II-1>과 같이 요약된다.

바캉스센터의 모든 규정은 부모의 결을 떠나 있는 미성년자들에 대한 보호라는 기본취지에서 만들어 졌다. 학교의 방학이나 휴가 또는 여가기간중 부모를 떠나 있는 미성년자들을 단체로 투숙시키는 개인이나 법인은 모두 이 투숙(숙박)을 위한 취생, 안전, 재정, 윤리, 교육적인 조건등에 관한 국가의 감독과 조정을 따르게 된다. 각 지방 도지사에게 위임된 감독권은 청소년체육부 및 보건부의 관련 공무원들은 각자 자신의 고유권한 안에서 이 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도지사는 바캉스센터의 개설을 규제하거나 잠정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이러한 처벌의 목적은 잘못에 대한 응징으로서 보다는 미성년자들에게 닥치는 위험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 있다.

〈표 II-1〉 여가센터에서 Animation의 방향과 조건에 관한 규정

종류 \ 자격	관 리 자 (Directeur)	지 도 자 (Animateur)	
유아센터(4-6세) 최대 60명	25세 BAFD* 소지자	18세	유아 8명당 1명 당 지도자
어린이/청소년 바 캉스센터 (6-18세)	21세 BAFD* 소지자	18세	12명당 1명의 지도자
청소년센터(14세) (60명 정도)	21세 BAFD* 소지자	18세	12명당 1명의 관리자
숙박시설없는 여가 센터 (최대 300명 수 용)	21세 50명등록-BAFD*+경험 51- 150명 등록-BAFD 소지자 또는 취득중인 자 150명 이상-BAFD 소지자	18세	12명당 1명의 관리자와 보조지 도자

* BAFD(기관장직) 또는 BAFA(Animateur직)는 바캉스센터의 자격증으로서 정부의 승인된 20개 단체들로부터 연수를 통해 획득된다. 일반적으로 이 자격증을 가진 지도자들은 수당을 지급받게 된다.

3. 프로그램

프랑스 정부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응 및 문화와 여가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다.

여기서는 국가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프로그램과 바캉스 센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청소년 여가활동 프로그램을 구분하여 소개한다.

1)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¹²⁾

(1) 청소년들의 취업과 사회진출 프로그램

청소년의 취업에 관하여는 청소년들이 취업전선에 나아가는 것을 준비시킬 목적으로 청소년들을 위한 연수와 여러가지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그 구체적인 활동으로서 청소년 Project을 만들어 그들에게 직장을 제공해준다거나 기업과 연결

12) 이 부분은 프랑스정부에서 발간한 『프랑스정부의 청소년 지원활동』 Actions pour les Jeunesse 에서 관련내용을 발췌 번역하고 요약한 것임.

되어 다양한 형태의 연수과정을 제시해 주기도 한다. 청소년들을 위한 Project를 만드는 것은 도단위의 기금으로 보조해 주는데 18—25세 연령층의 청소년들에게 재정적인 지원을 하면서 그들의 Project계획을 장려하고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프로젝트의 지원금은 중요도에 따라 다양하다. 이것은 청소년체육부 정부차관실과 사회문제 고용부와의 공동추진 업무이다. 청소년들에 의해 작성된 Project의 서류에 관한 지도는 도단위의 노동관청이나 도단위 청소년체육부 담당부서에 위임된다. 청소년체육부 도단위 관청들은 청소년들 자신이 작성한 서류를 보완해주고 그들에 대한 후속조치와 결연을 해 주는 등 기술적인 도움을 주고 연수과정도 마련해 준다.

한편 16—18세를 위한 사회적응 그리고 18—25세 청소년의 취업준비를 위해 청소년체육부의 도단위 관청들은 기업들과의 연계하에 다양한 연수과정을 제공하고 연수지도를 한다.

각부처 상호협력부의 또다른 주요 업무는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을 위한 활동을 지원해주는 데 구체적으로는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의 여가활동, 여름휴가를 떠나지 못한 청소년들을 위한 여름대책활동 그리고 장애청소년, 문맹청소년 등을 위한 특수활동등을 지원해 주는것이 주요업무이다.

이 프로그램은 1981년 청소년체육부 정부차관실의 주도하에 각부처 상호협력체제로 우선적으로 전통적인 여가생활 구조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사회적으로 낙오된 11—18세의 혜택받지 못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도지사 밑에 설치된 도단위 담당부서는 그 지방에서 이러한 청소년 숫자를 파악하고 협조자들과 출자자들을 불러 모은다. 청소년들은 모든 가능한 방법을 동원하여 자신들의 진취성과 자율성을 개발하면서 Project의 창출과 완성에 기여한다. 여섯개의 다른부서(교육부, 사회문제 고용부, 문화부, 농림부, 법무부, 환경부)가 각 지방단위 기관들과 일반자문기관들과 함께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이 프로그램과 관련된 83개의 도에서 매년 약 십만명의 청소년들이 스포츠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여름대책 활동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여름휴가를 떠나지 않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범죄대책 국가위원회(GNPP)와 사회문제 고용부, 법무부, 국방부 그리고 청소년체육부 정부차관실의 책임하에 범죄율에 따라 선별된 21개 도에서 이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국가와 지방공공단체들의 노력으로 약 2,000여명의 청소년들이 그들의 희망에 따라 스포츠, 문화, 사회면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예방대책은 커다란 효과를 보았으며, 청소년 단체생활국은 이렇게 청소년들의 삶에 활기와 생동감을 불어 넣어주는 활동에 대한 재정지원을 한다.

한편, 특수활동으로서 장애청소년들을 위한 사회적응, 취업, 여가활동의 혜택을 보장하기 위해 장애자를 위한 기관에 재정지원, 정보제공, 연수를 계획하는 등의 일을 한다. 이와 함께 문맹퇴치의 일환으로 문맹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낙오자 예방운동, 독서정책개발, 학과외 여가활동 등을 지원한다.

이러한 여가활동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의 사회적응에 목적이 있으며 이외에도 청소년 개개인의 독자적인 성숙을 위한 목적으로서 스포츠, 예술, 문화활동을 통한 여가활동 역시 각부처 상호협력부의 담당업무이다. 여기에는 크게 「문화여가활동」, 「기술과학여가활동」, 그리고 「스포츠여가활동」의 3가지로 구분되는데 문화여가활동 영역은 문공부와 교육부 등과 협의하여 국가차원의 Project건 지방차원의 Project건 간에 청소년 문화여가생활에 관계되는 모든 분야에 개입한다. 예컨대 이 경우 청소년체육부 정무차관실은 영화검열 조정위원회를 통해 영화, 비디오 테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것과 같은 미성년자 보호뿐 아니라 좀더 적극적으로 수준높은 영화를 보급하는 일을 지원하며, 청소년을 위한 도서와 독서활동을 지원하며 청소년을 위한 음악을 개발·보급하기도 한다.

기술과학 여가활동영역에서는 청소년들이 적극적인 여가활동 과정을 통해 과학적인 내용을 습득할 목적을 갖고있다. 예컨대, 과학박람회를 재정지원하여 청소년들이 만들어낸 Project을 대중에게 홍보하거나 우수한 Project을 국제과학 박람회에 출품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과학박물관 또는 연구기관들과의 협조하여 청소년 자신들의 Project을 지원하기도 하며, 바캉스센터와 여가센터의 청소년들을 겨냥하여 천문학과 자연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재정지원을 하기도 한다.

청소년을 위한 스포츠 여가활동은 교육학적인 면에서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이러한 종류의 스포츠 여가활동은 청소년들의 인격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스포츠 여가활동의 종류는 무척 다양하나 다음에 제시되는 몇

몇 스포츠 여가활동이 일반적으로 실행되는 것들이다.

- 장거리 승마 및 하이킹
- 눈이나 물에서 하는 활주스포츠
- 범선조종
- 강 하행
- 무용
- 동굴탐사
- 자전거 하이킹
- 테니스
- 카누경기
- 펜싱
- 헝글라이더

(2) 청소년을 위한 정보제공과 국제교류 프로그램

청소년단체생활국의 「대외업무부」에서는 청소년에 대한 정보업무와 국제교류관계 이 일을 수행한다. 청소년들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객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게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1969년부터 청소년체육부 정부차관실은 「청소년정보센터」¹³⁾ 망을 조직하였다. 이 청소년정보센터 조직망은 국가보조를 받는 독립적인 단체조직으로 프랑스 전역에 설립되어 청소년 정보를 위한 참신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정보센터는 일상생활안에서 청소년들과 관련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이며 개인차를 고려한 정보들을 다음과 같은 8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제

13) 1969년 파리의 청소년 정보센터가 설립된 이래 청소년체육부의 정부차관실은 각 지역에 걸쳐 청소년 정보센터망을 확산시켰다. 따라서 그 숫자는 1987년에 지방에 23개 파리지역에 3개에 이르렀다. 또한 청소년 정보센터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정보실」(Bureaux d'Information Jeunesse) 또는 「청소년 정보거점」(Point d'Information Jeunesse)이라는 형태로 모든 지방에 정보공개를 확대해 줄 수 있는 지점망을 설치하였다. 참고로 청소년 정보센터 방문상황을 보면, 연간 2천5백 만명이 정보센터를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하루 평균 3천명의 청소년이 파리 청소년 정보센터를 그리고 2백명의 청소년들이 각지방의 센터를 방문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해 준다.

- 지도
- 직업연수
- 휴가, 여행
- 스포츠
- 취업
- 평생교육
- 사회생활
- 여가

위와 같은 8개 영역에서 연간 4,000장 이상의 정보문헌이 만들어지며 이들은 약 500여개의 주제를 다루며 청소년들을 위한 백과전서를 이룬다.

청소년정보센터는 정보제공이라는 사명이외에도 여러가지 부수활동을 수행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도와 취업 : 청소년들의 취업문제
- 숙박 : 청소년들의 숙박문제
- 마약중독 예방 : 마약중독 예방사업
- 소비 : 청소년 Card 등의 할인 혜택
- 창조 : 청소년들에 의한 Project 개발의 지도
- 회의, 심포지움, 토론회 : 다른 단체들과 협의하여 특수 주제들에 대하여
- 봉사 : 임시고용을 위한 광고, 숙박, 조언, 이력서, 지원서 등의 작성지원

청소년정보센터는 연간 2백 5십만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방문하여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청소년정보센터 조직망은 몇몇 외국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이들의 청소년정보센터의 모델이 되었다.

한편 청소년정보센터는 1985년 국제청소년의 해를 기해 여러가지 활동들에 대한 다양한 이익과 할인혜택을 주면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청소년

년 카드¹⁴⁾ 발급을 시작하였다. 이 카드는 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 속에서 할인혜택을 제공해 주며 문화·스포츠, 여가활동을 쉽게 즐길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진취적 제도의 성공과 이웃 여러나라에 의한 이 제도의 채택은 유럽 청소년 카드발급¹⁵⁾을 촉진시키게 되었다. 청소년 카드는 청소년들에게 여러가지 접근하기 쉬운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그들의 사회참여를 용이하게 하는데 기여하며, 또한 그들이 물품구매시 경제적 비교접근을 통해 바람직한 소비생활을 하도록 도와준다. 26세 이하의 모든 청소년들은 국적에 상관없이 누구나 저렴한 가격(60F)으로 이 카드를 구입할 수 있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1년이며 이 카드로 전국에 있는 청소년 카드가입자(공공기업, 상인)에 의해 제공되는 이익과 3만여종의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대외업무부의 또다른 주요업무는 청소년에 관한 국제교류이다. 청소년에 관한 국제교류는 프랑스의 전통과 정치적 의지 그리고 유리한 지리적 입장으로 다른 어느 유럽국가들보다 선두의 위치에 서게 하였다. 현재 프랑스는 약 100여개의 국가들과 문화협정을 맺고 있는데 이는 1963년에 설치된 불란서-독일청소년사무소(OFAJ)와 1968년에 설치된 프랑스퀘벡 청소년사무소(OFQJ)는 수 많은 다른 나라들과 체결된 양국협정의 출발이 되었다. 이러한 협정들은 1992년에 있을 유럽공동체의 청소년교류에 중요한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유럽청소년들의 기동성을 현실화할 목적으로 쏟은 노력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활동으로 요약될 수 있다.

○ 청소년을 위한 유럽심의회 의 조직 : 청소년을 위한 정부정책을 만들기 위한 청소년관계 유럽장관회의의 구성, 행정, 정보교환을 목적으로 함

14) 청소년들에게 광범위하게 카드를 제공하기 위하여 우체국, 은행, 보험단체등과 같은 여러 파트너들과 협력한다. 전국에 걸쳐있는 약 20,000개의 판매지점망에서 청소년들은 카드를 구입할수 있으며 그 지방에대한 안내도 받을 수 있고 카드로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이익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참고로 청소년 카드의 몇몇 혜택을 보면 다음과 같다.

- 국내의 어디서나 현금분실이나 도난시 가불을 할 수 있으며 의료비등의 후불이 가능하다
- 화요일 항공료에대한 최대한의 할인
- 축구나 럭비 및 여러가지 스포츠경기들에 대한 50%의 할인
- 국립 박물관에서의 특별세율 적용혜택
- 신문구독료, 연극표, 극장표에대한 10-50% 할인혜택
- 자동차학교 수강료와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할인 등

15) 유럽에서의 청소년 카드제도는 현재 7개국(프랑스, 포르투갈, 스페인, 벨기에, 네덜란드, 그리스, 스코틀랜드)에서 시행되고 있다.

○ 전문가 특별위원회 구성, 청소년의 국제교류활동을 위한 유럽 재정기금 조성, 청소년교육 시설을 위한 유럽청소년센터

○ 청소년을 위한 여권 : 1987년 6월에 유럽의 주요국가들 사이에 청소년카드에 관한 상호협정이 체결됨

○ 청소년정보센터의 유럽망 구축 : 이는 유럽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과 그들의 반응변화에 귀를 기울이는 것등의 활동을 여러나라의 청소년정보센터의 책임자들로 편성된 ERYICA¹⁶⁾ 협회가 구성됨

○ 청소년근로자 교환 프로그램 : 이는 1992년 이후 유럽공동체가 이루어질 때가시화될 예정임

○ 「유럽을 위한 도전」 Projcet을 위한 장학기금 : 이는 외국에서의 프랑스 청소년의 기동성과 외국청소년들의 프랑스 방문을 장려하기 위한 것임

○ 유럽청소년을 위한 특별서비스 : 외국청소년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며, 프랑스에서 그들의 체류를 도와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들에게 프랑스 전역을 탐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2) 청소년 활동프로그램의 실제¹⁷⁾

매년 100만명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프랑스 전역에 있는 바캉스센터나 이동 캠프장으로 떠나며 수 많은 어린이들이 부근의 여가센터에 수용된다. 바캉스 계절에 프랑스의 모든 청소년들이 국내, 국외의 바다, 산, 전원 등으로 대이동을 한다고 하는 것이 적절한 표현일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청소년활동을 위한 지도자, 시설, 프로그램들이 청소년들의 여가활동(특히 바캉스)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16) 프랑스의 청소년 정보센터 조직망은 몇몇외국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의 관심을 불러 이르게 이들 나라의 정보센터의 모델이 되었다. 그리고 1985년 국제 청소년의 해에 유럽회의는 European Youth Information and Counselling Association 를 창립하였다. 암스테르담에 있는 이 센터는 유럽조직망의 형성과 그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7) 이 부분은 프랑스의 전국 바캉스 여가센터 연합회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발간하는 활동 프로그램 안내서인 VACANCE, UFCV(ETE 94)에서 활동 프로그램 관련 내용중 몇몇 대표적인 사례들을 발췌하여 번역 소개한 것임.

여기에서는 프랑스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여가활동의 모습을 바캉스에 관한 일반 규정과 청소년바캉스 프로그램의 몇몇 예시를 통해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의 내용을 살펴 본다.

(1) 청소년들의 바캉스에 관한 규정

목 적 :

- 청소년들에게 자율성을 조장하고 그들의 진취적 기상을 북돋아 주며, 책임감을 키움
- 단체생활의 조건을 명확히 알려주고 모든 관계자들을 참여시킴
- 신체를 단련시킴

일반 규정:

- 바캉스 시설과 프로그램의 책임자 및 진행자는 참가 청소년의 부모들에게 단체생활의 교육, 윤리, 위생시설, 안전 등의 조건을 미리 알려주어야 함
- 기간이 5일이상이고 14세이상의 청소년들의 활동 그룹이 형성되면 이 활동을 지도할 책임자는 거주지의 도지사에게 이를 신고해야 함
-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간부진중 적어도 1명은 응급처치 국가자격을 갖고 있어야 함
- 모든 시설과 숙소는 위생적이고 위험이 없는 지역에 위치해야 하며, 식수는 음료수로 적합해야 하고, 몸의 청결을 유지하기 위한 충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함
- 책임자를 포함한 간부(지도자)들의 정원은 프로그램 참가자와 비례하여 12명당 1명 이상, 지도자들은 전원 성인이어야 하며 책임자는 21세이상
- 책임자는 바캉스센터의 기능에 적합한 자격증 소지자이거나 연수 책임자 자격을 갖고 있어야 하며 그리고 청소년과 함께한 연수 또는 애니메이션 경험이 있어야 함. 신고를 받은 도의 도지사 또는 청소년체육부의 담당부서가 책임자의 경험과 연수의 질을 평가
- 간부의 과반수이상은 Animateur 기능에 합당한 자격을 소지
- 특수하게 규정된 지역에서의 체육활동 실습을 위해 이 활동의 간부들은

요구되는 능력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며 능력을 갖춘 전문가들에 의해 보충되어야 함

○ 14세이상의 미성년자 소 group은 지도자없이 짧은 기간동안 정해진 장소외에서 활동할 수 있음. 출발의 허가는 여정과 숙박장소를 허가해줄 책임자에 의해 내려짐

○ 수영활동은 주무관청에 의해 위험지역으로 간주되거나 금지된 지역을 제외한 안전이 충족된 조건내에서 가능함

고산경주에 관한 규정 :

○ 12세이상의 미성년자들을 위한 고산경주와 얼음이나 눈에 덮힌 지역에서 등산은 등산국가자격을 소지한 전문가에 의해 인도되어야 함

등산에 관한 규정 :

○ 얼음과 눈이 없는 지역의 등산은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장비들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다음의 자격증의 하나를 소지한 사람들에 의해 인도됨

- 등산 국가자격
- 중간높이 산에서의 인솔자격
- 바캉스센터의 Animateur 기능중 산에 관련된 분야 자격

하이킹에 관한 규정 :

○ 하이킹 활동시 청소년 집단을 인솔하는 사람들은 출발지나 숙소에 계획된 일정시간표를 남겨야 함

○ 등반학교 밖에서의 등반실습은 등산 국가자격증이나 산에 관한 자격 Bata을 소지한 사람에 의해 인솔되어야 함

해수욕에 관한 규정 :

○ 해수욕은 가능한한 안전이 갖추어진 해안에서 행해지는데, 이 경우 집단의 책임자는 해변의 안전관리책임자나 사고시 구조를 담당하는 담당자에게 알려야 함

○ 청소년체육부장관에 의해 발급된 자격증을 가진 감독관에 의해 해수욕 및 수영활동이 이루어져야 함. 해수욕을 하는 보호지역에는 표시가 되어야 함. 이 지역 주위는 12살이하의 아동 group을 위해 경계표시가 되어야 하며, 해수욕 및 수영활동은 40명이상이 초과되어서는 안됨. 8명의 어린이 당 1명의 Animateur가 함께 수영함

○ 감독 관리되는 수영장이나 해수욕장에서는 group책임자는 시설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야 함

캠핑에 관한 규정 :

○ 텐트안에서 이루어지는 바캉스센터는 위생조건이 만족스럽게 갖추어져야하고 악천후에 대한 대비와 잠자리에 대한 안전이 만족할 만한 방법으로 보장되어야 함. 텐트마다 땅에 먼저 단열재를 깔후 설치함. 병자의 격리 와 보호를 위한 특별 텐트가 설치되어야 함

○ 어린이들은 병이 들거나 악천후를 만나게 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될 수 있어야 함. 다음의 지역에서는 텐트설치가 금지됨

- 공공도로나 길 옆
- 바닷가
- 식수를 목적으로 만든 우물가로부터 200m이내
- 유적으로부터 500m이내
- 보호구역내

화재에 관한 규정 :

○ 숙소와 집회를 위해 사용되는 지역은 안전수칙을 따라야 하고 화재는 초기에 진압하기 위해 기본소화장치를 갖추어야 함

○ 숲이나 숲 근처에서 인화성이 강한 물질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소등에 신경을 써야 함. 연안 200m이내 지역에서는 불을 켜는 것이 금지됨

○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주최자는 필요한 보험을 계약해야 함

어린이의 공공운송에 관한 규정 :

- 450km를 운전한 후에 운전자는 교체되어야함
- 연속운전시에 4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하루 운전시간은 8시간을 넘어서는 안됨. 일주일의 운전량은 48시간을 초과할 수 없음
- 4시간 운전후 1시간의 휴식시간을 갖어야 함. 30분씩 2회로 나누어 휴식

(2) 청소년바캉스 프로그램의 실제예시¹⁸⁾

프랑스 바캉스센터의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나이와 활동의 유형에 따라 4가지 구분되어 제시되는 것이 보통이다.

- ① 초급수준 프로그램
- ② 중급수준 프로그램
- ③ 고급수준 프로그램
- ④ 외국여행 프로그램

18) 여기에 제시한 몇몇 예시는 1994년 여름 바캉스를 위해 프랑스 바캉스센터연합회에서 청소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임.

① 초급수준 프로그램

이 활동은 탐험 및 여러가지 활동을 하는 것이 주요내용으로 무엇보다도 친구들끼리의 생활과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시 1〉¹⁹⁾

Mimizan-Plague
Landes
4- 5세
6-12세
Jellet-Aout

바다에서 원기를 돋구는 바캉스!

정 원 : 4- 5세는 29명
6-12세 50명

위 치 : 미미장은 어린아이들이 깨끗한 공기와 햇빛을 만
끽할 수 있는 작은 해수욕장이다. 미미장에는 바
다와 고운모래와 소나무 숲과 잔잔한 물의 커다란 호수와 강이 있다.

숙 소 : 바캉스센터는 숲근처, 바다에서 150m 지점에 있다. 쾌적한 여러 건물
들, 활동실(회의실, 사진-실험실, 도자기 제조실... 등) 녹음이 우거
진 큰 공원, 경기장...

활 동 : 날마다 해수욕을...(바캉스센터에서 아주 가까운 바닷가에서) 중요한
외부활동들...(경기, 소풍, 긴산책, 낚시, 캠핑..., 도자기 만들기, 사
진, 체스, 수족관, 연극예술, 수공업 기술교육 등)

생활방식 : 아이들이 여러번 모든활동들을 실습함.

직원배치 : 아이들 8명당 지도원 1명+해수욕 활동감시인, 전문지도원

출 발 : 파리

여 정 : 기차

주 최 : ASS. "G.E.V" ANCV 승인

코드	나이	날 짜	요금(F)
0338	4- 5	7월 28일-8월 10일	4,225
		8월 12일-9월 1일	5,725
0339	6-12	7월 28일-8월 10일	3,825
		8월 12일-9월 1일	5,225

협 회 : 개인 - +120F

가 입 : 단체 CE-5명부터 +100F

19) Vacances,Ufcv 94:p.4

ETAGNAC
charente
7-11세
12-13세
야외 생활

정 원 : 80명

위 치 : 교육의 가능성이 매우 풍부한, 숲이 우거지고 골짜기가 많은 지역에 위치함(자연, 민간예술과 민간전승, 고고학). 모든 산업에서 멀리 떨어져 자연 한 가운데에 있는 센터는 아주 깨끗한 공기의 혜택을 입는다.

숙 소 : 완전히 개수된, 특징이 있는 집안에서 방 3개마다 침대가 9개 있고 바로 옆에 위생시설이 있다(화장실, 세면대, 샤워실). 옆에 큰 별장이 있고 주방과 도서관과 큰 놀이방이 있다.

활 동 : 활쏘기, 자전거 여행, 캠핑, 해수욕(정비한 호수에서 감시를 받으며), 사커게임, 탁구, 가까운 숲에서 야외활동, 비디오 놀이, 밤의 모임, 잔치, 12세이상의 어린이는 테니스나 승마를 택할 수 있다.

생활방식 : 일상수준과 모든 어린이의 리듬에서 개인의 책임을 촉진하는 가족 같은 구조

직원배치 : 어린이 8명당 관리자 1명, 지도원 1명

준 비 물 : 개인 테니스 라켓이나 탁구채를 가져갈 수 있다.

출 발 : 파리

여 정 : 리모쥬까지 기차, 자동차

주 최 : A.F.S.J. ANCV 승인

코드	나이	날	짜	요금(F)
0334	7-11	7월	6일-7월 18일	1,990
		7월	18일-7월 30일	1,990
	12-13(1)	7월	6일-7월 30일	3,670
		8월	5일-8월 18일	2,130
		8월	18일-8월 31일	2,130
		8월	5일-8월 31일	3,950

추가요금. 12-14세는 모든 기간에 +170F

추가요금. 테니스 선택 : 참석할 때마다 +43F

추가요금. 승마 선택 : 참석할 때마다 +59F

협회가입비 : +130F(개인), +400F(단체, CF)

의료비 300F 보증금(현금으로 바꾸지 않은)이 청구된다.

20) Ibid., p.11

② 중급수준 프로그램

이 활동들은 입문과정으로 초보적인 기술을 배우고 경험하는 것이 주요내용이다.

(예시 1)²¹⁾

MONTIRAT

Tera

6-12세

13-14세

정 원 : 45명

위 치 : 매우 거친 강과 초목에 둘러싸인 작은 마을 근처, Vaur을 내려다보는 18헥타르의 소유지에 있는 Albi 북쪽에서 30km 지점(해발 380m)

숙 소 : 완전히 개축된 농가. 4개에서 12개의 침대가 있는 방들. 아주 쾌적한 위생시설. 5개의 큰 공용 홀(도서실, 비디오 시청실, 장난감 방, 놀이 방, 사진실험실) 13-14세의 어린이들은 4인용 텐트에서 자게 될 것이다.

활 동 : 항상 태양이 내리쬐는 현장에서 (9-14인승) 2대의 소형 버스를 타고 젊은이들은 카누, 수송차량, 마술, 비디오, 컴퓨터, 해수욕, 테니스 등을 각자의 기호에 맞게 활동할 수 있다. 등산과 동굴탐험은 물론 짧은 여행도 가능한 데, 이런 것들은 약 5회에 걸쳐 계획을 세울 수 있다.

생활방식 :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젊은이들은 그들의 활동을 선택할 수 있고 경험있는 지도 팀과 함께 그들의 휴가를 계획할 수 있다.

직원배치 : 5명의 참가인원에 1명의 지도자와 실습생 1명씩.

출 발 : Paris

여 정 : 기차로 Guepie까지

주 최 : VIAL, ANCV로부터 승인 받은 사항

코드	나이	날 짜	가격
0344	6-15세	7. 7-7.28	4990
		7일 기준	2180
		12일 기준	3585
		8. 3-8. 4	4990
		6일 기준	2180
		12일 기준	3585

* 짧은 승마 선택시 : +500F

단체 가입비 : +50F(개인), +8명부터 (단체) 200F

21) Ibid., p.11

③ 고급수준 프로그램

이 활동들은 주요한 전문화과정에서 주로 한 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아이들이 강한 동기유발이나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주려는 의도를 갖고있다.

<예시 1>²²⁾

EPINEAU
LES VOLVES
Yonne
4- 6세
8-14세
4계절의 조랑말

정 원 : 35명(4-6세), 35(6-8세)

위 치 : 부르곤뉴 성문에서 역사에 남는 한고성이 여러
분의 아이들을 맞이한다. 그들은 조랑말을 발견
하여 곧 친구로 삼을 것이다.

숙 소 : 이 성과 부속건물들은 완전히 개축되었고, 특별
히 정성들인 방들이 여러분의 아이를 맞이할 것
이다. 이 방들은 침대 5개가 있는 방 2개와 공동침실, 모든 층마다 완
전한 위생시설, 공원이 보이는 식당과 활동실과 비디오 방, 구석에 있
는 난로, 도서실과 의무실을 포함한다.

활 동 : 크기별로 70마리 조랑말(세틀랜드, dartmoors, welshs...)이 있으므로
아이들은 체류하는 동안 내내 저마다 자기 말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날마다 2시간 30분씩 원하는 승마는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잊을 수 없
는 시간이 될 것이다. 아이들은 아주 큰 담력을 얻을 수 있게 되면서 자
기 조랑말을 사육, 말 글경이질, 말 보살피기, 조마(調馬), 승마 놀이
(포니-게임), horse ball, 곡마, 장애물 코스, 산책, 승마의 공연들이
프로그램의 핵심을 이룬다. 승마용품은 모두 제공됨.
다정하고 유익한 이 활동은 가르침이 풍부하여 탁구, 해자에서 활쏘기,
배구, 놀이, 밤모임과 아틀리에 같은 다른 휴식시간에 자리를 남기기
도 한다.

직원배치 : 아이들 9명당 지도자 1명, bafa와 제7구보를 가르치는 정식 교수

출 발 : 파리(리용역)

여 정 : 라로슈 미쾨느까지 기차

주 최 : PONEY DES 4 SAISON, ANCV가 승인

코드	나이	날	짜	요금(F)
0347	4-14 12-13(1)	7월 6일-7월 17일	17일	3,850
		7월 18일-7월 30일	30일	4,500
		8월 1일-8월 16일	16일	4,900
		8월 17일-8월 31일	31일	4,600
		8월 26일-9월 3일	3일	2,225

협회가입비 : +50F(개인)

8명부터 +200F(단체, CE)

동일 가족의 둘째 어린이부터 10% 할인

22) Ibid., p.14

VERRIERES
EN FOREZ
Loire
7-18세

정 원 : 연령구분하여 30명 (7-12세와 13-18세)

위 치 : 해발 850m에 있는 베리에르 앙 포레는 포레산에 있는 독특한 마을이다. 건물들은 소나무들과 전나무들이 둘러싼 마을안에 있다.

숙 소 : 어른들과 청소년, 어린 청소년들에게 아주 적합한 시설을 갖춘.
숙소는 샤워실, 화장실, 세면대가 딸린 방 2개의 작은 아파트로 되어 있다. 전문 활동실 16개, 카페테리아 1개, 부엌 3개, 비디오가 잘 갖추어진 회의실이 있다.

활 동 : 우리는 힘을 위해 3시간씩, tonic을 위해 4시간씩 역할놀이, 비단에 그림그리기, 테니스, 마술, 활쏘기, 모던췌즈, 수영, 기어올라가기, 축구, 모터크로스레이스, 스케이트 보오드 따위의 체육전문 연수나 수공업 연수를 권한다. 전문연수외에도 지역방문, 수영장, 영화, 비디오, 쇼핑 따위의 여러 다른 활동들을 제공한다.

생활방식 : 우선권은 교육한 기술과 단체생활의 질에도 주어진다. 속옷 빨래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직원배치 : Cvl 지도원, 전문가들이나 입문지도자들이 BE나 교수나 교사들

출 발 : 파리

여 정 : TGV로 쾅페띠엔느까지 감.

주 최 : CPVIS LA JOIE DE VIVRE, ANCV 승인
7월 3일부터 9월 3일까지 7일 기준

코드	나이	활 동	요금(F)
0371	7-18	역할놀이	2,850
0372		비단그림 그리기	2,850
0373		테니스	3,160
0374		승마	4,030
0375		활쏘기	3,160
0376		모던췌즈	2,850
0377		수영	2,850
0378		기어오르기	3,160
0379		축구	3,160
0380		모터크로스레이스	4,010
0381		스케이트보오드	2,850
0513		야구	2,550

* 추가요금, 속옷 : +130F

협회가입 : +60F

23) Ibid., p.21

④ 외국여행 프로그램

이 활동들은 다른나라, 다른 말들을 발견하기 위해 한 나라가 여러지역을 순회하는 일주여행으로 이루어져 있다.

〈예시 1〉²⁴⁾

스 페 인
14-15세
16-17세
안달루시아 지방

정 원 : 8×2

위 치 : 마드리드와 톨레도로 내려가고 이어서 스페인 남쪽으로 내려가다 안달루시아를 깊이 들어가 보고 동쪽해안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간다(벌렌 치아, 바르셀로나).

숙 소 : 준비된 캠핑으로 장소의 쉼 을 텐트와 숙박지-야영을 번갈음.

활 동 : 3주 이상 두루 돌아다니는 동안 안달루시아를 탐험한다. 수영, 호흡 정지하고 잠수하기, 페달보트, 짧은 드라이브 등의 체육활동은 일주 여행에 달려 있다.

생활방식 : 문화의 날과 휴식의 날을 번갈음. 이 일주 여행은 모험을 좋아하고 여러가지 실제 일들에 참여하기로 한 젊은이들에게 권한다.
젊은이들은 그들의 속옷을 스스로 빨아야 한다.

직원배치 : 참여자 8명당 지도원 1명

출 발 : 파리

여 정 : 자동차

주 최 : RAISD 와 RELAIS PLEIN SUD, ANCV 승인

코드	나이	날 짜	요금(F)
0409	14-17세	8월 4일-8월 28일	6,100

협회가입비 : + 80F(개인)

+ 50F 아이들마다(단체, CE)

같은 가족을 위해 두번째 등록부터 아이당 100F 할인

24) Ibid., p.41

(예시 2)²⁵⁾

그 리 스
15-18세

정 원 : 15명

위 치 : 코스-파리, 리용, 밀라노, 앙콘느, 브랜디지, 이쁘네밋싸, 레메떼오르, 델프, 아테네, 파로스에서 3일, 꼬런도, 파트라스, 앙콘느, 밀라노로 돌아옴.

숙 소 : 캠핑하면서 모든 용품이 제공된다(이글루 텐트 2-3인용, 매트, 담요.)
단체는 야외 식당을 위해 특별히 설비된 부속차를 마련한다(상, 긴의자, 냉장고, 개수대, 조명). 매일 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활 동 : 500km 일주여행. 메떼오르 방문(1일), 델프방문(1일), 아테네 방문(1일), 파로스에서 3일 쉽(씨끌라드 섬), 고런도. 고런도 만과 에게 바다에서 해수욕

생활방식 : 쉬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동이 잦은 순회 일주, 젊은이들은 속옷을 빨아야 할 책임이 있다.

직원배치 : 관리자 1명(Bafd)과 지도원 2명(Bafd)

출 발 : 파리, 디종, 리용

여 정 : 간이침대와 송신기-수신기 라디오가 있는 미니버스

주 최 : AVEVA

코드	나이	날 짜	요금(F)
0414	15-18세	8월 3일-8월 24일	5,950

협회가입비 : +100F(개인)

10명부터 +300F(단체, CE) 나누어낼 수 있음.

25) Ibid., p.44

4. 단 체²⁶⁾

거대한 공공복지의 관리자인 국가와 근래에 와서 점차 권한영역이 확대되고 있는 지방단체들 사이에서 단체생활은 국민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단체 생활복지에서는 단체생활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단체생활을 증진하는 활동, 단체생활을 개발하는 일, 그리고 단체의 상호교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첫째, 단체생활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단체생활 장려팀을 구성하여 단체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 정리하는 일, 단체들의 활동과 권리에 대한 일, 행정기관과 단체들에게 조언하는 일, 연수를 위한 실험프로그램을 정리하는 일, 그리고 단체생활에 관계되는 다른 연구소들과의 연락 등에 주력한다.

둘째, 단체생활의 개발을 촉진하는 일은 각부처의 공공기구인 [단체생활개발 국가기금](이는 경마경기에 투자된 자금을 대한 과세의 한 부분으로 충당)을 통하여 수행되는데 대부분의 예산(80%)은 단체 책임자들의 연수에 쓰여지고 나머지는 조사, 연구를 위해 여러 단체들에 공급된다. 이 기금의 관리는 여러 단체 생활분야의 대표자들과 각부처 대표자들로 구성된 조정위원회 협조하여 관리된다. 이 조정위원회는 청소년체육부 이외의 8개 부처 장관들과 10개분야의 단체 생활분야 대표자들로 구성되는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각부처 :

사회문제고용부

사회경제부

경제재정민영화부

농림부

연구고등교육부

관광부

문공부

26) 이 부분은 앞의 자료 {프랑스의 청소년 지원활동} Actions pour les Jeunesse에서 관련 내용을 발췌 번역 요약한 것임

환경부

단체 생활분야 :

노동·구직·연수

사회활동, 보건

개발, 국제관계

협력

스포츠

소비

환경

교육

자유수호

유대감

관광

청소년

가정

이 기금에 의해 도움을 받은 활동들을 보면 우선 연수보조로서는 1985년에 104개 단체가 제시한 112개의 Project, 1986년에 305개 단체의 112개의 Project의 1987년에는 371개 단체의 112개의 Project이 보조를 받았으며 조사, 연구 및 실험에 대한 보조로서는 1985년에 110건 이었으며 이러한 투자는 단체와 지방의 발전, 바캉스센터에서의 장애인우대, 사회센터에서의 예방정책, 조기퇴직자들의 사회유입, 어려움에 처한 부녀자들의 수용을 위한 장소와 대책, 이민단체, 이민 2세의 사회수용 등에 많은 기여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매년 5만여개의 단체가 창설되고 있으며 이들중 11%가 청소년과 여가활동에 관계된다. 1986년에는 약 30만 직종의 자리가 청소년과 여가활동에 직접·간접으로 관련된 단체들에 의해 마련되었다. 이러한 청소년단체에 관한 정보는 도단위 청소년.스포츠관청에 비치되어 있다.

셋째, 청소년단체의 상호교류와 대중교육을 위해 청소년단체의 Project와 애니메이션터들에 대한 재정지원에 주력한다. 단체들이 청소년체육부 정부차관실의 도움을 얻기 위해서는 먼저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방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도지사에게 의해 그리고 국가차원의 단체들에 대해서는 관리들과 단체대표자들로 동등하게 구성된 위원회의 협조를 거쳐 정부차관실에서 의해서 승인된다. 현재 국가의 승인을 받은 단체들은 약 350개에 이르며 이들중 200여개는 정기적으로 원조를 받는다.

승인된 단체들에대한 청소년 체육부의 지원은 크게 3가지로 구분 되는데, 첫째 단체들의 Project 지원과 둘째 단체들에의해 고용된 animateur 직에대한 재정지원 그리고 셋째 병역기피 청소년에대한 지원이다.

○ Project에 대한 지원 :

1987년 부터 청소년 체육부는 청소년 단체들에게 Project을 제출하도록함

1988년에 제시된 Project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 청소년들의 사회진출과 취업
- 어려움에 처한 청소년들과의 유대감
- 책임감과 독창성에 대한 개발
- 아동에 대한 원조
- 예술활동의 증진

1987년에 179개의 단체들에의해 제안된 300여개의 Project들이 3천만 프랑의 원조를 받았다.

다음은 이들 Project에 대한 몇몇 사례들이다.

- 「거리의 도서관」: 어려운 가정의 아동들에게 문화접근의 길을 열어줌
- 「인권관리의 세계혼장」: 인간의 권리에 대한 연수
- 동화와 전기(전설)연구를 통한 상상력 개발을 위한 독서위원회 창설
- 몇몇 지방에서 학교-기업간의 자매결연시 기술에 대한 연수
- 공공기관과의 협동으로 산림보호운동

○ Animateur 직에대한 재정지원

다른 정부부처와 함께 청소년 체육부는 지방공공단체나 민간 시설이나 단체에 고

용된 Animateur들에게 일부 재정지원을 한다. 이는 단체생활개발 국가기금 (FONJEP)에 의해 보조 되는데 1988년에는 1900건에 총 7천 6백만 프랑이 지급되었다.(국가의결정:460건, 지방도지사 결정:1440건)

○ 병역기피자 지원

청소년 체육부의 정부차관실은 약 1400여명에 달하는 병역기피 청소년들을 수용할 것을 단체에 지시하였다.

라. 결 론

프랑스의 청소년정책의 특징은 크게 세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 청소년들을 사회와 직업에 적응시킴
- 청소년들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제고시킴
-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국제감각을 배양

이에 대한 정책의 수립과 시행은 청소년체육부의 정무차관실의 청소년단체생활국에서 담당하는데, 24지방국과 96도 관할국 그리고 4해외도 관할국의 대외업무부서와 산하 기관및 단체들을 통해 정책을 집행한다.

청소년활동은 지도자, 시설, 프로그램, 그리고 단체를 중심으로 정부에서 엄격하게 자격과 조건을 규정하고있다. 프랑스의 청소년활동은 애니메이션이라는 활동과 관련하여 이해되어야 하는바, 이는 현대 기계문명에 의해 손상된 인간성을 회복하려는 의도로서 프랑스 정부는 사회교육의 관점에서 이런 목표달성을 위해 다양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이들이 바로 청소년지도자인 Animateur이다. 실천적 기술을 중시하는 Animateur의 자격은 크게 3단계의 수준으로 구분되며 18세이상의 연령조건과 전문적 연수과정을 거쳐 부여된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바캉스(여가)센터이다. 프랑스 전역에 2000개 이상이 있다.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년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하는 이 시설들은 정부에 의해 인가된 단체들에 의해 관리되는데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지식과 기술(Know-How)을 지닌 청소년지도자(Animateur)들을 배치하고 있다. 청소년 대상의 이러한 시설들은 유아(4-6세)와 청소년(6-18세)로 구분하고 그 시설의 관리및 청소년들의 지도를 위한 조건들을 법규로 엄격히 규정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은 국가가 주체가 되어 전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국가의 청소년활동정책 프로그램과 청소년 개인이 활동의 주체가 되는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국가의 청소년 정책 프로그램은 국가의 청소년 정책방향과 관련하여 청소년들의 사회진출과 취업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여러가지 연수와 적응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또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에서 여가활동 프로

그램을 제공해 주며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와 국제교류활동을 제공해 주는것도 국가의 중요한 임무이다.

바캉스 활동은 프랑스청소년들에게 단체수련, 다른 청소년 성인들과의 교체와 이해, 진취성과 책임감, 새로운 활동 등을 경험시켜 주는 전형적인 여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의 연령이나 활동유형에 따라 수준별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예컨대, 초급수준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생활과 여러가지활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급수준 프로그램들은 입문과정으로 초보적인 기술을 경험시키는데 그리고 상급수준의 프로그램은 한가지 주제를 중심으로한 전문화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5만여개의 단체가 있으며 이들중 약 11%가 청소년과 여가활동에 관계된다. 청소년 단체에 관한 정보는 지방 도단위의 청소년체육부 담당과에 비치되어있다. 국가는 청소년단체의 상호교류와 교육을위해 청소년단체의 사업들과 지도자들에대한 재정지원에 주력한다. 단체들이 국가의(청소년체육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지방의 단체는 도지사에게 그리고 국가차원의 단체들은 청소년체육부의 정무차관에게 승인받는다. 현재 국가적 승인을 받은 단체는 약 350개에 이른다.

프랑스의 청소년 활동정책은 청소년의 사회진출과 취업을 위한 장려활동과 청소년 개개인의 독자적 성숙의 기여 수단인 여가활동등에서 그 특징이 두드러지게 보인다. 이러한 주요 정책내용에 연관된 청소년 지도자의 연수 및 바캉스(여가센터) 센터에대한 지원 또한 청소년 정책의 윤곽을 보여준다. 한마디로 스포츠, 예술, 문화활동과 관련한 여가정책이 프랑스 청소년 정책의 근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여가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본 정책목표를 두고 있다.

참 고 문 헌

- Union Francaise des centres d'évacances et de loisirs, 「Reglementation」, Union Francaise des centres d'évacances et de loisirs, 1994.
- Ufcv, 「Vacances ete 94」, Ufcv, 1994.
- 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éducation populaire, 「Rapport d'activités année 1993」, 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éducation populaire, 1993.
-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Livret d'Accueil」 secretariat d'état chargé,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1993.

3. 미국의 청소년활동과 정책·사업

청소년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 관심은 국가 백년대계로써의 청소년교육(Youth Education)의 측면에서 주로 접근되어 왔으며 여기에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대처라는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청소년교육의 측면은, 미국이 최근 문맹률의 증가, 중등학교 학생의 학업성적 저하 등으로 세계 곳곳의 경쟁국들에 뒤지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이 점차 증대되어 왔으며, 청소년개발의 개념은 미국청소년들은 높은 학업 결손(academic failure), 10대 임신, 약물남용 및 자살율 등의 여러 측면에서 다른 산업국가와 비교하여 현저하게 심각한 상태에 있다는 인식에서 청소년에 대해 근본적인 투자를 하지 않으면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는 우려에서 제기되어 온 것이다.(교육개혁위원회, 1994)

가. 일반 현황

미국에서의 청소년(Youth 또는 young people)은 14세에서 24세까지 논의되기도 하고 18세 미만을 중심으로 보기도 하지만 대체로 국민학생 이상에서 20세 정도에 이르는 연령층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청소년에 관련된 각종 인구통계의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통일된 범주는 없으며 목적과 기관에 따라 각기 다르게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의 청소년인구는 18세 이하를 기준으로 1992년 현재 63,604천여 명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전체인구의 25.6%를 차지하는 것이다. 청소년인구 중에서 30.9%에 해당하는 19,678천명이 소수인종이다.(U.S. Bureau of the Census, 1993 ;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1994)

미국에서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두드러진 변화는 성인으로의 이행기간이 뚜렷히

* 천정웅,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연장되고 있는 것이다. 대학진학은 보다 높은 보수의 직업을 갖게 해 주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교육기간의 연장은 청소년들이 학업을 끝마칠 때까지 재정적으로 독립하기 어렵게 한다. 이러한 경제적 의존의 연장으로 청소년의 혼인연령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가족의 경제적 여건은 대체로 개선되었지만 그 반면 많은 가족 특히 편친가족은 재정적 곤란을 받고 있다.

최근 미국의 청소년지표를 보면 청소년생활의 중요한 제측면 — 가족, 근로, 교육, 보건, 행태와 태도 등의 여러 측면에서 매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청소년에 관한 한 자료는 미국 전역에서 매일 적어도 2,478명의 학생이 학교에서 탈락하고 2,700명 이상의 10대 소녀가 임신하며 4,900명의 청소년이 폭력범죄에 희생된다. 또 2,000명 이상의 10대들이 가출하며 하루 평균 7명의 청소년이 살해되고 약 1,380명의 청소년이 자살을 기도하며 그 중 13명이 결국 목숨을 버린다는 엄청난 사실을 보고하고 있다.(Children's Defense Fund, 1992)

교육지표의 경우, 현재의 학력성적 수준이 장래 미국의 경쟁력을 충분히 보장해 줄 수 있을지에 대해 가장 큰 의문을 제기하는 항목이 되고 있다. 미국 청소년에 대한 이러한 우려는 1990년 2월 미국대통령과 50개의 주지사들로 하여금 역사상 최초로 국가교육목표(National Education Goals)를 설정하게 하였으며 여기에는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것과 이를 위해 필요한 사회구조의 개선이라는 두가지 목표가 공약되어 있으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소목표로써 보건 복지와 영양을 비롯하여 지역사회 중심의 학교 지원 등의 6개항의 이슈가 포함되어 있다. 이것은 그 다음해인 1991년 “국가교육목표”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으로 “미국 2000: 교육전략”(America 2000: An Education Strategy)으로 발표되었는데 각 주는 이에 따라 매년 그 시행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었으며 연방정부에서는 국가 교육목표에 관한 패널을 구성하여 각 주별로 국가교육목표 달성정도를 평가하도록 하였다.(National Education Panel, 1991)

청소년정책과 관련한 이러한 사태진전은 청소년에 관한 국가적 관심이 “학교 안에서의 교육”에서 학생들의 일상생활을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되었으며 문제가 생기고 난 뒤에야 투자를 하게 되는 그간의 정책을 반성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에 앞서 말한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의 개념과 관련하여 우리는 미국의 청소년은 또한 오늘날 미조직화된 자유시간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미국 청소년들은 교사나 부모가 있는 학교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더 적어지고 있으며 부모 중 한 사람이 집에 있는 전통적인 양친가정은 전체가정의 25%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결국 일상활동 시간의 40%(1년에 2,300시간)는 부모나 교사의 지도감독을 받지 않는 가운데 보내고 있다. 청소년들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안전한 장소는 거의 없으며 그들의 에너지와 지식을 유용하게 적용할 기회도 거의 없다. 약물과 거리 폭력의 위험 속에서 쇼핑이나 비디오 및 TV 보기 등으로 시간을 보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것이다.(N.Y.C Interagency Coordination Council On Youth, 1994)

따라서 청소년개발은 청소년들이 학교가 끝난 후 찾아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safe places), 의미있는 관계성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도감독(supervision), 그들의 에너지와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화된 활동(structured activities) 등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미래에 대한 가치를 믿게해 주는 것이다.

나. 정책 체계

1. 행정조직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조직화된 제도로서 체계적인 청소년활동은 행해지고 있지 않다. 미국사회는 구성자체가 다양성에 기초를 둔 사회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독특한 인종, 인구, 문화적 배경, 경제적 조건, 교육 등의 특색을 가지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정책도 바로 이러한 다양성의 인정 속에서 청소년 각 개인의 바람직한 성장과 미국사회의 공동목표의 추구라는 입장에서 이해될 수가 있다.(강대근, 1980)

미국 정부체제의 가장 지배적인 특징은 헌법에 의해 창설된 연방체이며 50개주 정부에 콜럼비아 특별구정청이 있고 그 아래로 내려가면서 단위가 점점 작은 정부가 존재한다. 미국 국제조사국 발표에 의하면 군(county), 시(municipality), 읍(township), 학구(School district) 등 78,218개 이상의 정부단위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군(county)은 보통 주 바로 밑의 행정단위이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군은 2개 이상의 읍(town)과 수개 촌락(village)을 포함한다. 뉴욕시는 너무나 크기 때문에 5개 독립구(borough)로 나누어지는데, 이 구는 그 자체가 하나의 군과 같다. 한편 수도 워싱턴으로부터 포토막강 바로 건너 버지니아주 얼링턴군은 하나의 도시와 그 교외지구를 합친 것인데 단일 군 행정부에 의해 통치된다.

우선 미국의 청소년관계 업무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보건 및 인간서비스부(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청소년업무를 주로 맡아하고 있으며(조홍식, 1993)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등 여러부처에서 청소년관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보건 및 인간서비스부에서는 아동과 그 가족에 대한 기술지원 및 발달장애 아동을 위한 다양한 가용자원의 이용방안 기획 및 서비스 촉진, 그리고 아동 및 가정에 대한 광범위한 기술지원 등의 업무를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청소년가정청(Administration for Children and Families), 아동진료소(Child Guidanced Clinics), 아동학대 및 유기예방센터(National Center For Child Abuse and Neglect)등이 주요 부서가 된다. 내무부에는 청소년프로그램실을 두어 청소년 수련과 야외레크레이션 지도를 하고 있다. 교육부에는 직업교육,성인교육 담당차관보가 있으며 법무부에는 교정국이 있다. 연방정부에서 주기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백악관 회의'를 개최하여 정책건의를 수용한다.(김영모 외, 1988)청소년을 위한 백악관회의는 현존하는 모든 국가의 정책을 검토하고 청소년과 가정을 강하게 만드는데 필요한 정책대안을 제안토록 하고 있으며 주로 각 청소년단체나 기관에서 제출하는 사업을 심사하고 조정하고 지원하는 것이다.(1990년 청소년법 제82조). 이 회의에는 중앙과 지방의 청소년, 가정복지의 행정대표, 전문가, 일반국민대표로 구성하고 회의가 끝난 다음 대통령과 국회상임위원회에 행정적 후속조치 등에 관하여 보고토록하고 있다. 백악관 회의는 보건 및 인간서비스부 장관이 청소년가정청장

(Commisioner)의 도움을 받아 동 회의를 계획하고 준비하여 시행하도록 하되 연방 정부 각 부처의 경험과 기술, 자원 등을 동원하게 되어 있다(동 법 제83조).(이윤구, 1990)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청소년관련부처도 주와 지방마다 다르지만 주로 각 주의 복지국(Welfare Department)이나 후생행정청 산하의 청소년서비스국(Department of Youth Services)등에서 업무를 맡아한다. (NYC Department of Youth Services, 1994 ; 조홍식, 1993) 각 주의 시·군 행정기관과 교육위원회, 각급 지역사회 센터 등에서 청소년활동 및 복지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군이하의 청소년업무는 성인 교육 및 레크레이션활동, 건강·보건프로그램, 사회복지사업 등의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되어 실시되고 있는데 성인교육 및 레크리에이션 프로그램은 자치체에 의하여 그 주관 부문이 다른 것은 있지만 공원, 레크리에이션 담당국과 교육위원회가 주로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제도적으로 보장된 다양성으로서의 미국은 관련법률이 제정되는 경우에도 연방정부차원에서는 일반적 지침이나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역할의 배분이 주된 내용이 되고 모든 실질적인 계획의 수립과 집행은 주에 따라, 지방에 따라 다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각종 청소년관계 입법을 통해서 지원내용과 예산이 확정되면 등록된 청소년단체들은 일정한 형식을 갖추어 지원을 요청하게 되며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해당 기관에서는 이 요청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지원을 하게 된다.

2. 교육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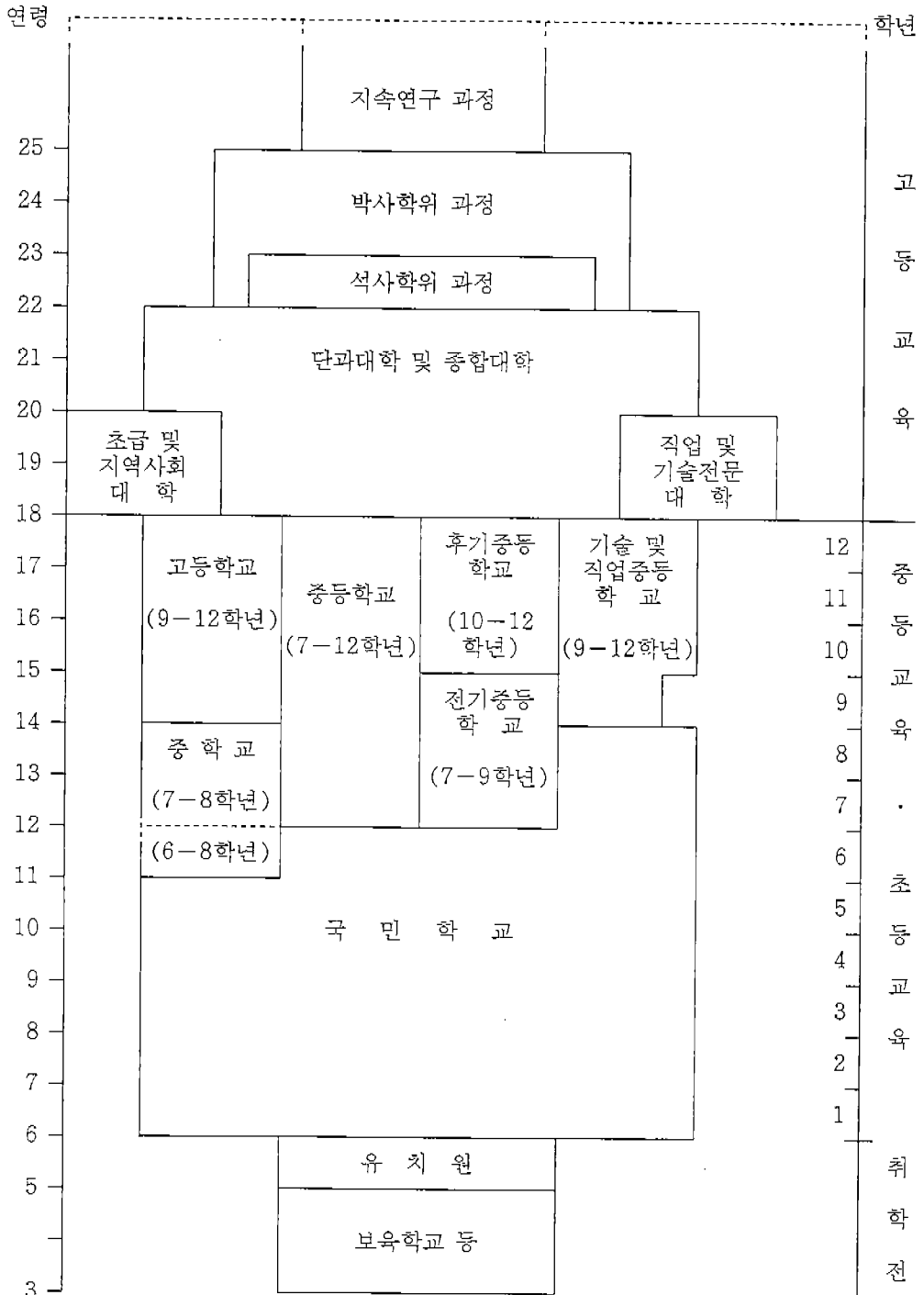
미국의 교육은 주로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며 교육자치체의 실시가 중요한 교육 전통으로 되고 있어 청소년 관계기구이나 단체의 발전역사도 지역에 따라 다종다양하고 매우 복잡하게 얽혀져 있다. 이러한 전통과 기능 때문에 연방정부가 교육에 미치는 영향은 극히 제한되어 있다. 비록 연방정부 안에 교육부(Department of Education)가 있지만, 교육예산의 일부를 지원하는 역할이 고작이며, 학교교육에서 중

요한 교육과정의 결정, 교사의 선발 임용권 등은 지방정부, 즉 주정부의 권한과 책임에 속한다. 그러므로 50개주는 각각 교육제도를 조직하고 있고, 지방자치로 교육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미국 교육의 특징이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학교제도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학교조직은 없고, 대체로 우리나라와 유사한 유치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순서로 되어 있다. 주류를 이루고 있는 학제를 든다면 8-4-4제, 6-3-4-4제, 6-6-4제, 5-3-4-4제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취학전 교육기관으로 3-5세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원과 유치원이 있고, 초등교육에 6-8년, 중등교육과정이 4-6년의 교육년한을 갖고 있으며 고등교육기관이 다양하게 설립되어 있다. 여기서의 학제는 현행 학교제도 가운데 주요 학제만을 포함하나,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학제가 지역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교육개혁위원회, 1994)

그러나 이와같이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는 미국의 학제이지만 기간학제에 꼭 맞추어 운영하지는 않고 학년 중심으로 운영함으로 해서 학생의 학구 및 학교간의 이동이 얼마든지 보장되고 있다. 학생들의 능력과 개개인의 요구를 수용할 뿐만 아니라 제도에 연연하지 않고, 그 운영의 묘를 살려 교육효과를 극대화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렇게도 다양한 학제를 잡음없이 운영할 수 있는 미국 학제의 커다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II-8] 미국의 학제



(자료 : 이규환, 1990 : 392 재구성)

다. 청소년활동정책의 내용

1. 청소년지도자

1) 청소년지도자의 자격과 종류

청소년활동의 성패는 지도자에 달려 있다. 특히 야외활동의 경우 지도자는 많은 책임감을 갖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전달하여 많은 과업을 달성하고 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산출해 낼 것이 기대된다. 프로그램은 그것을 전달하는 사람에 따라 효과적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청소년지도자를 선발·고용·훈련·지도 감독하는 것에는 그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격요건이 있다. 미국의 경우, 특히 청소년활동지도자에게는 성숙과 판단의 두가지 자질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는 객관적인 측정할 수 없지만 대체로 교육수준과 인정가능한 경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한다. 유자격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연령요건은 필수적이지만 그것이 반드시 단일한 기준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단체의 지도자 충원은 실제로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동일한 단체에서도 다르고 단체의 종류별로도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아동학대문제에 관한 일을 할 경우는 소정의 신청 양식에 의해 경찰이나 미 연방수사국의 조사(FBI checks)를 거치는 공식적인 선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지도자의 종류와 유형은 조직의 구조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체 내에서도 다르고 단체의 종류별로도 다종다양하다. 요구되는 전문성(professionalism)의 기준, 단체 내에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제공되는 기회들, 보상의 수준 등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어떤 형태로든 각종 청소년기관·단체는 그들이 후원하는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조력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유급 직원을 고용하고 있다. 전국적 조직을 가진 경우 관련 직원들을 채용하는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 지도자의 하나로써 야외활동프로그램에서 청소년의 지도·감독에 직접 종사하는 활동지도자의 경우를 보면 그 종류와 기능이 크게 3가지로 구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는 청소년활동의 지도감독과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운영관리 요원(Administrative Personnel)이다. 여기에는 캠프 감독자(Camp director), 보조 감독자(assistant director), 사업 관리자(business manager), 식품 서비스 감독자(food service director), 건강 지도감독자(health supervisor)가 있다. 캠프감독자는 야외활동을 운영하는 총책임자로서 직원의 채용과 관리, 활동장 관리 등을 맡고 프로그램의 개발과, 활동 참가자들의 지도 및 활동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둘째는 활동프로그램의 계획과 전개 및 활동 참가 청소년에 대한 지도 감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프로그램 요원이 있다. 단위과정 지도감독자(unit supervisor), 활동 전문가(activity specialists), 활동조정가(activity coordinator) 및 상담원(counselors)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단위과정 지도감독자는 성별, 연령별, 기간별 각 활동과정의 운용 책임자이며 활동전문가는 각 단위 프로그램 활동지도의 전문가로서 테니스코치, 수영강사, 무용강사, 컴퓨터강사 등이 이에 속한다. 활동조정가는 각 단위 활동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각 활동의 시간, 장소, 순서, 전문가 배치, 참가자의 활동 참가 조정 및 활동시행 계획을 수립·조정한다.

셋째는 상담-지도 요원(Counselor)으로 이들은 장애자와 같은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하는 신체적, 의학적, 행동적인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도와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활동을 지도한다. 일반적으로 '보조지도자' 나 '자원봉사자'로 불린다. 보수는 받지 않을 수도 있으나 야외활동이 활발한 시기에는 활동참가자의 50%이상이 특정 요구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라는 점에 비추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ACA, 1994)

2) 지도자 양성과 자원봉사자의 역할

미국의 청소년기관·단체는 직원과 지도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주로 전국 주요 단과 대학과 종합대학 캠퍼스에서 있는 청소년 기관 행정에 관한 경력 중심의 학부 및 대학원 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함으로써 지도력을 개발하고 있다. 이들 대학 중에는 청소년 연구,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교육, 청소년 기관 행정 및 그 밖의 영역에서의 프로그램들을 개발한 곳도 있으며 The United

Way of America는 Kellogg 재단의 지원을 받아 자원봉사자와 유급직원을 위한 지방의 현직연수교육(in-service training) 프로그램을 개설하는 곳도 있다. (Erickson,1990)

청소년 야외활동지도자의 경우 미국야영협회의 전문검정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있는데 주로 캠핑철학, 프로그램, 서비스 및 행정 등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 전문자격 프로그램은 5개의 종류가 있는데 1) 주간 캠프 공인운영자(Certified Day Camp Director) 2) 숙박 캠프 공인운영자(Certified Resident Camp Director) 3) 공인 회의운영자(Certified Conference Director) 4) 공인 프로그램 지도자(Certified Program Supervisor) 5) 공인 부지관리자(Certified Site Manager) 등이 선택가능하다.(ACA, 1994; 체육청소년부, 1992)

이들 각 과정은 연령, 교육, 전문경력, 승인, 캠프인가 표준, 윤리강령, 전문지식 및 직업경력, 특별기관 또는 과정이수 등에 있어 각기 다른 최소의 필요조건이 있다. 한 예로 캠프운영자가 협회에 의해 공인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연령, 교육, 경력, 전문경험을 갖추고 협회가 운영하는 공인운영자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공인운영자 코스는 캠프운영자 자격검정을 위한 것으로 검정과정의 최고수준이다. 과정은 단체 생활을 통하여 아이디어와 정보교환을 하고 그들의 철학이 그들의 캠프조직과 직원 및 프로그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조사하는 것이다. 최소기준은 학사학위 소유 과거 2년 안에 현장훈련 유경험, 운영자가 되기 전 최소 16주간의 캠프행정 경험이 있어야 한다. 이러한 조건들이 충족되면 협회의 전국자격위원회로부터 공인캠프 운영자(Certified Camp Director) 자격을 받게 된다.

청소년활동에 있어서 자원봉사자의 역할과 노력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청소년 회원에게 프로그램을 전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단체의 거의 전부가 자원봉사자의 서비스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집단, 클럽, 분단(troops) 및 팀의 지도자, 코치, 조언자, 안내자로서의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지도력의 충원, 훈련 및 지속적 지원은 청소년관련 기관과 단체의 사업에서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개별적인 단위의 활동을 제대로 지도하지 못하면 프로그램이 실패할 수도 있으며 매우 드물기는 하지만 오히려 청소년에게 위

협을 초래할 수도 있다. 좋은 프로그램이란 일반적으로 부모와 성인의 폭넓은 참가와 지지가 있을때 가능한 것이다.

자원봉사자들은 대부분 여성들이며 이러한 전통적인 자원봉사자 기반이 여성들의 취업증가로 허물어지고 있다. 조사에 의하면 일하는 여성들은 자원봉사를 그만두지는 않지만 그들 자신의 개인적인 발전과 관련있는 분야에 참여하고 싶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소년단체들은 학생, 미혼남녀, 자녀 없는 부부 및 은퇴자들과 접촉하고 있다. 유럽 청소년 집단에서 일반적인 동료 지도력 (peer leadership) 도 또한 도입되고 있다. 단체들은 자원봉사자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으며 자원봉사자들의 관심과 기술에 과업을 조화시키려고 시도함으로써 그 부분을 다하고 있다. 단체들은 또한 훈련 과정을 학술경력으로 인정하고 자원봉사자의 활동경력을 공식적인 이력서의 일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동기유발요인(incentive)을 제공한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지도자는 회원의 욕구에 대한 회원들의 개념에 적응하지 못하여 비난받기도 하며 많은 이유로 지도자들은 집단의 세력 다툼에 휘말리기도 한다. 청소년들이 때때로 합리적이지 않거나 실수를 하지만 집단을 통제하려는 지도자 자신의 욕구가 스스로 알아서 지침을 내리고자 하는 회원들의 지극히 정상적인 욕구와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 너무 잦다. 이런 점에서 청소년지도자는 단체내에서나 활동집단 밖에서 분별력과 확고함과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그러한 상황에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지도자들은 또한 유급의 직원인 경우에도 낮은보수 (low reward) / 낮은 수요(low demand) / 낮은 생산성(low productivity)이라는 악순환의 고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직원의 능력과 보상을 높이는 것은 여러 단체에서 우선시 되는 사항이 되었고 많은 국가적인 노력이 행해지고 있다.

2. 청소년수련시설

1) 시설 현황과 종류

미국에서는 어느 곳이나 각 지역마다 특징을 가진 수많은 단체가 있다. 특히 근린 지역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의 각종 활동을 위한 청소년센터나 소규모 회관, 집회장소 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 우범청소년들을 위한 전문적인 치료 중심의 청소년 시설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야외활동과 관련한 시설과 야영장 등의 경우도 미국캠핑협회의 공인을 받은 것만 해도 전국적으로 약 2,400여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야외수련활동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이 약 2,000여개, 야영과 숙박활동을 위한 장소를 제공하는 형태의 시설이 약 430여곳 있는 것으로 미국야영협회의 시설편람은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황은 미국캠핑협회의 인가를 받은 공인 시설들이며 이외의 각종 비공인 활동시설과 야영장도 많이 있음은 물론이다.

야외수련활동을 직접 운영하는 시설의 경우 운영형태별로 보면 크게 숙박시설을 갖추지 않고 참가자들을 매일 집과 활동장 간을 운송시켜 참가시키는 주간(day) 활동시설과 활동장에서 숙박을 하며 여러가지 활동에 참가하는 숙박(Resident)시설로 구분된다. 운영 주체별로는 영리목적의 사설 활동장, 교회시설, 사회봉사기관 운영 야외활동시설, 보이스카웃·걸스카웃·YMCA 등과 같은 단체운영 시설 등이 있다. 이용 대상자별로는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 청소년과 성인을 함께 대상으로 하는 곳으로 대별되며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소년만 받는 곳, 소녀만 받는 곳, 함께 받는 곳으로 구분되고 각 활동장마다 대상 연령과 성별, 프로그램 기간과 비용 등이 상이하다. 협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2,000여개의 야외활동시설 중에서 청소년만을 대상으로 하는 곳은 약 1,700여개에 달한다.

각 활동장의 부지, 시설, 장비 등은 입지여건과 위치지역, 참가대상, 연령, 성별 및 운용 프로그램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부지의 규모도 매우 다양하며 시설도 배구장,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보트·카누장, 하키장, 테니스장 등의 스포츠 시설과 농장, 동물원 등의 자연학습장, 컴퓨터, 공작, 음악, 미술, 무용, 연극 등을 위한 시설, 강당, 식당, 숙박시설, 극장, 샤워장, 기타 캠프화이어와 줄타기 등 야외활동을 위한 시설 등이 있다.(ACA, 1994 ; 체육청소년부, 1992)

또한 각 활동장에서 설치·운용하고 있는 시설·장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인

경(Accreditation)을 받을 수 있으며 활동장과 시설에 따라서는 정신적·신체적 장애자를 위한 특수 프로그램을 별도로 운영하는 곳도 있고 연령, 문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일정한 특수집단만을 주 고객대상으로 하는 곳이 있다. 참가대상 청소년의 연령은 대체로 5세에서 15세까지이나 각 활동장마다 상이하고, 청소년만을 고객대상으로 주간에만 운영하면서 일반프로그램만 제공하는 곳까지 있어 각 활동시설마다 숙박여부와 대상, 연령, 제공하는 프로그램 및 주 고객대상이 매우 다양하다. 운영기간은 대체로 6월-8월까지가 제일 많고 년중 운영하는 곳도 있다.

2) 시설의 설치 운영 인정요건

청소년시설이 캠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미국캠핑협회가 정의한 캠핑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 매년 신청서와 관련법 및 규정준수를 나타내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강제표준과 기타 캠프 인정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3) 협회에 의해 결정된 회비와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하고, 4) 숙박 캠프(Resident Camp)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과반수가 적어도 연속된 5일 이상이어야 하고 주간캠프(Day Camp)의 경우에는 연속된 5일 이상이거나 14일 이내에 5일간을 운영하여야 하며, 5) 전형적인 캠프 프로그램 운영일에 협회 공인방문자에 의해 점검을 받아야 한다.

여기서 표준(Standards)은 쾌적한 캠핑에 필요한 정책, 절차 및 실행 등을 위한 안내지침을 설정하는 것이다. 표준은 건강과 안전에 초점을 두지만 “인정”이 참가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인정”은 일반대중에게 그 캠프장이 캠핑업계의 전문가에 의해 설정된 표준에 적합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적어도 매 3년마다 2명 이상의 훈련된 외부 전문가가 캠프를 방문, 표준에 따라 운영되는가를 점검한다. 주별 허가기관의 검사와는 달리 협회의 인정은 임의적이다. 협회는 인정기준(Accreditation Criteria)에 맞지 않는 캠프장을 폐쇄하거나 벌금을 부과할 권한은 없고 다만 인정지위를 박탈할 권한만 갖는다. “허가”(Licensing)는 연방과 주의 법령에 의한 기초위생과 음식제공 등 최소한의 기준시행에 초점을 두고, “인정”은 최소한의 허가기준을 넘는 표준에 대한 운영의 평가와 교육에 초점을 둔다.

이러한 캠프인정 표준(Content of the Standards)은 약 300개에 달하는 데, 협회의 표준은 수준높은 캠핑에 기본이 되는 사항이 충족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모든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비슷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표준은 크게 장소와 시설, 행정, 수송, 인사, 프로그램, 건강, 활동부문으로 대별된다. 1) 장소와 시설표준은 음식제공, 충분한 숙소의 제공(Resident Camp의 경우), 화장실 및 세면시설, 화재예방, 규칙시행 보호장치 등을 포함한다. 2) 행정표준은 안전규정, 비상절차 및 위험관리계획을 포함한다. 3) 수송표준은 운전자의 자격과 훈련, 차량관리 및 안전절차를 포함한다. 4) 프로그램 표준은 활동리더쉽자격, 안전규정 및 활동시행절차를 포함한다. 5) 건강표준은 건강진료 감독, 응급처치기구와 인원의 가용성, 건강기록 및 검진표의 이용, 검진절차 및 비상수송 이용성을 포함한다. 6) 활동기준은 수상경기, 여행, 승마 등이 제공되는 경우에 직원자격과 이러한 활동들의 시행이 포함된다.

강제표준은, 1) 캠프장이나 사전에 서면 약정된 지역 비상업무 기관에 의해 항상 제공되는 비상수송 수단, 2) 항상 이용가능한 응급처치 시설 및 내과 의사, 등록된 간호원, 비상의학기술자, 보조의사, 미국 적십자 응급처치 표준공인자, 응급처치의사 또는 동등 자격 중 어느 하나의 자격을 소지한 직원, 3) 수상경기 프로그램은 미국 적십자 인명구조 훈련, YMCA 인명구조, 보이스카웃 인명구조, 로얄 인명구조 또는 동등 자격 중 하나의 자격을 소지하고 있는 직원에 의해 감독되어야 한다. 4) 야영자와 직원의 이전 진단 및 치료기록, 예방접종, 알레르기(비의학 종교캠프를 제외함), 특수취급 여부에 관한 건강조건 등의 사항을 포함한 건강기록 5) 2층이상 숙소의 비상구, 6) 정문 또는 입구 이외의 최소한 1개의 비상구, 7) 총기 및 탄약의 안전보관, 8) 가스, 인화물질, 폭발 및 독극성 물질의 안전관리, 9) 숙박시설의 비상구 설치, 10) 응급수송수단 및 응급처치 의료진 구비, 11) 수영 및 기타 수상경기 등에 인명구조원 배치 등의 여러가지 기준에 부합되어야 한다.(체육청소년부, 1992)

활동장으로서의 “부지인정”은 캠프장과 같이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참가자들을 위해 직접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자들이 스스로 프로그램을 운영하

는데 필요한 시설을 단지 빌려주기만 하는 캠프장에 적용된다. 인정된 부지(Approved Site)는 소유자 또는 운영자가 제공하는 부지와 서비스가 표준에 적합함을 의미한다. 즉 프로그램은 이용자들이 직접 운용하기 때문에 표준에서 제외된다.

부지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특히 협회가 정의한 “캠핑” 프로그램 시행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부지를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협회 표준을 적용해야 하고 자연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부지를 갖추어야 한다. 부지인정 표준내용에는 1) 부지표준 : 화재예방, 화장·세면실, 숙박시설, 목욕시설, 음식제공시설 2) 행정표준 : 수송, 건강, 위험관리계획, 인사 3) 활동표준 : 수상경기, 승마(제공되는 경우에 한함) 등이 있다.

3. 활동사업과 주요프로그램

미국의 청소년정책사업과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은 청소년이 있는 모든 미국가정과 시설에 주어지고 있을 만큼 청소년사업의 내용과 규모는 방대하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보건 및 인간서비스부의 업무와 관련한 사업만도 전국학교 점심프로그램(National School Lunch Program), 아동학대대책, 가정폭력, 범죄피해자 지원, 미성년 소녀의 임신문제, 모자보건 서비스보조, 이중언어교육보조, 이민가족의 중등교육보조, “집이없는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사업, 소비자과 내집짓기(Hoom-Making)교육, 예술교육보조, 하계청소년 취업보조 등 일일이 재목을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청소년관계사업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이윤구,1990)

미국 청소년정책사업의 연방-주-지방정부로 이어지는 행정체계를 보면 연방정부는 주와 지방정부에 대해 매우 광범위하고 일반적인 최소한의 기준과 프로그램 범주를 정하고 프로그램 시행의 세부적인 사항은 각 주와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정하여 시행하기 때문에 지역별로 조직형태나 프로그램의 내용이 상이한 특징을 갖는다.(조흥식,1993) 청소년들에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은 청소년과 지도자와 성인이 함

게 참여하여 계획하고, 계획된 프로그램은 학교나 지역사회, 또는 사회 단체가 단위가 되어서 실시하고 주정부나 연방정부는 이를 지원하고 있는 것이다.

1) 공공정책사업 (뉴욕시의 경우)

뉴욕시의 청소년업무는 청소년국(Department of Youth Services)에서 맡아 하고 있으며 청소년국의 활동 사업은 주로 시 전역에 있는 600여개의 지역중심단체들과의 계약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원활한 업무협조와 사업조정을 위해 “청소년업무 조정협의회”(Interagency Coordinating Council on Youth Services)를 구성 운영한다.(N.Y.C. Department of Youth Services Fact Sheet, 1994) 여기에서는 뉴욕시 청소년업무조정협의회(NYC-ICC)의 운영과 1993년의 주요사업 및 청소년국의 1994년도의 주요사업 일부를 소개하기로 한다.

(1) 뉴욕시 청소년업무조정협의회(NYC-ICC)

뉴욕시 청소년업무조정협의회(NYC-ICC)는 청소년서비스 업무의 중복과 분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권고하고, 청소년서비스 업무의 개선에 대한 회원기관으로부터의 제안을 검토하며, 시장에게 현존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기관간 사업계획을 권고하는 목적으로 1989년 지방법 제 18조에 의해 설립되었다.(N.Y.C.-ICC, 1994)

뉴욕시 청소년업무조정협의회(NCY-ICC)는 1994년 현재 23개 사업기관, 12개 시장 직속실, 공공도서관 및 뉴욕시 연방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청소년국이 의장직을 맡는다. 1994년 MOIPVC, 소비자문제국, NYC교통국, 시장직속 이민문제 사무소, 시장청소년자문위원회 및 주지사실 등이 새 회원기관으로 가입하였다. 협의회(NYC-ICC)기관간의 협조는 각 기관은 각자의 명령체계, 계약 및 계획들을 가지고 있으며 이미 여러 형태로 수개의 협동사업을 행하고 있는 기관도 있기 때문에 결코 쉽게 이루어 지고 있지는 않다. 그러나 단위 기관장들과 다른 기관의 회계 및 프로그램 직원들의 지원을 통하여 협의회는 많은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다. 뉴욕시 청소년업무조정협의회(NYC-ICC)는 1993년의 경우에도 이전에 시작된 시범사업을 비롯하여 많은 프로젝트를 실행했다.

① Beacon 대상지역 선정 : 1993년에 협의회(ICC)의 가장 큰 사업 중의 하나는 11개의 새로운 Beacons(학교중심 지역사회센터)의 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이었다. 협의회(ICC)는 Beacon 대상지역 선정 소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여기에는 부시장실 (the office of the deputy mayor)를 비롯하여 14개 기관으로 이루어졌다. 동 위원회는 적절한 기준을 논의하여 선정하였으며 통계를 모으고 분석하여 11개 근린지역을 부시장에게 추천하였다. 기준에는 빈곤지역을 고려한 인구조사 지역의 수 ; PINS(지도감독이 필요한 사람) 사례의 수, 청소년비행 사례의 수, 아동학대 예측보고서의 수 등이 포함되었다.

② 권리·책임카드제 : 청소년과 경찰간에 일어나는 여러가지 사건에 비추어 협의회(ICC)는 “권리와 책임”카드를 만들었다. 이 카드는 지갑이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게 되어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분야 — 교육, 보건, 투표 및 경찰에 대한 존중 등에서 가지는 권리와 책임에 관해 알려주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관련되는 유용한 전화번호들이 적혀있다. 예컨대, 경찰페널(부문)을 보면, 경찰과 접촉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어떠한 모욕적인 말이나 몸짓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③ 대화 프로그램 : 2가지 유형의 대화 프로그램이 기관간 조정과 협력을 통해 수립되었다. 첫째, 경찰/청소년 대화 프로그램은 많은 준비끝에 9월에 개최되었다. 경찰/청소년대화 시리즈는 청소년사업국과 뉴욕경찰국간의 조정된 노력의 결과이다. 이 시범사업의 목적은 경찰관과 그들이 순찰하는 지역사회내 청소년간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이다. 포맷은 지역사회의 경찰관과 청소년단체 직원들이 함께 시 밖의 멀리 떨어진 곳에서 1박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함으로써 두 집단은 공통적 차이점, 함께 일하는 법 등을 알게 되는 고도로 구조화되고 전문화된 커리큘럼에 참가하는 것이다. 이러한 시범적 활동사업은 경찰관과 청소년 자신들이 함께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둘째, 시청/청소년 대화프로그램 — 현재는 청소년들에 의해 “청소년이 최고인 회의”로 불리어지고 있는 것으로 — 은 지속되고 있으며 아주 성공적이었다. 청소년사업국과 시장실 청소년자원위원회가 이 회의를 조직하고 운영한다. 매주 마다 시 전역의 학교, 지역중심단체 및 종교기관 등으로부터 온 약 30명의 청소년

들이 시청에 와서 국장들이나 다른 고위 정부관리들을 만난다. 청소년들은 편안한 상태로 초청자들의 생각과 권고사항들을 교환하는데 참가하는 기회를 갖는다.

④ 공개 청문회 : 협의회(ICC)는 기관조정에 관한 공개청문회를 개최하였다. 서비스 수혜자인 청소년들을 여러기관에서부터 참여토록하였으며 가정 보호제도, 청소년 법무 및 보호관찰제도 및 보건국과 기타 기관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는 청소년들로부터 의견을 들었다. 이 청문회는 청소년들이 몇 가지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의 시 기관 이상에서 처우를 받게될 때 어떻게 청소년이 지내게 되는가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하는 계기를 제공해 주었다.

⑤ 청소년설비/프로그램의 공인 : 이 사업은 코로 재단과 공동으로 아동을 위한 시설과 아동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위해 청소년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기존의 면허와 공인 요건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하나의 과정을 시작한 것이다. 이 사업을 통해 관청 전체에 가장 효과적인 기준과 보장조항을 적용할 하나의 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이 프로젝트는 청소년에 대한 서비스 규정조항과 뉴욕시의 청소년의 안정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일부조치에 책임있는 다양한 시 기관에 대한 조사연구도 포함하였다. 협의회(ICC)는 이러한 일을 완수하는 가장 효과적인 메카니즘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2) 청소년국의 주요사업 (1994년도)

① “Street Outreach”사업 : 이 프로그램은 16개 근린지역에서 연중무휴로 실시되고 있다. 훈련되고 경험있는 청소년지도자(Workers)들을 선정하여 거리에서 “시간을 보내는” 청소년들과 직접 접촉하도록 함으로써 그들과 긍정적 관계를 맺어 청소년들의 태도, 가치 및 행태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지역중심단체(CBOs)가 운영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자(Workers)들은 비공식적 상담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정보 연결자(Links)이며 옹호자(advocater)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들은 거리의 청소년에게 직접 접근하여 신뢰감을 주고 자신감을 갖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조직화된 활동에 종사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는 청소년을 고용하고, 비공식 상담을 하며 보건이나 고용같은

서비스에 대한 이송서비스 (referrals)를 제공하여, 청소년들이 청소년센터와 레크레이션 프로그램활동에 참여하도록 격려하며, 반사회적 활동과 형태에 연류되지 않도록 청소년을 전환시키며, 청소년을 옹호하며 위기시 개입하는 것 등이다.

② “Project Fill Them Up”사업 : 이 사업은 활용도가 미흡한 공공시설을 찾아 내어 운영을 활성화시키는 사업이다. 그 결과 1994년 현재 뉴욕의 브루클린 및 맨하탄 등에 있는 21개의 공공소유의 레크레이션 센터가 지금은 완전히 활용되고 있다. 이들 레크레이션센터는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조직화된 프로그램을 위한 장소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이 모이는 장소로 안전하고 보호되고 지도를 받는 공간으로써 사용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지역중심단체가 센터 운영을 맡고 있는데 센터의 실내공간을 관리하고, 21세 이하의 청소년을 위한 레크레이션 등의 활동구역을 제공하며, 21세 이상을 포함하여 모든 일반회원들이 “계획 일정이 없는 레크레이션” 기간에 센터에 참가하는 시기동안에는 자체직원들이 지도감독(Supervision)하며 ; 센터에서 다른 프로그램의 대표자들과 함께 일정을 조정함으로써 형식적으로 제공된 활동들을 계속할 수 있게 하며, 센터에서 일어나는 특별 이벤트들을 조정한다.

③ “Inter-Generational Programs”사업 : 이 사업은 성인시민과 청소년 간의 상호작용을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이들 2개 집단이 함께함으로써 서로에 대해 가지고 있는 상부적 생각을 불식시키고 다양한 지역사회에서의 건설적인 활동을 제공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수행한다. 세대간 프로그램은 지역중심 단체들은 주로 성인시민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반하여 일부 기관은 청소년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운영한다. 이 사업은 청소년국과 노인국이 공동으로 감독한다.

하위 프로그램으로는 조부모돌보기, 수행서비스, 쇼핑 프로그램 및 기타 노령자들의 일상 생활의 잔일을 도와주는 일, 정원손질 등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청소년에 대한 수공예 가르치기, 청소년에 대한 학업과목 개인지도, 지역사회 교육/범죄예방 프로젝트 등이 있다.

④ “N.Y.C. Youthline”사업 : NYC Youthline은 하루 24시간 청소년에 대한 상담, 위기개입 및 이송(Referral) 서비스를 제공한다. 적절한 hotlines에 대한 정

보를 얻을 수 있으며, 통화자가 위험상황에 처해 있는지 아닌지, 약물 중독같은 특정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또는 단지 대화가 필요한 지 등에 대해 항상 상담이 가능하다. 이웃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과 서비스에 대한 정보, 운영시간, 서비스 대상자, 서비스의 종류 등이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제공된다.

청소년국은 Youthline의 매일의 운영을 감독할 운영책임자를 지명한다. 운영책임자는 모든 정보의 수집과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지며 Youthline의 인력을 감독한다. Youthline은 훈련된 유급의 청소년(16세—24세)와 훈련된 무급의 청소년(인턴, 연령은 동일)의 직원을 둔다. 유급 전문 상담역 한명은 24시간 상근하게 되며, 교대시에도 최소한 2명의 직원이 상근한다.

Youthline의 기본목적은 모든 청소년관련 프로그램의 중앙집중화된 데이터베이스를 개발하고, 청소년과 부모 및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즉시적이며 종합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Youthline은 서비스의 설명, 일정, 적임 필수요원, 요금규모, 사용언어, 접근가능성 및 서비스에 대한 관리 등을 포함하는 정보를 제공하며 시 전역에 걸친 홍보와 마케팅운동을 통해 더욱 활성화되고 있으며 제공된 정보의 효과성과 정확성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⑤ 학교중심 지역센타(Beacons)사업 : 학교중심 지역센타(Beacons)는 현지 지역사회 단체에서 학교를 중심으로하여 근린내의 청소년을 위한 서비스와 활동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중요한 자원들을 제공하는 것으로 많은 근린지역에서 학교가 청소년들을 위한 최고의 유일한 안전한 장소가 되고 있다. 1994년 현재 약물사용과 범죄가 높은 22개 근린지역에서 설치되어 30,000명의 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1년 365일 아침 7시부터 자정인 12시까지 개방되고 있다.

이 지역센타는 아동, 청소년 및 성인들에게 사회서비스, 보건서비스, 레크레이션 교육 및 직업활동 등을 제공하고 보다 진보된 지역사회 정책과 약물금지를 위한 장소(locus)로서의 역할을 한다. 또한 청소년들이 약물과 폭력을 피하고 건강한 개인과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한 긍정적 태도를 갖도록 하는 프로그램과 기회를 개발하고 현지 경찰과 함께 학교전역이 약물없는 지역으로 되는 “안전한 안식처”를 창출한다.

이 사업의 목적은 청소년에게 레크레이션에서 지역사회 경제 재활에 이르는 긍정적인 집단활동에 참가함을 통해 사회적 관계성의 인식을 개발하고 동료들의 지원과 성인지도를 통해 강화된 긍정적 가치를 개발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이는 지역사회의 지원체제를 구축하고 문제에 대한 지역사회의 해결책을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서비스 대책들을 연결함으로써 청소년과 지역사회 프로그램을 위한 서비스를 개선한다. 이미 많은 재단/기업들이 이 사업의 여러 부문(운동장 혁신, 기술지원 등)에서 상당한 재정 지원을 하고 있다.

사업 운영은 지역중심조직이 맡아하며 지역사회학교 이사회, 교장 및 새로 설치된 부모, 교사, 교회지도자, 청소년, 민간과 시의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자문위원회가 협력한다. 현재 공간의 활용을 촉진하고 서비스 제공자에게 대한 운영시간을 확대하기 위한 과정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며 뉴욕시 보건국, 인간재원국, 청소년법무국, 보호관찰국, 아동복지국 등이 이 사업에 공동으로 참가하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⑥ 약물예방 모델 프로그램 : 약물예방 모델 프로그램은 경범청소년들을 더 심각한 범죄로 부터 보호하여 사법기관의 처벌을 받는 정도의 범죄를 범하지 않도록 전환시키며, 청소년과 그 가족이 이미 약물을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 개입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것은 현지 경찰서와의 협력으로 지역중심단체가 운영하는데 경찰국과 제휴하고 있다는 점에서 독특한 시범사업이며 주와 시의 약물남용기관의 지원을 받으며 청소년에게 영향을 끼치는 범죄, 폭력 및 약물에 관한 문제를 말한다. 따라서 이 프로그램은 가족상담과 지역사회 서비스에 의해 지원되는 전환프로그램 요소와 약물개입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전환의 요소에는 9개의 목표 근린지역마다 경찰 청소년 카운셀러(Precinct Youth Counselor)를 상주시키는 것이 있는데 이 카운셀러는 뉴욕 경찰국 청소년 담당관과 함께 경범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과 이송(referrals)서비스를 제공한다. 약물개입의 요소에는 개인 및 집단 약물상담과 가족상담 및 약물프로그램에 참가하는 청소년에 대한 지역 중심의 전문서비스를 제공한다.

⑦ “City Sports” 프로그램 : 이 프로그램은 성과 민족성, 인종 및 신체능력

이 각기 다른 청소년들을 하나의 다양한 활동으로 통합시키는 근린중심 스포츠 및 여가시간 활동을 촉진시키는 것이다. 이 활동은 청소년들의 상호작용을 증대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여가시간을 보다 건설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경쟁심을 증대시킨다.

City 스포츠 프로그램은 뉴욕시(NYC) 전역의 근린에서의 청소년에게 스포츠의 범위와 여가시간활동을 확대한다. 또한 이 프로그램은 청소년개발의 요소 즉 보건, 영양적, 신체적 건강에 대한 자각과, 성교육, 대인간 기술, 폭력 및 편견 등에 대한 자각을 스포츠 커리큘럼으로 병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프로그램은 또한 근린지도자(공식적, 비공식적) 근린기관(종교기관, 학교 등)부모와 여타 가족성원 및 노령자, 시민 등과 연계하고 그들을 활용한다.

조직 및 운영은 지역중심단체들이 대단위의 지리적 지역에 대한 행정관리 주체가 되어 활동한다. 지역 단체들은 장비와 물품의 구매 및 재고관리를 맡으며, 비영리 “자생” 조직이나 비가입 주체를 충원하고 경기를 조직하고 코치기술을 가르키며 팀 코치와 심판들의 급료를 제공하고 자원봉사자의 충원과 훈련을 지원한다.

2) 민간 부문의 주요 활동프로그램

민간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은 각 기관마다 매우 다양하며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으며 사업 대상과 기관의 특성 및 시범적인 적용 결과 등에 따라 수많은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여기서는 청소년단체와 청소년 야외 활동시설에서 일반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대해 개관하기로 한다.

(1) 청소년단체의 프로그램

청소년단체의 가장 일반적이고 역사가 오래된 프로그램으로는 퍼레이드, 피크닉 개최, 합창 대회 및 기금 적립사업 활동이 있으며 이는 오늘날까지 수행되고 있다. 청소년단체 중에는 스포츠 팀이나 취미 클럽과 같은 단일 영역에 활동의 초점을 두는 그룹들이 있으며, 보다 넓은 시민권(citizenship)이나 품성 훈련 목표(character-building goals)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할 수도 있다. 보다 큰 단체들의 경우 육체적 정신적 장애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채택하거나 어떤

단체들은 학습 장애 아이들과 함께 일하도록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있다. 그렇지만 모든 단체들이 이러한 변화를 달성하기 위해 요구되는 자원이나 경험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Erickson, 1990)

① 야외 캠핑 : 옥외 생활과 캠핑은 단체들의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많은 단체들이 자체 시설과 활동장을 소유하고 있으며, 회원들을 위하여 낮은 비용, 평일의 주간에 행하는 어린이를 위한 캠프로 밤에는 집에 돌아가는 잘 짜인 주간 야외활동 (day camping) 이나 숙박활동(resident camping)을 제공한다. 그러나 많은 단체의 캠핑 프로그램들이 인가 기준을 넘어서지만 그렇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은 캠프시설의 인정여부를 잘 파악하여야 한다.

② 여름 프로그램 : 여러 단체들, 특별히 고등학교 청소년을 위한 단체들은 실제 캠핑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여름 동안 여행, 지도력 개발 및 서비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모든 청소년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단체도 있지만 지정받거나 초대에 의하여만 참가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일부 체육 단체들은 자체 회원들을 위하여 집중적인 여름 훈련 체험을 후원하거나 제안하기도 한다. 여름 프로그램의 비용은 크게 차이가 나는데, 일반적으로 후원 단체에 의하여 보조금을 받는 것이 얼마나 많은 비중을 차지하느냐에 따라 좌우된다.

③ 야외생활기술 프로그램 운영 : 야외생활기술 프로그램 운영은 청소년들이 야외생활에 흥미를 갖게하고 자연환경에 관하여 배우고 성인들에게 자연가치 또는 최소한 자연환경에 대한 존중심을 전파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여기에는 지구, 해, 물, 기후 및 별로 불려지는 5단계가 있고 각 단계별로 야외생활계획, 안전·응급 조치 및 위생, 요리, 장비지식 및 안전, 매듭, 지도 및 나침반, 자연존중과 경험 등의 7개의 기술분야가 포함된다. 단계별 이수자에게는 기장이 주어진다.

④ 특별프로그램의 개발 : 많은 전국적 단체들은 약물 오남용, 자신에 대한 자각, 인종과 성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의 탈피, 부모 교육, 영양과 건강, 소비자 보호 운동(consumerism), 아동학대예방, 직업탐색, 맞벌이 집 자녀들을 위한 대비, 범죄에 희생되는 아동을 위한 손해배상(restitution) 같은 영역에서 프로그램 자료들을 개발했다.

최근에는 청소년문제들을 정면으로 다루고 있는 단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이들 단체는 회원들간의 약물남용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일에 주력한다. 성적 또는 신체적 학대에 의한 아동 희생자를 위한 자조집단(self-help group)과 이혼, 죽음, 재앙적 질병 같은 가족문제를 체험한 아이들을 위한 지지집단(support group) 또한 등장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단체들은 대부분 지방수준에서 조직되고 있으며 아직 전국적 규모로 발전되고 있지는 않다.

한편, 청소년단체들은 그들이 전국적인 단체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준수할 것이 요구되는데 인가된 기관에 의해 설정된 기준을 맞추는 것 또한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복지를 위해 필수적인 것이다. 특히 1) 캠프나 프로그램 부지에서 물리적인 시설의 유지. 2) 회원을 운송하는 차량의 유지; 운전자의 타당한 면허 자격. 3) 응급 치료기술의 이용가능성 또는 특정한 곳에서는 의학적 전문 기술. 4) 일상활동이나 그룹 활동의 보험 적용가능성 및 기관을 관리하는 성인을 위한 적절한 신탁(fiduciary) 적용 가능성. 5) 코치, 심판, 강사, 부두 관리원, 상담이나 다른 치료적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람 등에 대한 면허와 인정 등의 사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compliance)을 받는 일이 중요하다.

(2) 야외활동시설의 프로그램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야외활동장이나 주간(day) 또는 숙박(Resident)시설 등에서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활동은 학술활동(Academics), 수상경기(Aquatics), 공예(Arts/Crafts), 사이클(Cycling), 환경교육(Environmental Ed.), 민족교육(Ethnic Emphasis), 농사/목장(Farming/Ranch), 하이킹(Hiking), 승마(Horseback), 리더쉽훈련(Leadership Training), 등반(Mountain eering), 야외생활기술(Outdoor Living Skills), 공연예술(Performing Arts), 건강(Physical Fitness), 각종 스포츠(Individual/Team Sports), 여행캠프(Travel Camp), 여행(Tripping) 및 각종 작업 프로젝트(Work Projects) 등으로 크게 대별할 수 있다. (ACA,1994)세부적으로는 수상경기의 경우 수영(강습), 수영(레크레이션), 수상스키, 카누, 조정, 항해, 윈드서핑, 다이빙(스쿠버, 스킨) 등이 있으며 등산 프로그램에는 암벽하강(Rappelling), 줄타기, 창작등반활동이 포함되며, 공연예술 프로그램

에는 드라마, 댄스, 음악 등이 각종 스포츠 활동에는 양궁, 사격, 테니스, 체조, 텀블링(Tumbling)등의 개인종목과 야구, 농구, 축구, 풋볼, 하키, 소프트볼 등의 단체 종목이 있으며 여행캠프활동에는 여행캠프, 뱃짐여행, 카누여행, 자전거여행 등의 프로그램이 참가자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실시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청소년 야외 활동시설에서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특별프로그램과 연령, 문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특수그룹을 주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다. 전자의 경우 천식(Asthma), 행동장애(Behavioural Disorders), 암(Cancer/Oncology), 당뇨병(Diabetes), 정신장애(Emotional Disorders), 간질(Epilepsy), 일반신체장애(General Physical Disabilities), 청각장애(Hearing Impairments), 혈우병(Hemophilia), 학습장애(Learning Disability), 정신저능(Mental Retardation), 언어장애(Speech Impairments), 약물오남용(Substance Abuse), 시각장애(Visual Impairments) 등을 위한 프로그램이 대부분의 활동시설에서 한 개 혹은 수 개씩 운영되고 있다. 후자의 경우 교정을 위한 것(Correctional), 빈민 계층(Economically Disadvantaged)이나 가족(Families), 외국인, 비만자(Obesity) 및 55세이상 노인(Senior citizens) 들을 위한 것 등 연령, 문화, 사회경제적 배경별 주 고객대상으로 구분하고 지역과 시설, 참가대상과 연령, 참가자의 선호, 활동시설 운영자의 철학 등에 따라 각 시설별로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4. 청소년단체활동

1) 청소년단체의 의의와 종류

미국 청소년들은 학교의 특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적어도 한 개 이상의 청소년 단체에 참가하고 있으며 학생의 성적을 평가할 때도 학업 성적에 못지 않게 이러한 특별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정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방과 후나 주말을 이용해서 주당 특정한 시간 자원봉사자로 병역이나 다른 복지기관에 가서 봉사해야 한다. 이것이 졸업을 위한 필수적인 이수과정이 되기도 한다.

현대적 의미에서의 미국의 청소년 단체는 1851년 보스톤에서 생긴 the Young Men's Christian Association (YMCA)과 1855년에 뉴욕에서 등장한 the Young Women's Christian Association (YWCA)로 부터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그 후 1910년과 1919년 사이의 십년 동안 보이스카우트와 캠프 파이어, 걸 스카우트, 4-H 클럽, 주니어 레드 클럽 등이 생겨났다. 이들 단체는 건강, 레크리에이션, 캠프, 야외생활, 타인에 대한 서비스, 기술 개발 등 다양한 활동을 했으며 좋은 습관, 생산적이며 성인 생활 기초가 되는 덕목 함양을 강조했다.

미국의 청소년단체가 공유하고 있는 목표들은 다음과 같다 : 1) 우정을 나눌수 있는 동료 집단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협력하며 일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2) 청소년과 성인이 서로 의사소통하며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3) 청소년의 관심과 문제를 토론하기 위한 공개 토론의 장(forum)을 제공한다 ; 공공 정책의 형성에서 청소년을 위한 대변자로서 이바지한다. 4) 중요한 가치를 지지함으로써 가족 생활을 강화하며 가족 내에서 공유되는 활동들을 제공한다. 5) 최대한 가능한 물리적, 지적, 사회적, 감성적, 도덕적 발전을 촉진한다. 6) 기술과 상황에 대해 통달할 자신감을 개발한다. 7) 자신에 대한 자각(self-awareness)을 개발하고 자부심(self-esteem)을 증가시킨다. 8) 새로운 체험을 통하여 시야를 확장시킨다. 9) 직업 탐구와 바람직한 직무 태도와 습관을 형성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10) 타인의 복지와 사회 제도에 대한 관심을 증진한다. 11) 같은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고 전달하는 것을 통해 표현의 통로를 제공한다. 12)민주적인 의사 결정의 체험과 시민권의 기초를 제공한다. 13) 지도력 기술과 책임감을 함양한다 ; 시간을 계획하고 관리하는 것을 가르친다. 14) 자연 환경과 그것의 이용과 보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킨다.15) 지역사회에 대한 의미있는 서비스의 기회를 제공한다.(Erickson,1990)

미국의 청소년단체로는 대표적인 것으로 국제적인 단체인 YMCA, 청소년적십자, 보이.걸스카우트 등을 들 수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취미.교과목 및 학생친교 단체, 생애교육 및 직업훈련 단체, 스포츠 단체, 정치 단체, 전인적 인격개발 단체, 사회복지 지역개발 단체, 종교적 단체, 자연보호 및 인도주의 교육 단체, 학교 및 지역사회

회봉사 단체, 자립·자조 단체, 유해물질 오·남용방지·예방 단체, 제대군인 및 군사 애국 단체, 인종·민족의식 계승 단체 및 기타 청소년 공제조합과 농·축산 관계 단체 등 각 영역별로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이들은 각각 독자의 조직이나 사업계획을 갖고 있으며 단체 자체의 회비나 사업수입 및 민간재단의 원조나 기부금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단체를 중심으로 본 것이며 각 주 지역사회 단위로까지 본다면 앞서 말한 청소년단체 외에도 이웃클럽(Neighborhood Club) 또는 지역사회 클럽(Community Club)과 교회청소년부(Youth Ministry)가 수 없이 많이 존재·활동하고 있어 그 수는 통계적으로도 파악이 불가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 청소년단체의 특성

그러나 이러한 많은 종류와 다양한 활동 형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청소년단체들은 몇가지 점에서 공통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우선 대부분의 단체들은 전국적 기준(national standards)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으로써 공인을 받고 전국적 조직에 가맹하게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그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충족 정도는 각기 다르며 특히 지역 수준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다음 몇가지 점에서 주요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1) 회원 자격 필요 조건

청소년단체 중에는 모든 청소년들에게 개방되어 있는 것도 있고 성별, 기술의 종류와 수준 또는 관심 분야에서 공통성을 가지는 사람들만이 회원이 되는 단체도 있다. 일부 단체는 남성 또는 여성 만의 부모나 다른 친척이 후원 그룹의 회원이 되어야만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회원 자격 조건은 그 단체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청소년 상호간의 이해와 올바른 인식을 촉진하기 위해 각기 다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이 한데 어울려 활동한다는 목적을 가진 단체에서는 대개 회원 자격 필요 조건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특정한 사회적, 종교적, 또는 인종적인 목적을 가진 단체에서는 회원 자격 필요 조건은 보다 엄격하다.

(2) 지도력 훈련

모든 단체는 지도자들의 훈련을 위해 노력한다. 그러나 실상은 각 단체마다 상당히 다양하다. 지역적으로 이용가능한 훈련은 선임지도자와 “이야기를 나누는 것”같은 비공식적인 것일 수도 있으며 잘 설계된 일련의 분과활동에 참여하는 것과 같은 공식적인 것일 수 있다. 훈련된 지도자는 청소년단체활동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지만, 이러한 지도자는 스포츠와 캠핑 프로그램 및 안전이 가장 우선시되는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하다.

(3) 후원(sponsorship)

일반적으로 후원자들은 전국적 단체의 목표를 수행하며 집단 지도력, 회원 자격 및 프로그램의 지속성을 유지하고자 한다. 재정적인 지원도 하는데 이는 단체의 기금 적립 노력의 필요성을 감소시키며 청소년 회원들이 상업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청소년 단체들은 교회, 공제조합의 지부(lodge), 학교, 부모-교사 단체와 같이 조직된 집단과의 공식적인 후원협의를 필요로 한다. 다른 단체들에 있어서는 관심있는 성인들로 이루어진 비공식적인 위원회로도 충분하다. 조사에 의하면 공식적인 후원 제도가 청소년 프로그램의 안정성과 계속성에 기여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후원 단체들도 지도자의 지위를 차지할 성인을 심사하는데 참여하기 때문에 후원 단체들은 청소년 회원들의 안전을 보증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4) 국제적인 강조

단체 중 일부는 국제적인 연맹의 미국 지부이다. 조직 체계가 미국전체에 있는 단체의 경우에도 해외의 그룹과 연계를 맺고 있다. 많은 단체가 국제적인 시각을 넓힐 수 있게 되는 것을 선호한다. 국제적인 단체들이 벌이는 전형적인 활동 가운데는 해외 여행, 회원 교류, 국제적 서비스 프로젝트 및 펜팔 프로그램이 포함된다. 소수의 단체들은 미국 밖에 거주하는 미국청소년을 위한 특별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한다.

(5) 비용과 상품판매

단체 참가를 위한 비용에는 최저한으로도 대체로 전국적인 회원 회비와 단위활동 참가 회비, 보험료 및 제복비 등이 있다. 이러한 것들은 개별 회원이 부담하거나 후원 그룹이 부담할 수도 있다. 추가 경비는 행사(events)나 장소, 특정 프로젝트 자

료, 캠프 등록 등에 대한 교통비와 입장료에 의해 생긴다. 연장자로 상당히 활동적인 참가자들에게는 도시를 떠난 곳에서의 회의, 박람회, 지도력 훈련 과정이나 그룹 여행에 참가하는 경비가 포함될 수도 있다.

청소년단체들은 또한 수많은 방법으로 필요한 재정적인 지원을 얻는다. 많은 단체들은 현지 자금과 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상품 판매로부터 생기는 수입에 의존한다. 판매상품의 적절성과 판매 캠페인을 하는 단체와 그 관리단체가 받는 이익비율, 이익 분배 방법, 그리고 청소년 판매인을 위한 보호기준에는 여러가지가 있다.

(6) 경쟁과 서비스의 역할

대부분의 청소년 단체들은 여러가지 점에서 경쟁적인 활동들을 지지한다. 참여는 강제적이거나 자발적인 것이 될 수도 있고 개별적인 노력이나 —서로에 대하여 또는 정해진 일련의 기준에 대한— 집단의 노력을 수반할 수도 있다.

매우 경쟁적인 스포츠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도덕 발달 수준이 동료들에 뒤떨어진다는 것이 발견되었다. 그들은 게임이 끝난 뒤에도 다른 사람들을 동료로 보기 보다는 극복해야 하는 일종의 장애물로써 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다루는데 도움이 되고자 개입전략(intervention strategy)이 개발되고 있다. 청소년단체들은 회원에게 다른 사람이나 지역사회를 돕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 조사 결과는 가치교육과 도덕 개발이 청소년들을 그들이 봉사하는 사람들과 연결시키는 일련의 서비스 기회에 의하여 향상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 결 론

청소년에 대한 미국의 국가적 관심은 “학교에서의 교육”에서 청소년들의 일상생활까지 포함하는 것으로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여기에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대처라는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의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청소년개발은 청소년에게 학교가 끝난 후 찾아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safe places), 의미있는 관계성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에 의한 지도감독(supervision),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

술과 에너지를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화된 활동(structured activities)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점에서 미국의 청소년활동정책의 주요 특성을 몇가지로 요약하면서 결론을 맺기로 한다.

첫째, 미국사회는 구성자체가 다양성에 기초를 둔 사회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조직화된 제도로써 청소년정책의 체계적 활동은 행해지고 있지 않다. 일찍 발달된 교육자치제와 실용주의의 추구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전통으로 청소년사업도 지역에 따라 독특한 인종, 인구, 문화적 배경, 경제적 조건, 교육 등의 특색을 고려해서 수립 실시되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관계 업무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보건 및 인간서비스부가 주로 맡아하고 있으며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청소년관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정부 이하의 행정단위에서는 청소년업무를 청소년서비스국에서 담당한다. 각 주의 시·군 행정기관과 교육위원회, 각급 지역사회 센터 등에서 청소년활동 및 복지사업을 주관하고 있다.

둘째, 제도적으로 보장된 다양성이란 특성은 청소년활동의 실체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난다. 특히 청소년 단체활동의 경우 활동 특성과 사업운영의 방법 및 직원과 지도자의 충원 등 단체들 간에는 물론 동일한 단체내에서도 각기 상이한 양상의 나타내고 있다. 특히 지도자의 충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이 요구되지만 구체적 방법과 지도력의 수준 등은 단체별로 각기 다름을 알 수 있다.

지도자의 종류와 유형은 조직의 구조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체 내에서도 다르고 단체의 종류별로도 다종다양하다. 요구되는 전문성(professionalism)의 기준, 단체 내에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제공되는 기회들, 보상의 수준 등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아동학대문제에 종사할 경우는 소정의 신청양식에 의해 경찰이나 미 연방수사국의 조사(FBI checks)를 거치는 공식적인 선발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한다. 청소년야외활동지도자의 경우 미국야영협회의 전문검정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있는데 주로 캠핑철학, 프로그램, 서비스 및 행정 등에 있어 전문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

셋째, 자원봉사자 지도력의 충원 훈련 및 지속적 지원은 청소년관련기관과 단체의 사업에서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 청소년활동의 중요한 지탱물로서 자원

봉사자의 역할과 노력의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는데 청소년 회원에게 프로그램을 전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이다. 청소년단체의 거의 전부가 자원봉사자의 서비스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에 의해 실행되는 역할은 집단, 클럽, 분단(troops) 및 팀의 지도자, 코치, 조연자, 안내자 등으로 단체별로 다양하다.

네째, 미국에서는 각 지역마다 그 특징을 가진 수많은 기관과 단체가 있기 때문에 청소년에 관계되는 기구나 시설 또는 단체를 열거하기란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단체들이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요건을 구비해야 하며 몇가지 점에서 유사한 특성을 갖고 있다.

청소년 단체의 경우 이러한 많은 종류와 다양한 활동 형태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단체들은 전국적 기준(national standards)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으로써 공인을 받고 전국적 조직에 가맹하게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실제로 그 구체적인 적용 요건과 충족 정도는 각기 다르며 특히 지역 수준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원 자격 필요 조건, 지도력 훈련, 후원(sponsorship), 국제적인 강조, 비용과 상품판매 등의 몇가지 점에서 주요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단체들에게 요구되는 기준들은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것이다. 여기에는 캠프나 프로그램 부지에서 물리적인 시설의 유지, 응급치료기술의 이용가능성 또는 특정한 곳에서는 복잡한 의학적 전문 기술, 코치, 강사, 상담이나 다른 치료적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사람 등에 대한 면허와 인정등의 사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여 승인(compliance)을 받아야 된다. 청소년시설의 경우에도 캠프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미국야영협회에서 정한 강제표준과 기타 캠프 인정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캠핑의 종류에 따라 일정기간을 계속 운영하여야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미국의 청소년정책사업과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은 청소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미국가정과 시설에 주어지고 있을 만큼 청소년사업의 내용과 규모는 방대하다는 사

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뉴욕시의 경우 레크레이션, 개인지도, 교정교육, 청소년보건, 알콜 및 약물남용예방, 리더쉽 개발, 가출 및 무가정 청소년을 위한 주거제공 서비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의 제공 및 활용도가 낮은 공공소유의 시설 공간들을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도록 찾아 내고 개발하는 일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민간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는 사업과 프로그램은 각 기관마다 매우 다양하며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사업 대상과 기관의 특성 및 시범적인 적용 결과 등에 따라 수많은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여섯째, 미국의 청소년활동은 일반청소년회원에 대한 사업 뿐만아니라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청소년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청소년야외 활동시설에서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특별프로그램과 연령, 문화, 사회경제적 배경에 의한 특수그룹을 주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많이 있다.

가족(Families), 외국인, 비만자(Obesity) 및 55세이상 노인(Senior citizens)들을 위한 것 등 연령, 문화, 사회경제적 배경별 주 고객대상으로 구분하고 지역과 시설, 참가대상과 연령, 참가자의 선호, 활동시설 운영자의 철학 등에 따라 각 시설별로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지도자의 경우에도 기관의 행정직원(Administrative Personnel)과 프로그램 요원 이외에도 상담자-지지 요원(Counselor)이 특별히 배치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장애자와 같은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하는 신체적, 의학적, 행동적인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도와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활동을 지도한다.

일곱째, 미국의 청소년활동은 교육기관에서 부터 종교기관 경찰 사회사업기관은 물론 각종 민간 단체들이 다양한 설립목적과 프로그램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단체의 경우 주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과 자금모금사업을 통한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 사업을 한다. 이 경우 단체에 대한 지원은 해당 지역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에 의한 계약의 형태를 갖는다.

뉴욕시의 경우에도 청소년국의 활동 사업은 주로 시 전역에 있는 600여개의 지역 중심단체들과의 계약을 통하여 수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원활한 업무협조와 사업

조정을 위해 “청소년업무 조정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교중심지역사회 센타운영 프로그램의 경우도 지역중심조직이 사업운영을 맡아하고 있으며 지역사회학교 이사회, 교장 및 새로 설치된 부모, 교사, 교회지도자, 청소년, 민간과 시의 서비스 제공자 등으로 구성된 지역사회자문위원회 등이 협력한다.

이렇게 볼 때 미국의 청소년활동정책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청소년단체나 지도자, 시설 등 각종 청소년활동 관련 요소에 대한 필요 조건들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중심의 자치적 활동정책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강대근, “미국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참여”, 「청소년활동연구 I」, 유네스코 청년
원, 1980.
- 이규환, 「선진국의 교육제도」, 배영사, 1990.
- 이영숙(외), 「외국의 청소년복지 정책 연구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청
소년개발원, 1993.
- 이윤구, “미국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외국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원, 1990
- 조홍식, “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외국의 청소년복지 정책 연구 -미국과 일본
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체육청소년부, 1988.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편), 「미국의 청소년제도」, 1992.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편), 「미국의 청소년제도 부록」, 1992.
-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역, W.프레드 토튼 & 프랑크 J. 맨리 공저, 「미국지
역사회학교 : 개념, 기능 및 조직」, 교육과학사, 1992.
- American Camping Association, 「Standards for Day and Resident Camps :
the Accreditation Programs of the American Camping Association」,
Martinsville, 1994.
- Children's Defense Fund, 「Child Poverty Up Nationally and in 33 States」,
Washington D.C.:Author, 1992
- Erickson, Judith B, 「Directory of American Youth Organizations」, 1990.
- Glenda Riddick-Norton, 「Social Service Resource Directory 1991-1992」,
1992
- Korean Youth & Community Center, 「Korean Youth & Community Center
Annual Report」, Los Angeles: Korean Youth & Community Center,
1993.

N.Y.C Interagency Coordination Council On Youth, 「Annual Report 1993—1994」, Now York : NYC—ICC, 1994.

N.Y.C. Department of Youth Services, 「Fact Sheet & Department of Youth Services Initiatives」, 1994.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KIDS COUNT DATA BOOK 1994 : State Profiles of Child Well—Being」, Washington D.C.:Author, 1994

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Los Angeles 1994 : State of the County Report」, Los Angeles : 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199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tatistical Charts and Indicators on the Situation of Youth 1970—1990」, New York : United Nations, 1992.

U.S. Bureau of the Census, 「U.S Census of Population」, Washington:U.S.Bureau of the Census, 1990.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1991.

4. 독일의 청소년활동 정책

가. 청소년정책 일반현황

독일연방의 정치적·사회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독일청소년들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으면서 성장하고 있다. 특히 나찌시대에 강력하고 획일화된 청소년 조직과 활동의 경험과 동독체제 내의 청소년정책아래 있었던 청소년들의 상황은 순수한 청소년활동의 동기와 기회를 박탈하기도 하였다.

오늘날 독일연방의 청소년정책은 자율과 지원의 두 축을 바탕으로 수립·시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전통적으로 지방분권제도가 확립되어 있는 독일연방의 청소년은 정치적 이유에 따라 그 이념과 방향을 달리해 왔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역사회의 관심 속에서 활력있는 활동집단으로 지역적 특성을 긍정적으로 나타내며 성장하고 있다. 따라서 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은 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자발성과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독일청소년단체협의회 등 민간기관과 연방정치교육센터 등을 통해 정책의 홍보 및 적절성 여부를 평가하고 있다.

그런데 오늘날 독일연방의 청소년정책은 부문에 따라서 정부의 정부의 정책적 의지가 강하게 개입되기도 한다. 특히 청소년활동에 있어 독일 재통합 이후 서독 청소년정책과 활동사업에 동독 지역 청소년들을 융화하고 이입하려는 노력이 지속되어 왔다. 그러나 동독지역의 청소년들에게 자유롭고 창의적인 활동 동기와 기회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두가지 문제에 의해 장애를 겪고 있다, 그 하나는 재통합에 따른 실업의 증가와 서독 수준에 맞는 급격한 복지 확충의 요구이며, 다른 하나는 서독 청소년활동사업에 동독지역 청소년들이 흡입되기 보다는 새롭게 부딪치는 풍요롭고 감각적인 자본주의 문화와 사회적 성향을 여과없이 받아들여,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활동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동·서독지역 청소년활동

* 노 혁,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 김경준, 한국청소년개발원 연구원

을 통합시키기 위한 사회적 여건과 상황은 좋지 못한 상태이다. 이로 인해 청소년분야에서의 독일연방정부의 고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한편, 유럽통합에 따라 다른 유럽지역 국가의 청소년활동과의 연계방안도 정책수립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드의 상류와 상호이해 그리고 문화적 이질성을 극복하기 위한 프로그램 등에 연방정부의 관심과 청소년활동 단체등의 노력이 점차 집중하고 있다.

사실 전반적인 청소년인구의 감소추세에도 불구하고 재통합 이후 청소년 실업과 복지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청소년들의 요구도 다양해지고 있다. 이에 비해 기존 청소년조직과 집단활동은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다른 국가의 사정과 다를 바 없는데, 기술 및 문명의 발달에 따른 청소년들의 사회적 신분의 상승과 사회에서 숨 쉴 틈없이 쏟아져 나오는 대안적 매력의 증가가 주된 요인이라고 보여진다.

이에 대해 연방정부와 청소년조직들은 새롭게 부각되는 환경활동사업을 개발하고 사회적 소속감 및 집단의식을 심어주는 각종의 프로그램을 강화하고 있지만, 가정기능의 점진적인 약화와 청소년 활동에 있어 통제 및 유인가를 상실시키는 사회환경 등이 청소년들의 조직적·자발적 집단활동에 그리 밝은 전망을 제공하고 있지 못하다.

나. 청소년 정책체계

1. 행정조직

1) 연방차원의 조직

독일의 청소년정책과 행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부서는 연방청소년가정부녀보건성(Bundesminister für Jugend, Familie, Frauen und Gesundheit;이하 “연방청소년청”)이다. 원래 청소년정책은 내무성의 청소년국에서 담당하다가 1957년 그 업무가 가정성으로 이관되었고 다시 1969년에 보건업무가 추가되어 현재의 명칭으로 개칭되었다. 연방청소년청은 청소년, 가족, 여성, 보건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하위부서

들로 조직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청소년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부서의 명칭은 다음과 같다.

① 청소년 일반·기본문제 정책국(Allg.-und Grundsatzfragen der Jugendpolitik)

② 청소년보호법 개혁국(Jugendhilferecht reform)

③ 청소년·가정 법무국(Jugend und Familie im Zivilrecht, Strafrecht und Verfahrensrecht)

④ 청소년사업·연방청소년계획국(Allg.-Fragen der Jugendarbeit, Bundesjugendplan)

⑤ 청소년 직업·복지·시설국(Jugend und Beruf, Jugendarbeit, Jugendbauprogramme)

⑥ 국제청소년사업·청소년정책국(Internationale Jugendarbeit und Jugendpolitik)

연방청소년성은 청소년을 포함한 국민 전체의 복지개선을 그 주된 업무로 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여성·노인문제, 여가·휴양에 관한 문제들도 부수적으로 다루고 있다.

연방청소년자문위원회는 독일정부의 청소년정책을 자문하는 최고기구로서 1965년에 청소년복지법(Jugendhilferecht) 제26조에 의거하여 설치되어 각종 청소년관련 정책·제도에 관한 자문, 청소년관계 법안의 검토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동위원회는 35명의 정규위원과 동수의 대리위원으로 구성된다. 정규위원은 각 주정부에서 1명씩 11명, 시·군연합단체 4명, 청소년단체 6명, 복지단체 4명, 학계 4명, 학생단체, 청소년정치연맹, 노동계, 재가, 카톨릭교회, 기독교교회의 대표 각 1명씩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의장은 정규위원 중에 선출되어 장관의 동의를 받아 임명된다.

2) 주·지방자치제의 조직

주정부의 차원에서 청소년행정은 각 주마다 상이한 행정부서가 전담하고 있다. 예

를 돌면 베를린에서는 청소년스포츠성, 헤센주는 노동복지후생성, 바이에른주는 청소년 전전육성 관계는 문부성, 청소년보호 관계는 내무성에서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차원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인구를 가진 모든 지역에는 일률적으로 청소년성(Jugendamt)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주와 자체제의 청소년청은 그 담당지역 수준이 다를 뿐이며 그 조직의 구성과 임무는 일률적으로 청소년복지법에 의해 규정되어 있다.

청소년청은 국가에서 공적으로 수행해야 할 청소년복지와 관련된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관청으로서 그 주요 업무내용은 ① 일반청소년 복지에 관한 업무, ② 청소년에 대한 개별적인 보조, ③ 사적 청소년 보조책임자의 후원으로 구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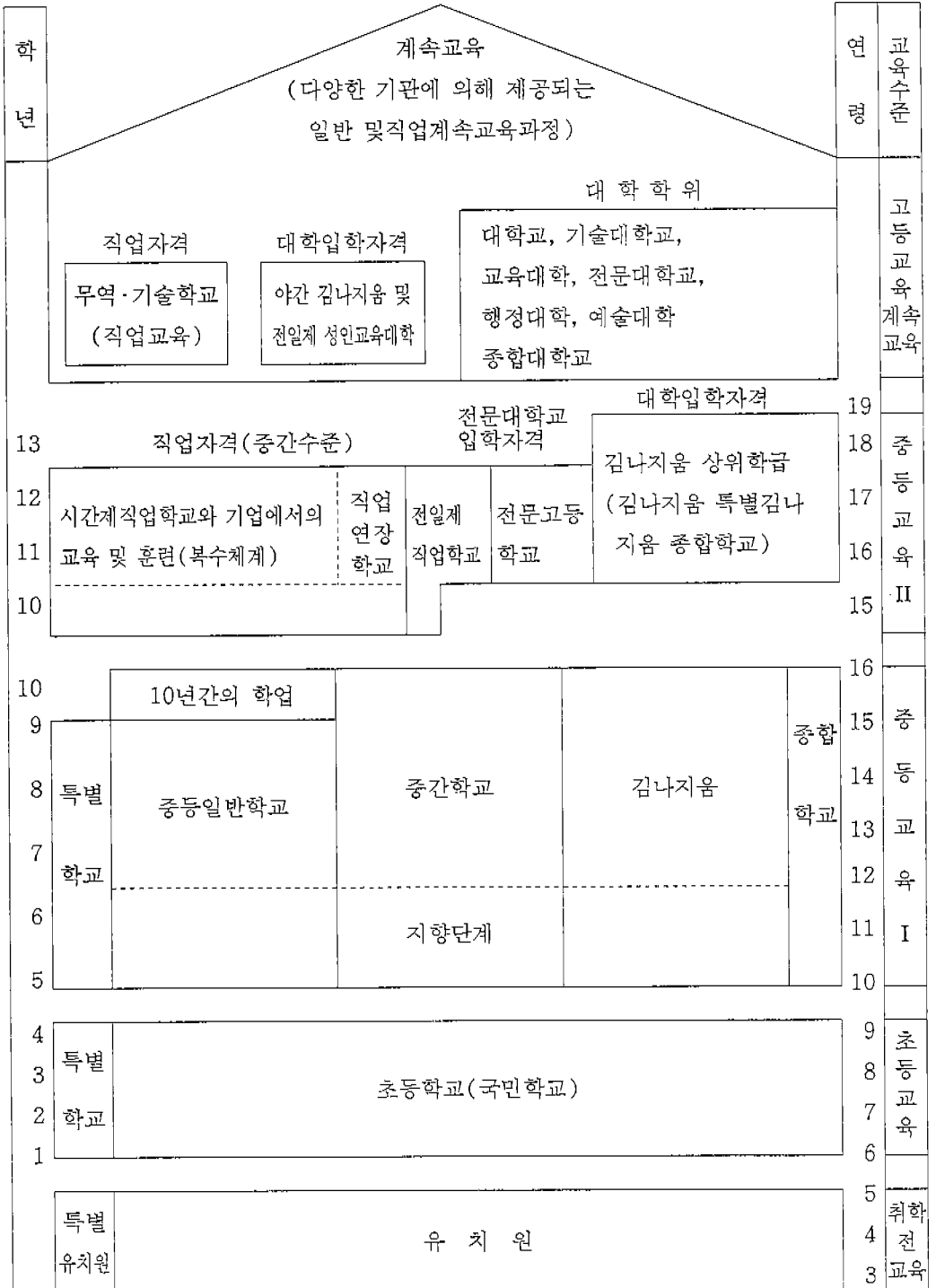
청소년청은 청소년복지위원회와 사무국의 이원적인 체제로 구성되어 있다. 청소년복지위원회는 그 지역사회의 청소년복지에 관한 지방의회의 자문에 답하고 지방의회에서 결의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청소년복지 업무에 관한 세부사항의 결정권을 갖고 있다. 사무국은 청소년복지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집행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아울러 독자적인 청소년복지 관계 업무를 관장하기도 하며, 청소년교육의 영역에서는 민간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업무도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의 청소년행정 조직에서 특징적인 점은 민간 청소년 관계 단체의 활동이 존중되어 단체의 대표자가 행정의 차원에까지 깊게 들어가 의회와 일체가 되어 청소년문제를 다루고 있으며 또한 그것이 명확하게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종원, 1990)

2. 학교교육제도

독일의 학교제도는 기본적으로 각 주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처럼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마다 다소 상이한 편제를 갖고 있는데, 또한 제도상으로 학교교육과 직업교육이 분리되어 각각 독립된 체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 체계가 유기적으로 잘 연결되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II-9] 독일교육체계의 기본구조(1991)



(자료 :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1993)

독일의 의무교육은 원칙적으로 만 6세에 시작되어 만 18세에 끝나게 된다. 이에 따라 만 6세가 되는 모든 어린이는 초등교육단계에 해당하는 기초학교(Grundschule)에 입학하게 되고, 여기서 4년간의 교육을 마친 후 3가지로 구분되는 중등교육 1단계로 진입하게 된다.

중등교육 1단계 교육기관은 먼저 5년간의 교육으로 —독일식으로 표현해서 9학년으로— 졸업하게 되는 기간학교(Hauptschule)와 10학년(6년 교육)으로 끝나는 실과학교(Realschule), 그리고 13학년의 중등교육 2단계까지 이어지는 인문학교(Gymnasium)로 나뉘어진다. 독일 교육제도상으로 기초학교를 포함한 기간학교가 국민학교(Volksschule)로 간주되는데, 그것은 여기까지의 교육이 국민이 받아야 할 최소한의 학교교육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기간학교 외의 중등교육기관, 즉 실과학교나 인문학교의 수료는 기간학교의 졸업보다 고학력에 해당한다. 제도적으로 기간학교 학생들은 졸업후 3년 과정의 직업학교(Berufsschule)에 들어가 직업교육을 이수하게끔 되어 있다(이 직업학교 교육까지가 의무교육과정에 속한다).

실과학교 졸업자들의 진로는 크게 둘로 나누어지는데, 그 하나는 기간학교 졸업자들과 같이 직업학교에 들어가 구체적인 직업교육을 받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문대학교(Fachhochschule)에 진학할 목적으로 2년 과정의 전문고등학교(Fachoberschule)에 입학하는 것이다.

중등교육 1단계에서 2단계로 바로 이어지는 인문학교는 기술대학(Technische Hochschule)과 교육대학(Pädagogische Hochschule)을 포함하는 일반대학교에의 진학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직업교육의 근간이 되는 직업학교(Berufsschule)는 각종 산업분야에 필요한 다양한 기능인들을 양성하는 곳이다. 여기서 실시되는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어떠한 전제(학력)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3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치르는 자격시험에 합격하면, 교육생은 기능사(공) 자격을 얻게 된다. 대부분의 직업학교 졸업자들은 이 자격증으로 각 분야에 취업하게 된다.

직업학교를 졸업한 기능공이 직업학교 교육 이상의 보다 전문적인 기술이나 능력을 습득하기 위해서는 연장직업교육(Weiterbildung)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설립된

것이 전문학교(Fachschule)이다. 그런데 전문학교의 교육은 직업학교에서와는 달리 일종의 학교교육으로 인정되고 있다. 다시 말해 전문학교는 상급 직업교육 기관이자 동시에 중등(학교) 교육기관으로 간주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학교의 입학요건으로 직업교육의 졸업과 함께 기간학교의 졸업이 제시되고, 또한 우수하게 전문학교를 졸업한 자는 원칙적으로 전문대학(Fachhochschule)에 진학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실과학교 졸업생들 중에서 전문고등학교를 거친 자들이 주로 입학하게 되는 전문대학교(Fachhochschule)는 70년대 초에 새로 도입된 교육체제로서 일반대학교의 교육과는 달리 각 산업현장에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실용성에 중점을 두는 고등 교육기관이다. 전문대학교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전문대학 입학자격증과 함께 해당 전공분야의 사업장에서의 실습경험(보통 6개월-1년)이 요구된다. 전문대학 졸업자들에게는 일반대학교의 해당 전공분야에 편입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데, 이 경우 전문대학의 졸업은 일반대학교의 기초과정(1학기)이 끝난 것과 같은 인정을 받게 된다.

원칙적으로 대학입학자격시험(Abitur)을 통과한 인문학교의 졸업자들이 진학하게 되는 일반대학교는 순수학문과 응용학문을 포함한 학문 일반을 연구하는 최고 교육기관이다. 학위를 취득한 대학졸업자들은 사회의 각 분야에 고급인력 내지 전문인력으로 활용하게 되는데, 이 점에서 보면 대학교는 (순수)학문을 탐구하는 곳이자 동시에 최고의 직업교육이 이루어지는 곳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상의 교육제도에서는 학생들의 진로가 너무 빨리 결정된다는 문제점이 있는데, 즉 4년 과정의 기초학교를 마친 뒤 앞날에 대한 진로가 일찍 결정되는데,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설립된 것이 종합학교(Gesamtschule)이다. 여기서는 기초학교의 졸업생들이 분류되지 않고 그대로 입학했다가 상급학년이 되어 기간학교 과정과 실과학교 과정, 그리고 인문학교 과정으로 나누어지게 된다(김수석 외, 1994).

이상에서 언급한 독일의 교육제도에서 독일청소년들의 실제 참여율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50년대 이후 서독에서 교육기회가 급증함에 따라, 15-17세의 학교교

육 참가율이 1960년대 초반에서 1990년대 초반 사이에 2배로 증가하였다. 특히 여자들의 참가는 매우 급증하였다. 오늘날 20세 이하 청소년들의 대다수를 형식교육 및 훈련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 훨씬 더 분화된 선택과정이 교육 및 훈련 체계와 고용 전환기에 개발되었다. 이것은 1945년 이후 세대의 일반적인 교육수준을 향상시킨다는 사회적 목표는 달성되었지만, 또한 이에 상응하여 문제의 소지가 있는, 부정적인 과정도 설치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1960년대 초반에 인문학교, 실과학교, 기간학교의 3부분으로 나누어진 중등학교 교육체계에 있어서 아동의 약 5-7%가 인문학교(Gymnasium)에, 10-12%는 실과학교(Realschule)에 다녔다. 이것은 청소년들에게 보다 상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면에서 긍정적인 선택과정을 만들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앞의 2개 수준의 중등교육으로 연계할 수 있었지만, 대다수가 국민학교(Volksschule)와 기간학교(Hauptschule)로 진학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범위한 구직 및 승진의 대열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중등학교 교육을 마쳐야 한다. 오늘날 매년 학교를 떠나는 사람들의 과반수 이상이 직업훈련을 받기 보다는 전일제 교육을 계속 받는다. 이것이 “형편없는 사람을” 걸러내는 과정인, 부정적인 선택과정을 양산하는 것이다. 현재 기간학교 졸업자격(Hauptschulabschluss) 이상의 교육자격을 갖추는 것이 독일 청소년들에게 있어서 표준이자 평균이다. 1988년 서독 학교 졸업자들의 25%가 기간학교 졸업자격(Hauptschulabschluss)을 가졌고, 37%는 실과학교 졸업자격(Realschulabschluss)을, 32%는 그들에게 대학입학의 자격을 주는 인문학교로 부터 대학입학자격시험(Abitur)을 치르고 떠났다. 6%는 어떤 종류의 졸업자격도 받지 못하고 떠났는데, 남자들의 경우가 여자들보다 좀 더 많았다.

한편, 여자들이 현저히 낮게 나타난 것은 단지 중간수준의 실과학교졸업자격(Realschulabschluss)뿐인데, 1988년에 소년들의 거의 41%가 이 자격을 소지한데 비하여 여자들의 34% 이하만이 이 자격을 가지고 떠났다. 1988년에 20-20세의 사람들 중에서 57%가 학교중심의 자격이나 고용-자중심의 견습형 자격을 막론하고 직업자격을 소지하였다. 즉 모든 사람들이 형식적이고 합법적인 훈련과정을 마쳤다

고 볼 수 있다. 단지 2% 이하는 단과대학 또는 고용자중심의 고등 기술 또는 상업 직업자격을 취득하였고, 0.5%만이 대학학위를 마쳤다(일반적으로 대학교육이 영국에서보다 독일에서 더 길기 때문이다). 같은 해에 25-30세의 56%는 직업훈련을 마쳤고, 5%는 보다 높은 수준의 직업훈련을, 2.6%는 전문대학교 졸업자격(Fachhochschulabschluss)을, 5.5%는 대학 학위를 마쳤다.

한편 이주노동자 또는 인종적 소수의 청소년들은 높은 수준의 졸업자격을 취득할 기회가 더욱 적었는데, 부분적으로 종합학교에 다닐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희박한 3분 체제에 그 원인이 있었고, 이러한 청소년들은 인문학교에 갈 가능성이 적었다(독일에서 부모의 선택은 중등학교 교육의 의사결정에서 합법적이고 결정적인 기반을 이루지만, 대체로 교사들은 추천을 하고 부모들은 그들의 추천을 받아들인다). 1988년에 소수집단의 학교 졸업자의 44%는 기간학교졸업자격을, 26%는 실과학교 졸업자격을 받았다. 그러나 단지 6%만이 인문학교에서의 대학입학자격시험(Abitur)에 합격하였으며, 21%는 아무런 자격없이 학교를 떠났다. 대부분의 무자격 학교졸업자들은 직업학교에 다니게 될 것이다. 이러한 모순은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지만, 지난 10년간에 걸쳐 다소 줄어들고 있으며 독일에서 그러한 경향은 장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Rene Bendit 외, 1993).

다. 청소년활동정책의 내용

1. 청소년활동 지도자

독일의 청소년 전임지도자의 종류는 사회교육가, 사회사업가, 여성 청소년 지도원, 교육사, 보육사 등 다양하여 그 활동영역은 청소년단체, 교육시설, 여가시설 등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에 이르고 있다. 이들 전임지도자는 국가검정 필요성 유무와 급수를 기준으로 각기 두개의 하위그룹으로 구분된다.

〈표 II-2〉 독일의 청소년 전임지도자의 종류

	국 가 검 정	급	수
사회교육가(Sozialpädagoge)	필 요	상	급
사회사업가(Sozialarbeiter)	필 요	상	급
여성 청소년지도원(Jugendleiterin)	불 필 요	상	급
교육사(Erzieher)	필 요	하	급
보육사(Kindergärtnerin)	불 필 요	하	급

(자료 : 청협, 1984, p.37에서 제표. 이종원, 1990, p.234에서 재인용)

청소년지도자의 양성은 먼저 사회교육가는 실과학교(Realschule) 졸업 또는 동등 학력과 2년 이상의 직업경력을 가진 18세 이상의 자로서 고등전문학교(6학기)에서 수학한 후 실습(1년)과 국가시험을 거쳐 자격을 취득한다. 여성 청소년지도원은 교육사나 보육사로서 3년 이상의 실무경험을 가진 23세 이상의 여성으로서 고등전문학교 4학기의 수학경력이 요구된다. 교육사와 보육사는 실과학교 졸업 또는 동등학력을 구비하고 1년이상 관련활동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17, 8세의 자로서 전문학교 수학(4학기)과 1년의 실습을 거쳐서 자격을 얻을 수 있다.

그 밖의 청소년지도자로서는 청소년지도원(Jugendpfleger)이 있다. 청소년지도원은 특별한 자격이라기 보다는 사회교육가, 사회사업가들 중에서 특히 청소년 교육분야에 전문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최근에서 청소년 지도과정을 이수한 사회사업가나 국민학교 교사 중 청소년사업에 참여하는 이들의 명칭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이들 청소년지도자들은 수시로 연방정부, 주정부 또는 지방자치체에서 주관하는 개교육 프로그램센터의 시설을 이용하여 1년 정도 실시하는 것에서 부터 일주일 동안 실시하는 것, 주말에만 실시하는 것 등 그 종류가 다양하고 교육내용도 단순한 정보교환에서 부터 전문적인 특수지도까지 포괄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한편 독일에서는 전임지도자 외에도 청소년지도 자원봉사자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청소년지도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자원봉사자의 교육은 지방자치체를 의시하여 각종 공공기관이나 민간 청소년단체 등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교육방법은 주관단체나 기관의 목적에 따라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원봉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에게는 지방자치체 또는 연방청소년단체협의회에서 자격증을 교부해 준다.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 각종 청소년지도 활동시 자치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많은 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년지도 활동을 위해 통상의 유급휴가 외에도 매년 일정한 기간(12일 정도)의 특별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이종원, 1990).

2. 청소년활동 시설

1) 개방된 문호의 집(Haus der offenen Tür)

청소년 여가시설(Jugendfreizeitstitute)은 독일의 미조직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청소년에 대하여 각각의 욕구나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청소년활동을 보장하는 장소가 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학업에서 오는 긴장으로 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청소년 여가시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개방된 문호의 집”(Haus der offenen Tür)이다.

“개방된 문호의 집”은 제2차 세계대전후 점령군의 이론바 독일인 재교육정책의 일환으로서 도입된 독일청소년활동 센터에서 출발하여 서독정부의 수립과 더불어 독일로 이관되었다. 전통적인 청소년단체 활동과 같이 특정한 가치관이나 당파적인 세계관을 청소년에게 동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자유롭게 자주적이고 책임있는 인격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청소년 교육시설의 하나로서 각 지방에 급속히 확산되었다. 명칭은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고 지역마다 “청년의 집”(Haus der Jugend)이라는가 “청소년 여가의 집”(Jugendfreizeitheim)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개방된 문호의 집에는 완전히 일반 미조직 청소년에게만 개방되는 것과 청소년단체의 활동을 위해 제공되어 일정한 시간에만 미조직 청소년에게 개방되는 “반만 개방된 문호의 집”이 있다. 후자는 개방된 문호의 집 창설 당시에 종래 청소년교육활동을 독점해 오던 청소년단체의 반발 때문에 그 타협의 산물로서 생겨난 것이다. 이

러한 청소년 여가시설은 보통 그 지역의 청소년청이 연방청소년단체협의회 지부조직의 협력을 얻어 운영하고 있다.

이 곳에서 전개하는 활동은 정치교육, 일반교양 등의 학습활동, 전통공예나 예술활동, 각종 스포츠활동 등 매우 다양하며 이외에도 영화회, 스포츠대회, 정치문화학습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2) 유스호스텔

유스호스텔은 청소년이 여행할 때 저렴하고 간편한 숙소를 제공하는 곳으로 단순한 숙소가 아니고 남녀별 구분되어 금주나 일정의 장소 이외의 금연이나 소동시간의 엄수 등 질서있는 생활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이 조국과 전원, 산야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함과 동시에 거기에서의 생활에서 그들이 유형, 무형의 무언가를 얻는 기회를 주려고 하는 것이다.

유스호스텔은 20세기 초부터 서독을 중심으로 각국으로 퍼졌으나 서독의 유스호스텔은 일시 히틀러 유겐트로 이용되어 불평을 산 시대도 있다. 제2차 세계대전 후에는 개선하여 건전청소년시설의 육성으로서 연방이나 주에 따라 강력하게 그 건설이 추진된 바 있다.

유스호스텔의 운영에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경우가 많은데, 군복무 대신에 그 기간 동안 유스호스텔에 머무르면서 민간봉사를 수행하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와는 달리 매우 자유스럽고 자치적으로 운영되는 느낌조차 들게 된다.

독일의 유스호스텔은 그 규모가 크며, 학교의 산간 학교로서 적극적으로 이용되어 왔는데, 최근 유럽 공동체의 형성 이후에는 자국 청소년들 뿐만 아니라 외국 청소년(특히, 유럽청소년)과의 교류를 위한 장소로 적극 활용되고 있다.

3) 청소년의 집

청소년의 집은 청소년이 이웃의 친구들과 여가를 의미있게 또한 부담없이 지내거나 행사에 가벼운 마음으로 참가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모든 읍면이나 지역단위로 설치 운영되고 있는 작은 규모의 청소년 여가시설이다. 특히 바이에른주의

경우 1980년대말 현재 독자적으로 설립 운영되고 있는 청소년의 집이 약 8,000여 개에 이르고 있다(체육부, 1988).

4) 청소년 교육 센터

청소년 교육 센터는 점령군에 의해 전후에 시작된 것인데, 당초에 특히 미조직 청소년의 지도자의 양성시설로서 설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청소년 교육활동의 지도자의 양성이나 계속교육과 더불어 각종의 교양적, 기술적인 학습내용을 제공하는 청소년 교육의 장으로 바뀌었다. 특히 청소년의 정치교육이나 음악교육 등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서 강의, 강좌, 실습지도 등을 행하고 있다. 이 센터의 대부분은 숙박시설을 갖추고, 몇일간이나 몇주간의 연속강의나 실습이 있기도 하고 주말 이용의 장기적인 것일 때가 많다(조용하, 1988).

3. 청소년활동 프로그램

청소년들은 학교에서나 직장에서 그들 생활의 대부분을 교육받는 데 보내지만 청소년들에게 여가시간을 다양한 수준으로 조직하고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교외 청소년사업 영역이 있다. 이러한 청소년사업은 학교나 계속교육 기관 밖이고 가정을 거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에게 직접적인 호소력을 갖고 청소년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이용된다.

청소년사업은 청소년 지원사업의 일부분이고 담당 기관 및 단체들의 복합체로 특징지어진다. 청소년사업에 있어서 민간 기관에는 청소년단체, 지방 청소년집단, 조직 및 클럽이 있고, 그러한 기관의 목표는 청소년사업을 증진시키는 데 있다.

공공기관, 즉 국가기관에는 청소년복지사무소가 있다. 청소년사업의 틀 내에서 공공 청소년 지원은 무엇보다도 지원기능을 가지고, 추가적인 국가의 지원은 단지 개별 사회단체에 의해서 제공되어지는 지원과 맞물려 나타날 때 활동적으로 된다. 그 주요 기능은 청소년들의 인격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조건을 창출하고 민간 단체의 활동에 유용한 재정적 원천을 조성해 내는 데 있다. 그동안 공공단체와 민간단체의

청소년사업 사이에서는 파트너와 같은 협력정신이 발전되어 왔다.

청소년사업은 교육, 훈련 및 또래와의 공동체 형성을 통하여 개인적, 사회적으로 자유로워질 수 있게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들은 그들 자신의 인격을 개발하고, 사회에서 그들의 위치를 찾고, 이러한 사회의 형성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

또한 청소년사업은 학교, 직장, 가정, 여가 등 청소년 생활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사업은 경쟁력 성취 압력을 제거하고 스포츠, 연극, 레크레이션 및 후식을 통하여 창의성을 증진시키고자 노력한다. 이러한 목적으로 인해 청소년사업을 맡고 있는 기관들은 집단에 광범위한 활동과 사업을 제공한다.

1) 아동을 위한 사업

아동들은 자유로운 공간을 필요로 한다. 그들은 뛰어놀고 자신을 위장하며, 모험을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조그마한 아파트나, 주차된 차로 꽂막힌 거리, 건물로 둘러싸인 교외에서는 가능하지 않다.

일부 청소년단체들은 그들 자체로 아동 집단 사업을 실시한다. 그들은 아동 페스티벌, 캠페인 및 조그마한 전시회를 마련하고 아동들의 요구에 진정한 관심을 가지는, 아동들에 적합한 사회를 위해 운동을 전개한다.

2) 학교 및 직장에서의 학습

독일 연방 공화국에는 의무교육이 있다. 대체로 그들은 6세때 학교에 들어가서 학교에서 적어도 10년간을 보낸다. 오늘날 교사 사이의 실업에도 불구하고 많은 수업들이 이른바 “불충분한 교재 (Deficiency subjects)”로 인해 자주 취소되고 있으며, 학급에는 학생들이 너무 많이 있다. 또한 외국인 학생들과의 통합, 학생들간의 성취압력 및 경쟁의 증가는 학교생활의 커다란 문제가 되고 있다.

오늘날 학교에 다니는 기간은 몇년전에 비해서 더 길어졌고, 또한 하루의 더 많은 부분을 학교에서 보내고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매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여가 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사업과 학교 사이에 새로운 협력의 형태가 가능해지고 필요하게 되었다. 청소년단체들은 끊임없이 그들 스스로를 새로운 여가행태와 청소년들의 변화 욕구에 맞춰야 한다. 단체 프로그램은 매우 매력적이어서 학교에서 제공되는 여가 시설과의 경쟁에서 생존할 수 있다.

1970년대에 학생보조행정(Pupils Co-administration)의 형태인 SMV가 학교에서 확고하게 제도화되었다. SMV의 활동영역은 학생집단과 이익집단(극장)의 형성, 문화활동, 학교에서의 공공활동(학생신문, 페스티벌) 및 교사모임에의 참여 등이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발언권을 가질 가능성은 적다. 학교는 아직까지 위계적인 구조에 의해서 특징지어지고 있다.

DBJR의 청소년단체들은 학생보조행정 계획을 의사결정에 진정으로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확대하도록 지원한다. 이러한 사업의 시작은 그들 생활에 있어서 커다란 전환점을 의미하고 있다.

보통 모든 청소년들이 최종 시험을 치른 후에 일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청소년들조차도 언제나 지속적인 고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청소년들은 일자리를 찾는데 커다란 어려움을 가지며 노동시장의 주변에 있다.

연방 공화국에는 이중의 직업훈련체계를 가지고 있다. 직장에서의 실제적인 훈련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은 직업학교에서 일주일에 2~3일 동안 공부를 한다.

18세 이하의 모든 근로청소년들과 21세 이하의 모든 훈련원들은 직장에서 청소년들의 권리를 대변하는 청소년·훈련원 대표자협회(Youth and Trainee Representative Association)의 선거에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 훈련원 대표자 협회는 상담의 가능성은 가지고 있지만 의사결정력은 거의 가지고 있지 않다.

DBJR의 청소년단체들은 여러 해에 걸쳐 청소년들에 대한 상담권의 확장과 직장에서의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그들은 효율적인 직업훈련과 직장에서의 청소년 보호에 대한 양적인 확장과 질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3) 여자 청소년을 위한 사업

헌법에 따르면 여성과 남성은 독일 연방 공화국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사회 실재는 아직까지 헌법에서 목표로 하는 것과 실재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는데, 사회는 아직까지 남성사회와 여성사회로 나누어져 있다. 모든 정당과 많은 사회단체에 있어서조차도 문서화된 여성의 평등권을 가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의 직장 여성조차도 같은 직장의 남성에 비해 보다 적은 급료를 받고 있는 일이 자주 있다. 그들에게 있어서 가정과 아동을 돌보는 것은 시간제 고용의 기회와 유치원 및 아동 관련 시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종종 직장생활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몇년동안 여자청소년들의 고용은 증가해 왔으며 이것은 여자들에게 있어서 종종 가정과 일이라는 이중부담으로 다가왔다. 독일사회는 여자와 남자에게 가정과 일을 일치하게 한다는 이상으로 부터 훨씬 떨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60년대 말에 “새로운 여성운동”은 학생운동과 동시에 시작되었다. 이 운동은 의식과 행동에 있어서 급진적인 변화를 이루고 숨겨진 성을 폭로하기를 원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이 운동은 정치적 사회적 위치에 있어서 여성들의 참여를 위한 고정할당량을 요구하였고, 독일에서 낙태법의 자유화를 위한 운동을 전개했다. 또한 일련의 여성사업을 개발했는데, 여기에는 여성센터(서점, 바아, 잡지), 여성을 위한 자조집단 뿐만 아니라 출판사까지 포함된다.

모든 수준의 사회생활에서 여성 평등을 위한 청소년단체의 운동에 대해서 말할 수 있을지라도 청소년단체의 사업에 있어서는 남자와 여자의 평등에 대해서 말할 수 없다. 거의 모든 단체에 있어서 지도체 및 의사결정체에서의 여성참여는 회원의 몫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청소년집단은 소녀·소년에게 전통적인 역할행동을 깨뜨리게 하고, 함께 파트너로서 사는 것을 배우게 하고, 첫번째로 성적 경험을 하게 하고, 자연스럽게 서로 교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단체들은 소녀들을 격려하기 위하여 일치된 노력으로 소녀들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독립 사업을 개발하고 있다. 이 사업은 여자 청소년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기 확신을 강화하고, 차

별당하고 있는 이유를 인식케 하고, 평등을 이룰 수 있도록 지원을 제공하는 것이다.

4) 외국인 아동 및 청소년 사업

경제적 호황이자 완전 고용이었던 시기에 독일에는 수천명의 외국인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들어와 오늘날 많은 외국인 청소년들이 독일에 살고 있다. 그들은 이곳에서 태어났지만 종종 이방인처럼 느끼곤 한다. 그들은 문화적 정체성을 개발할 능력이 없으며 어느 곳에도 익숙해 있지 못하고 두 문화 사이에서 망설이고 있다.

청소년들은 지난 몇년간 독일에서 확대되어 온 외국인 기피증(xenophobia)의 주요 피해자이다. 자신의 일에 대한 두려움, 수용시설의 부족, 기타 사회적인 병폐가 외국인 시민들을 기피하는 이유이다. 특히 보호소에 지원하는 사람이 많아지기 때문에 외국인들에 대한 이러한 적의가 커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몇년동안 독일은 외국인 노동자 가족의 이주를 더욱 어렵게 하고 있으며, 재정적인 유인을 통하여 외국인들을 그들의 고국으로 돌아가도록 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보호소에 대한 권리는 줄어들었고 보호소를 찾는 사람들에 대한 장애가 매우 커지고 있다.

독일청소년단체협의회는 관용있고 다문화적인 사회를 위하여, 그리고 외국인들에 대하여 점차적으로 적의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항하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외국인 시민들은 독일 사회에서 필수적인 구성 부분이 되고 있다. 따라서 독일 사회가 당면한 일은 그들과 함께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존하는 것에서 부터 통합에 이르는 모든 사람들의 삶에 대한 새로운 전망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5) 반파시스트 운동

청소년단체들은 지난친 민족주의와 우익 급진적인 경향에 반대하고 있다. 반파시스트 주간, 기념 장소 방문, 저항운동 장소 및 국가테러 장소의 순회방문, 토론 및 세미나를 통하여 청소년단체들은 나찌 정권의 죄에 대한 기억을 일깨우기를 원한다. 그 목적은 청소년들로 하여금 극단주의 우익정당에 의해서 오늘날 다시 한번 만연되고 있는 민족주의적이고 비인간적이며 비민주주의적인 사상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특 하는 데 있다.

6) 청소년 매체, 음악, 문헌

청소년을 표적으로 하는 매체들은 지난 몇년동안 점차적으로 다양하게 성장하고 있다. 현재 청소년들은 TV 앞에서 그들 여가시간의 대부분을 보내고 있으며 TV와 비디오 필름의 소비는 종종 지난 해 도서구입을 대체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결과로 TV와 비디오는 청소년들의 세계에 대한 이미지의 창조에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으며 상투적인 생각을 중재하고 청소년들의 우상을 창조해낸다.

비디오 녹화기가 이용 가능하게 되고 공포물 및 폭력물 비디오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됨으로써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종종 어린이나 그들의 부모조차도 매체에의 시간 소비를 합리적인 경로로 지도할 수 없게 되었다.

오늘날의 청소년들은 TV와 비디오에 점차적으로 시간을 많이 소비할뿐만 아니라 컴퓨터와 컴퓨터 게임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때대로 10세 때 “컴퓨터 전문가”가 되기도 한다.

그러나 매체에서 청소년에 대한 묘사와 청소년 문제와 관련된 직업은 다른 집단의 화제에 비교하여 훨씬 낮게 표현된다. 이러한 흐름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특별히 아동 및 청소년을 목표로 하는 많은 도서물들이 아직까지 있다. 마찬가지로 잡다한 종류의 청소년 잡지들이 있다.

대체로 다양한 매체는 지난 몇해동안 매우 혼동을 초래하게 하였으며 아동 및 청소년들이 세상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지에 관한 지속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 청소년단체들은 매체 교육에 대한 그들의 책임감을 알고 있다. 즉, 아동 및 청소년들은 매체를 책임감있게, 그리고 비판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학습한다. 덧붙여서 청소년단체들은 그들에게 단순한 수단을 사용하여 스스로 매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청소년들은 생산 구조와 방법을 통하여 보고 그들 자신의 생각을 분명히 하는 것을 배운다.

7) 사회 참여

청소년단체들은 사회의 비편익(disadvantaged)집단을 위하여 운동한다. 청소년단체에서 아동 및 청소년들은 다른 사람들을 돕도록 배울 수 있다. 그들은 환자돕는 방법, 사고당한 사람 구출하는 방법, 익사한 사람 구출하는 방법 등을 배운다. 청소년단체들은 장애자들을 사회생활에로 통합시키기 위하여 운동한다. 그들은 이러한 일을 자신의 단체 내에서 행한다. 몇몇 단체들은 그들 스스로 구체적이고 인간적인 프로그램의 과업을 실시한다.

8) 무장해제 및 평화운동

남자청소년들은 누구나 신체적으로 건강하면 군대(Bundeswehr)에서 군복사를 하게 된다. 각 청소년들은 헌법에 의해서 보장되는, 의식적인 이유로 이러한 “무기가 수반되는 봉사”를 거부하고 그 대신에 “대안적인 민간봉사”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 지난 몇년간 청소년들은 이러한 봉사가 군복사보다 3달이나 더 길지라도 이러한 권리를 점점 더 많이 이용하고 있다.

민간봉사는 이러한 청소년들에 의해서 병원, 양로원 등의 사회·자선단체, 청소년단체 및 기타 관련 단체에서 수행된다. 그들은 사회체계를 지탱하는 하나의 필수불가결한 기둥이다.

수 많은 양심적 참전 거부자들은 청소년들이 독일 군대 기구의 의미와 목적, 그리고 군대수단에 의한 정치적갈등의 해결에 비판적으로 화해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청소년단체들은 평화와 무장해제를 위하여 운동한다. 그들의 평화활동은 50년대 초의 서독의 방위예의 공헌 및 NATO에의 가입에 관한 논쟁으로 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50년대 초에 NATO 무기의 현대화에 관한 논쟁에서 독일청소년단체협의회는 중거리 미사일의 설치에 반대하였다. 게다가 청소년단체들은 군복사를 거부할 수 있는 무제한의 권리와, 군복사 및 민간봉사의 존속 및 단축을 위해 운동을 하였다. 청소년단체들은 동시에 평화교육을 통하여 적에 대한 이미지, 위협에 대한 생각을 없애도록 노력하고 있다.

9) 환경운동

오늘날 독일은 극심한 산업화와 자연에 대한 무분별한 착취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공장, 개인 가정 및 차량은 공기, 물, 토양을 오염시켰고 환경파괴는 지구 전체로 파급되었다.

독일이 환경부(Department of Environment)를 설치한 것도 사실이고 환경보호가 법의 일부로 되어야 한다는 것에 관해 논의도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환경보호에 관한 법적 조치는 독일에서 요구되고 있는 것에 비해서 훨씬 뒤쳐지고 있다. 이러한 급증하는 생태학적인 문제와 지구적 규모의 환경파괴의 관점에서, 생태학적인 문제에 대한 인식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훨씬 더 확대되어 왔다. 70년대 말경에 핵에너지의 확산에 대항하는 저항운동이 압력집단에 의해서 폭넓게 전개되었고 핵에너지의 위험과 관련된 사람들 사이로 민감하게 전파되었다.

이전에 청소년집단들은 레크레이션을 위해 대도시로 부터 벗어나 손상되지 않은 자연으로 이동하곤 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들은 환경오염 및 환경파괴로 부터 더 이상 벗어날 수 없다.

청소년단체들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으며 생산과정과 사회의 생태학적 재형성만이 생활기반을 보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그들의 활동 범위는 핵발전소 설치에 대항하는 계획에서부터 집단시위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10) 청소년단체의 국제사업

국제청소년교류, 문화간 학습, 청소년지도자 국제 세미나 및 유럽 청소년 사업의 또 다른 수준에서의 협력이 청소년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업무이다.

청소년들간의 회합을 통해서 청소년단체들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을 알게 하고 서로간에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며 마침내 그들의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문화를 접촉함으로써 인해서 청소년들은 사회내에서 자신의 관점을 찾을 수 있고 자기 나라의 문제를 좀 더 인식할 수

있다.

국제청소년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세계에 대하여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갖도록 교육시킴으로써 국가간의 이해와 평화적 공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청소년단체협의회(DBJR)와 정당청소년단체(RPJ)는 독일국제청소년사업위원회(Deutsches Nationakomitee für Internationale Jugendarbeit, DNK)에 함께 참여한다. DNK에서의 참여를 통하여 DBJR은 유럽청소년협의회인 CENYC나 유럽공동체 청소년포럼 등 유럽의 다면적인 협력구조를 대표한다. 유럽은 몇년 이내에 정치적·경제적으로 점점 더 밀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다면적인 협력은 청소년단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양상을 띠게 될 것이며, 전유럽 통일과정의 틀내에서 청소년단체의 참여를 위한 적합한 구조의 창조에 대한 요구가 매우 큰 비중으로 받아들여지게 될 것이다.

개발정책에의 참여와 국제연대사업의 틀 안에서 독일 청소년단체들은 세계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남북차별의 제거와 정당한 경제질서를 개발하기 위하여 운동하고 있다. 청소년단체들은 그 회원들에게 산업국가에 대한 제3세계의 경제적·정치적 종속 상황에 대한 통찰력을 준다. 또한 물질이나 돈을 기부하는 사업이거나 즉석에서 시행할 수 있는 실제적인 사업을 지원한다.

4. 청소년활동 단체

1989년 11월 9일, 그 당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이었던 정부가 거의 30년이 지난 후에 베를린 장벽을 허물었고, 이리하여 독일 연방 공화국으로 국경을 개방하게 되었다.

동독의 각 도시에서 반복되는 평화적인 시위와 주로 청소년들이 주가 된 시민들의 대량 탈출은 정부로 하여금 이러한 조치를 취하도록 강제했다. 사람들은 자기 나라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상황에 점점 더 만족해 하지 않게 되었으며 원대한 개혁을 요구하고 있었다.

이 평화적이고 비폭력적인 저항 혁명은 독일 통일의 과정을 가동케 했으며 그 이

후로 추진력을 얻게 했다. 1990년 3월 당시,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에서의 첫번째 자유선거에서 얻은 여행의 자유와, 같은 해 경제적 화폐 통합은 이러한 발전의 단계라고 할 수 있다.

1990년 10월 3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의 영토를 구성하고 있는 다섯개의 “새로운 연방 주(new Federal States)”는 마침내 독일 연방 공화국의 일부가 되었다. 통일협약이 독일 연방 공화국과 독일 민주주의 공화국 사이에 발효되게 된 동시에, 연방 공화국은 “4+2” 교섭의 결과와 유보권에 대한 동맹국의 포기여 의해 전 국가에 대한 통치권을 돌려받았다.

독일 통일의 과정은 전 유럽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처음으로 완전히 다른 두개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체계가 평화적으로 함께 연계되고 있었다. 그 결과로 적응과 변용의 과정은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었다.

특히 심각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아동과 청소년이다. 그들은 사회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즉, 유치원, 학교, 훈련원 및 직장에서 새로운 생활방식에 직면하였다. 40년동안 당연시 했던 것들이 지금은 문제로 불리워졌다.

동독에서의 실업율은 점점 올라가고, 회사들은 점점 더 직원들을 해고하거나 직장을 폐쇄하였다. 청소년들을 위한 견습 및 훈련 장소가 거의 없고, 많은 청소년들이 직업훈련을 받지 못한채 거리를 배회했다.

청소년들은 사회주의 국가 조직, 특히 국가청소년단체인 “Freie deutsche Jugend”에서 받은 생활준비 과정에 많은 영향을 받았었지만, 지금은 새롭고 민주주의적인 행동방식을 사용하는 것을 개발하고 배워야 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청소년들은 그들이 새롭게 찾은 자유를 사용하기 시작했고 많은 새로운 조직에 참여하였다. 그러한 조직은 주로 “구(old)” 연방 공화국에 오랫동안 있었던 청소년단체들이었으며 지금은 그러한 단체들이 협력 혹은 합병을 하고 있다. 그러나 단지 동독에서만 운영되고 다른 주에 적당한 파트너가 없는 단체들도 있었다.

독일에서 다섯개의 새로운 주에 있는 청소년단체들은 주나 지방의 수준에서 청소년 씨클(Youth Circle)을 형성하기 위하여 이미 함께 가입하였다.

독일연방 청소년 씨클의 회원 단체는 이러한 복수 청소년 구조의 형성 과정을 지원했으며, 청소년사업의 영역에서 서비스의 범위를 가장 광범위하게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었다. 현재 “Freie deutsche Jugend”는 그 독점적 지위를 포기하였으나 거기에서 지원을 받았던 청소년사업에 관련된 많은 기관과 기타 단체들은 폐쇄되었다. 이것은 청소년들은 맞서 싸워서 얻어야 하는 하나의 발전이었다.

이방인들에 대한 증오심의 증가와 일부 청소년들의 급진적인 우익 경향이 개방을 통해 나타나고 있으며, 국가 통제의 반파시즘이 성취도가 매우 낮고, 청소년들 사이에 광범위한 교육사업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청소년단체의 실무 집단으로서의 독일 연방 청소년 씨클이 청소년사업 영역에 있어서 복수 구조를 형성하기 위하여 충분한 재정적 수단을 요구하고 있는 이유이다. 이것은 청소년들이 가지는 사회적, 심리적 적응의 문제를 줄이고 그들에게 미래에 대한 전망을 주기 위하여 필요하다. 청소년단체의 관점에서 독일 통일로부터 결과하는 많은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은 특별히 아동 및 청소년들의 관심을 고려하는, 단지 민감하고 사회적으로 균형잡힌 정책을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다.

1) 정당 청소년단체(Ring Politischer Jugend, RPJ)

청소년들은 그들의 정치적 태도를 국가, 주, 또는 지방정부 선거에서의 선거권 행사를 통하거나 압력집단, 환경운동, 평화운동 및 청소년단체에의 참여를 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독일에서 선거에 대한 권태감을 점점 더 크게 느끼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지난 10년동안 연방의회 선거의 참가율은 점차적으로 떨어졌다. 선거권은 18세 때부터 갖게 되는데, 특히 이러한 젊은 선거권자들의 참여율은 점점 낮게 나타나고 있다. 1990년 Bundestag 선거에서 전체 참가율은 77.5%인 반면에, 18-25세 사이의 연령인 사람들은 단지 65.2%가 투표에 참여하였다.

청소년들은 정당의 청소년단체에 전부터 많이 관련하고 있다. 청소년들의 관심을 돌보기 위하여 정당은 1950년에 정치적 청소년씨클(Ring Politischer Jugend)을 설립하였다.

설립 회원단체로는 Junge Union Deutschlands, CDU/CSU의 청소년단체, SPD의 Young Socialists, FDP의 청소년단체로서 Deutsche Jungdemokraten이 있다.

1982년에는 Jungdemokraten은 FDP로부터 떨어져 나갔고, 오늘날에는 “Greens”에 밀착되어 있다. 그 이후로 “Junge Liberale”가 FDP의 새로운 청소년단체로 있었으며 RPJ의 4번째 회원단체로 되었다.

RPJ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첫째, 청소년에 대한 반민주주의적 영향과 청소년들의 오용을 공동 예방하고, 둘째, 청소년들을 정당에 능동적이고, 책임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설득하며, 셋째, 청소년들을 자유 민주시민이 되도록 교육하는 것이다.

독일 청소년단체협의회(Deutscher Bundesjugendring)와 함께 정당 청소년단체(Ring Politischer Jugend)는 독일 국제청소년사업 위원회(Deutsches National-Komitee für Internationale Jugendarbeit, DNK)를 형성한다.

2) 독일 청소년단체협의회(Deutscher Bundesjugendring, DBJR)

1차 세계대전 바로 직후 독일에서 “독일청년단(Reichsausschu der Deutschen Jugendverbände)”이 설립되었다. 그 안에 대략 5백만 회원을 가진 100개가 넘는 청소년단체와 청소년그룹이 함께 일을 하였다. 그 뿌리는 19세기의 부르조아 청소년운동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운동은 청소년 하이킹의 보급에 기반하고 있으며, 곧바로 19세기 하반기의 구·신교 도제·직공협회와 사회주의 프롤레타리아 청소년운동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청소년단체들은 청소년들을 위한 과외 훈련 및 교육사업의 조직자로 운영되고, 종교적 혹은 이데올로기적인 이상에 따라 청소년들에게 동료 청소년들과 함께 여가시간을 보낼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 원칙은 청소년단체의 사업에 있어서 오늘날까지 곧바로 이어지고 있다.

1933년 사회주의자들에 의한 권력의 장악은 자유 민간 청소년사업의 종말을 가져왔다. 대부분의 청소년단체는 그 활동이 금지되거나 독일 공산당 국가 사회주의자 청소년운동(NSDAP)인, 이른바 “히틀러 청소년(Hitler-Jugend)” 조직에 통합되었다.

독일청년단(Reichsausschu der Deutschen Jugendverbände)의 해체선언에 이어 “히틀러청소년(Hitler-Jugend)” 조직이 유일하고 특혜적인 국가 청소년단체가 되었다.

1945년 5월 8일 동맹국에 의한 국가 사회주의로 부터의 해방에 따라 많은 청소년들은 공허함에 직면하였다. 곤궁, 주택난, 굶주림, 암시장, 실업은 나찌체제에 있었던 것처럼 일상생활의 일부분이었고 새로운 지향점을 기대하고 있었다.

경제적 생산은 거의 정체되어 있었고 다시 매우 느리게 가동되기 시작했다. 권력을 잡고있는 당국에서 정치생활에 대한 통제를 맡고 있었다. 해방 직후 청소년단체의 재건이 동맹국의 조건, 제한 및 금지의 영향을 받으면서 시작하였다. 많은 경우 1933년 국가 사회주의에 의한 권력의 장악에 앞서서 민주주의 청소년단체에 이미 참여하였던 성인들로 부터 창의적인 생각이 나왔다. 그들은 청소년들에게 하나의 사회적, 정치적인 고국을 물려주기를 원하였다. 청소년단체에 의해서 조직된 텐트 캠프 “Zeltlager”는 청소년들이 충분히 먹을 수 있을 정도의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않았다. 청소년단체들은 이 시기에 계속되는 경험을 하였다.

청소년단체들은 공동체적이고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그들의 공동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단체협의회(Jugendringe)에 함께 참여하였다. 1949년 10월 2-3일에 독일 청소년단체협의회가 Cologne 근처에 있는 Altenberg에서 설립되었다.

나찌시기의 압제의 경험과 전후 청소년들에 의해 경험된 커다란 역경은 함께 일하고자 하는 의욕을 부추켰다.

독일청소년단체협의회는 오늘날까지 아직도 이러한 것을 반영하고 있다. “기초는 정치적, 종교적, 이데올로기적 그리고 인종적 차이에 관계없이 회원들 간에 상호 존경해야 한다. 군국주의적, 민족주의적, 인종차별 및 전제주의적 경향에 대항해 싸우는 것을 임무로 하고 있다.”

오늘날 전국적인 수준에서 운영되고 있는 20개의 활동적인 청소년단체와 11개 주의 협의회가 독일청소년단체협의회에 통합되었다. 여기에 덧붙여 4개의 연합단체가 있다. 이러한 청소년단체들은 약 4백만 청소년들을 대표한다.

독일청소년단체협의회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의 이해와, 공공, 정부 및 의회에 관한 청소년 사업에 있어서 그 이익을 대변한다.

둘째, 청소년단체내 뿐만 아니라 그 밖의 기관에 있어서 정보 및 경험의 교류를 촉진시킨다.

셋째, 청소년 정책에 관한 현안 문제를 취합하여 정책 결정에 관여한다.

넷째, 청소년 사업을 조직, 확장함으로써 세계의 긴장완화, 정의 및 평화에 기여한다. 단체협의회 사업 뒤에 있는 이 원칙은 1949년 이래로 그 스스로를 입증하여 왔다. 그것은 청소년단체들에게 국가기관이나 특정 정치 사회적 그룹보다도 청소년들의 이익을 공동으로 명확하게 할 가능성을 준다. 그것에 의해서 그들의 요구가 보다 적합하고 강조되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단체협의회 사업의 중심은 청소년 및 일상생활에서의 청소년의 참여에 있다. 청소년단체들은 국가의 간섭없이, 그렇지만 공공기금(국가청소년계획)의 도움을 받아 그들의 사업을 수행한다. 그들의 사업은 회원들의 자원활동에 기초하고 있다. 그것은 또래집단과 함께 지역사회의 경험을 체험하게 하기 위하여 자체 조직한 집단에서의 여가활동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그러한 집단의 활동은 다양하고, 활동이 이루어지는 청소년단체의 관심과 성격에 의존한다. 청소년단체 사업은 또한 자체 정의 그대로 이루어지며 무엇보다도 교육 훈련 사업이다. 그러나 학교교육과 대비하여 청소년단체의 사업은 성취나 결과에 대한 압력없이 자발적인 원칙에 의해 이루어진다.

특히 청소년단체의 사업은 "정치교육(political education)"의 원리에 기반하여 이루어진다. 청소년들에게 다른 사람들과 지역사회 내에서 민주주의적인 행위와 정치적으로 책임있는 행동을 배우게 하고 그들의 이익을 대변하게 할 가능성을 제공한다. 역사적인 경험에 투영해 보면, 현재의 정치적, 사회적, 생태학적 문제와 비판 의식의 창안을 위해 씨름하고 있는 것 만큼 이 점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청소년들은 DBJR의 회원단체에서 행하는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다. 청소년들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구경하며 즐긴다. 여기에서 제공되는 것은 그 범위가 춤과 민속, 음악 제작과 노래, 극장과 프로어쇼로부터 스포츠와 연극, 하이킹과 등산, 그리고 미술과 공예 및 건축에 이르고 있다. 또한 청소년단체에 있어서 문화는 언제나 내용을 전달하고 문제에 대한 인식을 만들어내는 매체이다.

라. 결 론

독일 청소년활동의 기본정신은 세계 제2차대전후 대두된 민주주의 정신과 개칭의 존엄성에서 찾을 수 있다. 패전후 서독에 급속도로 전파된 민주주의 이념과 개인의 가치중요성은 이전의 집단적 사상에 기울어 있던 독일국민들과 특히 민감한 청소년 세대에 국가의 책무에 대한 자숙으로 또한 자율적이며 새로운 시대로 조망하는 이념적 틀로 다가왔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청소년활동은 정책적 입장에서 보다 오히려 사회사업적 견지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본다. 유럽의 각 국들과 마찬가지로 전통적으로 지역사회의 개념과 역할이 강조되어 온 독일에서도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개인들의 자발적인 활동이 청소년들의 활동에도 똑같이 적용되어 오고 있으며 지역과 단체의 상황과 여건에 따라 자발성이 상실되었을 때만 정부나 사회사업가가 개입하고 있다.

한편, 자발적인 활동과 가능한 불개입의 원칙에도 불구하고 그간의 재정지원은 정부가 80%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회사업적 영향력이 감소하고 있다. 다시 말해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한 전문적인 지도자들의 활동은 점차 개인주의적 경향에 따른 개별적 활동요구의 증대로 말미암아 위축되고 있다. 청소년활동 서비스의 객체는 아직도 일정한 수요가 존재하지만 그들의 요구는 이미 상당부분 사회의 다른 자원과 상업적 서비스에 기울어져 있다.

따라서 자원봉사자 활동을 통한 보다 더 자율적이고 비공식적인 활동을 조장하는 정부의 개입이 증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사실 독일의 청소년단체는 전통적으로 활동의 이념적인 바탕이 되는 개교회의 지도자를 중심으로 각 지역별 활동지도자들이 각 부문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지역의 목적과 상황에 적합하게 연수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상황은 종교의 사회적 역할이 약화되고 청소년 개개인들의 단체 및 청소년활동에 대한 관심 줄어들음으로써 새로운 전략 마련의 압력을 주고 있다.

현재 독일청소년 단체 및 활동은 두 가지 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하나는 통독(이들은 독일의 재통합이라고 부르고 있음)이후 서독식 생활체제에 대한 구동독 청소년들의 적응에 관련된 프로그램에 주목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점차 개별화되는 청소년들의 성향과 상업화에 대한 대응방법을 모색하는 것이다.

동독 청소년들의 적응 프로그램은 실행을 통해 계속해서 그 바람직한 방향을 모색하여 오고 있으며, 청소년들의 활동 및 의식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은 몇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첫째는 상황에 대한 문제를 정확히 인식하는 활동이고, 둘째는 청소년에 관련된 가정의 역할을 강화하는 프로그램의 개발이며, 셋째는 새로운 사회의 가치관과 사회의식을 찾는 일이다. 여기에 대해서 현재 독일 청소년 단체 및 활동은 환경에 관련되는 주제를 새로운 돌파구의 주요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점진되는 사회의식의 강화와 청소년들의 강력한 개인적 욕구를 환경이라는 개인적이면서도 집단적인 주제에 통합시키는 활동과 프로그램에 대해 이들은 주목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김수석 외, 「독일의 영농인양성제도」(미간행물), 1994.

조용하, 「청소년교육의 동향」, 교육과학사, 1988.

이종원, “독일의 청소년정책과 제도”, 「외국청소년 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
연구원, 1990.

체육부, 「청소년 정책에 관한 연구」, 1988.

Rene Bendit, Wolfgang Gaise and Ursula Nissen, “Growing Up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Chance and Risk in a Modern Sozialstaat”, 「J.Educa-
tion Policy」, Vol. 8. No.1, 1993

Deutscher Bundes Jugendring, 「Youth Organization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onn, 1993.

_____ . 「Initiative zur Aufbauhite nittel—und
osteuropaischer Jugendstrukturen.」 Bonn, 1993.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Basic and Structural Data」, 1993.

5. 일본의 청소년활동 정책

가. 일반 현황

일본의 청소년인구(0~24세)는 1990년 10월 1일 현재 4천 129만명이며, 총인구의 33.4%를 점하고 있다. 청소년인구는 1955년의 4천 682만 7천명을 정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총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계속 감소하고 있다. 청소년 가운데 유치원에서 대학까지 재학자 수는 2천 558만명으로 총인구의 20.8%를 차지하고 있다. 전수학교·각종학교에는 118만명이 재적하고 있다. (總務廳 靑少年對策本部, 1992)

청소년 취업자(15~24세)는 772만명으로 취업자 총수의 12.6%를 차지하고 있다. 산업별로 보면 도매, 소매업, 음식점 28.9%, 서비스업 24.7%, 제조업 24.6%로써 이들 3차산업이 전체의 약 8할을 차지하고 있다. 형법범에서 보도된 소년(14~19세)은 1991년에는 154,168명으로 전년에 비해 감소되고 있으나, 전형법범 검거인원에서 차지하는 소년의 비율은 52.6%로 나타나고 있다. 형법범 소년을 최종별로 보면, 절도범이 전체의 70.4%를 점하고, 연령별로 보면, 14~16세의 저연령층이 전체의 71.0%를 차지하고 있다. 또, 교내폭력, 가정내폭력, 이지메 등은 정점에 이르렀을 때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나, 폭주족, 신나 등의 남용 및 좌절과 무기력 등의 사례는 점차 증대되는 상황에 있다.

청소년의 일반적 특성으로는 감성이 풍부한 점, 또 개성을 대단히 중시하는 점, 제시된 일에 대해 확실히 수행하는 능력이 뛰어난 점, 자신의 가치를 인정받을 경우에는 열심히 노력하는 부지런함을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이 긍정적 측면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참을성이 없고 친구와도 깊게 사귀지 못하는 점, 스스로의 생각으로 무엇을 해 보려는 자발성의 결여, 물질중심적인 사고경향과 사회·공공적인 일への 관심

* 천정웅, 한국청소년개발원 선임연구원

이 적다는 것 등이 부정적 특성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청소년육성의 기본방향을 고령화, 국제화, 정보화 등의 사회변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창조적인 활력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자질과 의욕을 가진 활력이 충만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에 두고 그 세부방향을 설정하고 있다.(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1993)

첫째, 고령화에 대응하는 것으로 자원봉사 활동이나 복지시설에서의 활동 등의 사회참가를 촉진하고 사회연대의식을 키우며 청소년의 자주성을 존중하고 청소년활동을 더욱 활성화하며 지역내에서 세대간의 커뮤니케이션을 촉진한다는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둘째, 국제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청소년 국제교류를 추진하고, 국제협력 분야에서 자원봉사활동 등에의 참가를 촉진하여 청소년 의식의 국제화를 도모하며 외국어와 외국문화 학습의 기회를 많이 제공하고, 자국의 문화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킨다는 것이다. 셋째, 정보화에 대응하는 육성방향으로 학교 내외에서 다양한 학습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집단숙박 체험과 자연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정보선택·활용능력을 높인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나. 정책 체계

1. 행정 조직

일본의 청소년업무는 중앙정부의 경우 직접적으로는 문부성, 경찰청 등을 비롯하여 관계부처가 각각 교육, 보건 복지, 보호 등의 업무를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총무청은 이러한 시책이 상호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추진되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산하에 청소년대책본부를 두어 청소년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는 각급 도도부현의 지사와 공안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 청소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촌단위에는 시정촌장과 교육위원회에서 청소년관계행정이 수행되고 있다.(송정부,1993)

중앙정부의 청소년관계 주요업무를 부처별로 보면, 총무청은 청소년행정에 관한

기본적·종합적 시책의 수립, 청소년에 관한 각 부처의 시책, 사무의 총합조정 및 각 부처 관할에 속하지 않는 청소년에 관한 사무 등을 맡고 있다. 경찰청은 청소년비행의 방지, 청소년의 복지를 저해하는 범죄의 단속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과학기술청은 과학기술의 보급 및 개발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환경청은 자연공원 등의 시설 정비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법무성은 비행청소년에 대한 감찰, 교정, 보호, 인권옹호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외무성은 외국과의 문화교류, 청년의 해외협력 활동의 촉진 등에 관한 사무를 맡고 있다. 문부성은 가정교육, 학교교육, 사회교육, 스포츠, 문화의 진흥, 유네스코(UNESCO)활동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후생성은 아동의 건전육성, 양육,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아동 및 심신장애아와 복지, 모자보건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농림수산성은 농림원에국과 보급교육과에서 농촌청소년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다. 운수성에서는 관광, 레크레이션 지구의 정비 등에 관한 사무를, 노동성은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 연소노동자의 보호, 직업소개, 직업훈련 등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며 건설성은 도시공원 녹지의 정비에 관한 사무를, 자치성은 지방공공단체 등에 관한 사무를 맡아하는 등 각 부처의 업무에 준하는 청소년행정을 수행하고 있다.(總務廳 靑少年對策本部,1993)

도도부현 지방행정부의 지사는 기획조정국, 민생국(부녀상담소, 아동상담소, 정신박약자 갱생상담소, 복지사무소, 가정아동상담실 포함), 노동국(보건소 포함), 농림국(농업개량보급소 포함), 관광국, 건설국 등의 청소년행정을 총괄하며, 청소년문제협의회와 아동복지심의회를 자문기관으로 두고 있다.公安위원회는 경찰본부 산하 경찰서, 파출소, 주재소를 관장하여 청소년비행·범죄 등을 담당한다. 시정촌장은 해당 기관의 청소년관련부서의 업무를 관장하며, 시정촌의 교육위원회는 사회교육위원, 스포츠진흥심의회, 체육지도위원 등의 자문을 받아 학교, 청년의 집, 소년자연의 집, 공민관, 기타 교육기관 등의 업무를 관장한다. (박명운,19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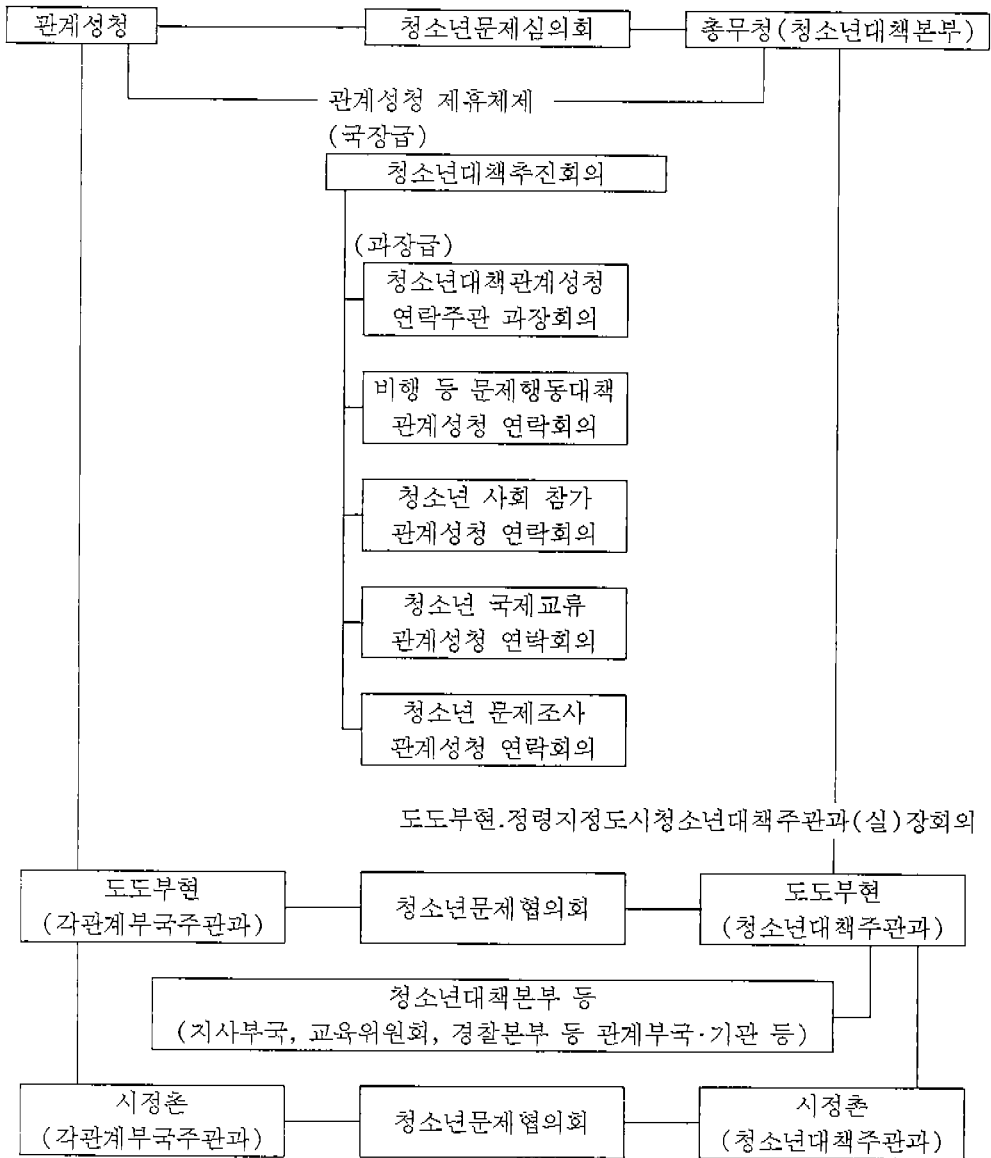
일본은 청소년관계 행정조직 외에 청소년문제심의회, 청소년대책본부 및 청소년대책추진회의 등의 특별기구를 갖고 있다. 청소년문제심의회는 청소년의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에 관한 사항을 조사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내각총리대신의 자문기관이며, 청소년대책본부는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의 수립과 청소년행정의 종합·조정을 목적으로 총무청에 설치된 총무청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특별기관이며(총무청 설치법 제8조) ① 청소년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시책의 수립, ② 청소년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관계 행정기관의 시책 및 업무의 종합 조정, ③ 청소년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에 관한 사무 중에서 행정부처에 속하지 않는 업무의 기획, 입안 및 실시 등을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총무청 설치법 제4조), 조직은 본부장 밑에 부분부장(총무청 사무차관)과 차장 및 차장 밑에 기획조정, 조사, 국제교류, 육성지도, 비행대책, 체력배양 등의 6개 담당과 또는 담당관을 두어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청소년대책본부는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인 시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관계성·청 및 지방 공공단체를 통해서 청소년행정이 종합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소년문제심의회에 의한 종합적인 비전의 제시와 종합시책의 수립 추진 및 연대체제 확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현상과 문제의 소재를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청소년대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매년 청소년문제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 제공하고 있다. 또한 청소년비행 방지에 노력하고 있으며 청소년전전육성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개개인의 인식을 제고하고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연대협력으로 청소년육성 국민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 밖에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실시 지원하며 청소년의 건강증진과 체력증강 등에 대한 국민의 자각을 높이고 이의 적극적인 실천을 도모하기 위한 체력배양 국민운동을 촉진하고 있다.

청소년대책추진회의는 청소년대책업무의 실무적 조정·총괄을 위해 설치·운영되는 것으로 대책본부의 차장인 총무청 사무차관을 의장으로 경찰청, 과학기술청, 환경청, 법무청, 외무성, 문부성, 후생성, 농림수산성 등 관계성청의 국장급으로 구성된다. 추진회의는 그 산하에 과장급의 각종 연락회의를 주관하고 긴밀한 연대를 도모하고 있다. (總務廳 靑少年對策本部, 1993)

[그림 II-10] 청소년행정의 추진체제



2. 교육제도

일본의 기본학제는 단선형의 6-3-3-4제로 우리나라와 매우 비슷하다. 일본의 초등학교(소학교)는 6살부터 12살까지의 아동들이 다니는 6년제이며 중학교는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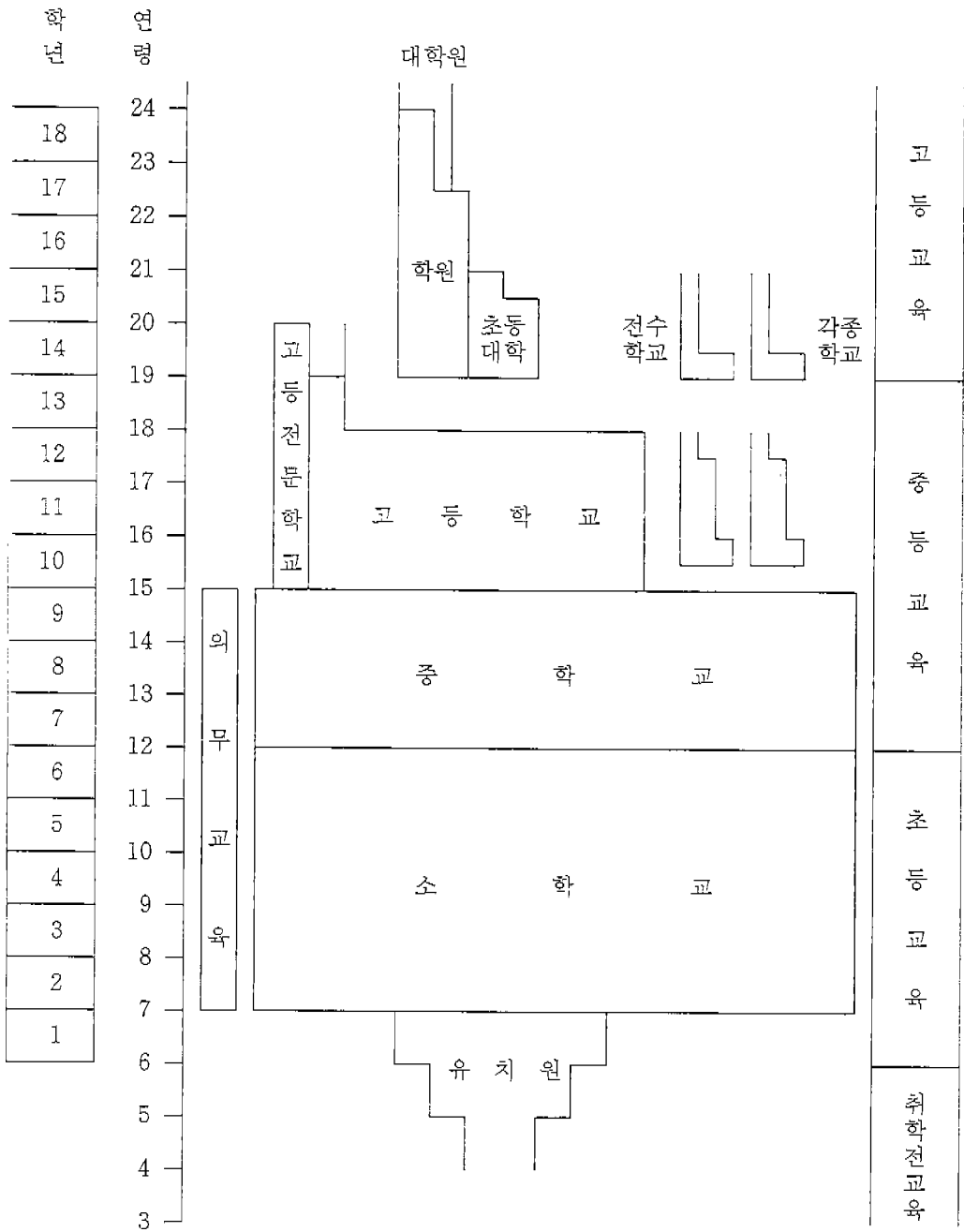
년제이다. 소학교부터 중학교까지 9년간을 의무교육으로 하고 있다. 중학교의 경우 입시제도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것이 우리와 다르다.

일본의 고등학교에는 전일제, 정시제, 통신제 세 가지가 있다. 전일제는 주간제 일반학교를 말하며 정시제나, 통신제는 경제적 사정이나 직업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을 위한 학교이다. 고등학교는 또한 과정별로 보통과정과 전문과정이 있는데 전자는 우리나라의 인문계 고등학교에 해당하고 후자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해당된다. 전문과정에는 전통적으로 수산, 농업, 공업, 상업, 가정, 간호과정이 있었으나 최근에는 이수과, 정보과학과 등 세분화되는 경향이 있다. (교육개혁위원회, 1994)

고등교육기관으로는 대학과 단기대학 이외에 고등전문학교, 전수학교 각종학교 등이 있다. 전수학교는 직업 혹은 실제 생활에 필요한 능력의 육성을 목표로한 수업년간 1년 이상의 학교를 말한다. 여기에는 중학교 졸업자를 받아들이는 고등전수학교와 고등학교 졸업자를 받아들이는 전문학교가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에서 전문학교라 하면 전수학교를 말하며, 우리의 전문대학과는 학교급이 다르다. 단기대학은 수업년간 2-3년의 실제적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한 학교이다. 이 밖에 고등 전문학교가 있는데 이것은 중학교 졸업자를 받아들이는 수업년간 5년의 학교로서 주로 공업계 학과가 많다.

교육제도와 관련하여 일본의 의무교육 학교의 취학률은 99%를 넘는 높은 수준이지만, 연간 50일 이상을 결석하는 장기결석자 및 등교거부 아동이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교육황폐화 문제에는 교내폭력과 이지메 문제가 지적되는데 교내 폭력은 교내의 기물파괴, 교사에 대한 폭행, 학생들간의 폭력행사 등을 가리키는데, 특히 교사에 대한 폭력이 많다는 점이다. ‘이지메’는 한 아동이 다른 아동 혹은 집단으로부터 갖가지 놀림을 당하는 현상을 말하는데 이것도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그림 II - 11] 일본의 학교제도



다. 활동정책의 내용

1. 청소년관계지도자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서는 풍부한 인간성과 전문적인 지식·기술을 가진 우수한 지도자의 존재가 불가결하다. 일본에는 청소년지도자가 민간과 행정양면에 걸쳐서 다종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민간인으로서 전업으로 종사하고 있는 사람, 직업 이외에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또는 행정관계의 비상근 직원으로서 위촉된 사람 등이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이러한 지도자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의 의의와 역할, 청소년단체의 조직·재무·광고·청소년단체의 학습활동의 기획·전개·평가, 그리고 청소년단체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토의·실기 등의 방법으로 연수를 받는다.

1) 청소년지도자의 종류와 유형

(1) 전문적인 행정직원

우선 행정직원에도 사회교육주사, 공민관주사, 청년의 집·소년자연의 집·스포츠 시설 등의 전문직원, 아동복지사, 사회복지주사, 직업훈련지도원, 농업개량보급원, 소년보도관 등의 여러가지 지도자들이 청소년관계 업무를 맡아하고 있다.

명칭	소속 기관·단체	인원(년도)
사회교육주사	도도부현·시정촌	6,558(1987.10)
사회복지주사	도도부현·시정촌	19,271(1987. 6)
개량보급원	농업개량보급소	
농업개량보급원		8,840(1989)
생활개량보급원		1,773(1989)
전문기술원 (청소년관계)	도도부현	24(1989)

(자료 : 청소년대책본부, 1993)

사회교육주사는 사회교육을 실시하는 공무원으로 전문적, 기술적인 조언과 지도를 받아 도도부현, 시 및 인구 1만명이상의 정촌(町村)에 의무적으로 배치되며

1987년 10월 현재 6,558명이 있다. 전문적 행정직원으로는 또한 농림수산업관계 지도자가 있는데 1988년도 말 현재 농업개량보급원 8,840명, 생활개량보급원 1,773명, 전문기술원 중 청소년관계업무 종사자는 24명이 있는데 이들은 보급지도활동의 일환으로 농촌청소년의 지도육성을 담당하고 있으며 농림수산성이 지원한다. 이 중에서 임업관계지도자는 임업농에게 임업경영, 기술 등을 지도하면서 산촌에 거주하는 청소년을 지도한다. 어업관계지도자는 수산업개량보급사업을 담당하는 직원으로서 어업후계자인 어촌 청소년을 육성·지도한다.

명칭	소속 기관·단체	인원(년도)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 전문직원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	13(1989. 4)
국립청년의 집 전문직원	국립청년의 집	72(1989. 4)
공립청년의 집 지도직원	현립·시정촌립 청년의 집	1,035(1987.10)
국립소년자년의 집 전문직원	국립소년자년의 집	47(1989. 4)
공립소년자년의 집 지도직원	현립·시정촌립 소년자년의 집	732(1987.10)
공립아동문화센터 지도직원	현립·시정촌립 아동문화센터	132(1987.10)
공민관주사	공민관	17,313(1987.10)
사서	도서관	5,654(1987.10)
학예원	박물관	1,804(1987.10)
근로청소년 Home 지도직원	근로청소년 Home 지도원	2,068(1989.10)
아동후생원	자격강습 수강자 수	
공영유스호스텔 지도직원	아동관, 아동유원	11,000(1988.10)
청소년여행촌 촌장	공영유스호스텔	75(1989)
아동복지사	청소년여행촌	80(1989)
아동지도원	아동상담소	1,062(1989. 5)
보호	양호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7,974(1988.10)
영도지도주사(학교교사)	보육소	193,008(1989.10)
진로지도주사(학교교사)	중학교, 고등학교	16,602(1990. 5)
직업훈련지도원	중학교, 고등학교	16,602(1990. 5)
농민연수교육시설 지도직원	공공직업훈련시설	6,641(1989)
부인보도원	농민연수교육시설	718(1989. 4)
보호관찰관	도부현경찰본부, 경찰서	960(1990. 4)
소년원교관	지방생생보호위원회, 보호관찰소	949(1990. 4)
소년감별소교관	소년원	2,054(1990. 4)
소년감별소지관	소년감별소	725(1990. 4)
교호	소년감별소	194(1990. 4)
교도	교호원	671(1989)
	교도원	361(1988.10)

(자료: 청소년대책본부, 1993)

(2) 청소년 건전육성 시설 등에 근무하는 전문직원 등

청소년관계 시설의 직원은 청소년시설에 근무하면서 시설을 이용하는 청소년을 지도·조언해 주는데 직원현황은 국립을림박물관 청소년종합센터 전문직원 13명, 국립청년의 집 전문직원 72명, 공립청년의 집 지도직원 1,035명, 국립소년자원의 집 전문직원 47명, 공립소년자원의 집 지도직원 732명, 공립아동문화센터 지도직원 132명, 공민관 주사 17,313명, 도서관 사서 5,654명, 학예원 1,804명 등이다.

근로청소년 홈 지도원은 노동성이 매년 실시하는 「근로청소년 홈 지도원 자격강습」의 수강자중에서 선임하며 이들의 역할은 근로청소년들의 레크리에이션, 그룹활동의 지도, 생활 및 직업상담 등을 한다. 아동후생원은 아동관, 아동유원 등 아동후생시설에서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를 제공하고 놀이를 통해서 집단적 또는 개별적 지도를 하는 직원이다. 1988년 10월 현재 약 1만 1천명이 있으며 후생성은 아동후생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연수회를 개최한다.

명칭	소속 기관·단체	인원(년도)
아동위원(민생위원)	시정촌	183,460(1989.12)
가정상담원	도도부현·시	1,704(1989. 6)
신체장애자상담원	도도부현	12,240(1989)
정신박약자상담원	도도부현·시정촌	4,728(1990.10)
모자상담원	도도부현	1,108(1989. 3)
모자보건추진원	시정촌	75,557(1989)
사회교육지도원	도도부현·시정촌	6,853(1987.10)
체육지도위원	시정촌	58,039(1990)
사회교육위원	도도부현	845(1989)
	시정촌	37,648(1987.10)
직업상담원	공공직업안정소	1,633(1989. 4)
부인소년실 협조원	각도도부현 부인소년실	2,910(1989. 3)
부인소년실 특별협조원	각도도부현 부인소년실	139(1989. 3)
지도농업사	도도현	5,694(1990. 3)
청소년지도원·청소년상담원 등	도도부현·시정촌	
소년지도위원	도도부현 공안위원회	5,100(1990. 4)
소년보도원(경찰분)	경찰서	57,000(1990. 4)
소년경찰 협조원	경찰서	1,200(1990. 4)
소년보도위원(경찰분을 제외)	소년보도센터(684개소)	71,196(1990.11)
보호사	보호구(도도부현의 구역을 분리한 구역-892개소)	48,600(1990. 1)

(자료: 청소년대책본부, 1993)

(3) 기업 등의 유급지도자

기업 등의 유급지도자로는 근로청소년복지추진자와 근로청소년복지원이 있다. 근로청소년복지추진자는 20세 미만의 근로청소년을 2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본사, 지점, 공장 등의 개개에서 1단위), 1사업장 최저 1인 기준으로 19,750명(1989년 5월)이며, 근로청소년복지원은 중소기업단체에 있으며 1989년 5월 현재 그 수는 2,979명이다.

(4) 행정기관 등이 위촉한 지도자

행정기관 등이 위촉한 지도자에는 아동위원, 가정상담원, 사회교육위원, 사회교육지도원, 체육지도위원, 직업상담원, 소년보도원, 청소년상담원, 보호사 등이 있다.

아동위원은 아동 및 임산부의 복지에 관해 원조·지도를 하며 사회복지주사와 아동복지사가 하는 일에 협력한다. 후생성은 도도부현, 시정촌이 사회복지협의회와 협력해서 아동위원의 연수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한다. 1989년말 현재 전국 시정촌이 183,460명이 배치되어 있다.가정상담원은 복지사무소에 설치된 가정아동상담실이 배치되어 아동의 가정양육에 관한 문제 등의 상담에 응한다. 1989년 6월 현재 가정아동상담실 958개소에 약 1,704명의 가정상담원이 배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전문적 지식과 기술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후생성과 지방공공단체에서 매년 연수회를 개최한다.

사회교육지도원은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위촉을 해서 사회교육 특정분야에서 직접 지도, 학습상담을 한다.체육지도위원은 시정촌 교육위원회가 임명하는 비상근직원으로 체육스포츠 진흥사업의 기획·임안·추진하는데 기술적 지도를 하며 1990년 5월 현재 전국에 약 58,039명이 배치되어 있다. 문부성은 이들 체육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연수회를 실시한다.

(5) 민간의 유지지도자(자원봉사자)

청소년육성국민운동추진지도원과 추진원들은 지역사회에서 청소년을 위시한 주민들과 직접 접촉하며 활동을 하므로 청소년육성국민운동의 지역 확산에 큰 공헌을 했다. 추진지도원은 지사 또는 청소년육성 현민회의 회장이 위촉을 하며 각 시정촌에 한 사람 이상 배치되어 지역주민과 청소년단체의 지도·상담·연락을 담당한다.

추진원은 시정촌장 또는 청소년육성 시정촌민회의 회장이 위촉하며, 각 시정촌의 말단지역에서 청소년지도·상담을 한다. 1989년말 현재 약 9,500명의 청소년육성국민운동추진지도원과 8,700명의 추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관계기관에서는 이들 청소년 건전육성 지도자들을 대상으로 각종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명칭	소속 기관·단체	인원(년도)
청소년육성국민운동추진지도원	청소년육성도부현 민의회	9,500(1989)
청소년육성국민운동추진원	41도부현, 25도부현	87,000(1989)
V.Y.S 회원		4,750(1990)
스포츠 지도원	등록자수	25,221(1990. 4)
인권옹호위원	전국인권옹호위원연합회, 도도부현인권옹호위원연합회	13,000(1990. 4)
갱생보호부인회원		181,000(1990. 4)
BBS회원		6,500(1990. 4)
독지면접원		1,965(1990. 4)
교회사(敎誨師)		1,822(1990. 4)

(자료 : 청소년대책본부, 1993)

2) 청소년지도자의 역할과 과제

일본 청소년지도자들은 이러한 다양한 호칭과 종류로 구분되고 있지만 역할과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는 기능상 유사하다 이들은 대체로 청소년단체나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와 실제적인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청소년활동을 지도 감독하거나 청소년사업을 후원 찬조하는 경우 등으로 대별된다.

첫째의 경우는 환경이나 조건의 정비, 연락, 조정, 지도자양성, 예산정비, 배분, 사업의 기획, 집행등을 맡아하는 사회교육주사, 사회복지주사, 그 밖에 지도관계 행정직원이나 민간단체의 임직원, 행정관계직원, 시설직원 등 관리운영부문에 종사하는 지도자들이 있다. 이들은 또한 단체의 조직화, 연대 강화 등을 도모하는 역할도 한다

둘째, 전문적인 지도자의 경우, 단체의 리더, 사회교육주사, 청소년육성운동추진원 등 주로 단체활동에 대한 감독·지도하는 역할을 하며 전문특기를 갖고 강의, 조언, 프로그램 작성, 원조, 스포츠·레크리에이션 지도 등을 직접 수행하거나 상담,

진단, 보도 등의 분야에 종사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학식·경험자, 각종시설 지도직원, 농업개량보급원과 아동복지사, 청소년상담원, 소년보도위원등이 속한다. 복지, 보호관찰 등의 역할을 하는 아동지도원, 보호사 등도 이와 유사한 역할을 한다.

셋째, 각종 활동에의 협력, 원조, 후원 등을 맡아하거나 단체의 유지, 발전 등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경우는 민간독지가, 자원봉사자, 사회교육지도원, 청소년지도원 및 단체의 상근·비상근 지도 임직원, 리더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본의 청소년지도자의 활동에 대해서는 오늘날 지도자의 절대수 부족, 지도상 전문성의 결여, 지도자 양성 연수의 미흡, 지도자의 처우나 사회평가의 문제, 각종 지도자간의 통일성과 연계성의 결여 등이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인 청소년단체의 활동지도에 있어서는 지도자와 청소년 간의 커뮤니케이션 등에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청소년단체에 있어서의 지도자와 청소년 사이의 바람직한 커뮤니케이션 환경이란 청소년의 감정과 욕구를 잘 받아들이는 것이다. 청소년단체는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커뮤니케이션에 기초하는 공감·신뢰관계에 의해서 청소년의 성장과정까지도 고려하는 성숙한 지도자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청소년지도를 위한 폭넓은 연수기회를 제공해야 할 필요성도 많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야외활동이나 레크리에이션 활동을 주체로 한 단체나 소년단체들 중에서는 소년·소녀 지도자의 양성에 힘을 쓰고 있는 곳이 적지 않는데 연수내용에 관해서는 다시한번 볼 필요가 있다. 예컨대, 어떤 곳에서는 레크리에이션 지도의 기술적인 연수내용이 대부분이지만 이들은 이것 만을 습득하고 지도자로서 어른과 같이 행동하려는 인식을 갖는 경우가 많다. 지도자는 기술 뿐만 아니라 단체운영의 방법, 카운슬링, 그룹워크 등의 청소년이해의 방법 등의 습득, 그것을 활용한 현장경험 등이 요구되는데, 기술만 갖고 있으면 청소년 지도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2. 청소년활동 시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교육시설, 체육시설, 근로청소년복지시설, 아동후생시설, 공원, 박물관, 도서관, 공민관 등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모든 시설을 광범위하게 망라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집, 소년자연의 집, 아동문화센터,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유스호스텔, 청소년여행마을, 청소년회관 등이 소관 성·청별로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다. 청소년시설의 건립·운영면에서 특징은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단위 청소년활동의 중심이 되는 26개 청소년시설은 문부성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시설의 특징은 숙박, 레크리에이션 활동, 야영, 체육활동 등의 기본적 활동을 위한 시설은 물론, 위생시설, 자판기, 휴게실, 독서실, 자료실 등 각종 교육·문화·편익시설이 완비된 종합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다.

특히 야외활동시설은 그 설치자에 따라 공영과 민영의 2개로 대별할 수 있으며 시설구성이나 입지 이용자층에 별로 차이는 없어도 명칭은 설치자에 따라 전혀 다르게 된다. 이러한 시설은 국가보조금에 따라 설치되는 경우가 많고 국영보다 지방자치체에 의해 관리운영되고 있다. (박명운, 1990)

여기서 야외활동시설은 일상생활권에서 일정한 거리에 입지해 있고, 자연환경적 여건이 좋은 곳에 설치되었으며, 숙박가능하고 상근직원이 있으며, 관리동과 교육시설을 상비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국가가 보조금을 내고 만든 것은 대체로 이상의 조건을 채우고 있다. 여기서는 이를 운영하는 소관 성·청별로 주요 청소년활동시설을 개관하기로 한다.

1) 시설의 유형과 종류

(1) 문부성 운영시설

문부성은 가장 많은 수와 종류의 청소년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청소년의 집, 소년자연의 집,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터, 아동문화센터, 국립난자요. 청소년야영장, 부인 교육회관, 사회체육시설, 공민관, 박물관, 도서관 등이 있다.

① 청년의 집 : 청소년집은 국립으로 설치 운영되는 것과 도도부현, 시정촌이 설치하는 공립 청년의 집이 있다. 국립 청년의 집은 단체 숙박훈련을 통하여 건전한 청년의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청년전용 시설이다. 전국에서 현재 1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그 규모는 부지 평균 22만㎡, 건물은 약 13,000㎡로서 각 청년의 집은 연수실, 강당, 체육관, 숙박실, 욕실, 식당을 갖고 있고 옥외시설로서는 운동장, 야구장 외에 주변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캠프장, 하이킹코스, 스키장, 오리엔티어링코스, 해양연수시설 등을 갖추고 있다. 숙박 정원은 약 400명 이다.(日本 青年の家, 1994)

국립청년의 집의 사업은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주최사업과 각종의 청년단체나 그룹을 받아들여서 행하는 사업으로 구분되며 (1) 직업인, 사회인 또는 학생·생도로서의 자질향상사업, (2) 청년단체활동조장사업, (3) 청년교육지도자 연수사업 등이 실시되고 있다. 그외에 청년을 넓은 지역에 교류시키는 사업이 있다. 이 시설은 (1) 규율, 협동, 우애, 봉사정신의 함양, (2) 자율성, 책임감 및 실천력의 체득, (3) 상호 연대의식, 향토애, 조국애 및 국제이해의 정신배양, (4) 교양의 향상, 정신순화, 체력의 증강 등을 교육 목표로 하고 있다.

설치 년도순으로 이것을 살펴보면 (1) 국립중앙청년의 집(시즈오가현 고덴바시), (2) 국립아소(阿蘇)청년의 집(구마모토현 이찌노미야마찌), (3) 국립 반제(磐梯) 청년의 집(후쿠시마현 이나시로쵸), (4) 국립대설청년의 집(후카이도 미에마찌), (5) 국립강전도(江田島)청년의 집(히로시마현 애다지마), (6) 국립달로(淡路)청년의 집(효고현, 난타쵸), (7) 국립적성(赤城)청년의 집(군바현 후지미무라), (8) 국립능등(能登)청년의 집(이시가와현 우사시), (9) 국립암수산(岩水山)청년의 집(이와대현 다끼사와무라), (10) 국립 충위(沖위)청년의 집(오키나와현 도카시끼무라), (11) 국립 대주(大州)청년의 집(애히메현 오오수시), (12) 국립승안(乘鞍)청년의 집(기후현 다카야마시), (13) 국립삼병(三瓶)청년의 집(시마네현 오오다시) 이다.

공립청년의 집은 국립청년의 집과 같이 청년의 단체숙박훈련을 위한 광역권 시설이다. 이것은 숙박형과 비숙박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비숙박형(도시형 청년의 집)은 도시에서 생활하는 청년이 일상생활에 알맞게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문화활동을

통한 교환교류를 꾀하고 친구들과의 만남을 깊게 하기 위한 일상생활권 시설이다.

② 소년 자연의 집 : ‘소년 자연의 집’은 소년을 자연과 친하게 하고 자연속에서의 단체 숙박훈련을 통하여 그 정서나 사회성을 풍부하게 하고 심신을 단련하며 건전한 육성을 목적으로 하는 소년전용 시설이다. 특히 최근의 도시화 현상의 증대에 따라 자연이 상실되어 소년들이 이에 친해지는 기회가 적어지고 있어 이 역할의 중요성은 더욱 크게 되었다.

소년 자연의 집 역시 국립과 공립의 집으로 나누어지는데 1975년 국립의 제1호로서 고오찌현에 설치되었다. 부지 약 100만㎡ 건물 약 1만㎡ 를 갖고 400명이 동시에 숙박할 수 있다. 1990년 현재 전국에 13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이 시설의 사업은 소년의 집 자체사업이 있고, 각종 소년단체의 활동계획에 근거한 지도사업이 있다. 소년야외활동 조장사업, 소년단체활동 조장사업, 소년교육 지도자 연수사업이 실시되고 국립청년의 집 처럼 선도적 사업을 한다. 이 시설에는 숙박실, 연수실, 담화실, 프레이홀, 식당, 욕실 등이 있고, 욕외시설로는 야외취식장, 스키장이 있고 주변환경에 따라 하이킹코스, 오리엔티어링코스가 있다.(少年自然の家, 1994)

③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터 : 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터는 청소년 및 청소년지도자 기타의 청소년 교육관계자의 연수와 청소년 교육시설 단체와의 연락, 협력 및 청소년에 관한 전문적인 조사연구를 행하되로서 건전한 청소년의 육성 및 청소년교육의 진흥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설치된 국립 청소년시설이다.(국립올림픽기념 청소년종합센터, 1994) 동 청소년 종합센터는 1964년 10월 제18회 동경 올림픽 경기대회의 선수촌으로 사용한 건물을 이용하여 개원하였으며, 1966년 1월 연수사업을 처음 실시하였으며 현재는 부지 91,000㎡, 건평 64,000㎡로 연수시설(연수실, 연극·연수실, 음악실 등), 체육, 스포츠 시설(체육관, 탁구장, 욕외풀장), 숙박실(숙박정원 2,500명) 등이 있고, 청소년의 다양한 연수활동에 사용되고 있다.

이 센터의 사업에는 센터가 직접 기획·실시하는 주최사업과 청소년단체, 그룹, 학교 등이 기획한 연수계획에 근거한 실시되는 연수사업이 있다. 주최사업으로는 청소년 교육지도자의 양성사업, 청소년교육시설·청소년단체와의 연박협력사업, 사회교

도, 체육, 문화활동 등의 조장사업, 청소년교육시설의 제휴 향상사업, 지역을 대상으로 개설한 사업이 있다. 청소년교육에 관한 정보자료의 수집·제공·전문적인 조사연구도 행해진다.

④ 아동문화센터 : 아동문화센터는 소년에 대하여 과학 지식의 보급, 문화생활을 통하여 정서의 함양, 생활지도를 하는 등 소년의 흥미와 관심에 따른 자발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시설이다. 도서실, 전시실, 음악실, 플라네타륨(planetarium) 등이 설치되어 있어 소년들에게 제공되는 외에 각종 단체의 거점으로도 되고 있다.

⑤ 국립 난자오(南藏王) 청소년야영장 : 국립 난자오 청소년야영장은 이야기현, 시로이시시, 자오산 산 기슭의 웅대한 자연 속에서 캠프생활을 통하여 자연의 연속함과 아름다움을 체험하는 중에 자립심과 인내심을 배양하여 청소년의 풍부한 마음과 능률한 몸을 키우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79년 “세계 아동의 해”기념사업으로 구상되어 1989년 7월에 개장되었다. 야영장의 규모는 부지면적이 약 159헥타르이며 3천명이 야영할 수 있다.

⑥ 부인교육회관 : 부인교육회관은 1990년 현재 전국 119개소가 설치 운영되고 있으며 이중 1개소는 국립이다.

⑦ 사회체육시설 : 사회체육시설은 스포츠 진흥법에 의하여 운동을 통해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꾀하기 위한 시설이고 야구장, 정구장 등의 실외운동장이 있고, 체육관, 검도장 등의 실내운동장, 수영장 등을 갖고 있다. 사회체육시설은 공공스포츠 시설은 60,777개, 직장 스포츠시설이 29,332개, 민간시설이 43,889개로 총 133,998개가 있다(학교 체육시설은 158,119개소). 학교시설 외에 공립, 체육 스포츠 시설로는 국민운동장 17,508개(육상경기장 716개, 정구장 4,300개, 배구장 470개, 농구장 26개, 구기장 499개, 야구장 4,777개, 운동광장 6,720) 수영장 3,528개, 국민체육관 5,589개, 국민 검도장 1,932개 등이 있다.

⑧ 공민관 : 공민관은 시정촌 그 밖에 일정 지역내의 주민을 위하여 실제생활이 맞추어 교육, 학술 및 문화에 관한 사업을 하고 교양의 향상, 건강의 증진, 정서의 순화를 꾀하고 생활문화의 진흥, 사회복지의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주요사업으로는 각종 학급, 강좌, 강습회, 전시회, 체육, 레크리에이션

등을 실시하고 있고 특히 청소년에 대해서는 청년학급을 비롯하여 청년교실, 강연회, 영화회 등을 실시하는 외에 아동실, 공작실, 음악실 등 청소년을 위한 시설을 마련해 두고 있는 곳이 많다. 1988년 현재 본관 총수는 17,440개(시구 7,560개, 정 7,914개, 촌 1,946개, 조합 및 법인 20개)가 있다.

⑨ 박물관 : 박물관은 박물관법에 의하여 역사, 예술, 민속, 산업, 자연과학 등에 관한 자료를 모집하고 보관하고 전시하여 교육적 배려 아래 교양, 조사연구, 레크리에이션 등에 도움될 것을 목적으로하는 시설이다. 각종 자료의 전시 외에 자료에 관한 강습회, 영화회 등을 개최하고 있고 청소년의 이용이 많다. 전국에 737개(국립 28, 도도부현 100, 시 214, 정촌 40, 법인 기타 355개) 박물관이 있다.

⑩ 도서관 : 도서관은 도서관법에 의하여 도서, 기록 그 밖의 자료를 일반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그 교양, 조사연구, 레크리에이션 등에 도움이 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다. 도서의 대출, 독서상담, 자동차문고 등의 서비스도 하고 있어 청소년의 이용이 많다. 전국에 도도부현립 69개, 시구립 1,201개, 정촌립 48개, 조합 및 법인설립 35개 등 총 1,801개 도서관이 있다.

(2) 후생성 운영시설

후생성은 아동복지법에 근거를 둔 아동후생 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옥내형과 옥외형의 두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아동에게 건전한 놀이를 주어 건강을 증진하고 정서를 풍부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988년 현재 전자인 옥내형 시설로 아동관·아동센터가 3,803개 있으며 옥외형으로 1965년 5월 5일 어린이 날에 황태자의 결혼기념으로 개원한 「어린이 나라」가 1개 있으며 “국립종합아동센터”인 「어린이의 성」이 1985년 11월에 국제아동의 해 기념으로 개원하였다.

(3) 농림수산성 운영시설

농림수산성은 초·중·고등학교의 아동, 학생이 풍부한 자연환경에 친하면서 나무심기나 손질 등의 야외실습을 실시하프로서 숲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에 대한 이해를 깊이하고 나아가서는 자연 애호의 정신을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자연 휴양림인 청소년의 숲(森)을 설치 운영하고 있는데 다음 몇 가지로 구분된다.

① ‘체험의 숲’으로 이는 임야청이 소·중·고등학교, 아동·생도를 위시한 청

소년을 대상으로 해서 삼림과 융합을 통해 자연과 친해지면서, 체계적 모델에 의해, 삼림, 임업의 학습, 자연관찰, 임업생산활동의 체험실습을 행하여 삼림의 각종 기능·역할을 이해하여 미래사회에 있어서 인간생활과 삼림을 결부시키기 위해 도도부현이 실시하고 있다.(김영모 외, 1988) 1989년 현재 이러한 체험의 숲은 전국적으로 30개소가 설치·운영되고 있다.

② 농림수산성은 또한 자연휴양림, 야외스포츠 숲(스키장, 야영장 등), 자연관찰 교육림 등을 ‘레크리에이션 숲’으로 선정하여 국민들의 삼림 레크리에이션을 도모하고 있다. 1990년 현재 전국 1,179개소가 설치되어 있다.

③ 농촌청소년활동 촉진시설은 농업개량보급소에 부설되어 있으며 농촌청년이 일일연수나 교류를 하고 또 자유로운 집회나 레크리에이션의 장으로도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서 농촌청년의 연수강화 및 자주활동의 촉진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시설이다. 농업개량보급소에 부설되어 있어 연수실, 실험실, 시청각 교육시설, 집회실 등을 갖고 있고 농촌청소년의 활동 거점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1988년 현재 총수 168개소이다.

(4) 운수성 운영시설

① 관광 레크리에이션 지구(가족 여행촌)는 국민이 자연속에서 가볍게 이용할 수 있는 건전한 관광레크리에이션 활동의 장인데, 운수성이 지방공공단체에 보조금을 주어 캠프장, 유보도, 피크닉 녹지, 싸이클링도로, 스키장 등 다양한 관광레크리에이션 시설을 하고 있다. 1990년 7월 현재 전국에 32개가 있다.

② 청소년 여행촌은 관광 레크리에이션 지구 중에 전국에 80개가 있으며 약 111만명이 이용하였다. 그외 311개 공영국민숙사, 30개 국민휴가촌, 92개 자연휴양림 등이 있다.

③ 운수성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해 규율있는 생활, 청소년 상호교류 시설로서 지방공공 단체에 보조금을 주고 유스호스텔을 관리 운영토록 한다. 1961년 滋賀縣 大津市에 국립유스호스텔센터가 설치되어 전국에 74개소 설치되어 있는 공영유스호스텔의 운영에 관한 조사연구, 지도를 하는 등 유스호스텔의 중추기관의 역할도 다하고 있다. 1990년 11월 현재 전국에 국립 1개소 도도부현 운영의 공립이

74개소 및 일본 유스호스텔협회 등의 민영 367개가 있다.

(5) 노동성 운영시설

① 근로청소년 홈(Home) : 근로청소년 홈(Home)은 근로청소년 특히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소년의 여가활동을 위한 복지시설로서 주로 지방공공단체가 설치한다. 이 시설에는 운동설비, 오락·담화실, 음악실 등이 있고 일하는 청소년이 개별적으로 이용하거나 그룹활동에 이용된다. 이 외에 각종의 상담에 응한다든지 꽃꽂이, 요리, 그림, 영어회화 등의 각종 교양강좌나 음악회, 영화회 등도 실시되고 있다. 1988년 현재 그 총수는 574개이고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② 근로자 체육시설 : 근로자 체육시설은 중소기업의 근로자, 농공단지의 근로자들의 복지증진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시설로서 체육관, 야구장, 교양·문화실이 있는 A형 시설과 다목적 운동장, 정구장, 로울러 스케이트장 등의 야외 스포츠 시설이 설치된 B형 시설이 있다. 현재 995개 시설이 있다.

③ 전국근로청소년회관 : 전국근로청소년회관은 근로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복지증진을 위해 노동성이 계획하고 고용촉진 사업단이 1973년에 건설하여 운영하는 지하 2층, 지상 21층의 대규모 시설로서 동경도 중야구에 위치하고 있다. 건물 총면적 5만㎡ 에는 학원교실, 상담실, 그룹실, 트레이닝실, 수영장, 볼링장, 국제회의장, 결혼식장, 호텔, 레스토랑 등이 있다.

④ 근로청소년 프렌드십 센터 : 근로청소년 프렌드십 센터(Friendship Center)는 일하는 청소년이 여가를 이용하여 자연환경 속에서 숙박하면서 우정을 나누고 야외활동을 하는 시설로서 고용촉진사업단이 4개소를 설치하였다.

⑤ 일하는 부인의 집 : 일하는 부인의 집은 일하는 부인들을 위하여 요리실습실, 가벼운 운동실, 도서실 등을 시설하여 직업상담, 직장생활, 가정생활을 원조해주는 사업을 실시한다. 1988년 현재 전국에 214개소가 있다.

⑥ 중소기업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 : 중소기업 레크리에이션 센터와 근로총합복지센터는 1988년 현재 전국에 각각 6개소와 24개소가 있다.

⑦ 근로자 야외 활동시설 : 근로자 야외 활동시설은 근로자들이 2일간의 연휴를 이용하여 자연과 친하면서 휴양과 건강증진을 할 수 있는 시설로서 비숙박형과

숙박형으로 설치되어 있다.

⑧ 근로자 직업복지 센터 : 근로자 직업복지 센터는 대도시에 있는 근로자의 복지를 충실히 하기 위해 트레이닝실, 집단실, 풀장, 결혼식장, 레스토랑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1990년 현재 전국에 5개소가 있다.

〈표 II-3〉 청소년 건전육성 관계시설 일람

성 명	시 설 명	설치수 (개소)
문 부 성	청년의 집	숙 박 형 280(국립 13, 공립 : 1987)
		비숙박형 160(공립 : 1987)
	소년 자연의 집	259(국립 13 : 1990) (공립 : 1987)
	국립올림픽기념청소년종합센터	1(1987)
	아동문화센터	45(1987)
	국립남장왕청소년야영장	1(1988)
	부인교육회관	119(국립 1 : 1990. 4)
	사회체육시설	133,998(1985)
	공민관	17,440(1987)
	박물관	737(국립 28 : 1987)
	도서관	1,801(1987)
후 생 성	아동관·아동센터	3,803(1988)
	「어린이의 나라」 국립종합아동센터	1(1988)
	「어린이의 성」	1(1988)
농 립 수 산 성	체협의 숲	60(1989. 4)
	레크리에이션의 숲	1,179(1990. 4)
	농촌청소년활동촉진시설	168(1988)
운 수 성	레크리에이션 지구	32(1990. 7)
	청소년여행촌	80(1988)
	유스호스텔	국립 1, 도도부현 74 (민영 367) (1990.11)
노 동 성	근로청소년 홈(Home)	574(1988)
	근로자체육시설	995(1988)
	전국근로청소년회관(中野선프라자)	1(1988)
	근로청소년 Friendship Center	4(1988)
	일하는 부인의 집	214(1988)
	중소기업 레크리에이션 센터	6(1988)
	근로종합복지센터	24(1988)
	근로자야외활동시설	A형 120, B형 32(1988)
	근로자직업복지센터	5(1990.6)

(자료 : 청소년대책본부, 1993)

다음의 표는 일본의 청소년건전육성관계 시설을 종합 제시한 것이다. 이 표의 현황은 주로 공공기관에서 설립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 밖에 민간의 청소년시설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것들이 일본청소년의 자기향상 활동에서의 역할은 지극히 크다.

2) 청소년시설 운영의 특성과 문제점

이상 주로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의 시책에서 볼 수 있는 청소년을 위한 시설로서 공영 야외활동시설을 중심으로 특징을 개관하였다. 그러나 시설은 광대한 부지와 설비, 도로 등을 포함하며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한다. 시설의 유지관리에도 많은 인력과 운영비가 소요된다. 이와 관련 일본의 청소년시설은 다음 몇가지 점에서 운영상의 특징과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지적 된다.

(1) 시설의 증설과 설치방향

청소년의 각종활동, 특히 단체활동의 거점으로서 시설이 갖는 의의와 역할에 비추어 앞으로 양적으로 획기적인 증대를 해야 한다. 각종의 조사에 의하면 특히 그룹, 씨클 등 단체활동에 참가하고 있는 청년들의 최대 요망사항은 공공시설을 보다 많이 설치해 주었으면 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고려할 점은 시설의 설치시에는 활동거점으로서의 캠프장 만을 정비하고 주위의 자연환경에는 되도록 손대지 않는 방향이 지향되어야 한다.

(2) 시설의 기능과 배치의 문제

이용자의 생활수준은 상당히 높아지고 있다. 또 이용자층의 저변은 이전에 비교하여 상당히 확대하고 있다. 종래와 같이 평소에는 일상생활권에서 훈련하고, 실지훈련은 자연 속에서 하는 활동만이 대상이 아니라 야외활동의 대중화가 진행하고 있다. 따라서 시설의 기능이 자연 속에 입지해 있다는 것 만으로 충족되지 않는다. 고급 시설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자택과 같은 수준의 설비를 가련할 것이 점차 요구되는 것이다. 어떤 시설이든지 비록 1박, 2박의 집단합숙이라고 해도 청소년 이용자들은 불편한 기분을 갖게되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3) 관리 체계의 문제와 시설간 유대강화

현재 지방자치체의 청소년시설 운영은 전국적으로 직영과 민간 위탁이 반반의 비율을 갖고 있다. 민간위탁의 비율이 좀 더 높은 지역도 있지만 각기 장단점이 있다. 그러나 이론적 실제적 양면에 있어서 위탁방식이 더 좋은 면이 많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와 함께 청소년을 위한 시설은 소관 성청의 것이 서로 아무런 관련도 없이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경향이 강하다. 청소년이 갖는 생산, 노동, 복지, 교육 등 전 생활에 걸쳐서 이러한 시설이 종합적인 관점에서 상호 긴밀한 유대와 제휴를 통해 운영됨으로써 시설이용의 활용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4) 운영에 관한 문제

운영에 관한 최대의 문제는 야외활동이 여름철에 집중된다는 것이다. 다른 계절과의 균형(Balance)이 맞지 않는다. 여름에 시설을 확보하기 때문에 봄부터 예약하게 되고 또, 기간도 짧아지며 한명이라도 많은 청소년을 이용하게 하려는 행정의 논리에 의해 1박2일형이 대부분의 활동일수가 된다. 2박3일형은 상당히 실적이 있는 학교가 아니면 예약을 못하는 실정이다. 다른 계절은 이용객이 격감하여 시설은 비게 되며 경우에 따라 폐쇄해 버릴 때도 있다. 이 문제는 교육제도 및 사회체계 전반과 관련된 문제로 일개 시설에서 해결할 수 있는 과제가 아니다. 그러나 시설 측면에서의 특별한 운영노력도 없는 실정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라는 것이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이 점에서 일본에서는 학교단위의 야외활동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모색되고 있다. 관서지방을 중심으로 하여 최근 나타나고 있는 지역사회와 청소년단체 간의 적극적인 연계활동은 커뮤니티의 교육력에 기대를 걸고 있다.

3. 활동사업과 프로그램

일본의 청소년 활동사업과 프로그램은 국가청소년대책으로 실시하는 시책사업과 각종 단체·시설 등의 민간부문에서 개발 실시하는 활동과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고 있다. 여기서는 우선 공공부문의 청소년시책사업을 개관하고 민간부문의 사업 사례로써 대표적인 청소년시설인 국립 청소년의 집의 1994년도 활동사업을 개관한다. 이와 관련 청소년단체의 교류·제휴 사업의 경향에 대해서도 고찰한다.

1) 공공부문의 청소년 정책·사업

(1) 청소년시책 사업개요

청소년대책의 범위는 청소년의 지도, 육성, 보호 및 교정의 제반사항이지만 청소년대책추진회의는 「청소년 대책추진 요강」을 1989년 9월에 건의합의하여 1991년 6월에 개정하였는데, 그 요강에는 ① 국민운동의 전개 및 광보계발 활동의 강화, ②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의 촉진, ③ 가정에 있어서 청소년육성의 지원, ④ 학교교육의 충실, ⑤ 직장에 관한 시책의 충실, ⑥ 청소년비행 등 문제행동의 방지활동의 촉진, ⑦ 소년사건 등의 처리체제 및 비행소년의 처우의 충실, ⑧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제공기능의 충실 등의 중점사항이 정해져 있다.(청소년대책추진회의, 1992)

이 가운데 청소년활동과 관련하여서는 특히 청소년건전육성활동의 촉진에 관한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 건전육성을 도모하기 위해서 청소년 클럽활동이나 단체활동 등에 참가시켜 풍부한 생활체험을 얻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의 건전육성 활동을 촉진함과 동시에 이를 위한 기반적 조건의 정비를 도모한다. 특히 청소년이 성장기에 감동을 경험할 기회, 자연과 사람과의 접촉 등 다양한 체험을 할 기회를 충실히 하고 동시에 청소년의 사회참가 활동 및 국제교류활동을 촉진한다.

첫째,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의 촉진과 그 기반적 조건의 정비이다. 이를 위해서는 ① 지역에 있어서 청소년의 건전육성활동이나 근로청소년의 복지증진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 사업을 충실히 한다(건전육성을 위한 지역활동의 진흥). ② 청소년의 단체활동 및 육성활동을 행할 관계단체를 지원하고 그들 단체의 제활동 강화를 도모한다.(청소년관계 단체의 지원) ③ 아동후생시설, 사회교육시설, 근로청소년

시설, 스포츠·레크레이션시설, 문화시설, 야외활동시설 등 청소년활동이나 육성활동장인 이들 시설의 충실을 도모한다. 이 경우 생활주변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현지 청소년의 특성에 맞는 시설이 되도록 힘쓴다. 그리고 또 시설의 유효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설운동을 탄력화한다(활동 장소의 정비충실). ④ 청소년의 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활동에 대해서 지도, 조언 등을 행하여 청소년 지도자의 양성·연수를 충실 도모한다. 또, 전문적인 지도자의 인재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 연수기관 등에서의 양성·연수를 더욱 충실히 한다. 그리고 지도자 상호의 제휴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도자 상호의 교류기회의 충실 등을 도모한다(지도자의 양성).

둘째, 청소년의 사회참가 활동의 촉진이다. ① 청소년의 사회봉사활동, 지역조성활동, 고령자와의 교류활동, 환경보전활동 등 클럽·단체활동, 자원봉사활동 등의 사회참가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각종의 사업을 촉진한다(사회참가 활동을 촉진). ② 청소년의 사회참가활동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그 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광보계발활동을 강화한다(광보계발활동 강화). ③ 지역에 있어서 사회참가활동에 관한 정보를 수집·제공하고 청소년의 상담에도 응하도록 관계기관·단체간의 체제·정비·충실 등을 촉진한다(정보제공의 충실). ④ 청소년의 사회참가활동 촉진관련 행정, 관계기관·단체 등의 관계자 제휴를 촉진하도록 지역 내의 정보교환 및 연수협회의 장을 정비·충실히 한다(지역에 있는 관계기관·단체 등의 제휴 강화).

셋째, 청소년 국제교류의 추진이다. ① 청소년이 일본의 국제적 입장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키고 국제적인 연대감이나 협조정신을 몸에 익히는 기회의 충실도모와 청소년의 국제교류·협력활동을 촉진하는 각종의 사업을 촉진한다. 차제에 일본 전국적으로 균형이 잡힌 상호교류의 촉진을 배려함과 동시에 세계에의 공헌을 도모할 시점에서 세계의 청소년이 교류할 수 있는 장을 적극적으로 제공토록 한다. 더욱 사업목적에 맞는 교류 프로그램의 설정, 시대의 진전에 따른 프로그램의 개선에 힘쓴다(국제교류사업의 추진). ② 지역에 있어서 국제교류·협력활동의 충실을 도모하는 시책을 촉진한다(지역에 있어서 국제교류활동의 지원). ③ 내외의 역사·문화의 학습과 외국어교육을 일층 더 충실히 한다(국제이해교육의 충실). ④ 국제교류에 관련된 시책·사업에 대해서 국가의 행정기관 상호, 국가와 지방공공단체, 행정과 청소년

년관계단체와의 제휴·협력을 강화한다.(시책·사업의 제휴 강화) ⑤ 교류프로그램의 기획·개발·지도자의 연수, 교류를 위한 필요한 내외의 정보·자료의 수집·작성·제공 등의 충실을 도모한다.(국제교류촉진을 위한 기반정비) ⑥ 국제교류사업에 참가한 청년의 사후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정보제공, 기타 지원책의 충실을 도모한다.(사후활동의 촉진)

(2) 청소년대책본부의 국제교류활동

국제화에 대응한 청소년 육성을 위해 청소년대책본부에서는 각종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파견 청년 연 약 12,000명, 방문청년 연 약 7,000명) 또한 지방공공단체 등에 있어서 각종의 청소년 국제교류 사업을 원활히 실시할 수 있도록 외국의 청소년 국제교류 상황의 조사, 청소년국제교류 뉴스 등의 출판 등, 청소년 국제교류에 관한 조사연구와 정보수집·제공을 행한다. 청소년대책본부가 실시하는 국제교류사업에 참가한 일본청년들은 「일본청년 국제교류기구」를 조직하고, 지역사회활동에의 참가, 외국청년과의 교류 등의 제활동을 하고 있다. 국제교류사업에 참가한 청년들은 귀국 후 사업에서 얻은 성과에 따라 각각의 지역 등에서 청소년 건전육성에 기여할 것이 기대된다. 청소년대책본부의 청소년 국제교류사업에는 다음 몇가지가 있다.

① 청년 해외파견

일본 황태자(당시)의 성혼을 기념하여 1959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매년, 세계 각국에서 3개국을 선정하여 약 10명의 일본 청소년을 파견하고 방문국에서의 현지 청년과의 교류, 일본문화의 소개, 방문국의 제사정의 연구 등을 행하고 있다.

② 외국청년 초청

1962년도에 시작한 것으로 「청년해외파견」의 방문국을 포함 세계각국의 청년 약 120명을 초청하고 「국제청년의 촌」에 참가토록 하는 등 일본청년과의 교류, 민박, 각종시설의 견학 등을 행하고 있다.

③ 세계청년의 배

명치 백년기념 사업의 하나로서 1967년도부터 실시해 온 「청년의 배」를 개조하고 새롭게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북·중·남미지역과 남서아시아·중근동·아프리카·

유럽 지역을 격년으로 방문하고 있다. 일본의 청년 약 100명과 방문국을 포함한 세계각국의 청년 약 175명이 「세계청년의 배」에 승선하여 세계적 시점에서 공통의 과제를 연구·토론함과 동시에 선상 및 방문국에 있어서의 각종의 교류활동을 행하고 있다.

④ 동남아시아 청년의 배

아시아 제국과 일본과의 공동성명에 따라서 1974년도에 시작한 것으로서 동남아시아 6개국의 청년 270명과 일본 청년 45명 계 315명의 청년이 「아시아 청년의 배」에 승선하여 각종의 활동을 행함과 동시에 동남아시아 6개국 및 일본을 방문하고 각국에 있어서 현지 청년과의 교류 등의 활동을 행하고 있다.

⑤ 일본·중국 청년 친선교류

일·중 평화우호조약의 체결을 기념하여 일본과 중국 양국 정부의 공동사업으로서 1979년도에 시작한 것으로서 양국간 교류사업으로서 일본청년 약 20명을 중국에 파견함과 동시에 중국청년 약 30명을 일본에 초청하고 있다.

⑥ 일본·한국 청년 친선교류

1984년도의 일본·한국 공동성명 및 1985년의 일·한 국교 정상화 20주년을 맞아 서 일본과 한국 양국정부의 공동사업으로서 87년도에 시작한 것으로서 양국간 교류사업으로서 일본 청년 약 20명을 한국에 파견함과 동시에 한국 청년 약 30명을 일본에 초청하고 있다.

⑦ 청소년지도자의 초청

상호 이해와 내외의 청소년단체의 조직적 유대의 긴밀화를 도모하기 위해 1977년도에 시작한 것으로서 개발도상국의 장래를 짚어준 청소년지도자 약 12명을 일본에 초청하고 넓게는 일본의 청소년 및 청소년단체 지도자와의 교류를 행하고 있다.

⑧ 국제 청년의 마을

UN에서 제창한 국제청년의 해의 기념사업으로서 1985년도에 시작한 것으로서 1987년도부터는 지방도시에서 개최되고 있다. 일본청년과 세계각국의 청년 약 150명씩 300명이 한 곳에 모여 약 1주간 침식을 공동으로 하는 가운데 의견교환, 문화 소개 등의 제활동을 행하고 있다.

2) 민간기관의 활동사업

(1) 「국립청년의 집」 활동프로그램

여기서는 일본청소년 시설의 활동사업과 프로그램을 알아보기 위해 대표적인 청소년시설인 「국립중앙청년의 집」의 주최사업의 일부를 소개하기로 한다. 청년의 집에서 행하는 활동은 후지산 등산 등의 야외활동, 각종 스포츠활동, 레크리에이션, 예술·문화활동, 일반교양 등 여러 종류에 걸쳐 있다. 이용 단체의 활동을 보면 강의·토의 등이 약 30%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야외활동과 레크리에이션이 각각 17%의 순이다. 국립중앙 청년의 집 주최사업은 선도적 시행을 거쳐서 공사립 청소년시설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함과 아울러 청소년교육관계 지도자의 자질 향상을 꾀하는 것을 취지로 하고 있으며 1994년도의 경우를 보면 다음과 같다. (國立中央青年の家, 1994)

① 청년의 집 축제(제13회)

국립중앙청년의 집이 지닌 교육기능을 지역사회와의 연대하에 폭넓게 개방하여 청소년활동, 국제교류활동, 스포츠·문화활동 등을 통해서 지역주민과 세대간 교류를 행함으로써 사회교육활동의 참가의욕 확충과 지역 공동체의 발전을 도모하고 아울러 청년의 집에 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1994년 7월에 2박 3일 동안 실시하였다. 소년축구대회, 게이트볼대회, 궁도대회, 권기대회, 우편전시, 신문기록 전시 등의 행사에 시내 고등학교, 축구협회, 궁도연맹, 신문사, 방송국 등의 기관·단체가 참가하였다. 참가 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축제를 자발적으로 진행해가는 무드가 조성되었으며, 고등학생·걸스카우트·보이스카우트의 자원봉사에 칭송이 높아 앞으로 계속 발전시키고자 한다.

② 후지산 등산

해발 3,776미터 후지산의 위대한 자연을 엄숙하게 접하면서 국제교류활동과 세대간 교류활동 등을 실천하고 협력의 정신을 배양함과 더불어 등산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과 기술을 체득한다. 7월에 2박 3일간 실시되었다.

③ 청소년교육 시설 직원 연구협의회

청소년 교육시설 직원에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기본적인 지식·기술을 습득함과 아

을러 생애학습 체계의 이행 속에서 국제화사회·정보화사회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과 시대의 진전에 따른 청소년교육 시설의 관리, 운영 등 폭넓게 연구협의를 하여 직원의 자질 향상을 도모한다. 1994년 12월 2박 3일간 실시할 계획으로 있다. 연구협의 내용은 기초연설, 강연, 강의, 패넌토의 등으로 구성될 것이다.

④ 겨울철에 단련하는 무도의 모임

연말연시에 겨울 휴가철에 각종 무도에 정진하는 청소년의 교류를 꾀하며 무도의 수련으로 심신을 다련하고 기술의 향상에 노력함과 아울러 스스로의 생활을 규제하는 태도를 배양하는데 취지가 있다.

⑤ 전국청소년교육시설 지도직원 전문연수

국·공립청년의 집·소년자연의 집 등의 지도계 직원 50인을 대상으로 6박 7일간 청소년지도에 필요한 지식·기술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수를 행하고 그의 식견을 높임과 동시에 지도력의 향상을 도모한다.

⑥ 전국청소년상담연구집회

문부성과 공동개최로 전국의 청소년상담 사업에 참여한 관계자 100인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연구집회를 통해 청소년 상담에 관한 연구를 증대하고 상호정보교환 등 업무의 발전을 도모한다.

⑦ 청소년교육 시설·단체연락회의

전국의 숙박형 청소년 교육시설의 운영자, 전국적 규모의 청소년단체 지도자, 청소년교육·행정 담당자, 학식경험자 등 20인을 대상으로 시설의 운영의 현황이나 상호 연락협력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청소년교육의 충실을 기한다.

⑧ 국립청소년교육시설 직원연구회

국립청소년교육시설의 운영의 실무적 중심이 되고 있는 직원을 대상으로 1박 2일간 시설 상호간 연락을 긴밀히 하고 청소년교육 시설로서의 운영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하여 실천적인 연구협의를 하고 따라서 청소년교육의 발전을 도모한다.

⑨ 전국청년 교환의 모임(전국청년 심포지움)

청소년육성국민회의와 공동개최로 청소년 및 청소년육성관계자, 외국인 청년 300인을 대상으로 2박 3일간 한자리에 모여서 일상의 활동을 성과나 과제에 따라서 연

구협의를하고 청년이 해야할 역할을 분명히 하게 한다.

⑩ 동경의 어린이 축제

도내의 초·중학생 및 부모, 청소년단체의 회원 25,000명을 대상으로 시설을 개방하고 각종 행사나 놀이 등을 통한 교류를 증대하며 친구만들기를 도모한다.

⑪ 청소년 국제교류·교환의 모임

청소년육성국민회의와 공동개최로 동남아세아 청년의 배 참가자, 일본의 일반청년, 외국인청년 450인을 대상으로 상호 의견교환이나 문화생활을 통해서 교류를 도모하고 우호와 상호이해를 심화한다.

(2) 청소년단체의 교류와 제휴

민간부문의 청소년활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청소년단체간의 교류와 제휴가 각 단체의 주요한 사업목표로서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단체간의 이러한 교류와 제휴의 움직임은 각 단체와 그 회원의 주된 생활기반을 출발점으로 하여 활동을 진행해 가고 있는 특성이 있다. 각 생활기반과 관련한 사업의 경향과 의미에 대해 알아본다.

첫째, 학교를 기반으로 한 교류와 제휴활동이다. 학교에 다니는 아동, 생도, 학생은 학교내의 여러가지 집단활동에 가입하면서, 자발적으로 학교외의 단체활동에 참가하고 있다. 특히, 가정에 있어서는 부모와 성인의 보호하에 있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재학청소년의 활동은 가정, 학교, 사회에서의 제활동이 없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 아동회, 자원봉사 그룹에서의 활동이 조정되고, 청소년 자신의 단체와 성인의 육성조직 및 교사집단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이 좋다. 특히 안전과 사고대책에는 신중하고, 학교의 지도에 따라야만 한다.

둘째, 직장·직역을 기반으로 한 교류와 제휴활동이다. 기업내에서의 학습, Group·문화·체육·레크리에이션·Circle 활동은 근로청소년의 요구와 기업의 생산성향상·인간관계개선의 의도로 뒷받침되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또한, 사원숙사 중심으로 한 집단활동도 많다. 그러나 기업의 이해관계도 있고, 기업간 교류 및 숙사밖의 활동에의 참가와 적극적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현상이다. 금후의 스포츠 대회를 통한 교환교류 기능공쿨의 개최, 노동조합 전문부에 의한 교류와 회사시설의 개방에 의한

교류, 기업과 지역이 하나로 된 커뮤니티 조성 등 청소년단체가 교류·제휴해야 할 분야가 넓다고 할 수 있다.

셋째,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한 교류와 제휴사업이다. 여기서의 문제는, 지역을 인연으로 생긴 지역집단이 지역과제를 충분히 받아들이고 있지 않은 것, 목적달성의 지역으로부터 벗어나, 지역집단과 목적집단과의 교류가 적은 것, 청소년단체와 지역의 성인생각에 큰 차이가 있는 것 등이다. 지역집단이 서로 협력하여 전통문화의 전승과 창조, 오늘날은 지역과제의 해결, 특히 새로운 커뮤니티(communitiy) 조성 등에 담당해야 할 역할이 크다. 청년의 제휴, 청년문화의 창조, 지역사회에의 참가를 목표로 지역내의 청소년단체가 하나로 되어 청년 웨스티발을 주최한다든가, 청년의 회를 개최한다든가, 고향운동·그린(green)운동에 주체적인 활동을 하는 것은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

넷째, 시설·행정을 기반으로 한 교류와 제휴 프로그램의 활성화이다. 청소년을 위한 공공시설을 이용한다든가, 시설 및 행정기관이 주체, 학급·강좌·대회 등의 사업과 지도자 양성 강좌 등에 참가한 것들이 중심으로 되어 활동하고 있는 청소년단체도 많다. 또한 단순한 시설이용단체였던 그룹, 씨클도 같은 시설을 이용하는 다른 단체와 연합협의회를 결성하여 시설의 운영을 돕는다든가, 자원봉사의 인재은행을 개설하여 지역사회와 미가입의 청소년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것도 기대된다.

다섯째, 학교·직장·지역사회를 통한 교류활동이다. 전통적으로 일본사회에서는 학생집단과 근로청소년집단이란 별도로 조직되고, 공통의 과제를 가지지 않는 것이 많았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각각 기본적 역할을 명확히 하면서 새로운 시대를 짚어진 젊은이로서 서로 교류, 제휴하고, 공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하나가 되어 뭉치는 것이 요청되고 있다.

여섯째, 청소년단체의 국제교류의 강화이다.국제사회에 있어서 나라의 역할증대와 더불어 일본의 청소년에도 보다 넓은 국제적 시야와 적극적인 국제활동이 기대되고 있다. 국제적인 조직을 가진 청소년단체의 활동교류가 예상되는 것과 함께, 지도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국내단체에도 국제교류의 기회가 폭넓게 주어지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4. 청소년활동 단체

1) 청소년단체의 종류와 유형

일본의 청소년단체는 단체활동의 성격으로 보아 다양한 목적과 활동을 가진 여러 가지 단체로 결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청소년단체는 그 형성기반이 된 제 조건 및 설립목표의 차이에 따라 우선 다음 몇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거주하는 지역을 기반으로하여 만들어지고, 스스로의 인격향상을 단련·도모하고자 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려고 하기 위한 청소년들이 스스로 결성한 단체 둘째, 기업을 모체로하여 만들어지고 흥미, 관심을 같이 하는 청소년들이 직장 내, 숙사내에서 여가시간을 이용하여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모인 그룹, 셋째, 결성된 모체로 되는 것은 특별히 없지만 취미, 동창회, 동향인, 자원봉사활동 등을 중심으로하여 활동하고자 하는 청소년이 주체적으로 모여서 결성된 단체 넷째, 정치, 종교, 사상을 하나로 하는 사람들의 단체를 모체로 하여 결성된 단체 다섯째, 직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전문적 지식, 기술을 익힌다든지 직업에 관한 공통의 이익을 도모한다든가, 동료 모임을 교류하여 만나는 단체 등이다.

또한, 목적별로 본다면 (1) 친목·동년배 조직, (2) 논의활동, (3) 봉사활동, (4) 학습활동, (5) 체육·레크리에이션 활동, (6) 문화·예술활동, (7) 기능체득, (8) 친목과 레크리에이션 활동, (9) 다목적형 등으로 세분하는 것이 가능하다. 대상별로는 소년에 의하여 만들어져 있는 소년단체, 청년에 의해 구성되어 있는 청년단체, 나아가서는 그 결성기반을 지역중심으로 하는 것, 직장 중심으로 하는 것, 또는 이러한 기반과는 관계없이 만들어진 것 등이 있다. 또 구성인원상 몇명에서부터 몇백명, 몇천명의 것, 단독의 조직에서 전국적 또는 국제적 연결을 갖는 것 등이 있다. 활동내용상으로 보아도 ① 정치, 경제, 문화 등 청소년에게 필요한 교양의 습득, ② 음악, 미술, 서예 등 취미향상, ③ 체육,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④ 의식주 등 생활개선 및 생활향상, ⑤ 경제문제, 농업, 개발 등의 문제와 관계되는 것, ⑥ 친교 및 상호교류, ⑦ 국제이해와 친선교류, ⑧ 학술연구, ⑨ 향토 미화, 사회봉사 등 사회활동을 주로 하는 것에서부터, ⑩ 이상의 각종 활동 중 몇 가지를 복합한 것 등 매우 다양한 사

업목적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어느 것이나 공통의 흥미나 관심, 필요한 이해, 환경이나 생활조건을 유대로 하여 결성되고 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성원의 상호교류, 공동활동 등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청소년들이 그 건전한 성장을 이룩하는 뜻에서 이러한 청소년활동의 의의와 역할은 크다.

그러나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청소년단체의 종류 및 활동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기본적인 성격은,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을 위한 집단활동」이라는 점이다. 회원의 공통의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합의와 조직적·계속적인 활동을 가진 청소년의 집합체인 점이 기본이다. 그 같은 청소년단체의 공통적 특징은 ① 즐거운 동년배의 장 ② 도움이 되는 자기단련의 장 ③ 사회에 유익한 도전의 장 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첫번째는, 청소년을 불안 및 고독, 불만 및 고민에서 해방하고, 동년배 및 친구와 자유로이 소탈하게 대화한다든가, 노래부른다든가 함으로써 즐거움이라고 하는 청소년의 일차적인 바램을 중시하는 것이다. 둘째는, 청소년의 연령 및 발달단계에 따라 다르지만, 바람직한 청소년·성인이 되기 위한 학습·연수활동을 통하여 자신과 타인과의 상호교류 속에서 자기의생각과 행동이 보다 객관화하고, 상호학습의 효과를 높이며, 사회연대의식을 강화하는 것이 기대되고, 친구애와 신뢰관계를 기본으로 하는 집단활동의 교육성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세번째는 여가시대에 있어서 적극적인 여가활동, 사회참가,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인간성 및 삶의 보람을 추구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되어 있다. 청소년단체가 각각의 젊은 에너지를 결집하여 대사회적 활동에 의해 사회의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오늘날 가장 기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청소년단체의 집단활동은 오락성, 교육성, 공익성의 3가지 측면에 걸쳐서 커다란 의의를 가지고 있다면, 각각의 단체는 개별의 활동에 그쳐 버리는 것이 아니라 공통의 목표실현을 겨냥하여 상호의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모색해야 하는 것이다.

2) 청소년단체 현황과 과제

일본의 주요 청소년단체를 개관하기 위해서는 단체간의 연락제휴 협의체인 중앙

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National Council of Youth Organizations in Japan : NCYOJ)와 청소년육성 국민운동을 촉진하고 있는 중앙조직인 청소년육성 국민회의를 고찰할 필요가 있다.

중앙청소년단체연락협의회(약칭 : 중청연)는 세계인권선언의 정신에 입각하여 국내 및 국외의 청소년단체 상호간의 연락과 제휴를 도모하며 청소년활동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1951년 5월에 설립된 연락협의체 단체로 청소년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지원·협력, 국내와 청소년단체 활동에 관한 정보의 수집과 홍보활동, 국제기관 및 각국 청소년단체와의 연락 강화 및 교류확대를 위한 활동, 청소년단체 활동에 관한 조사·연구, 청소년단체 활동의 계몽·보급, 정부 및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각종 건의 등을 주요 활동으로 전개하고 있다. 1994년 현재 중청연에는 일본 YMCA 동맹(회원 279,609명), 일본 YWCA(10,000명), 일본 청소년적십자(2,181,260명), 보이스카우트 일본연맹(261,070명), 걸스카우트 일본연맹(89,700명), 일본 유스호스텔협회(200,000명) 등 23개 단체가 가맹하고 있다.(中央靑少年團體連絡協議會, 1994)

청소년육성국민회의는 1965년 '청소년의 건전육성과 비행대책에 관하여'라는 각의 보고에서 제창된 청소년 건전육성을 위한 국민운동의 취지에 따라 발족된 것이다. 현재, 도도부현민회이 47개, 청소년단체 38개, 육성단체 49개, 교화단체 7개, 매스컴관계단체 17개, 공공단체 4개 등 단체회원 179개와 개인회원 79명을 가지고 있는 전국적 조직으로 청소년 건전육성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청소년육성국민회의는 청소년의 자기확립과 사회참여 촉진, 청소년의 국제이해·교류, 협력활동의 진흥과 지원, 청소년지도자 양성, 청소년비행 및 문제행동 방지, 청소년유해 사회환경의 정화 등에 관한 주요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민간의 자주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한 민간조직임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취지와 경위로 보아 정부는 이에 해마다 전반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 밖에 일본의 주요 청소년단체로는明治시대부터 기독교정신의 사회봉사체인 일본 YMCA 동맹과 일본 YWCA 연합회, 유스호스텔 운동을 촉진하는 일본유스호스텔협회, 유네스코현장을 바탕으로 한 일본청년유네스코연락협의회, 적십자정신을

실천하는 청소년적십자 등의 국제적 단체와 지역적 단체로는 시·군·구·동의 지역청년단과 이것의 시정촌, 도도부현 조직의 전국적 협의체인 일본청년단협의회가 있다. 지역청소년단은 오늘 일본 최대의 청년집단으로서 각 방면에 걸쳐 다양한 활동을 실시하고 있지만 본래 농촌적 생활공동체적 생활기반을 전제로 하여 결성되고 그 활동이 행해져 온 것이다. 청년단협의회는 일본 최대 규모의 유일한 단체라는 위치를 갖고 있다.

한편 일본 건청회는 각종의 봉사활동, 국제교류활동을 주로 하며 국제·국내의 도의 양양 등 우애정신의 보급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일본의 국민성에 알맞는 민주주의 문화의 확립을 지향하는 일본청년동맹, 농촌청소년의 자기연가를 도모하는 일본청년협회, 실천을 주장하고 각종의 봉사활동을 행하는 수양단청년부, 청소년에게 공동봉사의 정신을 교양하여 건전육성을 꾀하는 일본청년봉사협회와 주로 도시의 중소기업에서 일하는 청년들의 젊은 아이의 회, 형여자의 보호후생을 도모하는 일본BBS연맹, 도시문제와 씨름하는 일본도시청년회의 등의 단체도 있는데 이들은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국적 규모로 동지적으로 조직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 밖에 국제적 소년단체로는 스카우트정신의 보이스카우트 일본연맹, 걸스카우트 일본연맹, 적십자 정신을 실천하는 청소년적십자(JRC) 등이 있으며 해양정신의 보급을 지향하는 일본해양소년단연맹, 스포츠를 주로 하는 일본스포츠소년단, 펜팔에 의하여 우호를 도모하는 일본펜팔클럽협회, 고적대에 의한 소년의 건전육성을 꾀하는 전일본고적밴드연맹 등의 동지적 소년단체도 있다. 이 밖에 주로 학교지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지역어린이회와 그 중앙조직으로서 전국어린이회연합회도 활동하고 있으며 국토개발에의 참여를 통하여 중견 청년의 육성을 꾀하는 일본산업개발청년협회, 농업운동의 선구자가 되고자 염원하는 전국농협청년조직협의회, 농업기술의 습득을 지향하는 전국농업청년클럽연락협의회, 농업청년의 학습, 친목을 꾀하는 일본농학청년협회, 일하는 청년을 위한 일본동학청년협의회, 각종 기업의 지도적 산업인이 되고자 하는 일본경제청년협의회, 일본청년회의소 등 주로 청년을 중심으로 한 산업경제에 관련되는 단체도 있다.

이러한 일본의 청소년단체활동은 단체별로 다양한 설립목적과 사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으나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문제가 향후의 발전을 위한 과제되고 있다.

첫째, 청소년지도자의 적극적 확보가 필요하다. 특히 단체활동을 활발하게 하기 위해 내외부의 소년·소녀지도자의 역할은 대단히 크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숫적인 면이나 능력 면에서 질과 양이 모두 빈약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일부 민간단체에서나 청년의 집 등에서 지도자양성연수를 실시하고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저조하고 필요한 리더가 확보되어 있지 않다. 특히 소년단체에 있어서는 본래는 소학생, 중학생, 고교생, 성인의 각 단계에 대응해서 리더가 존재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리더가 진학이나 취직을 기회로 그만두는 경우가 아주 많아지고 있다. 역사와 전통이 있는 청소년단체에서는 소학교에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단계에 응해서 연수를 쌓고 그 위에서 성인지도자가 되는 일관된 시스템이 정비되어 왔기 때문에 도중탈퇴는 단체의 유지·존속 면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청소년 리더가 점점 정착하지 않는 문제의 해결책으로서 또, 많은 청소년에 개방되어, 많은 개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단체운동을 지향할 의미에서도 청소년활동에 흥미를 갖는 외부의 청년을 단체 리더 후보로서 받아들이는 유연성을 단체측은 가져야될 것이다. 특히 오늘날의 단체운영에는 상당히 고도의 소질이나 지식·기술이 요구되기 때문에 민간의 행정이 다같이 계획적인 양성 연수시책의 실시를 필요로 하고 있다. 이점에서, 최근 자원봉사라는 개념이 일본에서도 정착하여 사회복지, 청소년육성, 국제협력, 환경보전 등의 폭넓은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조사 등에서도 자신이 뭔가 타인을 위해 도움이 되는 기회를 갖고 싶다고 생각하는 청소년도 상당한 숫자가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매우 고무적인 현상으로 평가되고 있다.

둘째, 사회참여 활동의 장려와 지역교류의 강화가 필요하다. 교양, 취미 등 각각의 목적에 따라 각종의 단체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좋지만 단체의 성숙에 따라 개인적, 신변적인 것에서부터 차츰 공적인 관련이나 넓게 사회에 기여하는 활동으로 확충 발전해 가는 것이 기대된다. 최근, 「지역교육의 재생」 필요성이 많이 나오고 각

지에서 청소년육성에 관한 여러 활동이 행해지고 있다. 예를 들면, 몇명 어머니들이 브육이나 문고, 읽기·듣기 등의 그룹을 자발적으로 만들고, 지역중에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이런 그룹에 대해서 예컨대 역사와 전통이 있는 소년단체 등이 야외활동이나 레크리에이션 등의 기술(know-how)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유용할 수 있다.

이 점에서 개인이 소속하는 단체에 공헌함과 동시에 그 단체활동의 성과는 무엇인가 사회적 공헌에 이어지는 프로그램이어야 하는 것이다. 지역을 무대로한 여러 단체와 사람의 교류는 청소년 한명 한명이 직접체험에 의한 실감을 느끼면서 자기 성장을 도모하는 것이다. 타단체·그룹과의 교류는 처음에는 비일상적인 축제와 같은 형태에서 시작해도 좋을 것이다. 이는 특히 발전하고 격동하는 현대는 순수하고 강렬적인 청소년 에너지의 적극적인 참여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것이 단체수준의 형식적인 제휴뿐만 아니라 사람 사이의 여러 일상적 교류로까지 발전하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결 론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일본의 청소년정책은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통합된 노력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청소년활동정책을 중심으로 보면 다음과 같은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일본은 청소년육성의 기본방향을 고령화, 국제화, 정보화 등의 큰 사회변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창조적인 활력있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회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자질과 의욕을 가지고 활력이 충만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에 두고 관련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중요 업무는 직접적으로는 군부성, 경찰청 등을 비롯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맡아하고 있으며 부처간의 종합 조정은 총무청 산하에 있는 청소년대책본부가 맡아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도 청소년전담기구에는 없으며 각급 도도부현의 지사와 공안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 청소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촌단위에는 시정촌장과 교육위원회로 청소년관계행정이 수행되고 있다. 청소년관계행정조직외의 청소년문제심의회, 청소년대책본부 및 청소년대책추진회 등의 특별기구를 갖고 있다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할 수 있다.

둘째, 일본의 청소년지도자들은 다양한 호칭과 종류로 구분되고 있지만 그 역할과 종사하고 있는 업무의 종류는 기능상 유사하다 이들의 역할은 대체로 청소년단체나 시설을 관리 운영하는 경우와 실제적인 청소년활동을 지도 감독하거나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을 가지고 청소년들을 접하는 경우 및 청소년사업을 후원 창조하는 경우 등으로 대별된다. 청소년지도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특히 단체의 종래의 목적에 따라 연수내용은 정보화, 국제화의 시대에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을 의식한 시대성 있는 내용을 도입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셋째, 청소년시설은 직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청소년을 비롯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각각의 설치 목적에 따라 소관 성 형 별로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다. 청소년시설의 건립·운영면에서 특징은 국가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지역적으로 균형있게 건립·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지역단위 청소년활동의 중심

이 되는 청소년시설은 문부성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다. 시설의 특징은 숙박, 레크리에이션활동, 야영, 체육활동 등의 기본적인 활동을 위한 시설은 물론, 위생시설, 자판기, 휴게실, 독서실, 자료실 등 각종 교육·문화·편익시설이 완비된 종합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비되어 있다.

그러나 시설은 광대한 부지를 필요로하고 설비, 도로 등을 포함하면 많은 재원이 요구된다. 시설의 유지관리에도 많은 인력과 운영비가 소요된다. 이와 관련 일본의 청소년시설은 시설의 증설과 설치방향, 시설의 기능과 배치의 문제, 관리 체계의 문제와 시설간 유대강화, 운영에 관한 문제 등의 몇가지 점에서 운영상의 특징과 문제점이 지적 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어떻게 개선해 나가느냐라는 것이 청소년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관건이 될 것이다.

넷째, 일본의 청소년단체는 어느 것이나 공통의 흥미나 관심, 필요한 이해, 환경이나 생활조건을 유대로 하여 결성되고 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성원의 상호교류, 공동활동 등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청소년들이 건전한 성장을 이룩하는 곳에서 이러한 청소년활동의 의의와 역할은 더욱 강조되고 있다. 일본의 청소년단체는 특히 중래 학교단위의 야외활동에서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으로 전환하는 것이 모색되고 있다. 지역사회와 청소년단체간의 적극적인 연계활동을 통한 커뮤니티의 교육력에 기대를 걸게하고 있다. 청소년단체의 공통적 특징은 ① 즐거운 동년배의 장 ② 도움이 되는 자기단련의 장 ③ 사회에 유익한 도전의 장 이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섯째, 일본의 청소년 활동사업과 프로그램은 국가청소년대책으로 실시하는 시책사업과 각종 단체·시설 등의 민간부문에서 개발 실시하는 활동사업과 프로그램 등이 중심이 되고있다. 민간부문의 청소년활동 사업과 관련하여 일본에서는 청소년 단체간의 교류와 제휴가 각 단체의 주요한 사업목표로서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단체간의 이러한 교류와 제휴의 움직임은 각 단체와 그 회원의 주된 생활기반을 출발점으로 하여 활동을 진행해 가고 있는 특성이 있다.

이렇게 볼 때, 일본의 청소년 활동은 특히 청소년 클럽활동이나 단체활동 등에 참가시켜 풍부한 생활체험을 얻게 하는 것이 강조되고 있으며 청소년이 성장기에 감

동을 경험할 기회, 자연과 사람과의 접촉의 장 등 다양한 체험을 할 기회를 충실히 하고 동시에 청소년의 사회참가 활동 및 국제교류활동을 촉진 도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전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참 고 문 헌

- 교육개혁위원회, 「선진 외국의 교육 개혁 동향」, 1994
- 탁명윤, “일본의 청소년정책”, 「외국의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 송정부,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 「외국의 청소년복지 정책 연구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 이규환, 「선진국의 교육제도」, 배영사, 1990.
- 이영숙(외), 「외국의 청소년복지 정책 연구 —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체육청소년부, 1988.
- 經濟企劃廳 編, 「平成5年版 國民生活白書」, 1993.
- 國立那須甲子 少年自然の家, 「少年自然の家(平成6年度 概要)」, 1994
- 國立オリンピック記念青少年総合センター, 「主催事業一覽(平成6年度)」, 1994
- 國立中央青年の家, 「國立中央青年の家 利用案内」, 1994.
- 文部省 生涯學習局, 「少年自然の家」, 1994
- 文部省 生涯學習局, 「青年の家」, 1994
- 日本子どもを守る會 編, 「子ども白書 1994年版, 家族と子どもの權利」, 1994
- 中央青少年團體連絡協議會, 「なかまたち」, 1994, 불호.
- 中央青少年團體連絡協議會, 「日本の 青少年團體」, 1994
- 青少年問題研究會 編, 「青少年指導者 入門」, 1988.
- 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 「我が國の 青少年行政と 青少年對策本部の業務」, 1993.
- 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 「青少年のボランティア 活動に関する調査 概要」, 1994
- 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 「青少年問題の現状と對策(青少年白書)」, 1992
- 瀬沼克彰, 「地域活動と青少年」, 大明堂, 1986

6. LA 지역의 청소년시책과 한인 청소년사업

가. 서 론

미국 캘리포니아 주의 LA 지역은 크게 LA시와 LA시 및 주변 군·소도시를 합쳐서 LA카운티라고 부르는 행정단위가 있다. 이 두지역을 포함한 미국 청소년 문제의 실태를 알아 보고 LA시와 카운티내의 청소년 서비스 내용을 살펴 보며, 또한 미국에서 한인이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LA지역의 한인 사회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 사업과 그 차이점을 알아 보는 것에 이 글의 목적이 있다. 아울러 국제화라는 대 전제 하에서 급속도로 변해가는 한국 사회에서 예상될 수 있는 청소년 문화의 변화에 대비하여 사회, 문화적으로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아래의 자료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나. 미국 청소년 문제

냉전시대 종식 이후 세계 최강국이라고 자부하고 있는 미국은 내부적으로 여러가지의 해결하기 힘든 문제들을 당면하고 있는데, 그 중 다음 세대를 이끌어 나갈 청소년 세대의 문제는 이제 그 위험수위를 넘어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마약 사용, 갱/폭력 문제, 10대 임신 또한 이들과 연관된 학업포기의 실태를 어느 정도 이해해야 만 LA지역의 청소년 사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 원영준, 미국 로스엔젤레스 한인청소년커뮤니티센터(Korean Youth & Community Center : KYCC)특별사업부 Special Projects Developer.

1. 마약사용

마약사용률이 사상 최고였던 1990년도에는 100명 당 1명이 코케인을 상습적으로 복용했다는 기록이 있으나 그 이후로 미국 정부의 적극적이고 대대적인 소탕작전에 힘입어 마약사용률은 느린 속도로 줄어들기 시작했다. 미국 서부지역의 1990학년도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43%가 마리화나를 사용해 본 경험이 있으며 13.4%가 코케인을, 그리고 1.5%가 헤로인 사용 경험이 있는 것으로 응답했다. 1991학년도 고등학교 졸업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39.4%가 마리화나를 11.5%가 코케인을 그리고, 0.9%가 헤로인을 사용한 것으로 응답해 그동안의 예방교육과 단속이 서서히 실효를 보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아직도 고등학교 3학년생 10명 중 4명 정도가 마약을 사용한다는 것과 전체 고등학생들 중 31.4%가 마리화나를 쓴 경험이 있으며 6.6%가 코케인을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1990년도 보고는 마약이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음을 단편적으로 증명해 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1991). 또한 1989년에 실시된 공립학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70%가 교내에서 마약을 구할 수 있다고 응답했으며 9%만이 구할 수 없다고 응답했다. 마약 구입의 용의성에 있어서도 응답자 중 30%가 마리화나는 구하기가 매우 쉬운 것으로 응답했으며 각성제나 진정제가 그 다음으로 구하기 쉬운 마약인 것으로(20%) 나타났다(U.S. Department of Justice,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chool Crimes, 1991).

LA 카운티의 경우 마약 사용으로 인해 체포된 청소년의 수가 1970년의 11,000명에서 1992년에는 4,000으로 크게 줄은 것으로 나타났다(Los Angeles 1994 : State of the County Report, 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1994). 그러나 이 감소에 대하여 무조건적으로 마약 사용이 줄었다고 해석하기 보다는 사법기관의 마약 단속 정책이 사용자 단속 중심 정책에서 공급자 및 제조자 단속 중심으로 선회하면서 체포율이 줄은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례로 1981년과 1985년 그리고 1989년도의 LA시 마약단속별 실태에 의하면 마약범의 합계는 1980년도에

100,000명당 591명이었던 것이 1985년도에는 1,291명, 그리고 1989년도에는 1,391명으로 135%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것을 마약 판매범과 소지범으로 나누어 보면 판매범쪽의 체포율이 소지범보다 현저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다(표 II-4 참조). 그러므로 사법당국 측의 단속 방침이 마약 판매범 및 제조범 중심으로 선회한 것과 청소년들은 주로 소지범이 더 많은 것을 감안해 볼 때, 단지 체포율이 낮아졌다고 청소년 마약문제가 만족할 만큼 해결되고 있다고는 볼 수 없을 것이다.

〈표 II-4〉 마약판매범(주민 100,000명당) 마약소지범(주민 100,000명당)

1980	1985	1989	% 변화(80-89)	1980	1985	1989	% 변화(80-89)
141	375	590	320	450	917	801	78

(자료 : Federal Bureau of Investigation's Uniform Crime Reporting Program, 1990)

또한 1990년도 LA시 기록에 의하면 1990년도에 각종 범죄로 체포된 청소년들 중 77%가 마리화나를 사용한 경험이 있으며, 28%가 코케인을, 또한 3%가 헤로인을 사용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1990 Drug Use Forecasting Annual Report, US Department of Justice, National Institute of Justice).

2. 청소년 갱/폭력

갱이란 두 명 이상이 모여 범죄나 비행의 목적을 가지고 불법 행위를 행하는 조직을 칭한다. 그러므로 갱이라는 개념은 청소년들이 몰려다니면서 불법행위를 하는 단순 불량집단에서부터 각종 무기로 무장을 하고 흉폭한 범죄를 저지르는 조직 범죄 집단에까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청소년 갱문제와 폭력문제는 1980년대부터 꾸준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어 왔는데, 청소년 갱들을 단순한 불량집단으로만 규정하기에는 그 범죄 수법과 무장정도가 상당히 흉폭해지고 조직화된 상태이다. 1985년과 1991년도 통계수치를 비교해 보면 미국 전역에서 흉악범죄(살인, 강간, 강도, 폭행)로 체포된 10-17세 사이의 청소년의 평균은 1985년 때 100,000명당 305명에서 1991년에는 457명으로 50%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 조금 범위를 좁혀서 LA가 속해 있는 캘리포니아 주 평균

에 의하면 위와 같이 흉악범죄로 체포된 10-17세 사이의 청소년 평균은 1985년 내 100,000명당 402명에서 1991년 645명으로 60%의 증가 추세를 보였다(KIDS COUNT Data Book, The Anne E. Casey Foundation, 1994).

범위를 더 좁혀서 LA카운티 통계 자료를 이용하면 1년간 체포된 청소년의 합계는 1988년 때 100,000명당 5,991.8명에서 1992년에는 5,801.6명으로 감소 추세에 있던 하지만 그 중 흉악범죄로 체포된 청소년은 1988년 때 100,000명 당 734.9명에서 1990년에는 1,064.8명으로 급증했다가 1992년에는 913.0명으로 아직도 감소 추세에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이다. 아울러 흉악범죄가 아닌 재산에 대한 범죄(절도 등)로 체포된 청소년은 1989년 때 100,000명당 2,061.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92년에는 1,724.1명으로 줄어들었다(Los Angeles 1994 : State of the County Report, 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1994).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 그것도 흉악범죄를 자행하고 체포되고 있으며 범죄의 흉폭성 정도도 상해의 차원을 넘어서 살해의 차원에 다다랐다는 것을 볼 때 이것이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은 더 이상의 설명이 필요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와 함께 범죄를 당하는 청소년 피해자의 수도 많은 것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미국 전역에서 강간, 강도, 그리고 폭행 피해자의 절반 이상이 12-25세 사이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연령층은 미국 전 국민의 22%만을 차지한다. 10-17세 사이의 미국 전역 청소년들의 범죄 자행 및 피해 상태를 비교해 보면 1,000명 중 5명 이하의 청소년이 흉악범죄를 자행하고 있는데 비해 1,000명중 176명이 흉악 범죄의 피해자가 되고 있으며, 이 수치는 지난 6년새에 27%정도 증가했다(KIDS COUNT Data Book, The Anne E. Casey Foundation, 1994). LA 카운티내에서 1992년에 살인을 당한 청소년은 모두 355명인데 참고로 갱 관련 사망률을 살펴 보면 지난 1988년 452명에서 1992년에는 800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후 1993년에는 719명으로 줄었다. 1993년의 갱 관련 사망률은 10년 만에 최초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Los Angeles 1994 : State of the County Report, 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1994).

LA지역의 갱들의 특징 중 하나는 주로 인종적인 구분이 있다는 것과 인종별 갱

단의 목적이 다르다는 데 있다. LA시 경찰국의 동향 분석에 의하면 LA지역에는 크게 남미계 갱들과 흑인계 갱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 외의 백인계 갱들과 아시아계 갱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90년전부터 세력을 형성한 남미계 갱은 자기내들의 세력원을 중요시 여기고 자신들이 자기 지역을 적에게서부터 방어한다는 일종의 전사의 마음가짐을 갖는다. 그에 반해 흑인 갱들은 마약 밀매 등의 돈벌이에 관심이 많고 백인 갱들은 인종 편견적인 성격이 강하다. 아시아 갱들은 세력이나 조직력 면에서 다른 인종들과는 차이가 많아 실질적인 파악이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10대 임신

성 자유화, 성 개방, 성 문란으로 이어지는 사회 환경 속에서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성 행위와 그로 인한 10대 임신 또한 심각한 문제로 들어났다. 전국 질병 통제 센터(Center for Disease Control) 1992년 보고에 의하면 전국의 9학년(중3)에서 12학년(고3) 학생 중 54%가 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12학년생 중에서는 70%가 성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70년부터 미국 연방정부에서는 30억 달러를 들여 이성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대적인 “안전한 성 생활”과 피임교육을 홍보하고 실시했으나 공교롭게도 그 기간 동안 청소년의 성병 감염률과 임신률은 대폭 급증하여 정부의 대대적인 노력을 무색하게 했고, 그 결과 일각에서는 그동안의 정부정책에 대해 근본적인 수정을 요구하고 나서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무분별한 성 행위는 결국 성병의 만연을 초래하게 되는데 Allan Cuttmacher 연구소의 조사에 의하면 약 300만명의 청소년들이 매해 성병에 감염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HIV에 감염된 미국인이 100만명이 넘는데 그중에서 청소년 사이의 감염률이 가장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1989년에서 1992년 사이의 자료를 비교해 볼 때 LA 카운티 내에서 13-24세 사이의 AIDS 발병 환자는 4년새에 77%가 증가했다(Los Angeles County 1993 Social Services Resource Directory).

1985년 미국에서 태어난 아기들 중 7.5%가 10대 미혼모에게서 출산된 아기들인데 이 수치는 1991년에는 9.0%로 20% 증가를 하면서 지난 15년간 최고치를 기록했다(KIDS COUNT Data Book, The Anne E. Casey Foundation, 1994). 캘리포니아 주는 1985년 6.5%에서 1991년에는 8.0%로 24% 증가했으며 1992년 주 보건국 통계에 의하면 10대 출산이 전체의 12.8%로 현저한 증가치를 보이고 있다.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대개 60,000명의 10대들이 출산을 하고 있는데 그 중 1,100명이 15세 미만의 미혼모임이 밝혀졌다. LA 카운티 보건국의 집계에 의하면 대개 40,000명의 10대가 임신을 하고 있고 그중 절반 정도가 출산을 하고 있다. 10대 출산이 전체 출산에 미치는 비율은 1988년 4.4%에서 1992년 4.7%로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Los Angeles 1994 : State of the County Report, 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1994).

청소년관계 여러 통계결과 중 가장 심각한 것이 10대 미혼모 출산으로 여러 연구결과가 10대 미혼모에게서 출산된 아기들이 장래에 학교 중도 퇴학 가능성이 높고, 자신도 미혼모 혹은 미혼부가 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혼이나 별거를 할 가능성도 높고, 사회복지제도에 전적으로 의존할 가능성 또한 높을 것을 지적하고 있다. 전국 보건통계국에 의하면 1991년 출산률은 지난 51년 동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같은 시기에 10대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아이들은 장래에 교육이나 직업면에서 상당한 경쟁을 이겨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미혼모들은 교육 수준이 상당히 낮으며 상당수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여 단순 노동 직종이 줄어들고 높은 교육수준을 요구하는 현재의 인력시장에서 이런 미혼모들이 자신의 아이들에게 성공적인 아동 발달에 필요한 인간적 혹은 경제적인 지원을 해 주기가 매우 어려울 것이다.

4. 학업포기/가출

과다한 마약사용이나 갱단 입단, 그리고 10대 임신으로 인해 더 이상 학업에 정진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이 고등학교, 심지어는 중학교 학업을 중도에 포기하고 직장

도 잡지 못한 채 더 심각한 탈선의 구렁텅이로 빠지는 수가 상당하다. 미국 전역의 경우 1985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71.6%만이 같은 해에 졸업을 했고, 그 수치는 더 낮아져서 1991년도 졸업예정자 중에는 68.8%만이 졸업을 했다. 1985년 당시 16-19세 사이의 청소년 중 학교에도 적을 두지 않고 직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청소년은 전체의 5.3%였는데 1991년에는 5.0%로 감소되었다(KIDS COUNT Data Book, The Anne E. Casey Foundation, 1994).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에는 1985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66.8%가, 또 1991년도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에서는 61.9%만이 해당년도에 졸업을 했다. 미국 전역의 통계와는 반대로 1985년 당시 16-19세 사이의 청소년 중 학교에도 적을 두지 않고 직장을 가지고 있지도 않은 청소년은 전체의 4.5%였는데 1991년에는 5.7%로 증가했다(KIDS COUNT Data Book, The Anne E. Casey Foundation, 1994).

LA 카운티의 경우, 1988년도 졸업예정자 중에서는 57%만이, 1992년도에는 조금 높아져서 60%가 졸업을 했다. 1993년도 졸업예정자 중에서는 20%가 학업을 중도에 포기했는데, 10학년(한국 고등학교 1학년)때 가장 많이 포기를 했고, 또한 1991-92학년도 동안에는 중학생의 11%가 고등학교 진학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LA 카운티의 16-19세 사이의 청소년 중 학교나 직장을 다니지 않는 청소년의 비율은 훨씬 높아 1990년 기록에 의하면 9%가 학교나 직장에 다니지 않고 있으며 이들은 10대 미혼모들이거나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층으로 분석되고 있다(Los Angeles 1994 : State of the County Report, 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1994).

학업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들 중 상당수가 무단 가출을 하고 있다. 가출의 이유로는 갯단들과 같은 불량 집단에 가입을 하면서 집을 나온 경우에서부터 집에서의 학대를 피하고자 나온 경우까지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1년에 몇명 정도가 가출을 하는 지에 대한 명확한 통계는 나와 있지 않다. 가출청소년들 중에서는 인근 친구집을 전전하거나 친척집에 가 있는 경우도 있고 가출청소년 보호소를 찾는 경우도 있지만, 상당수가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는 무숙자가 되고 있다. LA카운티의

경우 1987년에 청소년 무숙자가 여름에는 4,000명, 겨울에는 1,000명 정도로 추정되었으나 1992년 LA 카운티 기록에 의하면 약 12,000명의 청소년이 가출하여 무숙자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이 청소년들은 곧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되고 생활비용을 벌기 위해 범죄행위, 구걸, 매춘행위를 일삼게 된다. 무숙자 청소년의 평균수명은 무숙자가 되고 나서 2년이며 최근에 와서는 무숙자 청소년들간의 AIDS 발생률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Los Angeles County 1993 Social Services Resource Directory).

졸업 예정 학년도에 졸업을 한다는 것이 한국에서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미국, 특히 저소득층 소외 지역에서 예정 학년도에 졸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성인이 되는 길목에서 있는 청소년들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특히 고등학교를 마치지 못하므로 해서 생기는 개인 경제적 손실은 상당히 크다. 고등학교 중퇴자와 대학 진학을 포기한 고등학교 졸업자 간의 1992년 무직률을 비교해 보면 중퇴자가 11.4%이고 졸업자는 6.8%로 중퇴자의 무직률이 거의 졸업자의 두 배가 되고 있다(KIDS COUNT Data Book, The Anne E. Casey Foundation, 1994). 또한 일자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사이에도 고등학교 중퇴자의 연간 평균 수입은 고등학교 졸업자의 절반에 미치고 인플레이션을 감안한 실질 수입으로 따졌을 경우 고등학교 중퇴자들의 수입은 지난 20년간 계속해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21세기에 접어들게 되면서 최소 고등학교 교육도 탈락 못하고 중도에 탈락한 사람들과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 간의 수입에는 더욱더 큰 격차가 생길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다. LA 지역의 청소년문제 대책과 청소년사업

위에서 살펴 보았듯이 미국의 청소년문제는 그 규모와 심각성에 있어서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어 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이 다각도에서 시도되고 있다. LA지역도 그 예외는 아니며, 정부, 교육, 민간기관/단체들이 각자의 고유영역

에서 서로에 협조를 제공하며 각종 청소년사업을 펼쳐가고 있으며,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정부기관에서는 법 집행 및 교육 그리고 기금 할당을 통해서, 교육기관에서는 학교를 통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고, 민간단체들은 직접적인 봉사활동과 여러가지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활용하여 청소년문제 예방 및 해결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1. 정부기관

정부기관의 주요 역할은 경찰과 법원과 같은 사법기관을 통한 법 집행과 공원 및 레크리에이션 담당 부서를 통한 여가선용 및 휴식공간 제공, 그리고 기타 여러부서를 통해 민간단체들에 기금을 할당하는 세가지로 나뉘어진다.

1) 단속/처벌/교육

사법기관의 역할을 보자면 청소년범죄 단속 및 처벌, 그리고 예방교육이 있다. LA시 경찰국, LA 카운티 셰리프, 그리고 주위 군소도시들의 독립 경찰국들은 각자 청소년 전담반을 두고 있으며 청소년 법원을 통하여 사법 처리를 하고 있다. 위에 언급한 청소년문제 4가지 중 경찰과 법원이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마약과 갱단 문제이다.

마약문제에 있어서 사법기관들은 강력한 단속과 처벌, 그리고 방지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청소년 법원들은 위법 청소년들의 사회적 재화에 그 주 목적을 두고 있었으나, 최근에 들어서는 재활이 아니라 위법 청소년들에게 책임을 지우고 그에 합당한 처벌을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마약 남용 건에 있어서는 매우 엄한 선고를 내리는 추세이다. 청소년 법원으로 송치되는 사례 중 전체의 7%가 마약관계인데 지난 1985년부터 1988년 사이에 행해진 연구에 의하면 청소년 사례 중 마약법 위반 사례는 상기 기간동안 12%가 증가한데 비해 전반적인 청소년비행 사례는 4% 증가에 그쳤다(A National Report Drugs, Crimes & the Justice System,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1992). 이와 아울러 마약

넉 위반 청소년들은 다른 청소년 범죄자에 비해 구속을 당할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경찰관들 중 어려보이는 경찰관을 선발하여 마약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특정 학교들에 전학생으로 위장 투입을 시켜 교내 마약판매망을 추격하고 체포하는 작전을 쓰기도 한다.

이러한 단속과 처벌 뿐만 아니라 경찰을 통한 마약 예방교육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데, LA 지역에는 LA시 경찰국을 통한 DARE(Drug Abuse Resistance Education) 프로그램과 LA 세리프국을 통한 SANE(Students Against Narcotics Education) 프로그램이 유명하다. 이 두 프로그램의 가장 큰 역할은 LA지역 각급 학교를 순회하면서 마약 남용의 위험성과 그 결과, 그리고 예방을 위한 여러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다.

갱과 폭력문제에서도 사법기관들은 엄격한 처벌과 활발한 예방교육을 병행하고 있다. 우선 각 갱단들의 전형적인 복장형태(통이 넓은 바지, 특정 색깔의 의복, 특정 머리글자가 새겨진 야구모자)와 문신 등을 파악하여 갱단 용의자 불심 검문 및 등향파악, 그리고 정보수집을 철저히하고 있다. 법원에서도 청소년 흉악범들 중 그 범죄의 내용에 따라 범인을 청소년 법원에 송치하지 않고 성인 법원에 직접 송치하여 법정 최고형까지 선도할 수 있도록 법적 처벌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LA시 경찰국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그 성격이 전혀 상반된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JEOPARDY 프로그램이라 불리는 프로그램은 갱단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청소년과 그 가족에 대한 집중적인 교육으로 해당 청소년을 학교, 교회, 가정 등에서 위탁을 받으면 우선 담당 경찰관과 해당 청소년, 그리고 청소년의 부모들과의 3자 회담을 통해서 청소년의 탈선 위험성을 평가하고, 주 1회 정기적 단체교육을 통해 갱단 가입에 따르는 위험성 홍보와 청소년의 자신감 향상에 중점을 둔다. 또한 건전한 여가 선용을 위하여 육상과 레슬링 반을 조직하고 여러가지 대회에 출전하게 하며 모든 장비는 경찰국과 후원자들이 부담한다. 현재 LA 경찰국 산하 북부지역에서만 시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조만간 LA 경찰국 산하 18개 지역 전역에서 운영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프로그램은 단지 갱단에 대한 위험성을 주입시키는 종래의 교육방법에서 탈피하여 위험 청소년 및 그 부모를 같이

참여시킨다는 점, 또한 갱 활동에서 청소년들의 관심을 자연스레 전환시킬 수 있는 다양한 체육활동, 또한 프로그램 참여자들에 대한 철저한 성적 및 출석관리를 통하여 학업활동에까지도 적극성을 요구하는 등 다각도에서의 선도/예방교육을 실시하여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JEOPARDY 프로그램과는 상반된 내용을 가지고 현재 시험되고 있는 예방/교육 프로그램으로는 SCARED STRAIGHT 프로그램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한마디로 “충격요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갱단에 가입을 원하는 청소년들이나 갯 가입한 청소년들에게 갱단의 최후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주는 간접적인 체험을 하게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골자이다. 청소년들은 경찰국 산하 시체 검시소를 방문하게 되며 거기서 자기 나이 또래에 살해를 당한 갱단원의 시체를 목격하게 된다. 또한 그들은 지역 감옥/구치소에 가서 24시간 정도 감옥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직접 경험하게 되고 교도관들 대신 갱단 출신의 모범수들의 감독을 받게 된다. 이러한 방문 이후에는 경찰국 소속의 상담가와 개인별 면담 및 단체 면담을 하여 자신들이 느낀 것을 서로 나누게 하며 이를 통해서 갱단에 가입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다. 사회 일각에서는 교육방법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청소년들에게 필요 이상의 정신적인 충격을 가할 수 있다며 반대를 하고 있으나 현재 시험 운영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다리고 있다.

이러한 특정 범죄예방을 위한 프로그램 외에도 경찰국에서 실시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는 LA시 경찰국의 Explorer 프로그램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일반 사회의 보이스카우트 개념과 매우 비슷한데, 국민학교, 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품행이 좋은 학생들을 모집하여 경찰 임무의 전반적인 교육후 대민 봉사업무 분야에 투입을 시킨다. 이 프로그램은 궁극적으로 청소년기부터 경찰에 대한 긍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고 이후에 청소년들이 성장하여 경찰에 지원을 하도록 하는 일종의 경찰관 후보생 양성에 그 목적을 둔다.

마지막으로 위의 두 문제 만큼 심각하지는 않으나 수업시간에 허락없이 무단으로 학교를 빠져나오는 소위 “땡땡이” 학생들을 단속하기 위한 특별 작전이 실시되기도 하는데, LA시 경찰국에서는 이것을 Stay in School 작전이라 명명하고 수업시간에

길거리를 배회하고 있는 학생들을 잡거나 학교 앞에서 잠복을 하고 있다가 학교 담을 넘어 빠져나오는 학생들을 체포하여 경찰서에서 보호하며 부모나 친척에게 만방면을 해준다.

2) 여가선용과 휴식공간 제공

처벌과 교육 외에도 청소년들을 위한 건전한 여가선용 및 휴가 장소의 제공도 정부기관의 임무이다. LA시청 산하에는 LA시의 공원 및 휴식장소 제공을 전담하는 LA공원·레크리에이션국이 있는데, 여기서는 공원, 공공 수영장, 공공 골프장, 레크리에이션 센터, 박물관, LA동물원, 청소년캠프, 공공 테니스장 설치, 운영과 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이와 함께 청소년들을 위한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한다. 이 기관의 관리하에는 150개의 레크리에이션 센터, 50개의 공공 수영장, 박물관, 캠프장 등이 있으며 이런 설비를 통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제공한다. 각 시설에는 1년 내내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훈련받은 전문인들이 상주하며 시설 운영을 한다. LA지역 부근의 산속에 위치하고 있는 개인/단체 캠프장에서는 청소년들의 야영/캠핑을 위해 전문 상담인들과 설비 관리인을 배치해 놓는다. 이외에도 청소년과 성인들을 위한 각종 스포츠 프로그램(축구, 야구, 소프트 볼, 테니스, 농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 전역에 위치하고 있는 13개 공공 골프장에서는 청소년들을 위한 무료 골프 강습과 청소년 대회를 매해 개최하고 있다. 예산 비용은 세금과 시 기금, 그리고 주/연방 정부 지원금으로 유지되어 왔고, 이러한 설비 및 프로그램 사용은 최근까지 무료였으나 그 중 몇몇은 예산 삭감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저렴한 사용료를 받고 있다.

3) 기금 할당

LA지역의 많은 비영리 청소년단체들의 운영예산의 대부분이 연방, 주, 지역 정부기관을 통해서 나오는 지원 기금으로 충당되고 있다. 단체들의 성격과 제공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서 기금을 지원하는 정부기관도 달라지게 된다. 먼저 청소년단체들에게 해당 정부기관에서 특정 기금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리는 통지가 가게되고, 그

와 함께 정부기관에서는 관심이 있는 단체로 하여금 지원자금 용도 계획안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제출된 계획안을 심사하여 그 중에서 기금 수혜단체를 선정하게 되고, 기금을 받은 단체는 그 기금으로 계획한 프로그램을 수행하면서 일정기간마다 지원 기관에 보고서를 제출하며 그에 따라서는 정부 감사를 받아야 할 때도 있다.

2. 교육기관

학교 및 교육구에서 이루어지는 청소년사업은 방과 후 활동과 교과 과목을 이용한 교육활동이 주를 이룬다.

1) 방과 후 특별활동

학생들이 방과 후 활동과 클럽활동을 자유로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활동 내용과 클럽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또한 고등학생인 경우 과외활동 여부와 종류가 대학진학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므로 많은 학생들이 한 개 이상의 과외활동을 하고 있다. 고등학교의 경우 한 학교에 학교에서 인정하고 지원하는 특별활동 클럽이 30-40개가 되고 취미생활을 중심으로 하는 클럽부터 사업 경영기술을 배우는 실질적인 클럽, 또한 지역봉사를 추진하는 클럽까지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하다. 각 활동에는 지도교사가 한명씩 있고, 선출된 학생 임원진 중심으로 운영이 되며 타 학교와의 교류 및 경쟁, 또한 지역사회봉사를 통하여 프로그램들을 자체 개발한다. 활동 자금이 있어서는 각자가 약간의 회비를 내거나 주말 세차활동, 폐품 판매활동들을 통하여 기금 모금을 하는 등 모든 것이 거의 자치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러한 방과후 클럽활동 외에 소질에 따라 학교 운동부나 응원단 등에 들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엄격한 선발과정을 거쳐야 하며 특히 운동선수들인 경우 매 학기 성적 평균이 최소 C 학점(평점 4.0만점에 2.0)이 되어야 하며 그 아래로 떨어지는 경우에는 더 이상 팀에 소속시키지 않는 조치를 취한다.

2) 예방교육

교과과목을 통한 교육활동은 마약 복용방지 교육과 10대 임신방지를 위한 성교육을 들 수 있다. 유치원에서부터 고등학교 졸업반까지 보건과목이나 생물과목, 혹은 그 외의 해당과목을 통해서 주류와 마약류에 대한 위험성 교육을 시킨다. 이 교육 프로그램들은 학생들로 하여금 마약에 대한 가장 최근의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마약의 유혹을 뿌리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개발하고 유지하게 하는데 그 목적을 둔다. 또한 중/고등학교 교육에는 주류와 마약류가 태아발육에 끼치는 영향을 포함시킨다. 이 외에도 학교당국에서는 도움을 받고자 자신의 주류 및 마약 사용 여부를 밝힌 학생에 대해서는 그로 인해 처벌이나 징계를 받지 않고 해당 도움기관에 위탁을 해 준다.

임신 방지를 위한 성교육 또한 보건과목과 생물시간을 통해서 실시하는데, 보통 성교육에서부터 성병, 또한 피임방법에까지 광범위한 주제를 나이와 학년에 맞게 가르키고 있다. 1980년 말에 들어서면서 고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콘돔을 배부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가에 대해서 논쟁이 되고 있고 여러 학교에서는 이미 학교 양호실을 통해서 성병 및 임신검사, 그리고 콘돔배부를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실시의 배경으로는 많은 학생들이 벌써 성경험을 하고 있고, 성행위 자체를 막는 것은 너무 늦은 것으로 판단이 되어 차선책으로 성병(특히 AIDS) 확산 방지와 임신방지, 또한 인공낙태에 중점을 두게 된 데 있다. 그러나 현재 사회정책 조류가 다시 서서히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금욕과 책임감을 강조하는 교육이 학교내에서 병행되고 있기도 하다.

3) 민간단체

정부 당국과 교육기관 외에 LA 카운티 지역에 수 많은 민간단체들이 직접적인 청소년사업을 벌이고 있다. LA 카운티 지역에는 전문적으로 청소년사업을 벌이는 단체 만 대략 558개 단체가 있다. 이 외에도 일반 사회단체와 교회들에도 청소년관련 부서가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 수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전문 청소년사업 단

〈표 II-5〉 LA 카운티 지역의 청소년사업 단체

단 체 사 업	수
10대 임신방지, 교육, 도움	52 개소
청소년활동	210 개소
불량청소년 선도, 갱 예방 및 개입	260 개소
가출 청소년 보호시설	36 개소

(자료 : Los Angeles County Social Services Resource Directory, 1993)

체들의 역할을 세분하면 다음과 같다.

10대 임신에 관계되는 단체는 성교육, 임신 및 성병검사, 육아교육, 중절 및 피임 안내와 상담 등을 주로 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금전적인 도움, 취업알선 및 취업훈련, 입양 주선, 마약과 AIDS검사 등도 실시한다. 단체에 따라서 무료인 곳도 있고, 요금을 받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실비만 받고 있고 정부와 민간 자선단체, 그리고 개인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편적인 청소년활동 단체로는 보이с카우트, 걸스카우트나 YMCA와 같이 잘 알려져 있는 큰 단체부터 동네에서 설립한 단체에 이르기까지 그 규모나 활동대상이 다양하다. 여러 취미활동 개발과 방과후 학습지도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생들이 여가선용 여건을 만들어주고 또한 탈선을 방지하기 위한 자신감 고취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외에도 대학생 자원봉사자들과 어린학생들 사이에 짝을 지어주는 큰 형, 큰 언니(Big Brother/Big Sister) 프로그램들을 통하여 사춘기 학생들에게 바른 미래관을 보여주는 것도 주력 사업중의 하나이다. 여름과 겨울에 여러 캠프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직업훈련도 시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학교들과 같이 협조하여 학교내에서 정규 프로그램을 실시하기도 한다.

불량청소년 선도 단체들은 이미 갱단에 가입했거나 범법행위 후 구금되어 있는 청소년들의 선도를 위해서 활동을 펴고 있지만 그와 못지 않게 탈선의 가능성이 높은 위험 청소년들에 대한 사업도 아울러 실시하고 있다. 많은 탈선 청소년들의 공통점이 대화의 상대가 없었다는 점을 중시하여 개인 혹은 단체 상담을 주요 사업으로 실시하며 그 외에도 감옥이나 소년원을 방문, 재소 중인 청소년들을 위한 사업도 실시한다. 청소년의 관심을 폭력 및 불법 행위에서 건전 행위로 바꾸게 하기 위해 연

극 등의 취미예술활동을 주선해 주고 있고,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해 고졸 검정고시를 준비해 주기도 하며, 일자리를 알선해 주거나 기술교육을 시키기도 한다. 전화로만 사업을 펴는 곳도 있는데 California Youth Hotline같은 경우 무료 전화상담만을 24시간 하는데 월 3,000통 정도의 전화상담을 하며 개인상담, 정보안내, 위탁안내들을 해 주고 있다. 그 외에도 폭력사태로 비화되기 전 중재를 시킬 수 있는 중재서비스가 근래에 들어서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이미 언급한 것과 같이 청소년의 무단 가출문제는 상당히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LA의 청소년단체들과 종교단체들에서는 이 가출청소년들이(가출 이유를 막론하고) 더 이상의 탈선의 경로로 빠져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호시설을 갖추어 놓고 가출청소년들을 돕고 있다. 이러한 보호소들은 주로 가출청소년들에게 음식과 의복을 제공해 주고 있고 보호소 내에서 상담을 통해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 준다. 보호소에 기거하면서 학교를 계속 다닐 수도 있고, 보호소에 따라서는 그 속에서 학과 교육을 시키는 곳도 있다. 주로 무료이며 모든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고, 조금 엄격한 보호소에서는 마약을 복용하는 청소년들은 받아 주지 않는다.

위와 같이 많은 수의 단체들이 청소년들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고 실시하고 있고 그 결과가 서서히 나타나고는 있지만 미국, 특히 캘리포니아 주에 계속된 경제불황으로 인해 금전적인 압박을 받게 되어 절실한 프로그램들이 축소되거나 폐지되는 경우도 종종 생기고 있다. 고질적인 정부 예산 적자 타개책의 일환으로 정부기관들이 긴축 재정을 실시하고 있고 이로 인해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 대폭 삭감되어 정부 지원금에 의존하고 있는 많은 단체들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 결과로 비영리 봉사단체들 사이에는 경제개발(Economic Development)개념이 중요시 되고, 이로 인해 결국 봉사단체들이 봉사 프로그램 개발과 경제개발 프로그램이라는 두 가지 명제를 동시에 해결해야 하는 어려운 입장에 처해 있다.

라. LA 한인 사회 청소년사업

1990년 인구조사에 의하면 캘리포니아 주에 거주하는 한국인은 약 25만명이 되고 그 중 LA 카운티내에 거주하는 한인의 인구는 14만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10대가 차지하는 비율은 약 16%이다. 한인사회 역시 청소년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으며 근래에 들어서는 청소년문제의 심각성과 청소년문제에 대한 한인사회의 관심도가 높아지고는 있으나 청소년사업 시설은 그동안의 한인사회 성장도에 비해 미비한 편이라 할 수 있다.

다른 인종과 비교하여 한인청소년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지를 알아 볼 만한 자료는 부족한 상태이다. 한인청소년들의 범죄율, 마약사용률, 임신률, 그리고 학업 중도포기 상태가 미국전역의 평균보다는 낮을 것이라는 것이 한인청소년 관계자들의 공통된 의견이나 청소년 상담 단체들로부터 수집되는 자료에 의하면 한인청소년들 사이에서도 미국내의 청소년문제와 비슷한 문제들이 속출되고 있음은 충분히 지적되고 있다. 한인청소년 갯단이 생기기 시작한 것은 벌써 오래전 이야기이고 이제는 갯단 사이에서도 1세 중심 청소년 갯단과 1.5/2세 중심 청소년 갯단 등으로 세대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한국청소년 만 받아들이는 갯단과 한국청소년 외에 다른 민족들도 받아들이는 갯단 등으로 뿌리의식의 차이(?)도 보이고 있다.

모범 소수민족이라고 통칭되는 아시안계 이민자들 중 하나인 한인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청소년문제는 우선 한인사회와 부모 사이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무관심 내지는 현실 부정으로 인해 적시에 적절한 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인사회는 모범 소수 민족계 중에 하나이므로 청소년문제는 심각하지 않을 것이라는 한인사회 일반의 안이한 태도와 아무리 청소년문제가 심각해지고 도처에 탈선의 유혹이 만재해 있어도 “남들은 다 그래도 설마 내 자식만은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부모의 자식에 대한 비현실적인 신뢰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지 무슨 다른 고민이 있겠는가”하는 생각으로 인해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던 문제도 놓치고 지나가는 때가 비일 비재하다.

LA 지역의 한국일보사와 중앙일보사에서 매해 발행되는 LA지역 한인 업소록에

의하면 LA 지역의 한인 공공기관과 봉사기관은 모두 60여개로 집계되어 있다. 이 중에서 청소년사업을 중심사업으로 수행하는 단체는 단 두 단체이며 주력 사업 외에 부수적으로 청소년사업을 하는 곳 몇 단체와 대학생 자원봉사 프로그램 이외에는 LA 카운티 지역과 인근 오렌지 카운티 지역에 퍼져 있는 600여개 한인교회를 통한 청소년사업이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 KYCC(Korean Youth & Community Center)

KYCC는 다민족 사회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한인 커뮤니티와 타민족과의 이해 증진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여 보다 나은 LA 시를 만들는데 앞장선다는 사업목표 아래 설립된 비영리 사회봉사 단체로 1975년 설립 이후 한국인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여 급증하는 한인커뮤니티와 함께 성장해 나가고 있으며 나아가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사는 LA의 화합과 발전을 위해 앞장서서 일하고 있다. KYCC 프로그램 제공 대상은 저소득층과 이민은 지 얼마 안되는 한인 청소년들, 그리고 그 가정으로서 그들이 문화와 언어의 장벽에서 느끼는 어려움을 극복하여 보다 나은 이민생활을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재미 한국인으로서 올바른 자아관을 확립하고 이민자들에게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 개발을 도우며 이색문화의 소외감 속에 빠지기 쉬운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건전한 여가활동을 제공하고 있다. 2명의 직원으로 시작한 이래 현재 60명 이상의 직원이 3개 사무실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연 예산이 300만 달러에 육박하는 미국내의 한인 봉사단체 중 명실공히 가장 큰 단체로 발돋움 했다.

1) 역 사

1975년 아시아 아메리칸 마약 방지기구(Asian American Drug Abuse Prevention)의 한 프로젝트로 한인청소년회관(KYC : Korean Youth Center)이란 명칭 아래 청소년 마약방지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1977년에는 LA 카운티와 시당국, 그리

고 커뮤니티의 지원으로 KYC 자문 이사회가 구성되었다. 상담 중심의 프로그램을 하면서 지역 정부의 지원금을 통해 개인, 가족, 단체 상담으로 프로그램을 확대하고 이 밖에도 범죄예방, 직업알선, 교육 프로그램들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1982년에 비영리 단체로 정식 발족됨과 동시에 청소년을 위한 레크리에이션과 각종 운동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1988년에는 한인 단체 중에는 처음으로 미국 최대 자선단체인 유니타이드 웨이의 지원을 받아 청소년들의 직업 개발 및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그후 KYC의 연 예산이 백만불을 넘게 되고, 다목적 비영리 봉사단체로서 면모를 갖추어감과 동시에 오랜 숙원사업인 저소득층 아파트와 커뮤니티 회의실을 포함한 자체 건물 신축사업을 시작하고 프로그램의 확장에 따라 청소년 선도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적인 발전을 위한 회관으로 기존의 한인청소년회관(KYC) 명칭을 KYCC로 변경하는 제3의 도약을 하게 되었다. 1994년 12월에 지상 4층 지하 2층의 자체 사무실 건물을 완공하고, 건물 속에 19호의 저소득층 아파트와 15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회의실을 마련하는 계기를 올렸으며 앞으로 이러한 사업을 계속 진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

2) KYCC 프로그램

(1) 상담부

한인청소년과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개인 및 가족상담을 실시하며, 청소년 대화 모임과 학부모 대화 모임을 통하여 그들이 이민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이와 함께 아동 학대예방과 치료를 위한 워크샵과 교육도 실시한다.

(2) 교육부

국민학생, 중학생 대상의 방과 후 학습 프로그램과 고등학생을 위한 SAT(대학 진학시험) 지도 등의 프로그램을 연중 내내 실시하고 있다. 또한 약물남용을 예방하기 위하여 청소년 대화 모임, 부모님 대상 워크샵, 그리고 관련 정보 안내를 실시하고 있고, 매해 여름에는 청소년 여름캠프를 운영한다.

(3) 금연교육 프로그램

청소년들의 흡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금연교육 워크샵

을 실시하며 청소년들에게 건전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운동, 미술, 연극, 비디오 촬영, 사진클럽 활동 등도 실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흡연의 위험을 한인사회에 널리 알리고자 한인들이 많이 모이는 상가 등지에서 각종 홍보활동도 실시하고 있다.

(4) 청소년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청소년들을 미래 사회의 지도자로 만들기 위하여 청소년들 스스로 여러가지 프로그램들을 기획, 실시하도록 지원하여 그들이 다양한 경험을 쌓도록 도와주며 이와 더불어 지도력 양성에 필요한 각종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5) 청소년사업 경영 실습 프로그램

LA 시의 다른 단체들과 공동으로 주최하는 프로그램으로 한인청소년과 흑인, 그리고 남미계 청소년들이 낙서지우기 사업 등을 공동으로 기획하고 실시하면서 청소년들간의 민족간 이해를 증진시키면서 장부 정리와 마케팅 등 사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기술을 익히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다.

(6) 직업훈련 알선 프로그램

LA 지역에 거주하는 청소년들과 성인들을 대상으로 취업상담과 직업알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직장에 다니면서 기술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직장내 훈련 프로그램과 영어/컴퓨터 교육도 병행하고 있다.

(7) 자원 재활용 프로그램

병병이나 깡통, 종이류를 수거하여 재활용하면서 환경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한인타운의 식당이나 술집 등으로부터 협조를 받고 있으며 14에서 55세까지의 한인, 흑인, 남미계 등 다양한 인종들이 참여하여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8) 한인타운 녹화사업

한인타운 인근에 나무를 심어 보다 아름답고 건강한 생활환경을 만들자는 취자하에 최근에 시작된 이 프로그램은 연내 한인타운 지역에 2,000 그루의 나무를 심는 계획을 추진중이고 한인타운 지역의 불우한 청소년들에게 나무를 심는데 필요한 일 자리를 동시에 제공하게 된다.

(9) 커뮤니티 권익옹호와 대변

커뮤니티 홍보활동에 앞장서는 한편 타 커뮤니티와의 활발한 교류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1992년 LA 폭동과 1994년 LA 지진 피해자들을 위한 복구 프로그램도 실시하고 있다.

(10) 무료 전화 정보안내

무료 전화를 통하여 미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도움에 필요한 단체나 기관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담당한다.

(11) 특별 프로그램

기존 KYCC 부서가 담당하지 않는 프로그램들을 담당하는데 청와대 초청 LA 지역 흑인학생 연수단 행정 실무처리, 4.29 폭동 장학금 실무처리, 번역, 한인사회/청소년관계 통계수치 수집 및 분석, 대 커뮤니티 관계사업, 아시아계 커뮤니티간의 전산망 구축사업 등을 담당한다.

2. 젊음의 집(Green Pastures Youth House)

비행청소년 선도를 위한 단체로 LA 카운티 소년원에서 수년간 수감 청소년선도와 교화를 위해 봉사해 온 김기웅 목사가 1993년 설립했다. 문제학생으로 학교에서 퇴학당한 학생들을 LA 카운티 교육국으로부터 위탁받아 정규 교과과정을 이수시키고 학생들을 교화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1) 젊음의 집 프로그램

(1) 젊음의 학교

LA 카운티 교도국과 LA 카운티 교육국의 지원을 받아 14~18세의 청소년 중 범법행위로 인해 정규학교를 다니지 못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중·고등학교 졸업에 필요한 학과과목 강의를 한다. 일선 교사 및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교육을 담당하게 되고 학과 교육 외에도 상담과 대화를 통한 생활상의 문제해결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

(2) 청소년 미래개발센터

청소년들의 건전한 사회생활을 돕고 밝은 미래 창조를 위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일을 한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청소년 합숙 공동생활이 있는데 한인 청소년들을 모아 한달간 공동 합숙훈련 생활을 통해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등에서 오는 갈등에 대한 해결책을 배우게 하는 프로그램이다.

(3) 소년원 선교

소년원 수감생들이 가정과 사회로 돌아갈 때까지의 신앙생활 안내, 신앙문제 상담과 협력, 기타활동으로 청소년 수감자들의 신앙과 인격성장, 그리고 정서안정에 필요한 일들을 제공한다.

3. 대학생 과외지도 프로그램(Korean Tutorial Project)

남가주 지역의 한인 대학생들의 자원봉사 프로그램으로 1978년 UCLA 한인 학생회 프로그램 중의 하나로 시작되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인타운지역의 국민학교와 중학교에 재학중인 한인학생들 중 갓 이민온 학생들을 위해서 방과후 학습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숙제 및 시험공부 도움이 주 목적이지만 이 외에도 주말에는 소풍, 체육활동, 현장 학습 등을 통해 어린 학생들의 시야를 넓혀주는 역할을 해주며 이 외에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학생들이 어린학생들의 형/누나로서 이민생활 적응을 돕고 있다.

4. 한미 청소년 후원회(Korean American Youth Foundation)

한미 청소년 후원회는 교포 지도자들이 중심이 되어 1970년 창설되었다. 2세 청소년들이 캠프 활동을 통해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문화관을 배우고 청소년문제에 대해 공동적으로 대응해 나가는 자리를 마련해 주는 것을 목적으로 1974년에 LA 인근 산정에 10에이커 가량의 대지를 매입, 캠프장 운영을 결하고 있다. 매년 청소년 여름캠프를 실시하고 있으며 다른 단체들에게도 캠프장을 제공하고 있다. 순수 한인들의 지원으로 운영되는 이 후원회는 앞으로 한인 커뮤니티 청소년 사업의

자립화를 위한 좋은 보기를 보여주는 곳이라 하겠다.

5. 교회 청소년사업

한인 사회에 있어서 교회의 역할은 단순한 종교단체의 그것을 넘어서고 있다. 한인들 중 70-80%가 교회에 다닌다는 조사 보고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 한인 교회들이 LA 지역과 그 인근에 약 600여개가 있다는 것은 한인 사회에서 교회의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교회는 주일학교, 학생부, 대학부, 청년부 등을 통해서 여러가지 신앙활동과 교육활동을 병행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청소년들에게 대화의 장소와 건전한 모임의 장소를 제공하여 결국 청소년 탈선을 방지하는데 수훈을 세우고 있다. 주로 일요일의 활동에서 벗어나서 주말 성경공부와 친교의 자리, 주중활동, 그리고 여름과 겨울방학 때 있는 수양회(캠프)활동 등이 주요 활동들이다.

교회를 통한 청소년사업이 개별적으로 볼 때 매우 활발하지만 어느 정도 제한성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종교단체가 지니는 특수성으로 인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사업이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에게 해당이 된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두번째로 아직도 한인교회는 1세 중심이어서 다른 문화권에서 자라고 있는 한인청소년들의 문제를 이해해주고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해 줄 만한 1.5세/2세 교계 지도자가 아직 부족하다는 점이다. 현재 많은 2세 한인들이 대학을 졸업한 후 신학원에 진학, 교역자로서의 수업을 받고 있는데, 그들을 통하여 많은 인적자원이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개개인 교회별로 비교적 활발한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것에 반해서 교단차원의 연합사업과 한인사회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는 부진한 편이다.

마. 결 론

위에서 살펴 본 미국의 청소년문제와 그 해결을 위한 여러 청소년사업, 그리고 미국사회 내의 한인사회가 실시하는 청소년사업 등은 현재의 한국사회가 당면하는 청소년문제와 중점 청소년사업의 종류와는 차이가 많이 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이미 세계가 일일 문화권이 되었고 한국사회 또한 국제화 조류를 타고 많은 변화를 경험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 외부문화에 민감한 청소년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대비를 하기 위해서 외국의 청소년문화와 문제, 그리고 이에 대응하는 청소년사업들을 한국의 청소년단체와 기관들이 좀 더 심도있게 고찰해 보는 것이 결코 이른 일이 아닐 것이라 하겠다.

Ⅲ. 청소년활동 정책의 특성비교

청소년정책의 기본성격
청소년 활동정책의 특성비교

Copyright © 2002 Nuri Media Co., Ltd.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publication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 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ing, recording, or by any information storage and retrieval system, without prior written permission from Nuri Media Co., Ltd.

III. 청소년활동정책의 특성 비교

지금까지 미국을 비롯한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청소년정책 선진국의 청소년 활동 현황과 그 전개 상황을 청소년인구의 일반적인 현황과 정책체계 그리고 청소년지도자, 청소년시설, 주요 사업과 프로그램 및 청소년활동 단체 등을 중심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의 내용을 국가별로 고찰하였다. 청소년활동 제도를 수련활동의 실시를 담당할 청소년단체의 육성과 지원, 수련활동을 지도할 전문지도자의 양성과 지원, 수련시설의 제공 등에 관계되는 것으로 보아 그 주요내용을 부문별로 개관한 것이다.

여기서는 앞서 분석한 각국의 청소년활동 정책에 대한 국가별 비교를 통해 각각의 청소년활동 요소와 분석기준 별로 특징적 요인과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외국의 활동정책의 내용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 청소년정책의 발전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1. 청소년정책의 기본 성격

첫째로, 앞에서 분석한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에서는 청소년들의 학업 향진을 목표로 하는 교육정책 뿐만 아니라 청소년지도 복지 및 문화라는 측면에서 국가별로 독특한 청소년정책을 일찍부터 실시하여 왔음을 확인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이것은 청소년서비스 또는 청소년개발(Youth Development)의 개념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영국은 청소년과 지역사회서비스(Youth and Community Service) 또는 청소년서비스(Youth Service)라고 표현되는 정책분야가 이미 오래 전 부터 형성되어 있었다. 프랑스의 경우 Animation 활동을 중심으로 하여 청소년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오고 있으며 독일의 경우에는 청소년링(Ring) 조직 및 활동을 중심으로 오랜 청소년정책의 역사를 갖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도 청소년문제

에 대해 국가의 정책으로서 비행의 직접적인 대책으로부터 청소년의 건전육성을 위한 종합적 대책을 수립하고 관계부처의 통합된 노력을 지향하여 왔다.

둘째로, 선진 각국은 청소년정책의 내용으로써 청소년활동의 지원을 통한 복리의 증진을 도모하는 시책을 체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이에선 독일의 경우 국가적 차원에서 청소년들의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1950년에 시작된 연방청소년계획(Bundesjugendplan)을 들 수 있는데 이 계획은 “청소년이 신체적, 정신적, 직업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하여 각자가 사회 속에서 자유롭게 발전하고 또한 가정, 사회, 국가에 대한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며 오늘날에는 정치교육이나 여가교육 등의 교육적 활동을 중점사업으로 하여 수행되고 있다. 영국의 청소년서비스(Youth Service)는 다양한 범위의 활동을 통한 청소년들의 개인적 발달과 비공식적 사회교육의 증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학교 밖에서의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기회를 제공하고 지원하는 시책 전반을 의미하고 있다. 청소년서비스는 청소년들에게 개인적이고 사회적인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교육체계의 한 부분으로서 청소년의 개인적인 발달을 촉진시키고 그들의 다양하고 광범위한 여가활동을 통해 청소년들에게 사회교육의 기회와 터전을 제공하는 것이다

일본의 경우도 청소년육성의 기본방향을 고령화, 국제화, 정보화 등의 큰 사회변화에 주체적으로 대응하는 자질과 의욕을 가지고 활력이 충만한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에 두고 자원봉사활동이나 복지시설에의 참가 등 청소년의 사회참가를 촉진하는 청소년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프랑스 청소년정책의 특징도 청소년들을 사회와 직업에 적응시키는 것, 청소년들에게 여가와 문화에 접근시키는 것, 그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등의 3가지가 중심이 되고 있으며 국가는 이를 바탕으로 청소년활동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며 조정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단적으로 말할 수는 없으나 청소년개발을 통해 청소년에게 학교가 끝난 후 찾아갈 수 있는 안전한 장소(Safe Places), 그들이 의미있는 관계성을 개발할 수 있는 사람들의 지도감독(Supervision), 그들이 학교에서 배운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구조화된 활동(Structured Activities) 등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각국 청소년 정책의 또 다른 특징으로 정책체계의 면에서 지방분권적이며 복합적이지만 중앙정부를 통해 종합되고 조정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예컨대, 독일의 연방 연방청소년계획은 청소년행정의 전담부처인 연방청소년성이 장기적인 안목에서 청소년정책을 추진해 갈 수 있는 자체 예산과 기구를 확보하고 있으며 동시에 이 계획은 각기 상이한 지방자치 행정기구에 속한 청소년청들의 사업을 통괄·조정하여 연방차원의 통일된 청소년정책의 수행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독일의 청소년정책과 행정을 관장하는 중앙행정부서는 연방청소년가정부녀보건성이며 주정부의 차원에서 청소년행정은 각 주마다 상이한 행정부서가 전담하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 차원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인구를 가진 모든 지역에는 일률적으로 청소년성(Jugendamt)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주와 자치제의 청소년청은 그 담당지역 수준이 다를 뿐이다.

영국의 경우에 청소년에 관한 일반적인 정책은 교육성(DFE: Department for Education)에 의해서 세워지며 그 안에서 지방정부와 자원단체들은 함께 활동해 나가야만 한다. 지방정부에서는 청소년센터와 그들이 소유한 클럽을 제공함으로써 자원조직체의 활동을 보충한다. 대부분의 지역정부에서는 지방정부 뿐만 아니라 자원단체의 대표자들로 구성된 청소년위원회를 설치하여 자문을 받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중앙정부의 교육성 내에 설치된 청소년서비스국(Youth Service Unit)에서는 지방의 교육담당부서들, 전국 자원 청소년단체들, 청소년서비스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의 형성에 관련된 다른 정부부처와 관련기구들을 연결한다.

일본의 청소년행정은 직접적으로는 문부성, 경찰청 등을 비롯하여 청소년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업무는 중앙정부의 총무청, 법무성, 후생성, 노동성, 자치성 등 15개 부처성·청이 맡아하고 있으며 그 때문에 총무청 산하에 청소년대책본부를 두어 청소년에 관한 시책을 종합·조정하고 있다. 지방정부의 경우도 청소년전담기구는 없으며 각급 도도부현의 지사와 공안위원회, 교육위원회 등이 청소년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촌단위에는 시정촌장과 교육위원회로 청소년관계행정이 수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청소년관계행정조직 외의 청소년문제심의회, 청소년대책본부 및 청소년대책추진회의 등의 특별기구를 갖고 있는

대 특히 청소년대책본부는 청소년에 관한 기본적 시책을 수립함과 동시에 관계성·청 및 지방공공단체를 통해서 청소년행정이 종합성을 가지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청소년문제심의회에 의한 총합적인 비전의 제시와 종합시책의 수립 촉진 및 연대체제 확보를 주요업무로 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전국적으로 통일되고 조직화된 제도로써 청소년행정 체계가 없다. 이는 미국사회의 구성자체가 다양성에 기초를 둔 사회이기 때문에 지역에 따라 인종, 인구, 문화적 배경, 경제적 조건, 교육 등의 독특한 특색을 가지고 있으며 청소년정책도 이러한 특성을 고려해서 수립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의 청소년관계 업무는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보건 및 인간서비스부를 중심으로 내무부, 법무부, 교육부 등 여러 부처에서 청소년관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주정부 이하의 행정단위에서는 청소년업무를 청소년서비스국에서 담당한다. 각 주의 시·군 행정기관과 교육위원회, 각급 지역사회 센터 등에서 청소년활동 및 복지사업을 주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프랑스에서 청소년정책을 담당하는 중앙정부의 행정부서는 청소년체육부로서 청소년단체생활국에서 관장한다. 이 부서에서는 청소년과 일반대중 교육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다. 청소년단체생활국은 청소년들의 자율적 행동과 그들의 의식과 열망을 높혀 일상생활에서 더 많은 책임을 갖게하고, 청소년들의 여가활동과 문화활동을 제고시키며 청소년들에게 국제감각을 높이고 개방된 태도를 향상시키는 것 등을 청소년정책의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넷째로, 선진각국의 교육제도는 중층적이거나 복선적 형태를 취하고 있어 청소년들로 하여금 학문과 직업의 두 분야의 진로가 일찌기 결정되며 다양한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일본의 경우도 학제상 우리나라와 같은 단선형을 채택하고 있으나 실업교육의 기회가 많으며 특히 최근에 와서 주 5일제 수업을 실시하는 등으로 청소년정책과 관련된 획기적인 교육제도 상의 개혁 노력을 하고 있는 점이 주목된다. 영국의 학제도 복선형의 교육체제로 되어 있는데 학생들의 진로는 기본적으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11세에 치르는 국가시험에 의해서 일찍 결정된다는 점에서 교육체제는 폐쇄형의 다소 비민주적인 특징을 갖는다. 독일의 학교제

드는 기본적으로 각 주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우리나라처럼 전국에 걸쳐 일률적으로 시행되는 것이 아니라 지방마다 다소 상이한 편제를 갖고 있고, 매우 중층적인 구조를 이루고 있다. 미국의 교육은 주로 주정부의 권한에 속하며 교육자치제의 실시와 실용주의의 추구를 중요한 교육 전통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미국의 학교제도는 중앙집권적 교육행정을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와 같이 전국적으로 통일된 학교조직은 없다. 프랑스의 교육은 교육부가 주도하는 중앙집중형으로 고등학교까지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구조를 갖고 있으나 대학교육부터는 매우 복잡한 교육구조를 갖는다. 프랑스의 교육제도는 청소년활동 정책과 관련하여 지적해보면 청소년들의 과외활동을 활성화시키는 여가 문화활동 중시와 정보자료의 제공 그리고 국제화교육에 중점을 두고 있다.

2. 청소년활동 정책의 특성

가. 청소년지도자

청소년활동의 성패는 지도자에 달려 있다. 특히 야외활동의 경우 지도자는 많은 책임감을 갖고 광범위한 서비스를 전달하여 항상 밀접한 인간 상호작용의 환경에서 많은 과업을 달성하고 지적으로 우수한 결과를 산출해 낼 것이 기대된다. 지도자의 종류와 유형은 조직의 구조와 관계없이 동일한 단체 내에서도 다르고 단체의 종류별로도 다종다양하다. 요구되는 전문성(professionalism)의 기준, 단체 내에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 제공되는 기회들, 보상의 수준 등에 있어서도 각기 다른 다양한 특성을 갖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이러한 점에서 보면 선진 각국의 청소년활동지도자에 관한 정책은 다음 3가지 점에서 특성을 갖는다.

첫째, 선진 각국의 청소년활동지도자는 다양한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으며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고 있다. 전문적 지도력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공인된 자격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특히 청소년활동지도자에게는 성숙과 판단의 두가지 자질이 중요하게 평가된다. 이는 객관적인 측정은 할 수 없지만 대체로 교육수준과 인정가능한 경력 및 연령 등을 고려한다. 연령이 반드시 성숙의 정도와 같다고 여겨지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하나의 참고로 인정되는 기준이다. 지도자의 충원도 분야와 단체에 따라 다양하게 이루어지는데 예컨대, 아동학대문제에 종사할 경우에는 소정의 신청양식에 의해 경찰이나 미 연방수사국의 조사(FBI Checks)를 거치는 공식적인 선발 절차를 통하여 이루어지기도 하며 야외활동지도자의 경우 역할과 기능의 차이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청소년활동의 지도감독과 행정 책임을 맡고 있는 행정적 요원(Administrative Personnel)과 활동프로그램의 계획과 전개 및 활동 참가 청소년에 대한 지도 감독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프로그램 요원 및 장애자와 같은 특별한 고려를 해야 하는 신체적, 의학적, 행동적인 특성을 가진 청소년들을 도와 개인적으로 접촉하고 활동을 지도하는 상담-지지 요원(Counselor)의 3가지로 구분된다.

독일의 청소년 전문지도자의 종류는 사회교육가, 사회사업가, 여성청소년지도원, 교육사, 보육사 등 다양한데, 그 활동영역은 청소년단체, 교육시설, 여가시설 등 청소년교육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에 이르고 있으며, 전문지도자의 양성과정은 다양하면서도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지도활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한 명칭을 일반적인 의미로 ‘청소년지도자’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는 중점적인 활동과 역할에 따라 청소년지도자(Youth Worker), 지역사회지도자(Community Worker) 등과 같은 다양한 명칭이 사용된다. 영국의 청소년지도자는 크게 전임지도자(Full-time Worker)와 시간제 지도자 및 자원지도자(Part-time and Voluntary Worker)로 구분된다. 그리고 두 종류의 지도자의 비율은 업무 성격이나 지역에 따라 다른 데 예를 들어 자생적 클럽활동은 자원지도자들이 주로 담당하고 청소년 개별지도 활동은 주로 전문적인 전임지도자들이 담당한다.

프랑스 정부에서도 청소년의 여러가지 활동들을 지원하는 지도자를 양성하는데 힘을 쏟고 있다. 이들은 특히 실천적인 기술을 가진 사람들로써 바로 Animateur로 불리우는 청소년지도자들이다. Animateur는 청소년지도자로서의 자격이며 동시에

한 직업인으로서 자격을 의미한다. 크게 3단계의 수준으로 구분되며 18세 이상의 연령조건과 전문적 연수과정을 거쳐 부여된다. 일본에는 청소년지도자가 민간과 행정 양면에 걸쳐서 다종다양하게 존재하고 있는데 민간인으로서 그것을 전업으로 하고 있는 사람, 직업 이외에 유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 또는 행정관계의 비상근 직원으로서 위촉된 사람 등이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우고 있다. 크게 전문적인 행정직원, 청소년 건전육성 시설 등에 근무하는 전문직원 등, 기업 등의 유급지도자, 행정기관 등이 위촉한 지도자, 민간의 유지지도자(자원봉사자)등으로 구분된다.

둘째, 선진 각국은 전문성있는 지도자를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종류의 지도자양성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자격취득을 위한 교육과정 외에도 청소년과 지역사회활동에 참여하는 요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능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해서 현직연수과정을 제공한다.

영국의 경우 청소년지도자가 되는 경로는 상근지도자와 비상근지도자를 구분해서 살펴 볼 수 있다. 비상근지도자나 지원지도자가 일정한 연수과정을 이수한 후에 상근지도자가 될 수 있고 이러한 청소년지도자 자격취득을 위한 과정은 여러 대학과 지역사회기관 등에서 제공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야외활동지도자는 미국야영협회의 전문점정 프로그램 과정을 통해 양성되고 있는데 주로 캠핑철학, 프로그램, 서비스 및 행정 등에 있어 전문지식과 새로운 기술을 습득한다. 전문자격 프로그램은 5개의 종류가 선택가능하다.

프랑스의 경우 일정한 과정을 거쳐 청소년지도자의 자격이 주어지는데 B.A.S.E 자격, B.E.A.T.E.P. 자격, D.E.F.A.자격 등이 있다. B.A.S.E 자격은 18세 이상의 연령조건 및 2년 이상의 활동경험이 요구되며 D.E.F.A.자격은 가장 상위의 자격으로 Animateur들에게 단체를 활성화시키며 시설을 관리하는 관리책임자적 능력을 키우려는 목적을 갖고 있다. 이러한 자격들은 모두 일정의 연수과정을 통해 취득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도 이러한 지도자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 지방공공단체, 민간단체 등에서 청소년단체 활동의 의의와 역할, 청소년단체의 조직·재무·광고·청소년단체의 학습활동의 기획·전개·평가, 그리고 청소년단체 지도자의 역할에 대해서 강의·토의·실기 등의 방법으로 연수를 받는다.

셋째, 자원봉사자 지도력의 충원 훈련 및 지속적 지원은 청소년관련기관과 단체의 사업에서 상당히 높은 우선순위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이는 청소년 회원에게 프로그램을 전하는 사람은 실제로는 자원봉사자라는 점에서 그 역할과 중요성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미국의 경우에도 청소년단체의 거의 전부가 자원봉사자의 서비스에 주로 의존하고 있는데 자원봉사자는 집단, 클럽, 분단(troops) 및 팀의 지도자, 코치, 조연자, 안내자의 역할을 한다. 영국 청소년지도자는 대부분 유급 또는 자원봉사하는 시간제 비상근 지도자(Part-time Worker)들이다. 특히 자원단체들은 큰 프로젝트나 전국적 또는 지방의 본부조직에는 상근요원을 채용하지만 청소년들과 직접 접촉하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원지도자들에게 의존한다.

독일에서는 전임지도자 외에도 청소년지도 자원봉사자 제도가 활성화되어 있어 청소년지도에 큰 몫을 담당하고 있다. 이들 자원봉사자의 교육은 지방자치체를 위시하여 각종 공공기관이나 민간 청소년단체 등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교육방법은 주관 단체나 기관의 목적에 따라 독자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원봉사자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자격 요건을 갖춘 이들에게는 지방자치체 또는 연방청소년연맹에서 자격증을 교부해 준다.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 각종 청소년지도 활동시 자치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많은 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년지도 활동을 위해 통상의 유급 휴가 외에도 매년 일정한 기간(12일 정도)의 특별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나. 청소년단체

먼저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집단을 근간으로 구성·설립된 사회조직체의 하나로 특성에 따라 그룹, 씨클, 클럽, 동아리 또는 조직, 협의회, 연맹 등 여러가지 용어로 호칭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을 위한 활동의 장으로 청소년 개개인의 바람직한 사회적 경험과 인격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집단활동을 적극적으로 편성한 조직체” 또는 “건전한 활동을 통하여 청소년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나아가 국가사회 발전에 참여·봉사할 수 있는 인간으로 육성하려는 목표 아래에서 청소년을 지도하는 비정부적 단체”라고 정의된다.

첫째, 각국은 다양한 청소년단체활동을 장려함으로써 청소년들의 상호작용을 촉진하고 있으며, 각종 취미클럽이나 스포츠클럽, 봉사클럽 등을 통하여 청소년들이 각종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대규모의 지원체계를 갖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영국의 Youth Clubs U.K.나 National Association of Boys Clubs같은 것은 대표적인 예로서 영국 전역에 있는 청소년클럽으로 조직된 방대한 조직체들이다. YCUK는 6,500개의 클럽과 730,000명 이상의 회원으로 운영되며 지역단위의 청소년들에게 유익한 각종 프로그램과 시설, 지도자를 공급하는 등 청소년들의 자율모임에 실질적인 지원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NABC는 약 2,000개의 클럽과 175,000명의 회원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스포츠활동과 예술활동 모임을 지원, 동아리 형태의 단위 청소년활동을 조장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현재 5만여개의 단체가 있으며 이들 중 약 11%가 청소년과 여가활동에 관계된다. 청소년단체에 관한 정보는 지방 도단위의 청소년체육부 담당과에 비치되어 있다. 국가는 청소년단체의 상호교류와 교육을 위해 청소년단체의 사업들과 지도자들에 대한 재정지원에 주력한다. 단체들이 국가의(청소년체육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국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지방의 단체는 도지사에 의해 그리고 국가차원의 단체들은 청소년체육부의 정부차관에 의해 승인받는다. 현재 국가적 승인을 받은 단체는 약 350개에 이른다.

미국 청소년들은 학교의 특별활동에 적극 참여하고 적어도 한 개 이상의 YMCA나 보이스카웃 같은 청소년단체에 참가하고 있으며 학생의 성적을 평가할 때도 학업 성적에 못지 않게 이러한 특별활동의 적극적인 참여 정도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당 특정한 시간 자원봉사자로 활동한 경력이 졸업을 위한 필수적인 이수과정이 되기도 한다.

둘째, 민간부문의 청소년활동 사업과 관련하여 청소년단체간의 교류와 제휴가 각 단체의 주요한 사업목표로서 활발히 모색되고 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단체간의 이러한 교류와 제휴의 움직임은 각 단체와 그 회원의 주된 생활기반을 출발점으로 하여 활동을 진행해 가고 있는 특성이 있다.

일본의 청소년단체는 단체활동의 성격으로 보아 다양한 목적과 활동을 가진 여러 가지 단체로 결성되어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청소년단체는 그 형성기반이 된 제 조건 및 설립목표의 차이에 따라 구분할 수도 있으며, 어느 것이나 공통의 흥미나 관심, 필요한 이해, 환경이나 생활조건을 유대로 하여 결성되고 그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구성원의 상호교류, 공동활동 등을 통하여 한 사람 한 사람의 청소년들이 그 건전한 성장을 이룩하는 뜻에서 이러한 청소년단체활동의 의의와 역할은 크다.

영국의 경우 지방정부에서 운영하는 클럽, 프로젝트, 기금, 및 여러 형태의 지원을 받는 자원단체가 많이 있다. 대부분의 클럽에서는 활동을 통해서 그 클럽의 시설에서 음악, 피로를 풀 수 있는 기회, 게임을 제공하고, 문화적 또는 스포츠를 위한 방문 기회를 제공하며, 야외 모험활동에 참여케 하고 다른 청소년 그룹과 교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학교에서와 유사한 형태로 수행되는 토론집단과 프로젝트 활동이 있다.

프랑스에서의 단체생활은 국민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데 단체 생활복지부에서는 단체생활을 장려하려는 목적으로 단체생활을 증진하는 활동, 단체생활을 개발하는 일, 그리고 단체의 상호교류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독일연방 청소년 씨클의 회원 단체는 청소년사업의 영역에서 서비스의 범위를 가장 광범위하게 개발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현재 “Freie deutsche Jugend”는 그 독립적 지위를 포기하였으나, 거기에서 지원을 받았던 청소년사업에 관련된 많은 기관

과, 기타 단체들은 폐쇄되었다. 독일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정치적 태도를 국가, 주, 또는 지방정부 선거에서의 선거권 행사를 통하거나, 압력집단, 환경운동, 평화운동 및 청소년단체에의 참여를 통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한다. 일반 사회단체는 주정부로부터 받는 지원과 자금모금사업을 통한 사회적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사업을 한다. 결국 수 많은 청소년들의 욕구에 따른 완전한 대책이나 사업은 정부가 모든 것을 처리할 수 없다는 데서 출발하여 각 주 혹은 지역사회에 맞는 청소년사업을 개발하고 그것을 수행할 수 있는 수 많은 종류의 청소년단체를 육성함으로써 많은 청소년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근본적인 내용이 되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단체들은 전국적 기준(National Standards)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추므로써 공인을 받고 전국적 조직에 가맹하게 되는 과정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그 구체적인 적용요건과 충족 정도는 각기 다르며 특히 지역 수준에 있어서는 전국적인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지만 회원 자격 필요 조건, 지도력 훈련, 후원(sponsorship), 국제적인 강조, 비용과 상품판매 등의 몇가지 점에서 주요한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결국 각국의 청소년단체의 종류 및 활동은 매우 다양하지만 기본적인 성격은 “청소년을 위한 집단활동”이라는 점이다. 회원의 공통의 목적과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상호합의와 조직적 계속적인 활동을 가진 청소년의 집합체라는 점이 기본이다.

다. 청소년시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들이 지역사회내의 생활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여가, 문화활동이나 일상생활 공간을 벗어나 자연환경을 활용한 야외활동을 통해 호연지기를 기르며 심신을 단련하는 공간으로 제공되는 각종 장소, 시설·설비를 총칭하는 개념이다. 청소년시설은 대부분의 청소년활동이 집단적, 조직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점에서 볼 때, 청소년활동의 목표와 내용에 최적한 시설을 확보하는 것은 중요한 과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앞의 청소년단체와 청소년지도자에서 이미 알아 본 바와 같이 선진 각국은 청소

년활동의 촉진을 위한 많은 역사와 정책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청소년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부문은 우리나라가 가장 많은 것을 배우고 시사 받을 수 있는 분야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이 점은 청소년활동 또는 집단활동은 청소년단체가 주요한 매개체가 되며 생활권이나 자연권의 청소년시설에서 실제활동이 영위된다는 점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첫째, 외국의 청소년정책 선진국들은 우선 전국에 걸쳐 수많은 청소년시설을 다양한 형태로 설치해 놓고 있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영국의 청소년시설은 우리나라의 생활권시설과 자연권시설의 유형구분과 유사하게 설명할 수 있다. 청소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는 마을의 청소년센터(Youth Center)가 있으며 다른 청소년들과 숙박을 하면서 함께 집단활동을 할 수 있는 숙박활동시설(Residential Center)이 여러 지역에 걸쳐 있다. 청소년센터는 학교나 그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활동을 더 강조한다. 여기서는 특정한 활동에 숙련된 지도교사(Tutor)를 활용하면서 기관장에 의해서 운영되기도 한다. 또한 청소년클럽 보다도 더 많은 형태의 활동이 있기도 하다. 활동내용에는 스포츠, 음악, 연극과 공예 등이 포함된다. ‘drop-in’ 센터로 알려진 주간 센터(Day Centres)들은 전형적으로 실직과 사회적인 문제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상근으로 근무하는 성인지도자들과 접촉할 수 있는 도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전국에 걸쳐 있는 숙박활동시설(Residential Centers)에서는 숙박을 하면서 시내의 실내 청소년센터에서 할 수 없는 다양한 활동들을 경험하게 된다. 여기에서는 일상생활의 압력으로부터 벗어나서 다른 청소년들과 어울리는 가운데에서 자신과 다른 사람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 활동의 내용은 집단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야외모험활동, 봉사활동, 취미활동 등이 있을 수 있다.

독일의 경우 청소년 여가시설(Jugendfreizeitstutute)은 독일의 미조직 청소년들의 여가활동의 근거지라고 할 수 있다. 즉 모든 청소년에게 각각의 욕구나 관심에 따라 자유롭게 청소년활동을 보장하는 장소가 되고 있으며 청소년들에게 학업에서 오는 긴장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을 과제로 하고 있다. 청소년 여가시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은 “개방된 문호의 집”(Haus der offenen Tür)이다. 명칭은 반드시 일정하지는 않고 지역마다 “청년의 집”(Haus der Jugend)이라든가 “청소년

년 여가의 집”(Jugendfreizeitheim)등으로 다양하게 불리고 있다. 청소년 여가 시설에서 전개하는 활동은 정치교육, 일반교양 등의 학습활동, 전통공예나 예술활동, 각종 스포츠활동 등 매우 다양하며 이 외에도 영화회, 스포츠대회, 정치문화학습회 등의 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미국은 청소년에 관계되는 기구나 시설 또는 단체를 열거하기 불가능 할 정도로 각 지역마다 그 특징을 가진 수많은 단체가 있다. 특히 근린지역의 경우 일반 청소년들의 각종 활동을 위한 청소년센터나 소규모 회관, 집회장소 등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으며 가출청소년, 우범청소년들을 위 한 전문적인 치료 중심의 청소년 시설도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는 야외활동과 관련한 시설과 야영장 등의 경우도 미국캠핑협회의 공인을 받은 것만 해도 전국적으로 약 2,400여개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일본의 청소년 건전육성 관계시설은 직접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것과, 청소년을 비롯하여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각각의 설치목적에 따라 각종의 시설이 설치되어 있다. 청소년시설은 청소년 교육시설, 체육시설, 근로청소년복지시설, 아동후생시설, 공원, 박물관, 도서관, 공민관 등 청소년이 이용가능한 모든 시설을 광범위하게 망라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집, 소년자연의 집, 아동문화센터, 근로청소년 복지회관, 유스호스텔, 청소년여행마을, 청소년회관 등이 소관성·청별로 다양하게 설치되어 있다.

프랑스의 대표적인 청소년 전용시설은 「바캉스센터」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약 100만명 이상의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바캉스철에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 있는 바캉스센터나 이등캠프장으로 떠나며 수 많은 어린이들이 부근의 여가센터에 수용된다. 이 시설은 「청소년센터」와 「청소년야영장」으로서 청소년들에게 최대의 자율성을 허용하면서 숙박을 제공한다. 프랑스 전역에 분산되어 있는 1,000여개의 청소년센터는 저렴한 가격으로 청소년들에게 숙박시설을 제공한다. 이 센터들은 정부에 의해 인가된 단체들에 의해 관리되며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이 선호하는 지식(know-how)을 가진 Animateur들을 고용하고 있다.

둘째로 이러한 청소년 시설들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필요한 요건을 구비해야 되며

이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단체간의 자율적인 협의를 통해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청소년시설에서의 각종 활동과 프로그램의 실시에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이다.

미국의 경우 청소년시설이 야외활동장이나 캠프로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1) 협회가 정의한 캠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2) 매년 신청서와 관련법 및 규정준수를 나타내는 동의서를 제출하고 3) 강제표준과 기타 캠프 인정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3) 숙박 캠프(Resident Camp)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과반수가 적어도 연속된 5일 이상이어야 하고 주간캠프(Day Camp)의 경우에는 연속된 5일 이상이거나 14일 이내에 5일간을 운영하여야 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여기서 표준(Standards)은 쾌적한 캠핑에 필요한 정책, 절차 및 실행 등을 위한 안내지침을 설정하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바캉스를 즐기는 청소년들을 수용하는 시설은 크게 숙박시설이 있는 여가센터(시설)와 숙박시설이 없는 시설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유아 및 청소년 대상의 이런 시설들에서 관리 및 청소년들의 지도를 위한 조건들은 법으로 엄격히 규정되고 있다. 학교의 방학이나 휴가 또는 여가기간 중 부모를 떠나 있는 미성년자들을 단체로 투숙시키는 개인이나 법인은 모두 이 투숙(숙박)을 위한 위생, 안전, 재정, 윤리, 교육적인 조건 등에 관한 국가의 감독과 조정을 따르게 된다. 각 지방 도지사에게 위임된 감독권은 청소년체육부 및 보건부의 관련 공무원들은 각자 자신의 고유권한 안에서 이 감독에 협조해야 한다. 도지사는 바캉스센터의 개설을 규제하거나 잠정적으로 폐쇄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데, 이러한 처벌의 목적은 잘못에 대한 응징으로서 보다는 미성년자들에게 닥치는 위험을 미리 예방하려는 데 있다.

일본의 경우도 야외활동시설은 일상생활권에서 일정의 거리에 입지해 있고, 자연환경 조건이 풍요한 곳이어야 하며 숙박이 가능하고 상근직원이 있고 관리동과 교육시설을 상비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국가가 보조금을 내고 만든 것은 대체로 이상의 조건을 채우고 있다. 시설의 특징은 숙박, 레크리에이션활동, 야영, 체육활동 등의 기본적 활동을 위한 시설은 물론, 위생시설, 자판기, 휴게실, 독서실, 자료실 등 각종 교육·문화·편의시설이 완비된 종합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라. 청소년사업과 프로그램

각국의 청소년활동사업과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에 맞게 청소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나 기존의 것을 보완하여 창의적인 것으로 개발 보급하여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을 보다 풍부하게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첫째, 청소년사업은 학교, 직장, 가정, 여가 등 청소년 생활의 모든 영역과 관련되어 있다. 청소년사업을 맡고 있는 기관들은 집단에 광범위한 활동과 사업을 제공하며 민간 청소년단체나 청소년시설의 사업과 프로그램의 경우는 각 기관마다 매우 다양하며 복합적으로 전개되고 있고 사업 대상과 기관의 특성 및 시범적인 적용결과 등에 따라 수많은 프로그램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

영국의 청소년들의 활동은 청소년클럽과 청소년센터 그리고 다양한 청소년단체에서의 활동이 중심이 된다. 청소년들은 어떤 의무나 책임에서가 아니라 자원에 의해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정부와 청소년단체에서는 여가활동, 봉사활동, 직업에 대한 준비, 건강교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청소년들이 활동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청소년들의 활동사업은 1) 아동을 위한 사업, 2) 학교 및 직장에서의 학습, 3) 여자 청소년을 위한 사업, 4) 외국인 아동 및 청소년 사업, 5) 반파시스트 운동, 6) 청소년 대체, 음악, 문헌, 7) 사회 참여 8) 무장해제 및 평화운동 등 매우 다양하며 다방면에 걸쳐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청소년단체들은 평화와 무장해제를 위하여 운동한다. 청소년단체들은 자연을 보존하기 위하여 애쓰고 있으며, 생산과정과 사회의 생태학적 재형성 만이 생활기반을 보존할 수 있다는 인식을 창조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정책사업과 프로그램은 다양하고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적인 접근을 하고 있으며 연방정부의 각종 지원사업은 청소년을 가지고 있는 모든 미국 가정과 시설에 주어지고 있을 만큼 청소년사업의 내용과 규모는 방대하다. 미국의 청소년시설(Resident)들에서 공통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활동은 학술활동(Academics),수상경기(Aquatics), 공예(Arts/Crafts),사이클(Cycling), 여행캠프(Travel Camp),여행(Triping) 및 각종 작업 프로젝트(Work Projects) 등으로 크게 대별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청소년 야외 활동시설에서는 심신장애자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곳도 있으며 연령, 문화, 사회경제적 배경별 주 고객대상으로 구분하고 지역과 시설, 참가대상과 연령, 참가자의 선호, 활동시설 운영자의 철학 등에 따라 각 시설별로 독자적으로 개발·운영하고 있다.

뉴욕시의 경우 청소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시정부 기관과 민간기관이 후원하는 서비스사업을 조정하고 청소년관련 이슈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위한 프로그램과 정책을 개발한다. 주요 사업으로는 레크레이션, 개인지도, 교정교육, 청소년보건, 알콜 및 약물남용예방, 리더쉽 개발, 가출 및 무가정 청소년을 위한 주거제공 서비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발전을 위한 각종 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등이 있으며 활용도가 낮은 공공소유의 시설 공간들을 청소년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 사용될 수 있도록 찾아내고 개발하는 사업도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둘째, 청소년서비스에서는 실내의 일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보다는 야외에서의 활동도 매우 강조하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야영활동 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이 가정이나 도시 환경으로부터 벗어나 자신에 대한 의존감을 배양하고, 자신감을 개발하며, 팀워크와 훌륭한 지도성의 중요성을 강화시키는 것을 돕는 활동들을 말한다.

영국의 경우, 모든 중요한 청소년단체들은 특별한 숙박 코스를 개발하거나 그 목적을 위한 기금 모금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야외활동에 참여해 오고 있다. 지방정부와 청소년단체들은 카누, 항해, 스키와 같은 활동을 위한 시설을 제공한다. 캠핑이나 등반에는 독도법, 오리엔티어링, 생존을 위한 요리 등을 포함하는데 이러한 활동들은 자신감을 보여주고 독창성,창의성과 자기 훈련을 가르친다.

일본의 청소년 활동사업과 프로그램의 경우도 청소년 클럽활동이나 단체활동 등에 참가시켜 풍부한 생활체현을 얻게 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일본의 대표적 청소년시설인 「국립중앙청년의 집」에서 행하는 활동은 후지산 등산 등의 야외활동, 각종 스포츠활동, 테크리에이션, 예술·문화활동, 일반교양 등 여러 종목에 걸쳐 있다. 그 중에서도 야외활동과 테크리에이션이 매우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유럽의 청소년들은 실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범위의 스포츠활동이나 게임에 참여한다. 예를 들면 축구, 럭비, 크리켓, 수영, 스쿼시, 테니스, 달리기, 육상, 승마, 볼링, 궁도, 다트, 체스 등이 있다. 이러한 많은 활동들은 학교나 클럽을 통해서 조직되고 학교나 지역정부의 시설을 사용하면서 다른 학교, 클럽과의 경기를 위해서 팀이 형성된다. 대규모의 상업적인 스포츠와 여가 센터들은 스포츠를 위한 훌륭한 시설을 가지고 있고 청소년들에게는 할인된 가격으로 시설을 제공한다.

박람회 활동은 프랑스 청소년들에게 단체수련, 다른 청소년 성인들과의 교체와 이력, 진취성과 책임감, 새로운 활동 등을 경험시켜 주는 전형적인 여가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들은 청소년들의 연령이나 활동유형에 따라 수준별로 구분되어 제공된다. 예컨대, 초급수준의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생활과 여러가지 활동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중급수준 프로그램들은 입문과정으로 초보적인 기술을 경험시킨다. 상급수준의 프로그램은 한가지 주제를 중심으로 한 전문화과정에 초점을 맞춘다.

셋째, 국제청소년교류, 문화간 학습, 청소년지도자 국제 세미나 등을 통한 청소년들의 국제교류와 여행이 보다 확대되고 있으며 해외활동을 통하여 세계에 대한 경험과 이해를 증진하고 있다. 국제청소년사업은 청소년들에게 세계에 대하여 관용적이고 개방적인 자세를 갖도록 교육시킴으로써 국가간의 이해와 평화적 공존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독일의 경우, 청소년들간의 회합을 통해서, 청소년단체들은 다른 나라 청소년들을 알게 하고, 서로 간에 좀 더 이해할 수 있게 하며, 그들의 다양성 속에서 서로를 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공헌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와 문화를 접촉함으로써 인해서 청소년들은 사회내에서 자신의 관점을 찾을 수 있고 자기 나라의 문제를 좀 더 인식할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영국협의회와 한 부서인 청소년교류센터의 자문, 정보, 연구, 보조금의 지원을 통하여 청소년국제교류를 증진시키고 있다. 지역사회자원봉사 협회는 지역사회에서 다른 사람을 돕기 위해 다른 나라와 지역을 방문한 16세에서 25세 사이의 2,500명 이상의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자원봉사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유럽의 단일시장화와 함께 유럽공동체(EC)의 다른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활동할 기회를 많이 갖는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는 약 100여개의 국가들과 문화협정을 맺고 있는데 1963년에 설치된 불란서-독일청소년사무소(OFAJ)와 1968년에 설치된 프랑스퀘백 청소년사무소(OFQJ)는 수 많은 다른 나라들과 체결된 양국협정의 출발이 되었다. 이러한 협정들은 유럽공동체의 청소년교류에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에도 특히 청소년이 성장기에 감동을 경험할 기회, 자연과 사람과의 접촉의 장 등 다양한 체험을 할 기회를 충실히 하고 동시에 청소년의 사회참가 활동 및 국제교류활동을 국가적 청소년시책으로 장려하고 있다.

IV. 결 론 및 제 언

IV. 결론 및 제언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은 어느 시대 어느 체제를 막론하고 청소년세대를 안정적으로 적응시켜 국가 사회에 필요한 형태로 사회화 시키는 것이 선결과제이다. 청소년이 그 사회의 미래 담당자라면 청소년정책은 그 사회가 바라는 미래상을 정립하고 그러한 사회에 적응할 수 있고 또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청소년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청소년정책이 지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외국의 청소년정책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그 국가의 정책내용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국가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고 우리나라의 정책개발을 위한 시사점을 발견하고자 하는데 있다. 각국의 청소년정책은 국가별로 상이한 문화적 사회적 배경과 전통 속에서 형성발전되어 온 것으로 그대로 답습하거나 적용하는 데는 많은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상에서 논의된 외국의 청소년정책의 주요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시사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몇가지로 정리하면서 본 연구의 결론을 맺기로 한다.

1. 청소년정책에 관한 국가적 관심의 제고

가장 먼저 지적할 점은 청소년에 대한 국가적 관심의 성격이 청소년 교육에 대한 관심에서 청소년문제의 예방과 대처라는 차원으로 나아감으로써 이제는 청소년에게 건진적으로 투자하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보다 큰 국가적 손실을 가져다 준다는 점에서 청소년정책은 국가의 존립과 장래의 발전을 담보하는 것으로까지 인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각국은 정부수준에서의 공공적 투자는 물론 민간부문의 적극적인 투자와 참여를 통한 청소년육성정책을 점차 국가정책의 우선적인 것으로 고려하여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하고 있다.

미국의 청소년개발정책, 영국의 청소년서비스 정책, 독일의 연방청소년계획과 청소년 청, 프랑스의 청소년체육부, 일본의 청소년 대책본부 등은 이러한 차원에서 각국이 실시하는 청소년육성정책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것이다.

제언 1 : 청소년육성을 위한 국가정책은 지속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주기적으로 보완하여 미래지향적인 정책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정책의 제도화와 계획의 수행 등에 청소년들의 참여를 촉진하고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제는 청소년이 자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제공하자.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노력은 청소년의 욕구와 희망에 근거하여 계획되고 추진되어야 한다. 청소년활동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청소년을 위한 사회적 노력”뿐만 아니라 “청소년에 의한” 청소년의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은 물론 정책평가까지도 청소년들의 의견이 반영되고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 점은 미국의 경우 청소년과의 각종 사업을 계획하고 주관하는 데에 성인지도자의 감독과 자문을 통해 청소년 스스로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청소년 동료를 통한 청소년활동 지도”의 개념으로 일반화되어 있다. 공공기관이나 민간 청소년기관은 각종 위원회의 구성원에 청소년대표를 반드시 포함시키며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점이 많은 것이다.

우리도 이제 청소년들을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그들의 가치수준에서 이해하고 인식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은 자신이 활동의 주체임에도 불구하고 각종 청소년 사업에 “객체”나 “대상”으로 설정된 경우가 적지 않다. 청소년은 성인들의 도움을 받아야 할 부분과 자율적이고 능동적으로 주체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하고 있음을 인정해야 하는 것이다.

제언 2 : 청소년정책의 효율적인 집행 및 청소년사업과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각급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분산 추진되고 있는 업무를 체계

적으로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조직정비와 청소년사업의
구심점이 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주무부서를 설치 보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청소년업무는 중앙관위에서 문화·체육 등과 접목되어 다루어지고 있
고 청소년활동을 중심으로 한 사업이 많이 실시되고 있으며 점차 청소년사업의 영
역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체육·청소년업무를
총괄하는 새로운 부서의 설치나 아니면 현재 국을 달리하여 분산 추진되고 있는 업
무를 체계적으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지방정부에서는 청소년국 또는 청소년서비스국을 두고 있으며 독일
의 경우에도 지방청소년청과 청소년사무소 등의 자치단체별 조직을 통해 청소년업
무가 관장되고 있다. 이 점은 우리나라의 경우 시·군·구 단위에서는 청소년업무
전담부서를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점과 함께 청소년행정을 구체적으로 실현할 수준
인 지방차원에서 청소년행정이 일원화되어 있지 못한 사실과 비교하면 책임성있는
청소년행정의 실현과 유관 공공기관과의 체계적 연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군
·구 단위에도 문화·체육·청소년업무의 체계적인 기능분담이 가능하도록 하는 조직
정비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지방자치제의 강화와 지역중심의 청소년활동

지방자치제는 구미 각국의 경우 이미 오랜 역사적 전통과 실천경험을 가지고 있
으며 이점은 청소년정책에도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 동일한 국가 내에서도 정책의
구체적 내용이나 중점사업과 프로그램 등에서 각기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등과 같은 연방국가의 형태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
청소년행정이 지방화, 자율화되어 있어 다양한 청소년활동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에도 지방자치제의 발달로 점차 자치단체별 지역별로 사업과 프로그램
이 특성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청소년활동의 지역사회와의 연계라는 측면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주목된다. 영국의 경우에도 중앙의 권리와 통제보다는 지방별로 각 지방정부 당국의 책임과 지원하에 자원단체와의 협력을 통해 지방분권적인 행정이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점차 지역별로 자율화되고 독자적인 특성을 가진 청소년사업·프로그램이 기대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에서는 특히 각국의 청소년활동이 지역사회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미국의 지역사회학교 운동, 뉴욕시의 학교중심 지역센터 사업이 그러하며 일본의 경우에도 청소년이 새로운 커뮤니티 조성을 위하여 주체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것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제언 3 : 지역사회에는 각종 사회자원이 다양한 형태로 산재하고 있으며 분산되고 독자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지방자치제의 실시에 맞추어 자치단체 내의 공공자원과 각종 민간 청소년기관들 간의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주는 공식적인 연계망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발전되고 있는 청소년단체는 중앙정부나 관계기관과의 연계성의 약화로 인하여 체계적인 유대를 통한 정보교환이나 활동의 다양성을 추구하는데 많은 난점이 있고 전국적인 규모를 가지고 있지 못한 소규모의 청소년단체들은 일반적으로 산만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그 조직의 규모나 활동내용의 소규모성으로 인해 정책적인 배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사회내의 제반자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조직화하여 상호연계 체계를 공식화해 주는 동시에 지역내 청소년 사업의 실행주체로서의 역할도 할 수 있는 상설협의체를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미국의 뉴욕시의 사례에서 볼 수 있는 기관간 협의회나 일본의 청소년문제협의회 등의 사례는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의 수립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연계망은 공공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재정 및 인력기반이 취약한 민간부문의 청소년단체들을 중심으로 하되 지역사회내의 청소년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기관 및 단체들을 포괄하여야 할 것이며, 해당 사회의 실정과 특성에 따른 설립형태, 재정확보 방

안, 인원충원방식, 사업내용 및 조직·기구 등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검토와 보완을 통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제언 4 : 향후의 지방자치체는 청소년사업에 있어서도 지역별 특성화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는데 각급 지방단위에서는 공공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적극 활용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독자적인 청소년사업과 지역특성화 시책을 개발 고정적으로 계속 실시함으로써 ‘향토사업화’를 추진해야 한다.

지역사회(Community)는 청소년들의 구체적인 생활의 원천적 거점이자 교육의 장으로서 청소년들의 생활, 행동양식, 행동 등에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으며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각종 기관, 단체, 시설들의 노력은 청소년 성장 발달을 위한 사회적 조건을 개선·발전시킨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우리나라의 경우 농촌 뿐만이 아니라 도시에서도 지역사회라는 공동체적 의식의 확산이 필요하며 청소년 활동을 지역사회와 연결시킨다면 청소년과 지역사회 양자 모두의 발달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영국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그 역으로 지역의 청소년기관들을 중심으로 지역사회가 청소년활동에 참여토록 하고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특히 앞서 말한 지역별 상설협의체의 운영이 활성화될 경우 각종 청소년시책의 원활한 실행이 가능할 것이며 지역청소년들의 생활환경과 욕구에 부합되는 독자적인 사업을 개발하여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최근의 정치여건의 변화와 지방자치화는 지역사회에서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의 공간을 확보하기에 좋은 기회가 되고 있는데 지역내의 청소년단체와 문화예술단체 그리고 사회단체들은 이러한 공간을 활용하여 청소년의 성장과 발전을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특성에 따라 구민회관의 강당을 금요일 저녁에는 “영화극장”으로 사용하고 토요일에는 “청소년어울마당”으로 사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이다. 청소년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여러 자생적인 문화예술 모임의 활동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지역별로 특성있

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고정적으로 계속 실시함으로써 청소년사업의 특성을 확보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3.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사업의 전문화

각국은 청소년을 위한 활동 사업을 다양하게 활발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업과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활동에 있어서도 단순한 여가활동의 제공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닥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과 예방을 위한 사업과 치료에 이르는 광범위한 사업 영역을 갖고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며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적 지도력을 개발하고 설립 목적과 구체적 사업대상을 각기 달리하는 청소년단체와 시설의 특성은 청소년활동을 전문적 영역으로 구체화하고 있다.

영국의 경우 사회적인 문제들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청소년들의 생활과 진로, 마약, 건강, 취업 등과 관련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훌륭한 시민으로 생활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청소년활동이 청소년과 아동의 균형있는 발달을 위한 소위 애니메이션(Animation)이라 불리는 활동을 의미하는데, 이는 청소년의 단체활동을 통해 자신의 감정과 이성을 조화롭게 표현하고 발달시키며 사회적인 협동심을 함양하여 인간성의 회복과 신장을 도모하는데 그 주 목적이 있다.

제언 5 : 청소년지도자 양성에 있어서 지도자 양성과정의 전문화와 함께 과정유형의 다양화를 고려해야 한다. 전문화를 위해서는 교육기관에서의 학업결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의 경력도 중요한 요소가 된다.

선진국의 경우는 철저한 지도자 자격제를 통하여 안정된 직업으로서 청소년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는데 비하여 우리의 경우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으며 계속적으로 청소년지도에 전념하여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못한 형편이다. 연수의 기회와 연수과정 내용에 있어서는 연수기회의 부족, 교수요원의 부족, 연수참여 유인체제의 미비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전문화와 다양화를 배경으로 하는 외국의 지도자 양성체제는 이 점에서 우리에게 많은 시사점을 줄 것이다.

제언 6 : 청소년지도자의 자질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연수내용에 있어 앞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보화, 국제화의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시대적 여건과 미래지향적인 환경을 의식한 시대성 있는 내용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지도자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필요로 하고 있는 지식, 기술, 그리고 리더쉽만이 아니라, 지역사회나 국제사회에서도 통하는 리더쉽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며 그들이 지도하게 되는 대상인 청소년들의 기호와 시대적 여건에 대한 감각과 지식을 뒤쳐지지 않고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상생활에 있어서 청소년이 사회의 여러 종류의 사람을 직접 만날 기회는 점차 더 적어지고 있는 점에서도 청소년지도자의 필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며 따라서 청소년들의 특성 뿐만 아니라 과학지식과 국제경제 등의 새로운 이슈도 놓치지 않고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지도자연수과정에서는 제공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제언 7 : 청소년 정보문화센터를 운영해야 한다. 이곳에서 청소년들은 필요한 상담을 하고 활동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청소년과 지도자, 정부와 민간단체 등이 유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야 한다.

세계는 점차 물질자원이나 에너지중심에서 벗어나 정보나 지식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지식정보화사회로 변모해 갈 것이다. 국가는 청소년들에게 정보화사회에서 살아가도록 정보교육을 강화하고 대중매체와 첨단전자/통신기기를 생활속에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주어야 한다. 청소년들은 정보수집, 정리, 재창조 그리고 공유하는 활동을 통해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의 경우 청소년들에 관한 모든 분야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이며, 객관적인 정보를 필요로 하게 된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1969년부터 「청소년정

보센터」망을 조직하였다. 여기서는 지도, 직업연수, 휴가, 여행, 스포츠, 취업, 평생 교육, 사회생활, 여가 등의 영역에서 청소년들과 관련되는 모든 정보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정보센터 조직망은 몇몇 외국 특히 스페인, 포르투갈 같은 나라의 관심을 불러 일으켜 이들의 청소년정보센터의 모델이 되었다. 영국의 경우에도 청소년정보실(Youth Information Shop)을 각급 단위에 설치하여 청소년지도자와 청소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에도 이러한 외국의 예를 참고로 하여 청소년과 청소년지도자들이 쉽게 관련 정보에 접할 수 있고 상호 의사소통의 기회를 보다 많이 갖기 위한 정보문화센터의 설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국청소년개발원에 정보센터를 부설하고 시·도 단위에 있는 대표 수련시설에 정보센터를 설치하면 어렵지 않게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제언 8 :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을 충분히 활용하여 청소년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설과 청소년 사업에 대한 효과분석 및 청소년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이용하기에 적당한 위치에 분포되어 있는가, 지역별로 다양한 시설이 고르게 분포되고 있는가, 재정자원과 인적자원은 충분한가, 그리고 특색있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가에 대한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시설과 이용에 대한 효과 분석을 통하여 나온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것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세우고, 지원책을 강구하여 각 시설별로 특성을 살려 청소년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청소년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프로그램 개발과 더불어 시설의 사업내용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 작업을 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제언 9 : 청소년시설을 많이 설치하는것과 함께 시설과 설비의 질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청소년시설은 많은 국가의 경우 체육관, 수영장,

홀, 도서관, 공작실 등 실내시설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자연의 활용을 높이고 인공적인 공간을 최소화하는 것도 중요하게 논의 된다.

시설의 배치에 대한 문제는 청소년들이 스스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그 생활실태에 알맞게 계획적으로 배치되고 있지 않으며 생활권시설과 자연권시설의 상관적인 이용도에 대한 배려도 거의 없다. 행정차원에서 일방적으로 결정되고 있는 경향이 많은데 청소년이 일상적으로 늘 활용할 수 있는 주거지역 단위의 검소하고 작은 규모로 섬세하게 배치되어야 하는 것이 더욱 필요할 수 있다

제언 10 : 청소년활동의 활성화와 전문화를 위해서는 활동프로그램의 개발을 위한 투자와 노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일이다.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활동을 포함하여 청소년들의 삶 전체, 즉 건강, 진로, 취업 등과 연결되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의 경우는 청소년들이 여가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하며 이를 위한 시설 등 제반 여건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점에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양한 문화활동, 예술활동, 스포츠활동, 야외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광범위하고 다양한 활동의 기회가 보장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활동의 범위가 단순한 여가활동이나 학교단체 수련활동과 같은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언 11 : 청소년단체의 활동에서 단체의 유지에 치중하기 보다는 단체회원인 청소년 개인에 대해 우선적으로 배려하는 지도가 요청된다. 특히 청소년들의 정서적인 것을 추구하는 요구에 부응하는 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할 필요가 있다.

단체활동에서는 청소년 개인보다도 단체 전체의 과제나 방침 등이 우선되기 쉽다.

물론, 프로그램 중에서 중간지도자(sub leader)등을 배속시키고 카운슬링의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단체도 있지만 다른 대부분의 단체는 개인의 성장보다 단체의 성과를 중요시하고 있음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의 청소년의 청소년단체 참가동기를 보면, 각각의 단체 활동목적 등에 매력을 느끼고 참가한 사람보다,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라는 동기로 참가하는 사람이 많으며, 종교단체나 그와 유사한 분위기를 갖는 단체에 많이 참가하고 있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정서적인 것을 동경하고 그것을 단체활동에서 찾으려는 기대에서 참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의 이러한 욕구나 실태를 파악하고 활동프로그램을 이에 대응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제언 12 : 청소년관련기관과 단체의 사업과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관심을 제고하고 지도력의 개발과 훈련 등의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이는 실제 청소년활동이 자원봉사자에 의해 행해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미국의 경우 자원봉사자는 집단, 클럽, 분단(troops) 및 팀의 지도자, 코치, 조언자, 안내자의 역할을 함으로써 청소년활동의 거의 전부를 이들의 도움에 의존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전임지도자 외에도 자원봉사자의 교육은 지방자치체를 위시하여 각종 공공기관이나 민간 청소년단체 등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에게는 지방자치체 또는 연방청소년연맹에서 자격증을 교부해 준다. 자격증을 획득하게 되면 각종 청소년지도 활동시 자치체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교통비 할인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많은 주에서 자원봉사자들이 청소년지도 활동을 위해 특별휴가를 청구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고 있다. 우리의 경우 자원봉사활동이 매우 강조되고 있지는 하지만 제도적 지원책은 마련되고 있지 않다. 청소년단체들이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제도적 지원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언 13 : 청소년들의 국제화 대응능력을 함양하는 ‘국제화활동’을 장려하고 활성화시켜야 한다. 국제교류활동은 청소년들의 “국제화 마인드”를 기르기 위한 훌륭한 방법이다.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생활외국어 교육은 물론이고 국제감각을 갖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 위해서는 외국의 문화이해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청소년을 위한 국제교류활동은 현재 일부 청소년단체나 유네스코, 유니세프 등의 국제기구들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보다 활성화되고 다양화 되어야 하며, 여러 지역의 보다 많은 청소년들을 위해 확대되어야 한다. 그런데 중고등학생들의 경우에는 외국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외국인을 접하고 외국문화를 배울 수 있는 사업을 기획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국내에 있는 외국인 가정과 “민박”을 통해서 문화를 교류할 수 있고, 외국에서 오래 산 경험이 있는 외교관이나 회사원, 문화예술인 등이 청소년에게 살아있는 경험을 전달 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home visiting”으로 미국이나 유럽을 방문하여 연수를 받는 사업이 매우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따라서 청소년을 위한 교류행사들은 자주 개최하여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국제적 경험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청소년들의 국제적 안목형성과 국제적 마인드의 형성을 돕는 현지체험활동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참 고 문 헌

1. 국내문헌

- 강대근, “미국의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참여”, 「청소년활동연구 I」, 유네스코 청년원, 1980.
- 교육개혁위원회, 「선진 외국의 교육 개혁 동향」, 1994.
- 김수석 외, 「독일의 영농인양성제도」(미간행물), 1994.
- 박명윤, “일본의 청소년정책”, 「외국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 송정부, “일본의 청소년 복지정책”,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연구—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 유네스코청년원, 「청소년활동연구 I」, 1980.
- 이규환, 「선진국의 교육제도」, 배영사, 1990.
- 이영숙(외), 「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연구—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 이윤구, “미국연방정부의 청소년정책”, 「외국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한국청소년연구원, 1990.
- 조영하, 「청소년교육의 동향」, 교육과학사, 1988.
- 조흥식, “미국의 청소년 복지정책”, 「외국의 청소년복지정책 연구—미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한국청소년개발원, 1993.
- 차경수, 「교육학개론」, 학연사, 1991.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편), 「미국의 청소년제도」, 1992.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조정실(편), 「미국의 청소년제도 부록」, 1992.
- 체육청소년부,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체육청소년부, 1988.
- 한국지역사회교육중앙협의회 역, W.프레드 토폰 & 프랑크 J. 탠리 공저, 「미국지역사회학교: 개념, 기능 및 조직」, 교육과학사, 1992.

한국청소년연구원, 「외국 청소년정책에 관한 연구」, 1990.

2. 외국문헌

American Camping Association, 「Standards for Day and Resident Camps : the Accreditation Programs of the American Camping Association」, Martinsville, 1994.

BYC : British Youth Council, 「The Time of Your Life? : The Truth about Being Young in 90's Britain」, 1992.

Baugh, W.E., 「Introduction to Social and Community Services(6th ed.)」, Lodon : MacMillan Press, 1992.

Children's Defense Fund, 「Child Poverty Up Nationally and in 33 States」, Washington D.C. : Author, 1992.

Deutscher Bundes Jugendring, 「Youth Organizations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Bonn., 1993.

Deutscher Bundes Jugendring, 「Initiative zur Aufbauhite nittel-und osteuropaischer Jugendstrukturen」, Bonn., 1993.

Drickson, Judith B, 「Directory of American Youth Organizations」, 1990.

Federal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Basic and Structural Data」, 1993.

Foreign & Commonwealth Office, 「Young People in Britain」, 1993.

Glenda Riddick-Norton, 「Social Service Resource Directory 1991~1992」, 1992.

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education populaire, 「Rapport d'activiees annee 1993」, Institut National de la Jeunesse et de l'education populaire, 1993.

Islington Education Department, 「Islington Youth Service Information Park」, 1993.

Korean Youth & Community Center, 「Korean Youth & Community Center Annual Report」, Los Angeles : Korean Youth & Community Center, 1993.

Livret d'Accuity, Secretariat D'etat Charge, De La Jeunesse et des sports, 1993.
N.Y.C Interagency Coordination Council On Youth, 「Annual Report 1993~1994」, New York : NYC-ICC, 1994.

N.Y.A : National Youth Agency (a), 「What is the Youth Service?」, 1993.

_____ (b), 「the NYA Guide to Becoming a Youth Worker」, 1993.

_____ (c), 「the NYA Guide to Residential Centers」, Leicester : Youth Work Press, 1993.

_____ (d), 「the NYA Guide to Initial Training Course in Youth and Community Work(2nd ed.)」, Leicester : Youth Work Press, 1994.

Rene Bendit, Wolfgang Gaise and Ursula Nissen, "Growing Up in the Federal Republic of Germany : Chance and risk in a modern Sozialstaat". 「J.Education Policy」, Vol.8, No.1. 1993.

Smith, Douglas I., 「Taking Shape : Development in Youth Service Policy and Provision」, National Youth Bureau, 1989.

The Annie E. Casey Foundation, 「KIDS COUNT DATA BOOK, 1994 : State Profiles of Child Well-Being」, Washington D.C : Author, 1994.

Ufcv, 「Vacances ete 94」, Ufcv, 1994

Union Francaise des centres de vacances et de loisirs, 「Reglementation」, Union Francaise des centres de vacances et de loisirs, 1994.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Statistical Charts and Indicators on the Situation of Youth 1970~1990」, New York : United Nations, 19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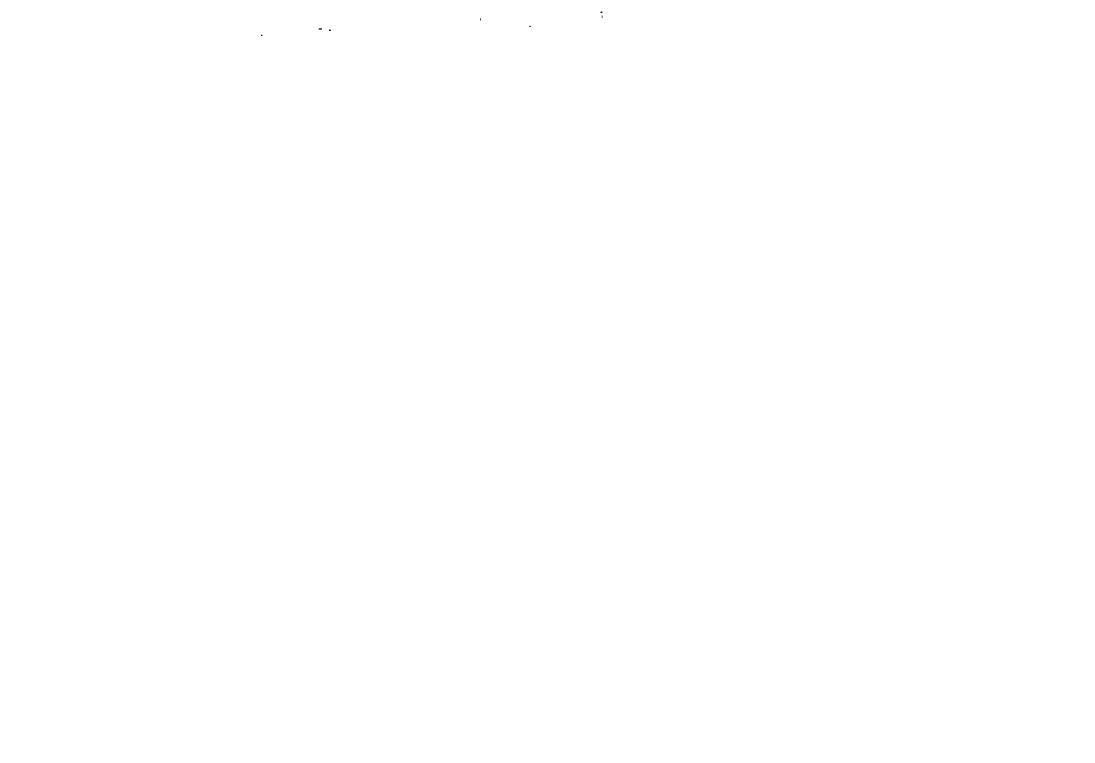
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Los Angeles 1994 : State of the County Report」, Los Angeles : United Way of Greater Los Angeles, 1994.

U.S. Bureau of the Census, 「U.S. Census of Population」, Washington : U.S. Bu-

- reau of the Census, 1990.
- U.S. Department of Justice, Office of Justice Programs, Bureau of Justice Statistics, 「Sourcebook of Criminal Justice Statistics」, 1991.
- 經濟企劃廳 編, 「平成5年版 國民生活白書」, 1993.
- 國立オリンピック紀念青少年總合センター, 「主催事業一覽(平成6年度)」 1994.
- 國立那須甲子 少年自然の家, 「少年自然の家(平成6年度 概要)」, 1994.
- 國立中央青年の家, 「國立中央青年の家 利用案内」, 1994.
- 文部省 生涯學習局, 「少年自然の家」, 1994.
- 文部省 生涯學習局, 「青年の家」, 1994.
- 瀨沼克彰, 「地域活動と青少年」, 大明堂, 1986.
- 日本子どもを守る會 編「子ども白書 1994年版: 家族と子どもの 權利」, 1994
- 中央青少年團體連絡協議會, 「なかまたち」, 1994. 봄호
- 中央青少年團體連絡協議會, 「日本の 青少年團體」, 1994.
- 青少年問題研究會 編, 「青少年指導者 入門」, 1988.
- 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 「我が國の 青少年行政と 青少年對策本部の業務」, 1993.
- 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 「青少年問題の現状と對策(青少年白書)」, 1992/
- 總務廳 青少年對策本部, 「青少年のボランティア 活動に関する調査 概要」, 1994.

각국의 주요 정책과 활동사업

- I. 영국 : 이슬링톤 지역구의 청소년서비스
- II. 프랑스 : 바캄스센타와 여가센타의 운영규정
- III. 미국 : 청소년시설·부지 인정기준
- IV. 독일 : 청소년플랜의 제방침
- V. 일본 : 청소년단체활동의 운영과 평가
- VI. 중·동유럽 : 청소년조직 설립 지원을 위한 제안



Copyright (C) 2002 Nuri Media Co., Ltd.

목 차

I. 영국 : 이슬링톤 지역구의 청소년서비스	277
1. 지역사회 교육서비스의 목적	277
2. 이슬링톤 청소년서비스 교육과정 성명서	281
3. 놀이와 청소년단체의 등록	284
4. 보조금	286
5. 사회교육팀	288
6. 개인지도교사 지원 프로젝트	290
7. 연 수	292
(자료 : 「Islington Youth Service Information Park」, Islington Education Department, 1993)	
II. 프랑스 : 바캉스센터와 여가센터의 운영규정	294
1. 숙소가 있는 체류지들의 관리조건과 지도조건 등	294
2. 유아센터 조직	297
3. 청소년센터의 조직	300
4. 몇몇 체류지 조직에 관한 보충 본문	304
5. 숙소없는 여가센터들의 조직	306
(자료 : 「Reglementation」, Union Francaise des centres de vacances et de loisirs, 1994)	
III. 미국 : 청소년시설·부지 인정기준	310
1. 캠프 인정기준	310
1) 부지와 시설	310
2) 행 정	316
3) 운송관리	320

4) 직원 및 지도자.....	324
5) 프로그램	328
2. 부지 인가기준	337
1) 부지와 시설	337
2) 행정관리	344
(자료 : 「Standards for Day and Resident Camps : the Accreditation Programs of the American Camping Association」, American Camping Association, 1994)	
IV. 독일 : 청소년플랜의 제방침	352
1. 연방청소년플랜의 방침	352
2. 지방청소년플랜의 방침	365
(자료 : 「Jugend-Arbeit Ringe Förderung」, 「Deutscher Bundesjugendring」, 1992)	
V. 일본 : 청소년단체 활동의 운영과 평가	372
1. 청소년단체 조직과 운영	372
2. 청소년단체 활동의 기획과 전개	378
3. 청소년단체 활동의 평가와 개선	384
(자료 : 「青少年指導者 入門」, 青少年問題研究會 編, 1988)	
VI. 중·동유럽 : 청소년조직 설립 지원을 위한 제안.....	387
1. 제안의 배경	387
2. 제안의 내용	388
3. 부록 : 국제후원 체제의 비판적 검토	393
(자료 : 「Initiative aimed at supporting the setting up of youth structur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Deutsches National Komitee Für Internationale Jugendarbeit, 1993)	

I. 영국 : 이슬링톤 지역구의 청소년서비스*

(London Borough of Islington Youth Service)

1. 지역사회 교육 서비스의 목적

지역사회 교육 서비스(community education service)가 운영되는 상황은 다양하고 유동적이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환경을 통하여 서비스가 이용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즉 야외모험놀이, 방과후 학교, 청소년클럽, 청소년센터, 흑인과 소수인종집단의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 특별교육의 필요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사업, 학교에 기반을 둔 놀이 시설, 휴가계획, 기존의 청소년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청소년들과 접촉하고 활동하는 거리현장의 청소년활동, 놀이사업, 보충학교와 모국어반 등이다.

서비스의 대상이 되는 연령집단은 대략 5세에서 25세까지이다. 그러나 단체들마다의 성격에 따라서 5-11세의 아동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단체, 5-14세를 주요 대상으로 하는 단체 그리고 14-25세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들이 있다. 이러한 연령의 범위안에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실시하고 이들과 함께 활동하는 모든 조직체들 사이에서의 밀접한 협력 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의 다른 영역과의 연계도 강조되고 있다. 그래서 청소년서비스가 학교, 성인교육서비스, 계속교육을 위한 학교(college of further educaion), 마을사무소, 포럼 등과 밀접하게 연계되기를 요구하는 전체주민들을 위한 통합적이고 보충적인 영역 개발의 중요성이 커가고 있다.

각 환경내에서 사용되어지는 방법들은 활동집단의 유형과 그들의 다른 욕구에 따라서 다양해지며 다음에 제시되는 목적들에 적절하게 부합되도록 개발되어진다.

* 이슬링톤 구(Borough of Islington)은 런던의 한 지역구로서 청소년서비스는 구 교육국의 '놀이와 청소년(Play and Youth)' 담당 부서에서 전반적인 상황을 관리하고 있다. 구 정부나 자원단체에서 운영하는 다양한 청소년클럽과 센터를 중심으로 청소년서비스가 운영되는데 1993년 현재 청소년클럽과 기구는 45개, 청소년센터는 4개 그리고 8개의 지원단체가 있다.

이슬링톤 지역 협의회(Islington Council)에서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학습과 발달에 있어서 생동적인 과정으로서 놀이(play)를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의 목적들과 부합되는 안에서 그 영역들이 더 개발되도록 고무시키고 있다. 정부의 후원을 받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지역사회교육서비스내의 모든 단체들에 대해서는 이러한 목적들에 동의하고 이 목적들이 기회의 평등이라는 틀 가운데에서 활동의 특정분야의 개발을 위한 지침으로 사용되도록 권장된다.

○ 목 적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이슬링톤 지역사회교육서비스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발달을 돕는데 목적을 두고 있는데 그 분야는 다음과 같다.

- 자신감과 긍정적인 자아상의 형성(self-confidence and building of a positive self-image)
- 자신에 대한 인식(self-awareness)
- 인간관계기능(inter-personal skills)
- 긍정적인 인간관계 개발 능력(ability to develop positive relationships)
- 감수성(sensitivity)
- 지적인 능력(intellectual capacity)
- 학문적인 성취(academic achievement)
- 적응력(adaptability)
- 문화적 인식(cultural awareness)
- 신체적 기능(physical skills)
- 공예 기능(craft skills)
- 예술적 창조력(artistic creativity)

이러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서비스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① 계획, 운영 그리고 평가과정에 아동과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질적으로 높은 수준의 활동프로그램과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제공한다.

②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원과 서비스를 동등하게 이용할 기회를 보장한다. 서비스는 상상력이 풍부하고 참가자들의 요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프로그램 설계를 통

하여 서비스의 이용자로 대표되지든지 또는 다른 비교할만한 사회적인 교육기회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것이다.

③ 모든 인종적, 문화적 배경을 가진 청소년들이 서비스내에서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 받을 분위기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인종적인 편견과 차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면서 인종주의와 인종적 차별에 대항하면서,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함께 활동한다.

④ 남녀 모두 서비스내에서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남녀차별주의나 성적인 차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면서 이에 대항하고,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함께 활동한다.

⑤ 특별한 교육적 필요가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서비스내에서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 받을 분위기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이에 영향을 받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하면서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함께 활동한다. 또한 서비스에는 다양한 신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도 접근할 수 있음을 보장한다.

⑥ 게이와 레즈비언 청소년들이 서비스내에서 가능한한 적극적으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고 그들이 자신들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 받을 분위기를 이끌어낸다. 그리고 편견과 차별에 영향을 받기 쉬운 아동과 청소년들을 지원함으로써 게이와 레즈비언 청소년들, 게이와 레즈비언 부모의 자녀들에 대한 차별에 대항하고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을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이 긍정적인 태도를 갖도록 함께 활동한다.

⑦ 아동과 청소년들 그리고 그들의 동료, 부모, 교사, 지역사회 사이의 관계를 설정하고 명료화하며 평가할 기회를 제공한다.

⑧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들 자신과 다른 사람들과의 사회적인 역사(Social histo-

ry)를 인식하고 그들의 사회적, 물리적 환경에 관하여 능동적이 되도록 돕는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들이 물리적, 사회적 환경, 영국의 다른 지역이나 외국에서 살고 있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삶과 문화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아동과 청소년들이 런던 이외의 지역을 방문하도록 돕는다.

⑨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사회에서의 사회적, 정치적 과정과 그 과정들이 그들의 삶과 그들이 살고 있는 지역사회에서 영향을 미치는 방식을 이해할 기회를 제공한다.

⑩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들과 그들의 더 넓은 지역사회가 당면한 변화되는 사회적, 정치적인 문제나 환경을 인식하고 이해하며 이를 다룰 수 있도록 돕는다.

⑪ 특별히 아동과 청소년들의 법에 대한 친근함, 변화를 이끌어낼 능력 그리고 그 체제안에 참여할 기회 안에서 권리와 의무에 대한 인식을 증대시킨다.

⑫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건강교육을 증진시키고 마약, 알코올 남용, AIDS, 흡입제(solvent) 남용의 위험을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하기 위해서 이들이 자신의 건강이나 복지를 취급하는데 있어서 자각과 자신감을 개발하도록 돕는다.

⑬ 아동과 청소년들이 자신들의 예술적 기능과 창조력을 개발하고 문화적 아이디어와 표현을 개발할 기회를 제공한다.

⑭ 아동과 청소년들이 활동을 통하여 자신감을 갖고 자신에 대해 더 잘 인식하며 자신들의 삶을 잘 이루어가고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⑮ 서비스의 전반적인 목적과 목표들과 부합되는 가운데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이 그들의 필요에 더 적절하게 부응할 수 있는 다른 교육기회와 다른 기관들을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학교, 대학 그리고 다른 교육기관과 밀접하게 활동한다.

⑯ 교육서비스내에서 다른 지역사회교육 제공자, 마을사무소, 포럼들 그리고 협의회와 협력함으로써 서비스가 지역사회의 필요에 부응한다는 것을 보장한다.

⑰ 서비스가 적절한 방식으로 제공되고 아동과 청소년들의 필요에 최상으로 부응한다는 것을 보장하도록 관련기관내에서 그리고 더 넓은 지역사회 안에서 아동과 청소년들의 관심을 증진시킨다.

⑱ 구전체를 통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의 필요에 가장 효과적으로 부합하고, 여러

가지 유형을 가진 서비스 영역들의 전반적인 결합력을 유지하고 자원단체와 협의회에 의해서 운영되는 서비스 사이의 동반관계를 유지하고 개발한다.

⑲ 서비스의 개발에 있어서 자원위원회, 지역사회 집단, 부모집단, 마을 포럼과 행정기관에 걸친 지역사회의 모든 분야로부터의 참여를 북돋운다.

⑳ 기회의 평등이라는 정책의 구조내에서 스태프, 운영위원회, 자원봉사자들이 서비스의 분배에서 매우 전문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연수, 자원을 제공하고 시설을 지원한다.

2. 이슬링톤 청소년서비스 교육과정 성명서

1) 이슬링톤 청소년서비스는 청소년들에게 무엇을 제공하는가?

청소년서비스는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경험을 선택하고 확장하며 개인으로서나 집단,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스스로 책임을 감당할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서비스는 청소년들에게 모든 형태의 차별에 대하여 그들이 도전할 수 있고 도전받을 수 있는 비공식적이고 안전한 환경안에서 성인과 동료들과의 인간관계를 형성할 기회를 제공한다.

청소년서비스는 청소년들이 그들의 자유시간을 사용할 비상업적인 대안을 제공한다. 자원영역과의 동반관계 가운데에서 청소년활동은 학교나 지역사회 센터를 근거로 한 클럽활동, 거리를 근거로 한 거리현장활동, 숙박활동과 외국여행 등의 다양한 환경을 배경으로 이루어진다. 모든 청소년활동은 반인종차별주의, 반성차별주의의 청소년활동, HIV/AIDS, 마약, 알코올 남용 등을 포함하는 건강교육, 폭력과 공격, 복지의 권리, 문화적인 역사와 전통을 포함하는 사회교육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진다.

(1) 활 동

활동 프로그램들은 종종 청소년활동의 매력과 출발점을 제공한다. 이들은 개인적,

문화적, 정치적 문제에 대한 이해의 신장을 돕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청소년서비스는 이슬링톤 보우트 클럽(Islington Boat Club), 무반주음악워크샵과 같은 수 많은 전문적인 활동 사업을 지원하고 무용, 사진, 스포츠, 컴퓨터와 같은 전문적인 개인 지도교사(tutor) 영역을 통하여 클럽 프로그램의 수준을 끌어올린다.

(2) 논쟁적인 문제들을 배경으로 하는 청소년활동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통제 밖에 있는 논쟁적인 문제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논쟁적인 문제들을 배경으로 하는 청소년활동은 청소년들의 흥미, 관심, 욕구를 반영하고 인간관계, 건강, 성차별주의, 문화적 역사, 환경, 정치와 같은 분야에서 중핵교육과정(core curriculum) 프로그램을 위한 근거를 제공한다. 청소년서비스는 청소년들이 그러한 문제들을 제기하고 이해하며 정보를 얻고, 자신의 견해를 개발시키며 적절한 행동을 취하도록 한다. 그 방법은 다른 집단이나 개인들과 함께 자료집, 비디오, 게임, 매체 등의 사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토론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공식적이든지 비공식적이든지 모든 활동의 환경가운데에서 일어나며 청소년지도자나 청소년 양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3) 특별한 활동분야

청소년서비스는 청소년클럽을 이용하지 않고 접촉하지 않는 청소년들의 욕구 또는 특별한 욕구를 가진 청소년들에게 부합할 다양한 범위의 청소년활동 유형들을 개발해오고 있다.

서비스는 거리현장의 청소년지도자(detached youth worker)를 공급하는데 특히 소수인종 지역사회를 대상으로 하며 여기에서는 자신의 가정이나 지역사회에서 활동이 이루어진다. 거리현장의 청소년활동은 또한 거리와 지방의 구역내에서 이웃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다른 사업들은 여자청소년, 게이와 레즈비언 청소년, 학습장애가 있는 청소년, 장애청소년 등과 같은 특별한 욕구가 있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다.

서비스는 실업, 주택문제, 건강교육, HIV/AIDS, 마약 등과 같은 문제 사항들을

취급하는 다양한 범위의 사업을 제공한다.

2) 청소년들은 청소년서비스를 통해서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청소년활동의 성공 또는 효과는 단지 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의 숫자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받는 이익이나 결과에 의해서 측정되어야 한다.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이 모두 활동이나 사업에 참여한 이익이나 결과를 명확하게 할 수 있고 그 결과들이 기록되어질 수 있다는 것은 중요하다. 새로운 기능의 학습과 같은 결과들은 즉각적이지만 인종차별주의에 대한 대항과 같은 유형은 오랜 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이 인식되어야 한다.

청소년서비스의 결과는 청소년들에게 선택 능력을 주고 지식과 이해를 확대시키며 새로운 감정 표현 방법의 학습을 돕고 갈등과 타협 그리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균형을 다루는 방법을 배우도록 돕는다.

그리고 자신에 대한 인식, 자신감, 그리고 자존감을 개발시키며 더 강한 자아정체감과 자신에 대한 상을 형성하도록 돕고 관용을 포함하는 다른 사람들의 요구에 대한 인식과 감각을 개발시키며 청소년들이 신뢰를 하고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을 배우며 친구를 사귀도록 한다.

또한 새롭고 흥미로운 모험거리에 도전할 기회를 제공하고 새로운 기능을 학습하며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도록 돕는다. 창조력, 상호간의 협력과 지원의 경험을 가능케 하고 즐거움과 기쁨을 갖게 한다.

청소년서비스는 청소년들이 충분한 정보를 갖고서 개인, 건강, 취업, 기능의 개발과 관련된 선택을 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그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지방에서는 얻을 수 없다면 더 넓은 범위의 정보망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도록 하고 있다.

3) 청소년서비스는 왜 중요한가?

청소년 영역의 결과와 이익은 단지 청소년들에게만 제한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로써의 지역사회는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서 이익을 얻는다. 이슬링톤에서 청소년서비

스는 통상적인 또는 다른 지역 서비스로부터 소외되고 고립된 상처받기 쉬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하고 이들을 지원한다. 동시에 청소년지도자들은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태도와 행동에 활동적으로 대항한다.

청소년서비스는 이슬링톤의 지역사회에서는 중심적인 위치에 놓여있다. 많은 청소년들과 지역주민들은 청소년클럽을 세우고 유급으로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로서 참여한다. 청소년서비스는 지역사회가 양질의 그리고 민감하게 반응을 잘 일으키는 서비스를 받도록 지원하고 이를 가능케 한다.

4) 청소년지도자의 역할은 무엇인가?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자신들의 욕구와 열망을 충족시키도록 능력을 주고 이를 가능케 한다. 청소년지도자는 역할 모델로서 행동하고, 일정한 경계선들을 설정하는데 그 밖에서의 행위는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청소년지도자는 청소년들에게 일관성이 있고 안정적인 준거점이 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이익을 위해서 청소년서비스를 통해 이용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와 그 망을 최대화할 수 있어야 한다.

청소년서비스는 모든 스태프들에게 사회교육내에서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청소년들에게 그들의 개별적인 그리고 집단적인 욕구를 제기할 수 있는 공간과 기회를 제공하는 실천적인 경험을 하게 한다. 연수기회는 이슬링톤에서 지역사회의 다양성을 반영하고 요원의 충원과 유지에 필수적이다.

3. 놀이와 청소년단체의 등록

이슬링톤의 교육국(Education Department)내에 ‘놀이와 청소년(play and youth)’ 분야를 담당하는 팀이 있으며 여기에서 단체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그러나 청소년단체로 등록하는 것 자체가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동적인 승인, 인정, 가입 또는 권리부여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이슬링톤(London Borough of Islington)의 지역사회교육부서에서 접촉하고 있는 단체의 목록일 뿐, 보조금을 위한 모든 신청은 전적으로 이 부서의 재량에 따라 결정된다. 그러나 보조금의 지급은 등록되지 않은 단체에는 지급되지 못한다.

청소년단체로 이슬링톤의 지역사회교육부서에 등록을 신청하는 단체는 청소년서비스의 목적내에서 활동한다는 원칙에 동의해야 한다. 추가로 다음과 같은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① 모임의 장소가 이슬링톤의 지역내에 있어야 지역사회교육부서에 등록할 자격이 있다.

② 해당 단체에서 활동하는 지도자외에 적어도 3명의 성인을 구성원으로 포함하는 운영위원회에 의해서 단체가 운영되어야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공적인 책임을 위한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④ 단체의 재정은 후원단체(교회, 학교 등)의 재정으로부터 분리되어 유지되어야 한다.

⑤ 회원가입은 자발적이어야 한다(즉, 어떤 다른 조직체에서 부모의 참여를 통해서 회원권을 갖기 보다는 집단에 스스로 회원으로 가입해야 한다)

⑥ 회원가입은 그 지역내 또는 단체의 범위가 미칠 수 있는 지역내의 모든 청소년들에게 개방되어야 한다.

⑦ 정상적인 가입 신청은 각 단체에서 제공하는 시설과 회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활동시간의 수에 근거해서 회원들로부터 요청되어야 한다.

⑧ 적절한 정기적인 모임장소가 있어야 한다(본질적으로 한 청소년센터나 성인교육기관에서 이루어진 하나의 모임만은 청소년단체로 등록될 수 없다. 반면에 학교시설에서 규칙적으로 만나는 모임을 가진 자원조직은 청소년센터나 성인교육기관의 지도자를 통한 서비스는 없을지라도 청소년단체로 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⑨ 단체는 기회의 평등에 대한 정책을 가져야 한다.

⑩ 등록조건에 부합되지 못한 경우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4. 보조금

이슬링톤 청소년서비스의 자원단체를 위한 보조금 안내

1) 신청과정

등록된 자원 운영위원회가 신청할 수 있는 보조금의 유형은 다양하다. 모든 형태의 보조금을 위한 기준은 일반적으로 동일하다. 신청양식은 적어도 교육국의 회계상의 요구에 따라 1개월전에 제출되어야 하고 그 양식은 위원회의 직원들에 의해 서명되어야만 한다.

그리고 나면 ‘놀이와 청소년(play and youth)’ 담당부서에 의해서 검토되며 미리 담당 공무원과 신청에 대해 논의해 보는 것이 좋다.

2) 보조금의 유형

(1) 비순환지출품(내구성물품의 구입)

이는 가구나 특별한 장비 예를 들면 당구대, 식사 장비, 축구 골대, 배구 스탠드와 네트와 같은 스포츠 용품들의 구입에 사용될 수 있다. 보조금은 실제 비용의 최소 50%가 지급되며 이는 담당부서의 재정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여기에는 탁구공이나 당구공과 같은 소모품은 포함되지 않는다.

(2) 특별한 사업들

기회의 평등 그리고 사회교육실천 영역의 사업들에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이러한 영역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가 포함된다.

- 여자청소년을 위한 활동
- 반성차별주의 활동
- 실업상태의 청소년을 위한 활동

- 특정한 소수인종집단을 위한 활동
- 게이와 레즈비언 청소년을 위한 활동
- 장애청소년을 위한 활동

그리고 다음과 같은 분야들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 청소년집단을 위한 교육적, 문화적 행사 예를 들면 극장임차, 초청연사 사례비, 특별장비, 소수인종집단의 특이한 악기와 같은 물품
- 잡지, 포스터, 비디오 테입 등과 같은 사회교육프로그램의 한 부분으로 사용되는 소모품
- 문화축제와 같은 특별한 단기간의 행사

이러한 사업과 행사들에는 비용의 100%까지 보조금이 지급될 수 있는데 이는 보조금을 신청하는 단체의 재정적인 상황에 달려 있다.

3) 수학여행 보조금

수학여행 보조금 신청은 편지에 의한다. 보조금은 최대한 청소년 1인당 40파운드까지 이용된다. 이는 한 청소년이 영국이나 해외의 한 지역을 발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데 이는 휴가를 위한 장려금은 아니다. 프로그램은 교육적인 학습여행임을 보여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서 어떤 모임에서는 베를린에 사는 청소년들과 함께 연합하여 그 도시의 역사와 문화를 보기 위해 베를린을 방문할 수 있다.

보조금이 지급된 수학여행은 여행에서 배운 내용을 설명하는 여행보고서를 완성해야만 한다. 이는 보고서나 비디오, 사진, 그림 등과 같은 다양한 형태로 제시될 수 있다.

신청은 미리 6주전에 해야되며 이 보조금은 자원적인 단위 뿐만이 아니라 조직적인(단체에 의해서 운영되는) 단위에서도 직접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4) 휴가 보조금

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해서 주간 휴가 계획을 운영하려는 자원단체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운영요원과 추가적인 요원들의 급료를 위한 것이다.

부활절과 여름휴가기간에 이용될 수 있는데 보조금의 할당은 휴가보조금위원회를 통하여 결정된다.

5. 사회교육팀(Social Education Unit)

사회교육팀에서는 이슬링톤 구 지역내의 모든 청소년단체들의 교육과정과 청소년 활동의 개발을 지원 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교육의 전반적인 측면에서 실제적인 도움,지원, 자문 그리고 정보를 줄 수 있는 1명의 상근지도자와 1명의 비상근지도자로 직원이 이루어져 있다.

사회교육팀은 다양한 방법으로 청소년활동과 지도자를 지원 한다.

1) 현장지원활동

이는 한 단위내에서 청소년지도자와 함께 하는 활동을 포함할 수 있다. 청소년지도자는 대개 그들의 선임지도자와의 토론 가운데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하게 된다. 사회교육팀으로부터 온 청소년지도자들은 그 지도자와 만나고 활동의 특정 분야에 대한 토의를 하게 될 것이다. 사회교육팀 지도자는 적절한 자원의 관리와 제공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프로그램의 분배에서 지도자를 지원한다. 그 팀과 청소년활동자료실로의 안내 또한 서비스내의 모든 새로운 지도자들이 이용할 만하다.

2) 연 수

사회교육팀에서는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연수에 대한 욕구를 분명히 하도록 도울 수 있으며, 이들에게 적절한 연수를 제공한다. 이는 사회교육의 전체 영역 그리고 사회교육팀에 대한 연계 체제의 개발 또는 프로그램의 개발에서 상업적으로 만들어

진 자원의 사용과 같은 영역들이 해당될 수 있다. 다른 연수영역들로는 게임과 탈레마 쉬트자료와 같은 자신의 자료를 제작하고 개발하는 등의 실제적인 훈련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특정한 분야에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위한 자원의 위치를 설정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사회교육팀에서는 비상근지도자연수계획과 같은 청소년활동의 다른 분야를 활동적으로 지원한다. 입문과 기본과정에 지도자들이 참여케 하고 특별한 과정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가운데에서 개별지도교사와 함께 활동한다. 또한 자원지도자의 입문과정 연수에 공헌해오고 있다.

3) 자 원

사회교육팀은 자료집, 게임, 도서, 비디오, 포스터, 소책자, 잡지 등을 소장하는 청소년활동자료실을 유지하고 있다. 자료실은 잘 갖추어져 있고, 지도자들로 하여금 자신들의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자료실을 위한 적절한 자료를 제안케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자료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자료 이용을 돕고 있다.

4) 정 보

(1) 소식지(newsletter)

‘사회교육뉴스’지는 연간 6회 발간되고 모든 새로운 자원, 교육과정 개발에서의 적절한 정보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활동에서의 주도적인 참여를 포함한다. 또한 구역내에서 매우 훌륭하게 활동하는 지도자들에 대한 기사도 포함한다.

(2) 사회교육팀자료집

구 지역내의 모든 청소년팀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보집을 발간한다. 이 정보집에는 두 종류의 팜플렛이 포함된다.

— ‘사회교육팀안내’

이 소책자는 팀의 활동과 사회교육의 의미 그리고 어떻게 실행되어가는가를 설명한다. 또한 활동에 대한 기록, 사회교육활동 그리고 일반적인 자료목록등에 대한 정보를 포함한다.

— 사회교육팀자료판플렛

청소년활동자료실에서 이용될 수 있는 자료,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그리고 유용한 주소의 목록 등을 포함한다.

이 자료집은 또한 적은 비용으로 비청소년서비스 사용자들에게도 이용될 수 있다.

(3) 다양한 분야의 활동

사회교육팀은 또한 교육국내에서 수 많은 활동 분야에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HIV/AIDS에 대한 교육국의 정책에 기여하고 HIV/AIDS 포럼, 마약포럼과 같은 수 많은 중요한 포럼에서 청소년서비스를 대표한다. 이러한 포럼의 중요내용은 소식지에 게재한다.

(4) 교육과정개발자료집

교육과정의 실행에서 지도자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슬링톤의 청소년들의 욕구에 부합되는 적절한 그리고 관련된 자료가 요구된다. 이 과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사용될 자료집을 만들 교육과정 활동집단들이 설치된다. 지도자들은 그들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최근에는 ‘장애인식자료집’이 구성되고 있고 ‘범죄예방’, ‘HIV/AIDS’의 자료집을 발간할 예정으로 있다. 다른 자료집들로는 ‘갈등과 공격’, ‘게이와 레즈비언 그리고 그들의 성취’, ‘지방정책과 청소년’등이 있다.

6. 개인지도교사 자원 프로젝트(The Tutor Resource Project)

‘개인지도교사 자원 프로젝트’는 이슬링톤 교육국의 청소년서비스 안에서 근거를

준 법적인 기구이다. 이 기구의 주요 활동영역은 특별한 분야의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준 높은 개인지도교사의 지원을 바라는 법적이거나 자원적인 청소년클럽과 프로젝트의 요구에 부응하는 것이다. 모든 활동반은 기회의 평등이라는 틀 가운데 학기 기간동안 운영된다. 여름프로젝트, 국제여자청소년주간, 숙박여행 등에 대한 지도는 추가적인 지도교사가 필요하다.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요구되어져 온 활동반의 넓은 범위에는 컴퓨터 워크샵, 재즈 무용, 사진, 수영, 모터사이클, 음악, 카누, 항해, 배드민턴, 드럼, 낚시, 권투, 유도, 서핑, 발레, 시각 예술, 현대무용, 피아노와 같은 활동을 포함한다. 또한 우선적인 관심을 갖는 청소년서비스 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지도교사 활동반으로는 아일랜드의 무용과 연극, 그리스와 터키 무용, GCSE(General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와 GCE-A(General Certificate of Education-Advanced) 수준의 그리스어, 제2언어로서의 영어, GCSE에서의 불어, 아프리카와 카리브의 역사, 자기방어, 싱크로나이즈, 여자청소년들을 위한 공예 디자인과 기술 그리고 컴퓨터 워크샵이 있다. 그리고 장애를 가지고 있고 특별한 교육적 필요를 가지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예술과 공예, 연극, 컴퓨터 워크샵, 음악, 배드민턴 등이 있다. 또한 게이와 레즈비언 청소년들은 비디오 워크샵, 창조적인 작문, 암벽등반, 음악 활동반을 요구하고 참여할 수 있지만 그 활동반의 수는 얼마 되지 않는다. 그리고 5주에서 8주간의 단기과정으로 청소년들과 함께 활동하는 청소년클럽과 프로젝트에 지도교사들이 참여하는 두개의 이동음악센터가 포함된다.

‘개인지도교사 자원 프로젝트’는 이슬링톤의 청소년클럽과 프로젝트에 청소년들과 지도자들에 의해서 요구된 특별한 영역들을 다루는 수준 높은 지도교사를 제공한다. 그리고 활동반의 원활한 운영을 보증하기 위한 장비(예를 들어 복사기, 광고반을 위한 우편서비스)를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이 프로젝트는 지도교사들에게 각종 지원활동, 강사료, 활동반의 모니터와 평가, 연수, 지도교사포럼, 활동반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논의할 통로 등을 제공한다.

청소년들에게는 동료집단의 압력이 없는 비공식적인 분위기에서 교육적인 활동반을 제공한다. 안전한 환경 가운데에서 청소년들이 정상적으로는 그러한 높은 수준의

경험을 할 수 없는 주제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모임을 제공한다. 그리고 새로운 기능과 기술의 학습 그리고 학습하는 동안에 즐거움을 제공한다. 청소년들은 레크리에이션 활동반 뿐만이 아니라 직업교육반에도 참여하여 취업전망에 대한 확장, 그리고 인정을 받는 자격증, 자신감, 자기존중을 경험한다.

7. 연 수

— 상근지도자, 비상근지도자, 자원지도자 그리고 운영위원회를 위한 연수
‘청소년과 놀이 서비스’에서는 청소년서비스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의 연수와 스텝들의 자질 개발 욕구에 부응하는데 전념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과정들이 포함된다.

1) 그린위치 대학(Greenwich University)에서 실시하는 청소년과 지역사회활동 분야의 수료자격(diploma)을 수여하는 상근지도자를 위한 자격과정

2) 4단계로 이루어지는 비상근지도자와 자원지도자 자격과정

a. 입 문

b. 인간관계와 상담기능

c. 기초적인 청소년활동

d. 다음과 같은 분야들 중의 하나를 선택

예) 청소년활동에서의 예술

HIV와 청소년

여자청소년을 위한 활동

반인종차별주의 청소년활동의 실천

게이와 레즈비언 청소년을 위한 활동 등

3) 운영위원회를 위한 연수

4) 감독운영에서의 자격을 부여하는 청소년분야 담당 공무원, 센터운영자, 선임지도자를 위한 경영자 연수

- 5) 반인종차별주의와 기회의 평등 실천 분야에서의 연수
- 6) 아동법과 새로운 법률
- 7) 상근지도자와 비상근지도자를 위한 고급수준의 인간관계와 상담기능 연수
- 8) 건강교육
- 9) 그린위치 대학(Greenwich University)와 골드 스미스 대학(Goldsmith College)에서의 연수과정

- 감독운영에서의 자격과정
- 청소년과 지역사회활동에서의 기초적인 자격을 고등교육에서의 수료자격(diploma)으로 등급을 올리는 과정
- 강사(trainer)를 위한 연수

기금은 단위개발, 비경영적인 감독, 단기과정, 협의회를 지원하는데 제공될 수 있다. 연수와 스텝개발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다.

- a. 지도자들에게 동기 부여
- b. 방향과 초점을 제시
- c. 접근과 기회의 평등을 보장
- d. 질적 수준의 유지와 기준을 상향 조정
- e. 취업과 직업적인 개발 기회 제공
- f.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도자 인력 제공
- g. 연속성, 발전 그리고 이동성 보장

그러나 연수와 스텝개발의 기회가 부족할 경우에는 지도자들에게 동기부여를 못하고 정체를 가져오며 사기를 저하시킨다. 그리고 취업과 직업적인 능력의 개발에 있어서 여자청소년이나 흑인 등의 소수인종 청소년의 접근이 어려워지며, 지도자들의 감독을 위해서 과로할 정도로 운영을 해가는 가운데에서 더 많은 압박이 작용하고 이로 인해 그들이 비효율적이 되며 건강과 안전이 부정적인 방향으로 영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지방의 문제에 효과적으로 응답하지 못하고 서비스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며 이로 인해 2등 시민을 만드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II. 프랑스 : 바캉스센타와 여가센타의 운영 규정

1. 숙소가 있는 체류지들의 관리 조건과 지도 조건들

(Les conditions de direction et d'animation des séjours avec hébergement)

청소년 체육부장관은;

가정과 사회부조에 관한 법, 특별히 45조에 비추어, 학교의 방학과 직업휴가와 여가를 위해서 미성년자들의 보호에 관해 고친 1960년 1월 29일의 시행령 60-94호에 비추어, 학교의 방학과 직업휴가와 여가를 위해서 미성년자들을 유숙시키는 시설들과 센터들을 감독하는 것에 관한 1975년 5월 19일의 법령에 비추어, 대중교육과 청소년 교육의 국가 심의회의 의견에 비추어 결정한다.

제 1조 학교의 방학과 직업 휴가와 여가를 위해서 6세부터 18세의 미성년자들을 유숙시킨 모든 체류지에서 관리자는 적어도 21세여야 한다. 이 관리자는 적어도 18세인 지도원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지도원직 자격 증서나 견습지도원의 자격이 있는 지도원들은 17세여도 된다. 참여한 사람들의 수에 비해 지도원들의 수는 바캉스센터의 전체에 걸쳐 10명 당 1명보다 적어선 안된다. 가정과 사회부조에 관한 법 45조에 대비한 대책 클럽들과 반들이 설립한 체류지에서, 참여자들의 수에 비해 지도원들의 수는 바캉스 센터의 전체에 걸쳐 10명 당 1명보다 적어선 안된다. 보이스카우트운동의 승인을 받은 협회들이 설립한 체류지에서 관리자는 적어도 참여자들 15명에 대한 1명의 비율로 적어도 17세인 조수의 도움을 받는다. 이 체류지에서 60명 이하의 참여자들을 포함한다면 관리자의 나이는 19세여도 된다.

제 2조 다음과 같은 자격이나 면허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의 방학과 직업휴가와 여가를 위해서 6세부터 18세의 미성년자들을 유숙시킨 곳에서 체류지의 관리자직무를 맡아 할 수 있다. 1987년 8월 28일 87-716호 시행령 10조에 대비하여 집행 허가권이 있는 관리자직 자격증서. 바캉스 센터와 여가센터의 지도원

과 관리자직 자격증의 구성양식들을 결정하는 1993년 3월 26일의 법령 19조에 따른 견습관리자의 자격. 지난 5년 사이에 전체 기간이 적어도 28일 동안 바캉스센터나 여가센터의 한 곳에서 적어도 미성년자들의 지도원 경험을 한 번이나 여러 번 경험한 사실을 증명하고 현 법령의 부록에 그 목록이 결정된 자격증들 가운데 하나. 또 교육시설의 관리자직을 집행하는 정식 교원들은 이 직무를 맡아 할 수 있다.

제 3 조 지도하는 직원들 가운데 적어도 4분의 3은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

- 지도원직 자격증을 가져야 한다.
- 바캉스센터와 여가센터의 지도원과 관리자직 자격증서의 구성양식들을 결정하는 1993년 3월 26일의 법령 9조에 따라서 견습지도원 자격이 있어야 한다.
- 현 법령의 부록에 그 목록이 결정된 자격증이나 면허증들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갖고 있어야 한다.

제 4 조 간부는 특별 법규의 대상이 되는 활동을 위해서, 필요한 자격을 증명하는 지도원들을 허용해야 하거나 자격이 있는 전문가들로 채워야 한다.

제 5 조 50명이 안되는 참여자들을 유숙시킨 체류지를 위해, 도지사는 청소년 운동부의 도관할 국장의 의견에 따라 2조와 3조에 결정된 간부사원의 자격조건들에 예외를 줄 수 있다. 관리자로서는, 지도원직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3조에 언급된 자격증들 가운데서 한 가지를 갖고 있고 체류지에 있는 당시에 만 21세인 사람에게만 예외를 줄 수 있다. 관리자는 6개월 동안 갱신할 수 없는 단 하나의 예외를 같은 사람에게 줄 수 없다.

제 6 조 가정과 사회부조에 관한 법 45조에 대비하여 특수 대책 클럽들과 반들이 설립한 체류지의 간부를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다음과 같다. 관리자는 2조에 언급된 자격증들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갖고 있어야 하거나 대책 구조 상실 반의 자격이 있는 회원이어야 한다. 지도원들 가운데서 적어도 4분의 3은 3조에 언급된 자격증들 가운데에서 한가지를 갖고 있어야 하거나 대책 클럽이나 반이 하는 활동에 어김없이 참여해야 한다.

제 7 조 2조와 5조의 규정에 대한 예외에 따라, 보이с카우트가 승인한 협회들이 설립한 체류지를 위해, 관리자과 조수의 자격은 국가 차원에서 승인한 보이с카우트의 협회들이 결정한 것이다.

제 8 조 현 법령을 반포한 날부터 2년의 임시 기간 동안 참여자들의 수를 위한 지도원들의 수에 관한 제 1조 2항의 규정을 실시하는 것은 청소년 체육부 도 관찰 국장이 필요에 따라 주는 예외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참여자들의 수에 비해 지도원들의 전체 수는 바캉스센터의 전체에 걸쳐 12명 당 1명 보다 적어선 안 된다.

제 9 조 지도원직의 자격증과 같은 자격과 바캉스센터와 여가센터의 지도원과 관리자직의 자격 연수 조항을 결정하는 1989년 10월 10일의 법령은 폐지되었다. 학교의 방학과 직업휴가와 여가를 위해 6세부터 18세의 참여자들을 유숙시킨 바캉스 체류지의 관리와 교육지도조건들에 관한 1975년 5월 21일의 법령은 1993년 7월 1일 전에 밝힌 체류지들이 응할 수 있는 1조, 2조, 4조와 7조의 조항을 조건으로 하여 폐지되었다.

제10조 현 법령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반포될 것이다.

1993년 3월 26일 파리에서 제정됨.

부 록

제 1 조 2조 3항에 대비한 자격 면허장들은 다음과 같다.

- 지도직에 관한 국가면허장.
- 대중교육과 청소년교육의 전문 지도원 국가자격증, 사회활동과 지역생활 전문가, 이 선택은 미성년자들의 지도에 관련된다.
- 2급과 3급의 체육교사 국가자격증.
- 모든 사람을 위한 체육활동의 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 2 조 3조 3항에 대비한 자격 면허장들은 다음과 같다.

- 지도직에 관한 국가면허장.

- 대중교육과 청소년 교육 전문 지도원 자격증.
- 청소년 체육 전문 보조 지도원직 자격증, 청소년과 어린이의 여가 선택.
- 특수교사 자격면허장.
- 특수전문교사 자격면허장.
- 지도교사직 자격증.
- 청소년 범정보호자 교사 자격면허장.
- 어린이 교사 자격면허장.
- 적응 불능아 교사 자격증.
- 학교의 통합과 적응의 특수 교육직 자격증.

2. 유아센터 조직 (L'organisation des centres maternels)

사회업무 통합부장관, 청소년 체육부장관은;

공중위생법 L180조에서 L183조에 비추어, 학교의 방학과 직업휴가와 여가를 위해 미성년자들의 보호에 관하여 변경된 1960년 1월 29일의 시행령 60-94호에 비추어, 학교의 방학과 직업휴가와 여가를 위해 미성년자들을 유숙시키는 말김센터들과 시설들의 감독에 관한 1975년 3월 19일의 법령에 비추어, 학교의 방학과 직업휴가와 여가를 위해 미성년자들을 유숙시키는 말김센터와 시설들의 위생조건들에 관한 1977년 2월 25일의 법령에 비추어, 학교의 방학과 직업휴가와 여가를 위해 6세에서 18세의 미성년자들을 유숙시키는 바캉스 체류지의 관리와 교육지도 조건에 관한 1993년 3월 26일의 법령에 비추어, 대중교육과 청소년 교육 국가 심의회의 의견에 비추어 결정한다.

제 1 조 4세부터 6세의 어린이들만을 받는 유아 바캉스센터의 인원은 60명을 넘어선 안된다.

제 2 조 4세부터 6세의 아이들을 나이가 더 많은 아이들을 모아놓은 시설에 받았다면 이 아이들은 40명을 넘어선 안되는 인원의 독립된 조직을 갖출 수 있어야

한다.

제 3 조 학교의 방학과 직업휴가와 여가를 위해 4세부터 6세의 미성년자들을 유숙시키는 모든 체류지에서 관리자의 나이는 적어도 25세여야 한다. 이 관리자는 적어도 18세가 된 지도원들의 도움을 받는다. 그러나 지도원직 자격증이나 견습 지도원 자격이 있는 지도원들의 나이는 17세여야 한다. 참여자들의 수에 비해 지도원들의 수는 바캉스센터의 전체에 걸쳐 8명당 1명보다 적어선 안된다.

제 4 조 4세부터 6세의 어린이들을 받는 체류지의 관리자는 앞에서 인용한 1993년 3월 26일의 법령 2조에 대비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현 법령의 부록에 대비된 자격면허장들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갖고 있는 사람은 앞에서 인용한 1993년 3월 26일의 법령 2조에 대비된 경험조건들을 충족시킨다는 조건으로 4세부터 6세의 아이들을 대부분 받는 체류지를 지도할 수 있다.

제 5 조 지도원들의 4분의 3은 적어도 앞에서 인용한 1993년 3월 26일의 법령 3조의 대비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한다. 그러나, 4세부터 6세의 아이들을 대부분 받는 체류지들에서, 이 아이들의 간부에 배치된 지도원들의 4분의 3은 적어도 앞에서 인용한 1993년 3월 26일의 법령 3조에 대비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 하거나 현 법령의 부록에 언급된 자격면허장들 가운데에서 한 가지를 갖고 있어야 하거나 전(前) 기초교육에서 직무를 집행하는 정식 교사여야 한다. 이 센터는 상설 보조위생시설을 배치해야 한다.

제 6 조 바캉스 시설의 운행에 참여한 모든 사람은 3개월 전에 금기징후(禁忌徵候)가 없음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7 조 4세부터 6세의 아이들은 단단한 건물에 유숙시켜야 한다. 텐트에서 유숙하는 것은 짧은 시간 동안 위생과 안전을 완전히 보장하는 조건에서 예외로 허용될 수 있다. 바캉스센터의 시설이나 체류지는 전화시설이 되어야 한다.

제 8 조 소년소녀들을 받는 센터들에서, 침실과 위생 시설은 공용일 수 있다.

제 9 조 아이들 10명당 의무실 침대 하나를 대비하여 남아 아이들이 같은 의무실을 쓸 수 있어야 한다. 식당과 테이블에 아이들을 분포하는 것은 이 방들의 크기와 가구 위치에 따라 맞추어야 한다. 그러나 아이들의 수는 식당에서 20명을 넘어서

는 안되고, 테이블마다 6명이 넘게 있어선 안된다. 4세부터 6세인 아이들의 생활 리듬에 결부된 필요를 참작하여 공간을 정돈해야 한다.

제10조 학교의 방학과 직업휴가와 여가를 위해 4세부터 6세의 미성년자들을 유숙하는 바캉스센터(유아 바캉스센터)의 시설과 체류지에 관한 1977년 3월 2일의 법령은 1993년 7월 1일 전에 신고된 체류지들이 따를 수 있는 10조 3항의 규정들을 조건으로 폐지되었다.

제11조 현 법령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반포될 것이다.

1993년 3월 26일 빠리에서 제정.

부 록

제 1 조 4조에 대비된 자격면허장들은 다음과 같다.

- 어린이교사 자격면허장.

제 2 조 5조에 대비된 자격증들은 다음과 같다.

- CAP 어린이

3. 청소년센터의 조직 (L'organisation des centres d'adolescents)

법무 장관, 내무 장관, 보건사회안전부 장관과 청소년체육여가부 장관은;

학교의 방학과 직업휴가와 여가를 위해 미성년자들의 보호에 관한 1960년 1월 29일 60—94호 시행령에 비추어, 학교의 방학과 직업휴가와 여가를 위해 청소년들을 유숙시키는 곳의 시설과 센터들의 감독에 관한 변경된 1975년 5월 19일의 법령에 비추어, 학교의 방학과 직업휴가와 여가를 위해 미성년자들을 유숙시키는 곳의 시설과 센터들 안에서, 숙소가 없는 여가센터들 안에서, 청년들의 운동 단체들 안에서 안전 조건들에 관한 변경된 1975년 5월 20일의 법령에 비추어, 학교의 방학과 직업휴가와 여가를 위해 6세부터 18세의 참여자들을 유숙시키는 바캉스 체류지들의 관리와 지도의 조건들에 관한 1975년 5월 21일의 법령에 비추어, 학교의 방학과 직업휴가와 여가를 위해 미성년자들을 유숙시키는 곳의 시설과 센터들의 위생조건들에 관한 변경된 1977년 2월 23일의 법령에 비추어, 청소년 대중교육 체육 심의회의 의견에 비추어 결정한다.

제 1조 참여자들이 40명 이하로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들의 단체 휴가 체류지들은 현 법령의 규칙에 따라 설립된다.

제 2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체류지의 준비조사와 체류지에서 펼쳐지는 것에 가입된다. 주최자들과 관리자는 단체생활의 재정과 위생과 정신과 교육에 관련된 조건들이 부여되기 전에 부모들에게 알려야 한다. 관리자는 간부반과 함께 이 조건들을 중시하는 데에 주의할 책임이 있다.

제 3조 시작하기 1개월 전에 14세 이상인 미성년자를 적어도 12명을 모으는 모든 체류지는 5번 이상의 밤을 포함하는 기간에 대해 그들 조직의 개인이나 법인이 신고해야 한다. 이 신고는 신고하는 사람의 거주지 도지사에게 해야 한다.

제 4조 체류지들의 위생과 진료 감독은 위생조건에 관한 변경된 1977년 2월 25일의 법령 23조에서 35조까지만을 따른다. 간부반의 구성원들 가운데 한 사람은 적어도 응급 치료 국가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관리자는 긴급조치할 수 있도록

록 주의해야 한다.

제5조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을 보통 수용하게 되어 있고 숙소의 용적이 19명이거나 그 이하인 시설은 그 명칭이 무엇이건 간에 변경된 1977년 2월 25일의 법령 12조만을 따른다. 따라서, 모든 규정들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시설들과 숙박 장소는 건강에 좋고 평판이 좋아 위험하지 않은 지대에 있어야 한다. 쓰도록 마련된 물은 마실 수 있어야 한다. 육체의 깨끗함을 유지하는데 충분한 수단들이 보장되어야 한다. 찌꺼기들과 더러워진 물이나 물질은 건강과 환경에 위험이 생기지 않도록 모으고 배수해야 한다.

제6조 참석한 미성년자들의 수에 비해 관리자를 포함한 간부직원의 실제인원은 12명 당 1명보다 적어선 안된다. 간부의 구성원들은 모두 성년자여야 한다. 관리자는 적어도 21세여야 한다.

제7조 체류지의 관리자는 바캄스센터와 여가센터의 관리자직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거나 견습관리자 자격이 있어야 하고, 이 견습기간에 청소년들을 교육하고 지도한 경험을 증명해야 한다. 도지사나 위원회, 체류지의 신고가 등록된 도의 청소년 체육 여가부의 도감독관은 이 관리자가 한 교육과 경험의 질을 평가한다.

제8조 관리자를 포함한 간부 구성원들의 절반은 지도직 자격증을 갖고 있거나 현재 교육을 받고 있어야 한다.

제9조 특별한 규정의 대상이 되는 많은 종류의 신체활동과 체육활동의 실천을 위해, 이 활동들을 하는 간부는 필요한 자격을 증명하거나 자격있는 전문가들로 보충해야 한다.

제10조 준비를 맞춰 조절한 뒤에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의 작은 모임들은 간부없이 짧은 기간 동안 시설의 중요한 곳에서 외부체류를 실행할 수 있다. 여행코스과 수용하는 곳들을 허가할 관리자가 시작허가증을 줄 것이다.

제11조 수영은 주무관청이 금지한 지역이나 위험하다고 여긴 지역들을 제외하고 충분한 안전 조건들에 따라 해야 한다.

제12조 현 법령의 규정에 맞는 조항들에 어긋나는 규정들은 1조에서 정한 센터들에 적용되지 않는다.

제13조 현 법령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반포될 것이다.

앞에서 인용한 법령은 바캉스센터에서 청소년을 위한 활동 단체의 새로운 규정을 끌어들이었다. 이전에 효력을 발생하던 본문은 특수한 지역들을 활용하고 6세부터 18세의 미성년자들 전체에 관한 많은 수의 정원을 수용하는 바캉스센터들을 위해 주로 쓰여졌다.

그런데, 여러 조사의 결론과 연구들은 6세부터 13세의 아이들과 14세부터 18세의 청소년들에게 같은 유형의 단체를 권할 수 없었고, 자치권이 증대하기를 갈망하는 이 청소년들은 주위 환경을 순회하는 탐험에 특별히 유리하고 가벼운 구조들의 범위 안에서, 감소된 정원의 체류지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나타내게 되었다.

이 요구를 참작하고, 더욱 마음을 끄는 체류지들을 청소년들에게 권하기 위해 조직자들은 위생조건과 실제인원과 간부의 자격에 관한 위반을 도지사에게 자주 묻기에 이르렀다. 1977년 2월 25일의 법령 40조와 1975년 5월 21일의 법령 4조는 청소년들이 관심이 있어 그들이 더 많은 책임감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되는 앞장서는 행동들을 조장하기 위해 이렇게 폭넓게 쓰였다.

이 확실한 사실에 이끌려 청소년들의 단체 바캉스 체류지에 관한 새로운 법령 가결을 부(部)들과 관련된 협회들에게 제출하게 되었다.

1981년 5월 4일에 채택되어 1981년 5월 15일 자 관보에 반포된 이 법령은 일반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규정들이(1981년 5월 4일의 법령 1조와 12조) 계속 실시되고 있으므로 참여자들이 40명이하로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의 단체 바캉스 체류지들만이 관계된다.

새로운 방향은 주로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목표로 한다.

1. 청년들의 자립을 가장 크게 증진할 것, 그들이 앞장서는 행동들을 촉진할 것, 그들의 책임의식을 발전시킬 것.
2. 단체생활의 조건들을 명확하게 밝히고, 청소년과 간부반과 부모들과 같이 관심 있는 사람들 전체를 계획을 정하는 데에 참가시킬 것.
3. 제출된 체류지들의 단체 형태와 조건들을 완화할 것.

첫째 목표에 법령 10조와 11조가 해당한다.

10조는 짧은 기간 동안 간부 없이 센터(캠프, 청소년 숙소, 바캉스센터..) 시설의 중요한 장소의 바깥에서 청소년들의 작은 단체들이 체류할 수 있게 관리자에게 허가한다.

짧은 기간은 2일에서 4일 기간의 체류를 의미한다. 관리자는 허가를 하기 전에 청년들이 당할 수 있는 위험들을 의식하고 다음을 미리 해야 한다.

- 활동할 수 있는 장소(여행코스과 수용하는 곳)를 답사할 것.
- 순회하는 단체와 쉽게 만날 수 있음을 확인할 것.
- 응급치료와 영양관리에 대한 최소한의 정보를 청소년들에게 제공할 것.
- 사람들과 장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강경하게 요구할 것.

실제로, 11조는 조직자들이 수영감독자의 일을 1975년 5월 20일의 법령 3조의 뜻에 결부시키는 것을 면제한다.

둘째 목표는 법령 2조에 해당한다. 14세 이상의 미성년자들은 출발하기 전에 미리 모이는 것, 더구나 여러 지역에서 오는 젊은이들이 모인 경우에 교신으로 부탁한 의견들과 충고들, 적어도 체류 초에 합의한 것 따위로 가장 잘 맞추어진 절차에 따라 체류지의 예비조사와 체류지에서 펼쳐지는 것에 참가해야 한다.

청소년들의 부모는 체류지의 실제조건, 위생조건, 도의와 교육에 관련된 조건들에 대한 충분한 정보들을 조직자들과 관리자에게 받아야 한다.

셋째 목표는 특별히 법령의 4조와 5조와 7조에 해당한다.

4조와 5조는 한편으로, 위생감독과 진료감독에 관한 규정들과 다른 한편으로는 숙소 시설의 사용 조건들에 관한 규정들의 경감을 대비하고 있다. 이 규정들은 청소년들의 탐험에 대한 갈망에 일치하는 순회 캠프의 발전으로 증명된다. 사람들의 건강에 관한 1977년 2월 25일의 법령(25조에서 35조)의 조건들이 시행할 수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적합하다.

특별히 5조는 산장, 농가, 수도원 부속농장... 따위의 몇몇 시설들을 쉽게 쓰는 것을 목표로 한다.

- 숙소의 용적이 19명이거나 그 이하인(청소년들을 보통 받는 바캉스센터, 여인

숙 따위) 지역의 전문 수용부지들의 경우, 1977년 2월 25일의 법령 12조는 시행할 수 있고 건물들의 안전에 관한 위원회의 방문이 절대로 필요하다. 이러한 가정으로써 안전법규들이 강요된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 미성년자들과 대중을 보통 수용하려고 마련된 것이 아니고 때때로 단체가 쓰는 부지들의 경우(농가,수도원 부속농장…) 조직자들과 소유자들은 1977년 2월 25일의 법령 12조에서 기인하는 규정들을 따르지 않는다. 그러나 이것은 시설이 제시해야 하는 안전조건들에 대해 소유자나 차용자에게 조회하는 것을 면제하지 않는다. 시령(市令)이나 도령(道令)으로 가결되어 건물들 사용의 일반조건들을 충당할 수 있는 규정들을 도관할의 국들에게 알리는 것은 그들의 의무이기도 하다.

7조는 관리자 자격에 관한 것이다. 관리자직 자격증(B.A.F.D)을 갖고 있거나 견습관리자 자격이 있는 것은 필요하다. 그러나 나이가 21세이고 청소년들의 교육이나 지도 경험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예외가 허용될 수 있다(교원들, 사회—교육에 도움이 되는 숙박 시설의 지도원들, 교육자들).청소년 체육 여가부 도관할 국장은 이 자격을 평가할 것이고 체류지를 시찰할 때 이 자격을 검사하게 할 것이다.

4. 몇몇 체류지 조직에 관한 보충 본문

(Textes complémentaires relatifs à l'organisation de certains séjours)

1) 농가에 머무는 작은 단체들의 숙소

(Hébergement de petits groupes dans les fermes)

농가에 머무는 작은 단체들의 숙소는에 관하여 이 정해진 경우에 존중해야 할 법규의 유형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가정에 맡기기 법규를 실시해야 한다.

조직자들이 변화를 줄 수 있다면(단체 구조, 기업운영 위원회 따위)준수해야 할

법규가 같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청소년 체육부 도관할 국은 가정에 맡기는 신청 신고지(장미빛 D가 인쇄된)를 갖고 있어야 한다.

보건조건, 특별히 부지와 위생에 관하여 보건 사회 활동부 도관할 국과 협력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2) 바캉스 체육 센터들(centres sportifs de vacances)

학교의 방학과 직업휴가와 여가를 위해 가정을 벗어나 미성년자들을 다시 집결하는 몇몇 체육연수, 체육 학교 활동 따위에 관련이 있는 안내에 관하여 이런 활동들은 대체로 체육협회, 승인된 체육 연맹이나 연합회의 행동이지만 때로는 개인들의 행동이다.

그런데, 그 명칭이 무엇이건 간에, 부모들의 집 밖에서 단체로 유숙하는 미성년자들이 항상 문제이다. 그러므로 이 사실의 상황에 따라 조직자들은 1960년 1월 29일 시행령 60-94호와 적용되는 이 법령들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므로 여러 조직자들은 다음의 보통법을 따라야 한다.

1. 미리 신고해야 한다.

2. 1977년 2월 25일의 법령이 요구하는 것과 안전기준에 맞는 부지들에 세워야 한다.

그러나, 조직자들의 자격과 제안된 활동들의 종류를 고려하면서 간부에 관해서는, 체육기술교육이나 시합훈련이 목적인 승인된 체육 단체들이 조직한 바캉스 체육센터들이 문제가 될 때마다 물론, 체육교육의 법규가 대비한 간부 기준들을 요구하는 것이 좋다.

휴식과 여가 활동에 관해서는, 특수한 경우에 체육 간부의 본성과 특별한 적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사회문화 지도원들의 수와 자격을 평가하는 것은 의무이다.

5. 숙소 없는 여가센터들의 조직

(L'organisation des centres de loisirs sans hébergement)

내무 지방분권부 장관과 청소년 체육 여가부 대표 장관은;

가정법과 사회부조법 2절과 5절을 변경한 1971년 12월 24일의 법 71-1050호의 적용을 표명하고 있는 1972년 10월 23일의 시행령 72-990호에 비추어, 바캉스센터와 여가센터들의 지도원과 관리자직 자격증을 제정하는 1973년 2월 8일의 시행령 73-131호에 비추어, 공화국위원들의 권한과 도들안에서 국가의 공공기관과 공공사업에 관한 1982년 5월 10일의 시행령 82-389호에 비추어, 청소년 대중 교육 체육 심의회의 의견에 비추어 결정한다.

제 1 조 숙소 없는 여가센터들은 강습회와 특별 연습 훈련기간을 제외하고 여가를 위해 미성년자들을 보통 단체로 맞이하는 자격을 받은 교육에 도움이 되는 실체이다.

제 2 조 여가 청소년 체육부 도관할 국장의 제안에 대해 공화국의 위원이 자격을 부여한다. 이 자격부여는 아래의 1절과 2절에 진술된 규정들을 준수하는 것에 종속된다.

제 3 조 숙소 없는 여가센터들을 자주 드나드는 미성년자들을 보호하는 것은 공화국 위원에게 위임되었다. 숙소 없는 여가센터들에서 제안된 교육활동의 조정은 여가 청소년 체육부 도관할국장과 청소년 체육 여가부 감독관들에게 위임되었다.

제 4 조 숙소 없는 여가센터들을 조직하는 모든 법인이나 개인은 현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제 1 절

제 5 조 자격의 부여 요구는 신청하기 한달 전에 공화국위원에게 한다. 자격의 부여 요구는 해마다 갱신되어야 한다.

제 6 조 공화국위원은 안전과 위생과 좋은 습속에 대한 관심으로 숙소 없는 여가센터의 일에 반대할 수 있다.

제 7 조 다음과 같은 사람은 아무도 숙소 없는 여가센터의 조직과 간부와 관리에 참

여할 수 없다.

- 성실하지 못하거나 도덕관념이 부족하다고 비난받은 사람.
- 가르치지 못하도록 처분 받은 사람.

미성년자들을 위한 바캉스 여가 제도나 조직의 간부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처분 받은 사람.

제8조 숙소 없는 여가센터들은 대중을 받는 시설들 안의 화재 위험과 공포 위험에서 보호하는 것과 관련한 법규 규정에 따른다.

제9조 수용하는 부지는 건강에 좋고 위험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 부지들은 실행되는 활동에 따라 아이들의 수에 면적과 체적이 맞아야 한다. 이 부지들은 정확히 채광과 통풍과 난방이 잘 되어야 하고 미성년자들과 간부 사원의 필요에 맞는 위생 시설을 마련해야 한다. 사용된 부지들이 미성년자들의 상설 수용에 마련된 공공 건물일 때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제10조 숙소 없는 여가센터에서 취임하기 전에 모든 간부나 업무 사원의 구성원은 적어도 3개월 전에 받은 건강 진단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11조 위생과 의료제도는 의사나 가까운 진료소의 도움으로나, 센터 직원 가운데 면허장을 소유한 구조원이 참석하여 숙소 없는 모든 센터들에게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제2절

제12조 숙소 없는 센터들은 자격을 받기 위해 다음 조건들에 응해야 한다.

- 목표로 삼은 교육 목적들
 - 센터의 기능의 일반 방식
 - 아이들이 할 수 있어 그들에게 권할 수 있는 활동들
 - 이들을 제시하는 교육계획안이 있어야 한다.
- 관리자의 권위 밑에 있는 지도원들로 구성된 자격있는 지도반이 있어야 한다.
- 최소 8명에서 최고 300명의 아이들이 등록한 실제인원.

제13조 교육 계획안은 될 수 있는 한 부모와 협력하여 여가센터의 조직자와 책임자 사이에 일치로 결정된다. 아이들과 청소년들의 바람과 필요를 고려하는 교육학에

관련된 계획안은 교육계획안을 참고로 하여 지도반이 결정한다. 부모들은 이 계획안들의 결정과 적당한 자리매김을 알고 있어야 한다. 교육학에 관련된 모든 계획안은 다음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해야 한다.

- 아이들의 수용과 생활방식들, 경우에 따라서는 수송조건들.
- 시설들과 공간 사용.
- 활동들의 조직.
- 어떤 경우에도 간부의 영구책임이 면제될 수 없는 상설지도반과 무관한 소송 참가인과 하는 협력.

교육학에 관련된 최초의 계획안의 중요한 모든 변경은 관련된 대표들이 알아야 한다.

제14조 지도반은 특별히 조직자가 지명한 직무를 얻고 적어도 21세인 관리자의 권위 밑에 있는 지도원들로 구성된다. 아무도 숙소 없는 여가센터 여러 곳에서 한꺼번에 관리자가 될 수 없다. 간부 전체의 정원과 수용한 실제인원 사이에 있는 비율은 적어도 1/12와 같아야 한다. 7세 이하의 아이들의 단체에서 이 비율은 1/8이어야 한다. 적어도 지도원들 가운데서 4분의 3은 성년이어야 한다. 17세의 미성년자들은 지도원직 자격증을 갖게 하는 교육에 따라 이 지도원들과 같게 여긴다. 나머지 4분의 1은 어떤 교육도 받지 않은 16세의 미성년자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지도원들의 적어도 반은 지도원직 자격 교육 회기를 따랐거나 이 자격면허장을 갖고 있어야 한다. 숙소 없는 여가센터의 관리자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

- 등록한 실제인원이 50명보다 아래인 숙소 없는 여가센터를 위해 지도원직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하고 미성년자들을 여러번 교육해 본 경험을 증명해야 한다.
- 등록한 실제인원이 51명부터 150명 사이에 있는 숙소 없는 여가센터를 위해 관리자나 견습 관리자직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 등록한 실제인원이 151명부터 300명 사이에 있는 센터를 위해 관리자직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제15조 여가 청소년부 도관할국장의 제안에 따라서 시간에 제한된 예외 들은 위의

조항에서 반복된 기준들에 제시될 수 있다.

제 3 절 일반규정들

제16조 1977년 5월 17일의 법령은 현 법령이 효력을 발생함에 따라 1984년 10월 1일부터 폐지된다.

제17조 현 법령은 프랑스 공화국 관보에 반포될 것이다.

1984년 3월 20일 제정.

Ⅲ. 미국 : 청소년시설·부지 인정기준

1. 캠프 인정 기준(Standards for Camp Accreditation)

1) 부지와 시설(Site and Facilities)

(A-1)

지방 소방서와 치안담당관에게 캠프 운영 기간과 캠프 프로그램 참가자에 대해 통지했는가?

(A-2)

캠프 관리에서 면허를 가진 사람이 아래에 나와 있는 소화 기구와 장소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는가?

1. 연기 검출기와 다른 검출 장치 — 이용성과 위치?
2. 소화기 — 형태? 위치? 준비성?
3. 난로와 굴뚝?
4. 인화성 물질과 연료를 저장하는 장소와 사용 장소?
5. 공동 화기 사용 장소?
6. 요리 장소

(A-3)

식수에 사용된 모든 물이 주 (state) 가 정한 지침에 맞고? 검사를 받았다는 확인서가 있는가?

1. 첫번째로 물을 사용하는 야영자나 직원에 앞서 30일 이내에 주기적인 급수가 이루어지는가?
2. 지난 3개월 이내에 지속적으로 급수가 이루어졌는가?
3. 최초의 검사 결과가 주가 정한 지침에 맞지 않는다면, 지방 보건과 직원의 시

정조치가 이루어지는가?

(A-4)

위급 상황시 안전을 위해서 캠프의 설계도(청사진)는 모든 전기선이 배선된 위치와 두꺼비집(전류 차단 장치), 가스관과 밸브, 급수 개폐기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가?

1. 캠프 부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
2. 캠프 부지가 없는 경우? 문제가 발생했을 때 현지 캠프 지도자는 접촉할 수 있는 개인이나 기관의 전화 번호를 갖고 있는가?

(A-5)

캠프관리에서 면허를 가진 사람이 매년 전기에 대한 점검(electrical evaluation)을 하는가?

(A-6)

캠프에 눈에 띄게 현저한 하수 처리 문제가 있을 때 지방 보건과 직원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가?

(A-7)

캠프 전반에 걸쳐 아래의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가?

- A. 건물(화장실을 포함하는), 통로, 활동 장소는 좋은 상태인가?
- B.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인가?

(A-8)

캠프에서 모든 화기와 무기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

(A-9)

다음의 주의 사항에 따라 인화성이 있고 폭발하기 쉬우며 독성이 있는 가스나 액체를 취급하는가?

1. 내용물에 대한 라벨이 붙어 있고 뚜껑이 덮인 안전한 용기에 보관되어 있는가?

2.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경험자 만이 이 위험 물질들을 다루는가?
3. 식품과 분리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가?

(A-10)

실제로 동력 장치가 다음의 주의 사항을 필요로 하는가?

1. 필요한 안전 장치가 제공되어 있는가?
2. 손질이 잘 되어 있는가?
3.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경험자 만이 작동하는가?

(A-11)

야영자나 직원이 취침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건물은 아래의 안전 사항을 준수하는가?

- A. 최소한 현관 이외의 비상구가 하나 더 있는가?
- B. 연기 검출 장치는 작동되는가?
- C.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입구가 없는 각 취침 층에서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가?
- D.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은 최소한 비상구 외에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입구가 있는 취침 층에 배치 되었는가?

(A-12)

화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욕과 샤워와 손씻는 시설에 온수 온도를 제어하는 시스템이 있는가?

(A-13)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이 취침과 식사와 화장실과 프로그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A-14)

실제로 다음과 같은 방침이 있는가?

A. 식사하는 동안 음식을 준비하고 나르는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는가?

B. 아동과 비흡연자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흡연 장소를 지정해 두었는가?

(A-15)

중심 캠프와 생활 공간에 하나 이상의 변기가 있는 화장실에 프라이버시를 위해 최소한 화장실 문이나 커튼이 달려 있는가?

(A-16)

구덩이나 화학적 처리 화장실은 가려져 있거나 배출 구멍이 있고 화장실 덮개와 자동 폐쇄식 문이 달려 있는가?

* 주간 캠프만 해당

* 숙박 캠프일 경우 A-17, A-18을 건너뛰고 A-19 로 가시오.

(A-17)

화장실 숫자는 아래의 비율에 기초할 때 적당한가?

1. 30명의 여성에 변기 하나
2. 50명의 남성에게 변기 하나
3. 캠프의 10% 이상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일 때
 - a. 20명의 여성에 변기 하나
 - b. 30명의 남성에게 변기 하나

(A-18)

손 닦는 시설은 화장실에 인접해 있고 세면대 하나의 비율로 제공되는가? 아니면 30명 당 동시에 5명 이상이 쓸 수 있는 각 화장실 시설에 최소한 세면대 두개가 제공되는가?

* 숙박 캠프만 해당

* 주간 캠프일 경우 A-19부터 A-23까지 건너뛰고 A-24 로 가시오.

(A-19)

화장실 숫자는 아래의 비율에 기초할 때 적당한가?

1. 10명의 여성에 변기 하나
2. 10명의 남성에 변기 하나
3. 캠프의 10% 이상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이라면
 - a. 8명의 여성에 변기 하나
 - b. 8명의 남성에 변기 하나

(A-20)

손 닦는 시설은 화장실에 인접해 있고 세면대 하나의 비율로 제공되는가? 아니면 10명 당 동시에 5명 이상이 쓸 수 있는 각 화장실 시설에 최소한 세면대 두개가 제공되는가?

(A-21)

목욕/샤워 시설은 다음 사항에 맞는가?

A. 적정 명 수

1. 모든 캠프 - 15명 당 샤워기 하나 또는 욕조
2.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특수 캠프-10명 당 샤워기 하나 또는 욕조

B. 목욕을 돕는 의자? 난간이나 다른 보조 장치가 있는가?

(A-22)

상설 취침 장소가 다음의 사항에 맞는가?

1. 통풍
2. 취침자 간격은 최소한 6피트
3. 침대 간격은 최소한 30인치
4. 특별히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있는가?

(A-23)

침대 위층에서 자는 아동이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침대 위층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 캠프에서 음식이 제공되지 않는다면 A-24부터 A-29까지 뛰어넘고 Section B 로 가시오.

(A-24)

음식 서비스 지도감독자가 이 분야에 대한 훈련을 받거나 경험이 있다는 증명서가 있는가?

(A-25)

음식을 준비하고 저장하는 시설이 설계되어 있고, 쥐나 토끼와 해충으로부터 식품을 보관하기 위한 조치가 행해지는가?

(A-26)

화씨 45도나 그 이하에서 썩기 쉬운 식품을 저장하기 위하여 캠프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가?

1. 썩기 쉬운 식품을 냉동 저장시 매일의 온도를 기록하고,
2. 온도가 화씨 45도 이상이라면 이것을 바로잡아야 할 조치를 취하는가?

(A-27)

음식 준비와 음식을 나르는 동안 음식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 식품 취급자가 있는가?

- A. 화씨 45도와 140도 사이에서 썩기 쉬운 식품을 두는 시간을 최소화하는가?
- B. 음식 준비 동안 청결하고 위생적인 도구만을 사용하는가?
- C. 사용 후에 음식이 닿았던 표면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처리 하는가?
- D. 적정 온도에서도 상하기 쉬운 식품을 요리하고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가?

(A-28)

1회용 도구만이 사용될 경우에? 사용후 1회용 접시와 식기류를 적절하게 소독하기 위해서 실제로 아래의 과정을 거치는가?

A. 접시 닦기

1. 기계 접시 닦기를 사용할 때? 다음의 사항을 매일 확인하는 기록이 있다.

- a. 세척 물 온도는 최소한 화씨 100도
- b. 행구는 물은 최소한 화씨 180도, 살균제는 분류 표시에 따라 사용
- c. 물 온도가 지정된 최저한도에도 미치지 못할 때 적정 온도가 되게 한다.

2. 접시들과 식기류를 손으로 닦고자 할 때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가 있다.

- a. 세척과 최초로 행굴 때의 물의 온도는 최소한 화씨 100도
- b. 두번째 행구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온도는 최소한 화씨 180도, 살균제를 사용하는가?

B. 말리기

1. 모든 접시와 식기류는 풍기로 건조되는가?

(A-29)

음식 준비나 청소를 할 경우 사용되지 않는 모든 쓰레기통은 주방과 식사 장소에서 새지 않거나 흡수되지 않는 천으로 안감 처리가 되어 있거나? 꼭맞는 뚜껑이 덮여서 안전하게 묶여 있는가?

2) 행정(Administration)

(B-1)

지난 3년 이내에 캠프 행정은 부가적인 직업 실천에 대한 자기 평가를 내렸으며 최근에 실시된 그러한 자기 평가로부터 취할 장점이 있는가?

(B-2)

다른 캠프 인정 기준을 필요로 하는 요소에 참가하여 위기 관리 계획을 위해 캠프

행정이 다음의 사항을 하기 위해 캠프 행정 운영에 대한 목록을 만들었다는 문서로 기록된 증거서가 있는가

A. 캠프에서만 일어날 수 있고 다음의 사항과 관련되어 있는 일반적인 보건과 안전 사항과 일어날 수 있는 위급 사태를 확인한다

1. 부지에 특정한 자연적인 위험
2. 부지에서 인간이 저지를 수 있는 위험
3. 시설과 장비 운영
4. 화재? 홍수? 폭풍? 허리케인 등과 같은 재난
5. 야영자와 직원에 대한 지휘?

B. A에서 목록화된 일어날 수 있는 위급 사태와 보건과 안전에 관한 사항들과 연결된 위험을 줄이고 통제하고 방지하기 위한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1. 확인되어진 지역에 대한 캠프 안전 규칙
2. 확인된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3. 적절한 보호 장치
4. 야영자와 직원이 확인된 위험을 다루기 위해 훈련을 받게 될 방법과 시기에 대한 확인?

C. A에서 확인된 상황에 적절하게 반응하기 위한 위급사태 절차를 확립하는가?

(B-3)

캠프 행정은 다음 사항을 갖추었는가?

- A. 직원에게 안전 규칙과 위급사태 절차가 제시되는가?
- B. 확립된 규칙과 절차를 따르는 야영자와 직원을 준비시키는 훈련과 리허설에 대한 프로그램이 실시되는가?

(B-4)

위험을 감소시킬 방법을 고려하기 위하여?

- A. 사건과 돌발 사고를 기술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한 직원이 필요한가?
- B. 다음 사항을 실시하는 절차?

1. 사건과 돌발 사고와 부상이 일어난 시기와 장소를 최소한 해마다 검토하고 분석하는가?
2. 사건과 돌발 사고와 부상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법을 확인하는가?

(B-5)

캠프 부지에 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의 무단 침입을 막기 위한 다음의 조치를 취하는가?

1. 부지에 대해서 정기적인 안전 점검
2. 침입을 막기 위한 방법에 관하여 직원과 야영자를 위한 훈련?

(B-6)

실종자와 길 잃은 사람을 찾기 위한 탐색방법과 구출 절차를 개발하고 캠프직원 은 그러한 절차 수행을 위한 훈련을 받는가?

(B-7)

야영자가 일반대중과 섞일 때, 다음의 사항들을 야영자와 직원에게 알리는가?

1. 야영자에 대한 지도감독 (직원의 위치와 책임감)
2. 집단으로부터 분리되거나 이방인이 접근해 온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3. 대중 교통을 이용하거나 길을 건너거나 공공 화장실을 사용할 때의 안전 규칙

(B-8)

위급사태시(캠프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행을 포함) 모든 직원이 다음 사항을 검토 할 의사소통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 A. 사건이 일어난 캠프부지에 있는 사람과 캠프의 행정·보건요원, 지역사회 위급 사태 서비스(보건과 치안 담당부서 등) 간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가?
- B. 부모나 보호자와 접촉할 수 있는가?
- C. 방송 매체를 사용할 수 있는가?

(B-9)

다음 사항에 대한 문서화된 조치가 있는가?

- A. 법적 부모나 보호자 이외의 보호를 받는 미성년자는 받지 않는가?
- B. 부재자나 결석자를 확인하는가?

(B-10)

야영자와 직원의 소유하고 있는 개인적인 운동장비, 차량과 애완동물과 관련된 안전 사항을 취급하는가?

(B-11)

야영자, 부모, 직원과 캠프회나 캠프 후원기관 위원회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하는가?

- 1. 캠프 운영에 대한 모든 영역을 분석하고,
- 2. 보건과 안전 사항과 프로그램 질에 대한 캠프 행정을 평가하는가?

(B-12)

다음의 보험 적용 범위가 적절하다는 기록된 증명서가 있는가?

A. 야영자 적용 범위

- 1. 숙박 야영자 - 야영자를 위한 보건과 돌발 사고 적용 범위가 적절한가?
- 2. 주간 야영자 - 야영자를 위한 돌발 사고 적용 범위가 적절한가?

B. 직원 적용 범위

1. 숙박캠프 직원 :

- a. 직원에 대한 위크의 보상이 적절한가?
- b. 각 직원에 대한 보건과 돌발 사고 적용범위가 적절한가?

2. 주간캠프 직원 :

- a. 직원에 대한 위커의 보상이 적절한가?
- b. 위커의 보상에 포함되지 않는 직원들을 위한 돌발사고 적용범위가 적절한가?

C. 일반적인 부담 적용범위가 적절한가?

D. 건물에 대한 화재와 위험 적용범위는 적절한가?

E. 차량 보험(적용시) :

1. 소유차, 임대차 모두에 대한 적용범위는 적절한가?

2. 소유되지 않은 모든 차량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과 임대차 보험은 적절한가?

3) 운송 관리

(BT-1)

여행 캠프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지만 캠프 부지에 차량이 없다면 캠프 부지에서 교통 통제 계획이 있는가?

(BT-2)

승객을 태울 수 없는 차량에 야영자와 직원을 운송하는 것을 금지하는 방침이 있는가?

(BT-3)

캠프는 교통과 개인의 안전을 통제하기 위한 도착과 출발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야영자와 직원을 위한 훈련을 실시하는가?

A. 차량의 도착과 출발은 질서 있게 이루어 지는가?

B. 질서 정연하게 차, 밴, 버스에 짐을 싣는가?

C. 교통, 주차, 기다리는 장소에 대한 분명한 지시?

D. 도착하고 떠나는 야영자에 대한 직원 지도감독?

(BT-4)

아동이 집에 도착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 위급 사태와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에 부모에게 알려 주는 절차가 있는가?

(BT-5)

부모/보호자에게 다음을 포함하는 기록된 정보가 제공되는가?

1. 승차 시간과 하차 시간
2. 승차와 하차 안전 절차
3. 캠프가 교통을 제공한다면 밴이나 버스에 대한 안전 규칙?

(BT-6)

주간캠프가 어떤 교통편도 제공하지 않거나 캠프에 의한 모든 여행이 한시간도 걸리지 않는다면 해당되지 않지만, 여행이 야영자를 위해서 한시간이나 그 이상 걸린다면, 운송 기간 동안 운전자 보다 직원에 의한 프로그래밍을 제공하는가?

(BT-7)

기록된 돌발사고 절차를 수행하기 위해 훈련된 직원도 수송하는 차량을 필요로 하는 방침이 있는가

1. 부상당한 사람을 위한 치료 제공이나 보장
2. 부상당하지 않은 사람을 지도감독
3. 위급 사태에서 통고할 사람을 구체적으로 명시
4. 증인이나 위급 사태 정보 확인?

(BT-8)

캠프가 16명 이상을 수송하는 차량을 야영자를 위해서 제공하지 않는다면 해당되지 않지만, 16명 이상을 운송하는 차량을 제공하는 경우 안전 책임과 집단 관리에 대해 훈련 받은 운전자에 참가하여 직원을 필요로 하는 방침이 있는가?

(BT-9)

야영자와 직원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차량이 실제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기 위해 요구되는 기록된 안전 절차가 있는가?

- A. 여행을 위한 안전 규칙 훈련?
- B. 승객 수용 능력 한계를 준수하는가?

C. 안전 벨트와 아동보호 용구

호송 없이 여행을 한다면 해당되지 않음.

D. 호송 여행 절차?

휠체어 탄 사람은 운송되지 않는다면 해당되지 않음.

E. 휠체어 탄 사람을 운송하기

1. 휠체어 탄 사람은 휠체어를 탄 채로 좌석 벨트를 맨다(선박을 제외하고).
2. 휠체어는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선박일 때를 제외하고)?

(BT-10)

다음의 장비를 갖춘 야영자와 직원을 수송하기 위해 사용되는 차량을 필요로 하는 방침이 있는가?

1. 구급상자
2. 반사경
3. 소화기

(BT-11)

정기적으로 운송되는 야영자와 직원을 위해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기록된 방침이 있는가?

- A. 승객에 대한 보건 정보와 “치료 허가” 형식에 대한 이용성과 위치
- B. 모든 승객에 대한 연령, 정신 능력, 신체 조건을 고려하는 적절한 지도감독?

(BT-12)

개인 차량은 야영자를 수송하기 위해 사용되지 않는다면 해당되지 않음.

이러한 목적을 위해 차량 사용을 허가하는 야영자를 수송하기 개인 차량 소유자로부터 기록된 권한 부여가 있는가?

(BT-13)

사업차량은 빌리지 못한다면 해당되지 않지만, 상업 차량 제공자를 선발하는 캠프 행정에 의한 방침이 있는가?

1. 차량에 대한 정기적 검사와 안전 점검에 대한 체제 수행
2. 운전사가 있을 경우, 승객을 운송하기 위한 운전사의 운전 기록과 경력을 조회하는가?

(BT-14)

개인 차량 제외.

캠프 행정은 야영자나 직원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모든 차량의 기계적인 안전을 평가하기 위한 자격을 갖춘 사람을 필요로 한다는 증명서가 있는가?

1. 최소한 연4회
2. 주기적인 사용에 앞서 3개월 이내?

(BT-15)

정기적으로 야영자와 직원을 수송하는 모든 차량을 안전 점검하는 방침이 수행되는가?

1. 점검 빈도 구체화하기
2. 점검 필요 사항
 - a. 전등
 - b. 타이어
 - c. 앞 창과 와이퍼 상태
 - d. 위급 사태 경보 시스템
 - e. 경적
 - f. 브레이크
 - g. 용액 수준

(BT-16)

정기적으로 야영자나 직원을 수송하는 모든 운전자를 조회하기 위한 절차를 캠프 행정은 수행하는가?

1. 운전하고 다니는 차량의 적절한 면허는 있는가?

2. 다음과 같이 캠프나 보험 요원에 의해 검사된 운전 기록을 가지고 있었나

- a. 주기적 캠프-캠프 시즌 시작을 앞둔 4개월 이내
- b. 연중 계속 운영되는 캠프-최소한 년1회?

(BT-17)

캠프가 정기적으로 야영자를 운송하는 운전사를 위한 훈련을 제공한다는 증명서가 있는가?

1. 기록된 절차

- a. 승차와 하차 시점에서 승객을 태우고 태우지 않는 것
- b. 차가 고장났거나 승객이 아플 때의 경우를 취급
- c. 연료 보급
- d. 야영자의 운송에 앞서 차량 점검

4) 직원 및 지도자

(C-1)

현지 감독자가 아래의 자격들을 가지고 있는가?

- A. 학사 학위나 ACA 캠프 지도자 증명이 있는가?
- B. 조직화된 캠프 활동에서 최소한 두번 정도 행정적 또는 지도 감독한 경험이 있는가?
- C. 캠프가 우선적으로 특정 욕구가 있는 야영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그러한 특정 욕구집단과 같이 활동한 경험이 24주 정도 되는가?
- D. 지난 3년 내에 캠프 관리, 야영자 또는 직원 개발, 환경 교육과 관련된 작업장, 시설, 세미나 또는 과정에 참석했는가?
- E. 최소한 25세의 연령인가?

(C-2)

직원 지도 감독의 책임감을 맡고 있는 캠프 행정 요원과 프로그램 요원의 20%가

클라이언트와 관련된 분야의 학사 학위를 갖고 있거나 특정 욕구 집단과 같이 활동한 경험이 최소한 24주 정도 되는가?

(C-3)

야영자와 함께 하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직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인터뷰 선발 과정이 실제로 있는가?

1. 이전의 활동(자원봉사를 포함하는)에 대한 검증과 참고사항
2. 캠프 지도자나 지명된 대표자에 의한 캠프 직원 인터뷰(일대일 면접이나 전화)가 이루어지는가?

(C-4)

실제로 야영자에 대해 직원이 지도감독을 할 때, 다음 사항을 명세화 하는가?

- A. 다음의 최소한에 맞거나 초과하는 단위(units)나 또는 생활집단 및 일반적인 캠프 활동에서 야영자들을 위해 당번을 서는 직원의 비율은?

야영자 연령	직원	숙박 야영자	주간 야영자
4— 5세	1	5	6
6— 8세	1	6	8
9—14세	1	8	10
15—18세	1	10	12
19세 이상	1	20	20

- B. 지도감독에 필요한 직원의 수가 많거나 적을 때, A에서 기록된 비율에서 볼 때, 프로그램이 나누어지거나 제외되는 것이 있는가?
- C. A에서 확립된 직원-야영자 비율에서 최소한 80% 정도가 18세나 그 이상의 연령의 직원인가(특정 욕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봉사하는 캠프에서는 100%)?
- D. “직무중” 일 때, 지도감독적인 책임감을 갖고 있는 모든 직원들을 위한 훈련이 필요한가?

(C-5)

캠프에 참가하기 위해 보조 직원의 지지를 필요로 하는 신체적, 의학적, 행동적인 욕구를 갖고 있는 아영자를 위한 캠프가 아닌 경우(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애를 입었거나 정서적으로 장애가 있는 경우) 다음을 필요로 하는 절차가 수행되고 있는가?

A. 다음의 사항에 맞거나 초과하는 직원과 상담자-지지 요원의 비율?

아영자 종류	직원	아영자
계속적이고 개별적인 원조나 지도감독을 요구함	1	1
밀접하지만 계속적인 지지나 지도감독을 원하지는 않음	1	2
예비 원조를 원함	1	4
최소한의 원조를 원함	1	5

B. A에서 확립된 비율의 최소한 80% 정도가 18세나 그 이상의 연령의 요원인가?

(C-6)

18세 이하의 모든 프로그램 요원들이 아영자 집단보다 최소한 두 살 정도는 많아야 한다는 방침이 있는가?

(C-7)

캠프는 모든 프로그램 요원들을 위해 아래에 나와 있는 범위의 사전 캠프 훈련을 제공하는가?

주간캠프

1. 캠프 기간은 두주 이상-최소 18시간, 부지에서 6회나 그 이상
2. 캠프 기간은 두주 이하-최소 10시간, 부지에서 4회나 그 이상

숙박캠프

1. 전임 직원(full-time staff)-캠프 부지에서 최소 5일 정도

2. 단기 직원(short-term staff)－캠프 부지에서 18시간 또는 그 이상 여행
(Trip/Travel)캠프
숙박 설비 있는 상황에서 최소 2일

(C-8)

직원을 돕기 위한 사전 캠프에 앞서 정보나 훈련을 제공하기 위한 시스템이 있는가?

1. 직원들이 해야 하는 특정 업무를 이해하고,
2. 야영자 집단의 성격을 이해하고,
3. 제공되는 캠프와 프로그램의 일반적인 특성을 배운다

(C-9)

직원이 책임을 지고 있는 야영자의 특정 욕구에 대한 정보를 모든 직원에게 알리는가?

(C-10)

야영자와 효과적으로 활동하기 위하여 직원 훈련에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는가?

- A. 개인을 존중하는 태도로 야영자에게 말하거나 경청하는가?
- B. 다른 직원과 그들 자신보다 야영자의 욕구와 관심에 우선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가?

(C-11)

캠프직원은 아래의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훈련을 받는가?

- A. 체형을 금지하는 적극적인 행동 관리와 훈계 기술에 대한 훈련을 받는가?
- B. 야영자와 다른 직원과 활동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과 행동에 대한 훈련을 받는가?

(C-12)

다른 직원을 지도감독하는 사람은 다음 사항을 제공하는가?

- A. 지도감독해야 하는 사람을 알려주는 목록이나 도표를 제공하는가?

- B. 지도감독하는 업무에서 수용할 수 있는 일을 확인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는가?
- C. 적절하지 않은 직원 행동을 확인하고 다루기 위해 훈련하는가?
- D. 캠프 활동을 검토하는 체제에서 지도감독하는 책임을 수행하기 위한 훈련을 하는가?

(C-13)

직접적으로 야영자와 함께 일하는 모든 직원에 대한 연수교육 체제가 있는가?

(C-14)

주간캠프일 경우

직원들이(지도자 포함) 최소한 다음에 나와 있는 시간 정도는 자유롭게 쓸 수 있도록 하는가?

A. 매일 - 최소한 2시간 정도

B. 전체 고용 기간

1. 12시간 정도로 각각 두 주마다 24시간이나 그 이상
2. 우선적으로 캠프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장해를 입은 사람을 위한 것이 라면 - 각각 두 주마다 24시간 씩

5) 프로그램(Program)

(D-1)

직원과 공유되는 야영자 개발을 위한 특정 목적에 대한 기록된 보고서가 있는가?

(D-2)

도전과 성취감을 맛 볼 수 있는 기회를 야영자에게 제공하는 3가지 이상의 프로그램 활동이 있는가?

(D-3)

균형을 이루기 위하여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활동들을 제공하는가?

1. 정적인 활동/동적인 활동
2. 개별 활동/소집단 활동/전체집단 활동

(D-4)

야영자에 대한 책임감과 환경적인 인식을 개발하기 위하여 캠프는 아래의 사항들을 다루는 최소한 하나의 활동을 위해 야외를 사용하는가?

- A. 자연 환경에 대한 인식
- B. 생태학적으로 책임이 있는 실습

(D-5)

프로그램 활동과 집단 생활 활동에서 야영자가 의사 결정을 내리도록 의도하는 계획된 상황이 있는가?

(D-6)

캠프 진행에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해 훈련 받고 지도감독을 받은 활동 지도자가 이끌어야 할 프로그램 활동이 필요한가?

- A. 확립된 안전 규칙 강화
- B. 활동에 참가하는 집단과 함께 활동하고,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는가?
- C. 활동에 관련된 환경적인 위험을 확인하고 관리하는가?
- D. 참가자 활동과 관련되어 일어날 수 있는 위급 사태에 대한 보건 절차가 시행되는가?

(D-7)

야영자와 직원이 사용하는 프로그램 장비를 직원이 다음의 사항에 따라 검토하기 위한 훈련을 받는가?

- A. 정기적으로 장비에 대해 안전점검을 하고 손질이 잘 되어 있는 상태에서 보관되는가?

B. 이용자가 사용하기에 적절한가?

(D-8)

각 활동의 지도자나 지도감독자가 증명서를 갖고 있고, 그러한 활동유형에 대한 훈련과 경험을 기록한 증명서가 있는가?

(D-9)

각 활동의 유형을 위해 개발하고,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고 실제로 갖추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 절차는 기록되는가?

1. 참가 필요조건
2. 야영자/직원 지도감독 비율
3. 안전 규칙
4. 위급 사태 절차

(D-10)

실제로 진행 과정에서 활동 장소는 통제되는가?

(D-11)

자격이 있는 활동 지도자가 있고 안전 규칙이 실제 행해질 때만 장비가 야영자와 직원에 의해 사용될 수 있는가?

(D-12)

사선(firing line)과 과녁/화살의 정비 및 재장전 활동을 통제하기 위해 뚜렷한 안전 신호와 사정거리 명령을 사용하기 위해 참가자 모두 훈련을 받는가?

(D-13)

일박여행/단기여행 활동 지도자나 지도감독자는 이러한 일박여행/단기여행 활동 분야에서 훈련이나 경험이 있다는 증명서를 갖고 있는가?

(D-14)

최소한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일박여행/단기 여행 활동이 실제로 다음 사항을 갖도록 기록된 운영절차가 있는가?

1. 참가 필요 조건
2. 야영자/직원 지도감독 비율
3. 안전 규칙
4. 위급 사태 대처 절차

(D-15)

일박여행/단기여행은 사전에 미리 계획된 아래의 세부사항들을 필요로 하고, 주 캠프에 남아 있을 사람을 지명하는 것이 필요한가?

1. 참가자 명부
2. 출발과 돌아오는 시간
3. 날씨가 궂을 때의 계획

그리고 캠프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행과 소풍의 경우

4. 갈 방향 정하기
5. 주 캠프에서 남아 있는 사람과 연락할 수 있는가?

(D-16)

일박여행/단기 여행에 앞서 참가자들이 오리엔테이션을 받을 때 다음 사항들이 쓰이지는가?

1. 안전 규칙
2. 보건과 위생
3. 환경 보호

(D-17)

의료적 도움과 위급 사태 원조방법을 훈련 받은 직원들이 캠프 밖에서 이루어지는 여행을 하는 집단과 함께 하는가?

(D-18)

캠프 밖에서 이루어지는(out-of-camp) 활동 지도자가 집단의 각 구성원에 대한 다음 사항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가?

1. 보건력
2. 보험 정보
3. 의료적 치료나 위급 사태 치료를 받지 않겠다는 종교적인 신념을 갖고 있는가?

(D-19)

일박여행/단기여행 식품 준비나 식품을 저장하지 않고, 단지 캠프나 공공 급수만을 사용할 수 있다면 해당되지 않지만, 다음 사항을 필요로 하는 진행과정에서 아영자와 직원이 훈련을 받는가?

A 모든 식수가 캠프의 공인을 받은 급수 시설로부터 제공되거나 공공 급수에 의해 제공된다면 해당 없음.

A. 모든 식수가 캠프의 공인된 급수를 통해서 제공되거나 다음의 방법 : 끓이기, 거르기, 화학적 처리 - 중 하나 이상의 방법에 의해 정화되는가?

B 1회용 식기류만 사용된 경우 해당 없음.

B. 식기류는 사용 후 청결하게 위생처리 되고, 사용되는 동안에는 오염되지 않도록 잘 보관되는가?

C 음식이 저장되지 않거나 집단에 의해 준비되지 않는다면 해당 없음.

C. 적정 온도에서 썰기 쉬운 식품을 간수하기 위해서, 특수 관리하에 안전하고 위생적으로 준비되고 저장되는가?

D 캠프 난로나 인화성 액체가 사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없음.

D. 캠프 난로와 인화성 액체를 사용하는 사람은 교육 받아야 하며 잘 다룰 수 있을 때까지 지도감독을 받는가?

(D-20)

일박 여행(overnights) 과 소풍이나 여행이 캠프 장소나 자연적인 장소에 자리

잡지 않는다면 해당사항이 없지만, 각 여행이 최소 한도로 다음의 환경 영향 (environmental impact)을 처리할 것이 요구되는가?

1. 집단 크기 제한 - 부지의 환경적 수용력에 기초하여 법률로 정해진 한도를 초과하는가?
2. 쓰레기 처리 - 모든 쓰레기가 실려 나가서 미생물로 분해되거나 그 해당지역에 따른 규칙에 의하여 처분되는가?
3. 비누 - 미생물 분해와 비세정성 비누만 캠프 부지에서 사용되는가?
4. 쓰레기 처리장 - 급수시설이나 캠프 부지로부터 최소한 100피트 정도 떨어져서 위치해 있는가?
5. 개별적인 쓰레기 - 분해를 촉진하는 방법으로 처리되고 환경적으로 바람직한 처리가 되고 다른 야영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가?

(D-21)

모험적이고 도전적인 활동의 지도자나 지도감독자가 이러한 유형의 활동에 대한 훈련과 경험을 기록한 증명서를 갖고 있는가?

(D-22)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모험적이며 도전적인 활동이 실제로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기록된 운영 절차가 있는가?

1. 참가 필요 조건
2. 야영자/직원 지도감독 비율
3. 장비가 적합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를 확인
4. 장비 검사 과정
5. 안전 규칙
6. 위급 사태 경우 구출 절차

(D-23)

모험적이며 도전적인 활동에 참가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

는 절차가 행해지는가?

(D-24)

감시자가 다음 사항을 갖추도록 요구되는가?

- A. 자격이 있을 때까지 적절한 과정에 의해 교육을 받고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받는가?
- B. 어떠한 참가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는가?

(D-25)

등산, 현수하강, 아마추어 동굴 탐험을 할 경우를 제외하고 모든 참가자가 보호모를 착용하는가?

(D-26)

체육 활동을 위해 개발되는 운영 절차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는가?

- 1. 참가 필요 조건
- 2. 야영자/직원 지도감독 비율
- 3. 장비가 적합하고 보호할 수 있는가를 확인
- 4. 장비 검사 과정
- 5. 안전 규칙
- 6. 위급 사태 대처 절차

(D-27)

체육 장비가 관리되는가?

(D-28)

감시자로서 봉사하는 야영자나 직원이 다음 사항을 구비하는가?

- A. 자격이 있을 때까지 적절한 과정에 의해 교육을 받고 직접적으로 지도감독을 받는가?

B. 어떠한 참가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찰할 수 있고 신속하게 도와줄 수 있는가?

(D-29)

차량 활동에 대한 지도자나 지도감독자는 그러한 활동에 대한 훈련이나 경험을 기록한 증명서를 갖고 있는가?

(D-30)

차량활동의 유형을 개발하는 운영 절차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는가?

1. 참가 필요 조건
2. 야영자/직원 지도감독 비율
3. 안전 규칙
4. 위급 사태 절차
5. 장비 검사 절차
6. 사용 장소에 대한 안전 사항 확인

(D-31)

차량 활동에 참가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가?

(D-32)

참가자(야영자와 직원) 모두 보호모를 착용하는가?

(D-33)

접근 제한 지역을 표시한 코스가 있는가?

(D-34)

자전거 활동의 지도자나 지도감독자는 그런 유형의 활동에 대한 훈련과 경험을 기록한 증명서를 갖고 있는가?

(D-35)

자전거 활동 유형을 개발하는 운영 절차는 다음 사항을 구비하는가?

1. 참가 필요 조건
2. 야영자/직원 지도감독 비율
3. 안전 규칙
4. 위급 사태 대처 절차
5. 장비 검사 절차

(D-36)

참가자(야영자와 직원) 모두 보호모를 착용하는가?

(D-37)

자전거 활동에 참가하기 전에 참가자들에게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하는가?

(D-38)

각 활동 지도자나 지도감독자가 그러한 유형의 활동에 대한 훈련이나 경험을 기록한 증명서를 갖고 있는가?

(D-39)

전문화된 각각의 활동 유형을 개발하는 운영 절차가 최소한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지 기록되는가

1. 참가 필요 조건
2. 야영자/직원 지도감독 비율
3. 안전 규칙
4. 위급 사태 대처 절차

2. 부지 인가기준(Standards for Site Approval)

1) 부지와 시설(Site and Facilities)

(SA-1)

현재의 상황과 미래에 요구되는 프로젝트를 평가하는 광범위한 계획이 다음의 각 부문에 걸쳐 지난 3년 간 검토되었는가 :

- A. 부지와 시설 개발과 관리
- B. 사용자 집단에게 제공되는 프로그램과 서비스
- C. 시장
- D. 재정과 경영
- E. 환경 보호와 보존

(SA-2)

캠프 부지나 그 지역에는 외부 생활을 풍부하게 경험할 수 있는 자연적인 자원이 있는가?

(SA-3)

캠프 부지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방 소방서와 치안담당관과 접촉이 이루어졌는가?

(SA-4)

캠프 부지 관리자는 면허 있는 사람이 아래에 나와 있는 소화 기구와 장소에 대해서 매년 정기적인 검사를 하도록 하는가 :

1. 연기 검출기와 다른 검출 장치 - 이용성과 위치,
2. 소화기 - 형태, 위치, 준비성,
3. 난로와 굴뚝,
4. 인화성 물질과 연료를 저장하는 장소와 사용 장소,
5. 공동 화기 사용 장소,
6. 요리 장소

(SA-5)

식수에 사용된 모든 물이 주(state)가 정한 지침에 맞고, 검사를 받았다는 확인서가 있는가?

1. 첫번째로 물을 사용하는 야영자나 직원에 앞서 30일 이내에 주기적인 급수가 이루어지는가?
2. 지난 3개월 이내에 지속적으로 급수가 이루어졌는가
3. 최초의 검사 결과가 주가 정한 지침에 맞지 않는다면, 지방 보건과 직원의 시정 조치가 이루어지는가?

(SA-6)

위급 상황시 안전을 위해서 캠프의 설계도(청사진)는 모든 전기선이 배선된 위치와 두꺼비집(전류 차단 장치), 가스관과 밸브, 급수 개폐기의 위치를 가리키고 있는가?

1. 캠프 부지에서 이용할 수 있는가,
2. 그 지역 사정에 밝은 개인이나 기관의 전화번호가 있는가?

(SA-7)

캠프 관리에서 면허를 가진 사람이 매년 전기에 대한 검진을 하는가?

(SA-8)

캠프에 눈에 띄게 현저한 하수 처리 문제가 있을 때 지방 보건과 직원의 시정조치가 이루어지는가?

(SA-9)

부지 관리자는 집단이 사용하는 장비, 시설, 프로그램 장소에 대해 정기적인 안전 검사를 하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는가?

(SA-10)

캠프 전반에 걸쳐 아래의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유지하는 과정이 이루어지는가?

A. 건물 (화장실을 포함하는), 통로, 활동 장소는 좋은 상태인가?

B. 청결하고 위생적인 환경인가?

(SA-11)

상설 쓰레기 처리 시설은 밀폐된 컨테이너의 수용량이 초과되었을 경우를 대비할 수 있는가?

(SA-12)

캠프 운영 기간 캠프의 장비가 손상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캠프에 보관되어 있는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SA-13)

부지 소유자나 운영자나 부지 직원이 화기나 무기를 소유하고 있을 때, 그것은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

(SA-14)

다음의 주의 사항에 따라 인화성이 있고 폭발하기 쉬우며 독성이 있는 가스나 액체를 취급하는가?

1. 내용물에 대한 라벨이 붙어 있고 뚜껑이 덮인 안전한 용기에 보관되어 있는가
2.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경험자 만이 이 위험 물질들을 다루는가?
3. 식품과 분리된 장소에 보관되어 있는가?

(SA-15)

실제로 동력 장치가 다음의 주의 사항을 필요로 하는가?

1. 필요한 안전 장치가 제공되어 있는가?
2. 손질이 잘 되어 있는가?
3. 훈련을 받은 사람이나 경험자 만이 작동하는가?

(SA-16)

야영자나 직원이 취침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건물은 아래의 안전 사항을 준수하

는가?

- A. 최소한 현관 이외의 비상구가 하나 더 있는가?
- B. 연기 검출 장치는 작동되는가?
- C.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입구가 없는 각 취침 층에서 비상구를 통해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이 있는가?
- D.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은 최소한 비상구 외에 지상으로 나갈 수 있는 입구가 있는 취침 층에 배치 되었는가?

(SA-17)

상설 취침 장소가 다음의 사항에 맞는가?

- 1. 통풍
- 2. 취침자 간격은 최소한 6피트
- 3. 침대 간격은 최소한 30인치
- 4. 특별히 휠체어나 보행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적당한 공간이 있는가?

(SA-18)

침대 위층에서 지는 어린이가 굴러 떨어지는 사고를 막기 위하여 침대 위층에 난간이 설치되어 있는가?

(SA-19)

목욕/샤워 시설은 다음 사항을 규정하는가?

- A. 적정 명 수
 - 1. 모든 캠프 - 15명 당 샤워기 하나 또는 욕조
 - 2.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을 위한 특수 캠프 - 10명 당 샤워기 하나 또는 욕조
- B. 목욕을 돕는 의자, 난간이나 다른 보조 장치가 있는가?

(SA-20)

화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목욕과 샤워와 손씻는 시설에 온수 온도를 제어하는 시

시스템이 있는가?

(SA-21)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이 취침과 식사와 화장실과 프로그램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가?

(SA-22)

다음의 사항을 이용자 집단과 부지 직원에게 알려 주는가?

A. 음식을 준비하고 나르는 장소에서 흡연이 금지되는가?

B. 부지에서 금연 장소가 표시되어 있는가?

(SA-23)

모든 사람들이 날씨가 궂을 때를 위한 숙소를 이용할 수 있는가:

(SA-24)

화장실 숫자는 아래의 비율에 기초할 때 적당한가?

1. 숙박 부지

a. 10명의 여성에 변기 하나

b. 10명의 남성에게 변기 하나

c. 이용자 집단의 10% 이상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면 — 8명의 여성에 변기 하나와 8명의 남성에게 변기 하나

2. 주간 활동 부지

a. 30명의 여성에 변기 하나

b. 50명의 남성에게 변기 하나

c. 사용자 집단의 10% 이상이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이라면 — 20명의 여성에 변기 하나와 30명의 남성에게 변기 하나

(SA-25)

손 닦는 시설은 화장실에 인접해 있고 다음의 비율로 제공되는가?

1. 숙박 부지 — 세면대가 하나 있거나, 10명 당 동시에 5명 이상이 쓸 수 있는 화장실에 최소한 세면대가 두개 있는가?
2. 주간 활동 — 세면대가 하나 있거나, 30명 당 동시에 5명 이상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에 최소한 세면대가 두개 있는가?

(SA-26)

중심 캠프와 생활 공간에 하나 이상의 변기가 있는 화장실에 프라이버시를 위해 최소한 화장실 문이나 커튼이 달려 있는가?

(SA-27)

구덩이나 화학적 처리 화장실은 가려져 있거나 배출 구멍이 있고 화장실 덮개와 자동 폐쇄식 문이 달려 있는가?

(SA-28)

쥐나 토끼와 해충으로부터 음식을 준비하고 저장하는 장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행해지는가 :

(SA-29)

썩기 쉬운 식품을 화씨 45도에서 저장하거나 냉장고가 없는 경우 부지 행정기는 다음의 사항들을 규정하는가 :

1. 모든 냉장 시설에 온도계 설치
2. 식품 서비스 직원과 이용자 집단에 정기적으로 온도를 감시하도록 지시
3. 제어 시스템은 화씨 45도 이상의 온도를 즉시 기록하고 고치는가?

(SA-30)

1회용 도구만이 사용될 경우에, 사용 후 1회용 접시와 식기류를 적절하게 소독하기 위해서 실제로 아래의 과정을 거치는가?

A. 접시 닦기

1. 기계 접시 닦기를 사용할 때, 다음의 사항을 매일 확인하는 기록이 있다 :

- a. 세척 물 온도는 최소한 화씨 100도
- b. 행구는 물은 최소한 화씨 180도, 살균제는 분류 표시에 따라 사용
- 2. 접시들과 식기류를 손으로 닦고자 할 때 실제로 확인하는 순서가 있다.
 - a. 세척과 최초로 행굴 때의 물의 온도는 최소한 화씨 100도
 - b. 두번째 행구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물의 온도는 최소한 화씨 180도, 살균제를 사용하는가?

B. 말리기

모든 접시와 식기류는 공기로 건조되는가?

C. 보관

사용 도중 식기류는 더러워지지 않았는가?

(SA-31)

식사 시설이 제공된다.

- A. 탁자와 탁자 간의 적절한 공간이 있는가?
- B. 벌레를 막을 수 있는가?

(SA-32)

음식 준비와 음식을 나르는 동안 음식이 더러워지는 것을 막기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는 식품 취급자가 있는가?

- A. 화씨 45도와 140도 사이에서 썩기 쉬운 식품을 두는 시간을 최소화하는가?
- B. 음식 준비 동안 청결하고 위생적인 도구만을 사용하는가?
- C. 사용 후에 음식이 닿았던 표면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처리 하는가?
- D. 적정 온도에서도 상하기 쉬운 식품을 요리하고 그대로 유지시킬 수 있는가?
- E. 개인적인 적절한 위생 절차를 실시하는가?

(SA-33)

음식 준비나 청소를 할 경우 사용되지 않는 모든 쓰레기통은 주방과 식사 장소에서 새지 않거나 흡수되지 않는 천으로 안감 처리가 되어 있거나, 꼭맞는 뚜껑이 덮

여서 안전하게 묶여 있는가?

(SA-34)

다음의 사항들이 유지되고 있다는 기록이 있는가?

1. 메뉴
2. 구입한 식품에 대한 기록과 명세서
3. 식사 제공이 계약된 것이라면 —메뉴와 제공되는 식사의 수는 기록되는가?

(SA-35)

제공되는 식사의 영양과 균형을 평가하는 영양사가 계획하거나 승인을 한 메뉴가 제공되는가?

2) 행정 관리(Administration)

(SB-1)

다른 캠프 부지 승인 기준에서 요구되는 사항들에 덧붙여서 위험 사항을 관리하기 위해 다음 항목에 대한 캠프 부지 운영 명세서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A. 캠프 부지에서 특수하게 일어나는 일반적인 보건·안전 사항과, 일어날 수 있는 위급 사태를 확인한다. 이것은 다음의 항목과 관련된다.

1. 캠프 부지에서 특수하게 일어나는 자연적인 위험
2. 캠프 부지에서 특수하게 일어나는 사람에 의한 위험
3. 시설과 장비 운영
4. 사람들을 지도

B. 위의 A에 나와있는 보건·안전 사항과, 일어날 수 있는 위급 사태와 연결된 위험을 줄이고 통제하고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구체적으로 쓴다.

1. 확인된 장소에서 행해지는 부지 안전 규칙
2. 확인된 위험을 통제하는 방법
3. 적절한 보호 장치

4. 이용자 집단이나 직원이 언제 어떻게 그러한 동일한 위험을 다루도록 훈련을 받아야 할지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지는가?

C. A에서 확인된 상황에 적절하게 대응하기 위한 조치를 세우는가?

(SB-2)

이용자 집단에 위급 사태 조치와 안전 규칙을 적은 복사본을 배부하는가?

(SB-3)

다음의 사항들을 사용자 집단에 제공하는 체계가 있는가?

- A. 실종자나 길 잃은 사람을 찾거나 구출하는가?
- B. 치안담당 부서와 소방서를 포함한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가?
- C. 부지 소유자나 그들의 대표자와 접촉을 가졌는가?
- D. 부지에서 재난이 일어날 경우에 조치가 취해지는가?

(SB-4)

부지 소유자는 각 이용자 집단의 책임을 맡은 사람에게 다음의 정보를 포함하는 계약서를 제시하는가?

- 1. 이용에 관하여 (비용, 날짜, 시간, 보험 등),
- 2. 반환 방침,
- 3. 제공되는 서비스,
- 4. 이용할 수 있는 장비와 추가 비용

(SB-5)

부지 관리자가 다음 사항을 사용자 집단에 알리는가?

- 1. 현재 최소한 응급 조치 기준 (Standard First Aid) 이나 여기에 상응하는 곳에서 공인을 받은 사람이 캠프 부지에 있고,
- 2. 위급 사태에 대해서 의사와 병원, 앰블런스를 포함하는 의학적 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장소와 전화번호를 알고 있는가?

(SB-6)

의학적 위급 사태가 발생했을 때 다음 중 어느 것에 의하여 이용자 집단에게 교통편이 제공되는가?

1. 장소
2. 서면으로 작성된 지역사회 긴급 서비스
3. 이용자 집단 자신이 긴급 교통편을 제공

(SB-7)

다음 항목을 사용하고 보관하는 것에 관해 사용자 집단에게 알리는가?

1. 화기와 무기
2. 가솔린, 인화성 액체, 폭발성 있고 독성 있는 물질
3. 손공구와 동력 장치

(SB-8)

승객을 태울 수 없는 차량에 캠프 참가자가 타는 것을 금하는 내용을 알리는가?

(SB-9)

캠프 부지에서 차량 사용에 관계되는 안전 규칙을 사용자 집단에게 제시하는가?

(SB-10)

부지에 대해 다음의 보험 적용 범위가 해당된다는 증명서가 있는가

- A. 프로그램 서비스에 대한 특정 적용 범위를 포함해서 일반적인 책임 적용 범위가(liability coverage) 사용자 집단에 제공되는가?
- B. 건물에 대해서 화재와 위험 보험이 적용되는가?
- C. 보건과 사고, 그리고 각 고용인에 대한 워커의 보상이 적용되는가?
- D. 자동차 보험(적용시)
 1. 차량을 소유하고 있거나 빌린 경우에 보험의 적용 범위와
 2. 본인 소유가 아닌 차량에 대한, 고용주의 책임이나 임대 차량 보험

(SB-11)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재정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가?

1. 계획 예산
2. 수입과 지출 부기 시스템
3. 연말 회계 감사

(SB-12)

필요할 때 법률 조언을 받을 수 있는가?

(SB-13)

다음의 지위에 있는 직원을 위해서 서면으로 기록된 업무 종류를 제공하는가?

- A. 행정 요원
- B. 프로그램 요원
- C. 보건 요원
- D. 지지 요원

(SB-14)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는 고용 합의서를 각 고용인에게 제공하는가?

1. 봉급이나 수당,
2. 고용 조건
3. 혜택
4. 업무 종류와 요원 방침

(SB-15)

직원에게 다음의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요원 방침을 제공하는가 :

1. 보수
2. 휴무 시간 수
3. 휴가
4. 보험

5. 해직 조건
6. 평가 수행
7. 개인적인 행위
8. 특정 서비스의 조건

(SB-16)

직원들에게 직원 조직표가 제공되거나, 직원이 이 표를 이용할 수 있는가?

(SB-17)

정기적으로 이용자 집단을 수송하는 부지의 모든 차량들에 대해 다음의 사항에 따라 기술자가 차량의 기계적인 안전을 점검할 필요가 있는가?

1. 연중 계속적으로 수송할 경우 최소한 연 4회
2. 주기적인 사용에 앞서 3개월 이내

(SB-18)

이용자 집단을 정기적으로 수송하는 모든 차량들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할 때 다음 사항에 대해 기록하는가?

1. 구체적인 점검 횟수
2. 점검을 필요로 하는 것
 - a. 전등
 - b. 타이어
 - c. 와이퍼를 포함하여 전면 유리 선명도,
 - d. 비상 사태 경보 시스템
 - e. 경적
 - f. 브레이크
 - g. 유동액

(SB-19)

응급 조치 도구를 구비해야 하는 부지 직원이나 이용자 집단을 운송하기 위해 모

돈 부지 차량을 필요로 하는가?

(SB-20)

이용자 집단을 정기적으로 운송하는 모든 운전자들을 다음의 사항에 따라 조회하는가?

1. 운전 면허를 가지고 있는가?
2. 운전 면허를 딴 뒤 적어도 매년 그들의 운전 기록이 검토되어 왔는가?

(SB-21)

안전 절차는 이용자 집단을 운송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차량들이 아래의 사항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가?

- A. 차를 타고 여행을 할 때의 안전 규칙이 있는가?
- B. 좌석 벨트와 아동 보호 용구가 있는가?
- C. 규정된 좌석의 수용력 한계 내에서 승객을 탑승시키는가?
- D. 여행을 호위하는가?
- E. 휠체어에 탄 사람을 운송할 때 (선박일 때를 제외하고) 는 다음의 사항을 지키는가?
 1. 휠체어에 탄 사람을 휠체어를 탄 상태에서 좌석 벨트를 매거나,
 2. 차 속에서 휠체어는 고정되고 안전한 상태에 있는가?

(SB-22)

승객들이 안전 규칙과 안전 절차에 대해 강의 받을 필요가 있다는 문서로 기록된 방침이 있는가?

(SB-23)

이용자 집단이 참석하고 있을 때마다 발생할 위급 사태에 대처하기 위한 응급 조치를 하기 위해 아래의 자격 조건을 가진 직원을 필요로 하는가:

- A. 면허 있는 의사나 간호원, 응급 조치 의료 기술자, 진료보조원, 미국 적십자 기준 응급 조치에서 최근 자격을 딴 사람(최소한의 필요 조건), 의료적 응급

처치나 이에 상응하는 자격을 갖추었나?

B. 미국 적십자, 미국 심장 연합회나 이에 상응하는 곳에서 최근에 적절한 심폐기 능소생법 (CPR) 의 자격을 인정 받았는가?

(SB-24)

캠프 부지 직원은 아래의 기록된 절차에 기초하여 보건 관리 훈련을 제공할 책임이 있는가?

1. 캠프 부지 보건 문제에서 그들의 역할과 책임감을 확인하는가?
2. 그들에게 제공된 물품과 장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가?
3. 공인된 의료 요원만이 간호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들을 확인하는가?
4. 의료 치료에서 생긴 쓰레기와 체액을 다룰 때 생기는 위생적인 절차를 확인하는가?

(SB-25)

내무 규정은 매년 면허 있는 의사가 작성한 문서로 공인되는가? 그리고 문서로 기록되어 있는 보건 관리 절차는 매년 면허 있는 의사에 의해 검토되는가?

(SB-26)

캠프 부지 운영 기간 동안 아래에 나와 있는 기록들을 관리하고, 최소한 법적 제한 기간 동안 아래의 기록들을 보관해 두는가?

A. 보건 기록표에 기록되어 있는 정보

1. 날짜, 시간, 부상당하거나 아픈 사람의 이름과
2. 부상과 병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과
3. 보건 시설 이외에서 행해지는 모든 치료에 대한 기술과
4. 일상적인 약물 치료에 대한 관리와
5. 치료하는 평가를 내리는 사람의 서명에 대한 기록이 관리되는가?

B. 전문적인 의료적 치료를 필요로 하는 부상을 결과하는 모든 사고에 대해서 완전하게 기록을 하는가?

(SB-27)

무허가 약품 사용을 막기 위해 모든 약은 캠프 부지 보건 직원이 다음의 사항에 따라 통제하는가?

1.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는가 (냉장이 필요한 것을 포함하여)
2. 다음과 같이 통제되는 것
 - a. 처방약 - 면허 있는 의사의 특정 지침 하에서만 통제되는가
 - b. 처방이 필요 없는 약 - 캠프 부지에서 서면으로 기록된 보건 절차 하에서만 통제되거나 부모/보호자의 지침 하에서만 통제되는가?

(SB-28)

긴급 사태에 따른 응급 조치를 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양호실이나 보건 숙소는 다음의 환경을 마련하는가?

1. 위급 상황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고
2. 응급 조치와 치료 장소가 갖추어져 있으며
3. 화장실이 있으며
4. 급수가 이루어져 있는가?

그리고 주간 활동을 제외하고

5. 50명의 참가자와 직원 당 침상 하나와
6. 격리되고 안정을 취할 수 있는가?

Ⅳ.독일 : 청소년플랜의 제방침

1. 연방청소년 플랜의 방침

1) 일반원칙

(1) 연방청소년플랜을 통하여 청소년복지법(JWG)의 토대로 세워진 계획은 청소년국, 지방청소년국, 최고 지방청소년 당국의 의무를 넘어 청소년 복지사업의 과제를 구체화시키는데 중요성을 가지는 한 청소년복지사업의 영역에서 야기되고 장려된다.

(2) 연방을 통한 장려를 인지하게 되는 것은 연방에만 명시적으로 행정관할권을 부여하지 않는 한 그 과제가 명확하게 초지역적인 성격을 허용할 수 있을 경우이다. 연방관할권을 평가할 때 제일 첫번째로 문제가 되는 것은 청소년 복지사업의 계획이 명확히 초지역적인 성격을 가진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이다. 이것은 어느 한 지방만이 혼자서 그 계획을 효과적으로 장려할 수 없다면 그렇다.

(3) 연방청소년플랜은 젊은이들이 그들의 개성을 자유로이 펼칠 수 있고 그들의 권리를 인지하고 사회와 국가에서 그들의 책임을 다할 수 있게 기여하고자 한다. 거기에서 정치교육은 연방청소년플랜의 요점이다. 정치교육은 연방청소년플랜의 다른 과제들의 중요성 없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연방청소년플랜의 목적을 실현하는데 기여하는 청소년 복지사업의 협력자는 추진사업에 포함될 수 있다. 연방청소년플랜은 청소년 보호사업의 계속적인 전개에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고, 청소년 복지사업의 새로운 길을 확인하는데 개방되어 있다.

(4) 연방정부는 독립 청소년 복지사업의 수행자들과 지방자치단와 그 연맹들과 함께 동반적인 공동작업 속에서 연방청소년플랜을 통해 조언을 받는다. 연방청소년플랜은 청소년 복지사업의 독립성을 인지하면서 이 수행자들을 장려한다.

(5) 독립 청소년 복지사업의 수행자들은 이들이 공통적으로 필요한 목적을 추구

하고 장려할만한 전문분야에서 능력이 있다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들은 기본법의 목적에 유효한 자업과 목적에 상응하고 경제적인 자금이용을 보증해야 한다. 기본법의 목표에 유효한 작업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와 의회 대의제의 의지형성을 요구한다.

(6) 연방청소년플랜을 통한 장려는 규정상 장기적이다. 이 장려책은 적절한 고유의 지도가 전제된다.

(7) 전제조건이 수행자를 장려하기 위한 것인지 아닌지의 결정은(왜냐하면 그 수행자가 기본법의 목표에 유효한 작업을 더 이상 보증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연방청소년관리국이 해야 한다.

(8) 연방장관은 장려된 조치의 결과를 평가하고 공개하도록 할 권리가 있다.

(9) 주로 휴양이나 여행에 쓰이거나 선동적인 목적을 추구하는 조치들은 장려되지 않는다.

(10) 대책들이 독일 - 프랑스 청소년연맹이 과제영역에 있는 한 자금은 연방청소년플랜에서 제공되지 않는다.

2) 장려프로그램, 보조수령자

(1) 청소년연맹 외부에서 실행하는 정치교육

정치교육은 젊은이들에게 사회와 국가에 대한 인식을 전달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인식은 정치과정에 갈등을 판단하게 하며 젊은이들이 자유민주주의 사회질서와 국가질서를 만들어 가는데 협력하는 것과 같은 사회에 대한 의무와 책임과 마찬가지로 권리와 관심사를 인지하게 한다. 보조는 정치교육의 중심적 전문조직과 기관에 지급될 수 있다.

(2) 국제청소년 보호사업

국제청소년 보호사업은 서로다른 나라의 젊은이들을 개인적으로 만나게 하고 국경을 넘어 청소년 복지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수행하는 공동작업과 같이 청소년

보호사업의 실행주체들의 경험을 교환하게 하고 공통적인 배움과 작업을 가능하게 해야 한다. 국제청소년 보호사업은 국제관계처럼 다른 문화와 사회질서를 익혀 배울 수 있도록 청소년들을 도와야 하며 이러한 문화, 사회질서와 논쟁하고 자신의 상황을 더 개선시키는 인식을 하도록 해야 한다. 국제청소년 보호사업은 청소년들이 평화보장과 민주적인 모습을 만들어나가고 더 많은 자유와 사회권리를 위해 세계에서 함께 공동책임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게 해야 한다. 국제청소년 보호사업은 청소년 보호사업의 모든 영역에 걸쳐 있다. 보조는 청소년 보호사업의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통을 필요한 수행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3) 문화교육

청소년의 문화교육은 청소년들에게 사회의 문화적인 삶에 참여하게 하는 길을 열어 놓는다. 문화교육은 예술과 문화와 서로 구별된 접촉을 하게 하고 자기고유의 창조적, 미학적 행동, 특히 음악, 무용, 영화, 연극, 문화, 조형예술, 건축, 사진 비디오 등의 영역에서 흥미를 갖게 해야 한다.

보조는 청소년 문화교육의 중심적인 전문조직과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4) 청소년과 스포츠

① 스포츠 청소년교육

스포츠 청소년교육은 청소년 보호사업과 스포츠가 충분히 보충적으로 제공됨으로써 청소년들의 육체적, 정신적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보조는 청소년 복지사업의 중심적 수행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② 연방청소년 체전

연방청소년 체전은 청소년들이 경기에 참여하기 위해 그들의 개인적인 스포츠 실행능력을 시험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한다. 연방장관은 경기의 개최와 중요 준비의 비용을 부담한다. 연방청소년 체전을 위해 때때로 특별부과가 발표된다.

(5) 사회교육

① 사회봉사 지원자

자발적인 사회봉사는 사회경험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공동의 복지를 위한 책임의식을 강화해야 한다. 자발적인 사회봉사는 무엇보다도 병원, 양로원, 장애인 기관에서 실행된다. 보조는 청소년 복지사업의 중심적 수행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② 사회참여

청소년들은 이웃사람의 복지, 특히 개인적, 사회적으로 손상을 입은 사람을 위해 사회활동에 뛰어들도록 자극되고 그 능력을 길러야 한다. 보조는 청소년 복지사업의 중심적 수행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6) 청소년 사회보호 사업

청소년 사회보호 사업은 개인적인 능력을 펼치지 못하고 사회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없는 청소년들에게 직업교육과 직업의 세계로 들어가 사회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회교육적이며 직업과 관련된 구조책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청소년 사회보호 사업은 청소년 이주민들, 외국인들, 가족과 떨어져 있는 청소년기숙사나 이와 유사한 청소년 복지사업 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젊은이들, 혼자있는 젊은이들에게 손길을 뻗친다.

① 중앙연맹의 청소년 사회보호 사업

보조는 연방보호 사업단체, 청소년 부흥연맹과 그 수행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② 직업의 세계와 관련된 청소년 사회보호 사업

직업의 세계와 관련된 청소년 보호사업은 사회와 직업에 편입해 들어가기 위한 교육이 필요한 청소년과 청소년 실업자와 이 실업에 위협받고 있는 청소년들에게 도움을 주어야 한다. 보조는 청소년 사회보호 사업 수행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 중요과제, 특히 전문상담소, 실무지도, 협력자 교육과

- 지역에 이미 존재하고 있는 기관과 수행자들과의 공동작업에서

- 적절한 사회교육적 조항을 통하여 젊은이들이 직업을 준비하고, 직업

의 토대를 형성하고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관과

- 교육과 상담소 제공을 통해 실업청소년과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직업에 편입될 수 있는 기관을 위해 제공이 기관들은 기
껏해야 5년간 장려될 수 있으며 학문적으로 뒷받침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③ 청소년 이주자와 방랑자들의 편입

동독과 이주지역 출신의 청소년들은 그들의 직업과 사회에 편입할 때 도움을 받아야 한다. 보조는 중앙전문 조직에게 제공될 수 있다.

(7) 장애자에 대한 청소년 보호사업

장애청소년들은 장애자와 정상인이 공동으로 사회적으로 같이 배우고 서로 접촉을 함으로써, 그리고 일반 청소년 보호사업에 참여하여 자기들의 개성을 발휘하고 자기보호 단체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한다. 보조는 청소년 복지사업의 중심적 수행자와 그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8) 중요한 계속적으로 교육시키는 기관

청소년 복지사업에서 협력자들을 계속적으로 교육시키기 위해 보조는 청소년 보호업과 사회사업의 주요한 계속적으로 교육시키는 기관에 제공될 수 있다.

(9) 청소년 복지사업의 전문인력의 국제교환

청소년 복지사업의 전문인력의 국제적 교환을 위해 보조는 청소년 복지사업의 중심 전문조직에 제공될 수 있다.

(10) 청소년 복지사업의 계속적 발전과 새로운 방법의 시험

청소년 복지사업의 계속적 발전을 위한 보조는 프로젝트를 학문적으로 뒷받침하고 평가하는 결과분석을 위해 제공될 수 있다. 이것은 청소년 복지사업에서 대안적 방법을 시험하는 스스로 조직적인 프로젝트에도 적용된다. 보조는 청소년 복지사업

의 수행자에게 제공될 수 있다. 연방장관은 제안을 결정할 때 연방청소년 관리국 위원회를 통해 자문받는다.

(11) 중앙 청소년연맹과 대학생 연맹

청소년연맹과 대학생 연맹은 청소년들의 자기규정과 지도와의 자발적인 결합이다. 이들의 청소년 보호사업은 조직되지 않은 청소년들과 그 동료에게 향한다. 그리고 그 특징은 수행자, 구조, 내용, 방식 등이 다양하다는 점이다. 이들의 청소년 보호사업은 동료와 참가자들의 관심사와 욕구에 방향을 맞추고 이들이 관리 운영에 참여하고 같이 만들어 나간다. 단체와 연맹의 청소년 보호사업은 자기조직과 이들의 개성을 구체화 시킬 경우 다른 사람들과의 공동체적인 행동을 통하여 장려되어야 한다. 청소년연맹과 대학생연맹은 연맹의 내부, 외부에서 청소년들이 정치적, 사회적으로 참여하도록 하고 사회와 국가에서 그들의 구성원을 대표한다.

보조는 ① 독일연방청소년연맹과 이의 구성단체, ② 독일 청소년 스포츠와 그 구성단체, ③ 그 밖의 중요 청소년연맹, ④ 대학생연맹과 같은 정치 청소년연맹과 그 구성단체에 제공될 수 있다. 장려책은 ① 연맹의 작업들이 개인성 교육과 대상자들의 국가시민적 책임에 도움을 제공하고, ② 청소년 보호사업을 자기교육의 질서에 따라 운영하고, ③ 운영과 연맹에 사용할 수 있는 자금을 이용할 때 독립적으로 처리하며, ④ 연맹지도부의 민주적 선거가 규약과 자기교육의 질서에 근거하여 청소년영역을 통해 보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전제로 한다.

청소년연맹은 연방연맹과 최소한 5개의 지방연맹이 주무 최고 지방청소년 당국에 의해 인정받고 연방연맹이 최소 25세 이하의 3,000명의 회원을 유지한다면 장려된다. 대학생연맹은 최소 10개의 전문대에 자리잡고 있어야 하며, 최소 500명의 회원을 유지하고 있어야 장려된다.

(12) 독립 복지사업의 최고연맹

청소년 복지사업 영역의 과제를 위하여 보조는 독립 복지사업 최고연맹과 이 연맹에 종속된 중앙 전문조직들에 제공될 수 있다.

(13) 청소년 복지사업의 중앙 전문조직

청소년 복지사업 영역의 과제를 위해 보조는 중앙 전문조직에 제공될 수 있다.

(14) 베를린 특별계획

연방청소년플랜의 틀내에서 베를린 특별계획은 베를린 청소년 보호사업의 특별한 조건들을 고려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정치교육, 국제청소년 보호사업, 연방지역의 청소년단체 여행, 스포츠 청소년교육이 장려되며, 중앙청소년 연맹과 대학생 연맹의 청소년 보호사업이 장려된다(이 사업은 베를린 청소년 보호사업과 베를린 지방청소년복지위원회의 연방청소년플랜의 과제를 중요시하는 청소년 복지사업의 또다른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베를린 특별계획의 관철과 준비에서 지방청소년 복지위원회가 참여한다. 이 위원회는 그 추천장을 청소년문제에 권한이 있는 상원에 보내며 필요하다면 연방장관게도 보낸다. 개개의 경우에 베를린 특별계획을 관철시킬 때 이런 방침에서 벗어나는 일이 필요하다면 이 예외는 연방장관과 의견일치를 보이는 청소년문제를 담당하는 상원에 의해 규정되어, 적절한 형식으로 널리 알려진다. 연방재무장관과 연방회계감사원은 필요하다면 협력할 수 있다.

(15) 청소년 복지사업 기관의 건물, 시설, 수입, 건물유지

보조는 중앙 청소년 교육기관과 청소년 만남기관을 유지하기 위해, 그리고 특히 국제청소년 보호사업에서 뚜렷하게 나타났고 독일청소년 유스호스텔연맹의 주요기관과 장려책이 일치되었던 청소년 유스호스텔의 건물유지, 수입을 위해 제공될 수 있다.

3) 보조방식과 재정지원 양식, 보조형식

(1) 보조방식

① 프로젝트 장려

보조는 규정상 개개 계획에 대한 보조수령자의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프로젝트를 장려하는 형식으로 제공된다.

② 제도적 장려

예외의 경우에 연방장관의 동의를 얻는 제도적 장려로서의 보조는 보조수령자에게 전체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허가된 경제계획의 토대위에서 제공될 수 있다.

(2) 재정지원양식, 보조형식

할당 재정지원으로서의 보조는 기부금 형식으로 제공된다.

4) 대책, 장려의 수위

(1) 강 좌

강좌는 주로 배움의 성격과 계속적인 교육의 성격을 가진 행사를 일컫는다. 최소 하루에서 4주까지 지속되는 프로그램이 있는 과정을 위해 보조는 총합된 할당지원 형식이다.

— 30,000DM까지 하루당 그리고 참가자당(여행비용을 포함하여)

— 24,000DM까지 하루당 참가자당(여행비용의 50%를 가산하여)

다른 곳에서 숙박하지 않는 참가자들의 경우에는 하루비용은 약 6,000DM감소한다. 만약 프로그램이 첫날 12시 이전에 시작하여 다음날 12시 이후에 끝이 난다면 충분한 하루비용이 첫날과 마지막날을 위해 지급될 수 있다. 다른 경우에는 단지 하루비용 중 절반만 지급된다. 과정의 비용은 강연자, 주임선생, 협력자들을 위해 지급될 수 있는데 이는 이들이 과정이 실시되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지 않는

한에서이다.

여행비용에 대한 보조는 여행비용이 수행자에 의해 양도되거나 참석자에 의해 매 위지는 한 지급된다. 여행비용 보조는 번호 4.7에 따라 여행비용의 50%를 넘지 않을 것이다. 연방지역과 베를린 사이의 동독내에 있는 기차를 이용하는 여행비용은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2) 연구회의

수행자들의 전문작업을 계획하고 평가할 목적으로 선발된 참석자 단체를 초대하는 행사는 연구회의로 장려된다. 배움과 계속적으로 교육하는 특징을 가진 행사를 연구회의라고는 할 수 없다.

연구회의에 대한 보조는 할당지원이다. 이 경우에 보조의 최고금액은 연방여행비용법 여행비용등급 B에 따라 하루비용과 숙박비용으로 실제 여행비용의 50%까지를 가산한 것이다. 다른 곳에서 숙박하지 않는 참석자의 보조를 계산할 때 숙박비용은 제외된다. 출발, 도착시간은 고려되지 않는다. 보조의 최고금액이 초과되지 않는다면 충분히 지불될 수 있다. 보조는 최소한 하루동안 지속되고 5-40명이 참석하는 그러한 연구회의에 만 지급된다.

보조는 개개 행사를 위한 수행자들의 직접적인 비용의 할당지원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는 특히 준비, 실시, 평가를 위한 모든 비용이 포함되는데 여행비용 같은 작업에 드는 자료, 강연자에 대한 사례, 참석자들의 숙박비, 음식제공 등이 포함된다.

(3) 개인비용

보조는 개인비용에도 지급될 수 있다.

- 할당지원방식으로 연방의 공식적 봉사에 적용되는 비율의 85%까지
- 총합된 할당지원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연간 최고금액까지 지급
- 직업교육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는 총합된 할당지원 방식으로 다음과 같이 연간 최고금액까지 지불된다.

- = 1년차 7,800DM
- = 2년차 8,600DM
- = 3년차 9,400DM
- = 4년차 10,400DM

연령그룹 나이	1 21까지	2 21부터	3 27부터	4 31부터	5 39부터	6 43부터	7 51부터
BAT그룹(연방근로자임금율)							
I	—	—	61,560	66,600	74,280	76,920	81,960
IIa	—	52,680	56,640	60,600	66,600	68,640	72,600
I b	—	45,960	51,720	55,569	61,200	63,120	66,960
IIa	—	43,020	43,300	51,780	57,000	58,000	62,340
III	—	39,060	44,400	47,400	50,400	51,960	54,960
IVa	—	37,080	41,220	43,980	46,480	48,000	50,820
IVb	—	34,680	37,920	40,080	42,360	43,440	45,600
V b	—	31,800	34,440	36,360	38,280	39,240	41,160
V c	28,200	28,440	32,040	33,720	35,520	36,360	38,160
VIb	27,180	28,560	30,360	31,320	32,820	33,540	34,860
VII	25,800	27,120	28,560	29,520	30,480	30,960	31,920
VIII	24,480	25,680	27,060	27,960	28,800	29,280	29,580
IXa	23,640	24,720	26,160	27,000	27,480	28,320	28,320
IXb	23,040	24,120	25,320	26,160	27,000	27,360	27,360
X	22,020	23,040	24,240	25,080	25,800	26,280	26,280

보조는 청소년 복지사업의 수행자들이 행하는 전체 활동과 적절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이 보조는 규정상 최소한 2년동안 청소년 복지사업 영역에서 활동하는 수행자들에게만 지급된다. 새로운 직책에 대한 개인비용 보조는 불가피하게 필요할 때만 지급된다. 높게 평가받는 등급이 높은 단체와 같이 인정된 직책을 장려하고 보충해주는 것은 연방장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개인비용에 대한 보조와 함께 교육협력자들에게는 비용총액이 3,000DM까지 매년 지급될 수 있다. 이것은 협력자들의 활동과 직접적 관계에 있는 수행자들의 비용으로 정해져 있다. 여기에는 여행비용, 작업에 필요한 자료, 사무실 재료, 우편, 전화요금 등이 포함된다. 총액은 직책에 실제로 임명되는 시기에만 지급된다. 파트타임 작업의 경우에는 그 비용은 그에 상응하여 감소된다.

(4) 국제청소년 보호사업의 대책

① 일반규정

대책들은 연방지역과 외국에서 장려될 수 있다. 외국에서 진행되는 회담의 수는 연방지역에서 진행되는 회담의 수와 상응해야 한다. 호혜주의 원칙은 가능한한 현실화 되어야 한다. 연방지역에서 제시하는 대책들을 실시하기 위해 독일과 외국참석자들의 프로그램비용, 체류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급될 수 있다.

외국의 대책을 실시하기 위한 독일 참석자들의 여행비용에 대한 보조는 지급될 수 있다. 국제적인 대책들을 준비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이러한 것들이 연방지역에서 개최되고 전체적으로 3일 이상 지속되지 않는한 이에 상응하게 장려된다. 첫날 프로그램이 12시 이전에 시작하여 마지막날 12시 이후로 끝이 난다면 첫날과 마지막날을 위한 충분한 하루비용이 지급될 수 있다. 비용은 대책들이 시행되는 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하지 않는한 강연자, 주임선생, 협력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다. 수행자의 개인비용 총액과 같이 협력자에 대한 할당지원은 고려되지 않는다.

모든 국제적인 대책들을 계획하고 준비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을 주의해야 한다. 국제청소년 보호사업의 행사는 파트너들 사이에서 적절하게 준비되고 통일된 프로그램을 가져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목표단체, 교육목표, 작업방식에 대하여 그리고 주제를 지향하는 프로그램이나 주제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해야 하며 충분한 준비로 평가가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행사의 책임 지도자는 국제청소년 보호사업에서의 경험과 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참가자들이 공동작업하고 자기 창의력을 우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가자들이 우연한 사고, 질병,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충분히 안심하고 있을 수 있게 해야 한다. 알바니아, 불가리아, 소련, 폴란드, 루마니아, CSSR, 헝가리, 그 밖의 유럽국가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대하여 외국 공관은 이 행사가 시작되기 4주전에 주모 외국대표부의 정보를 색인카드를 만들어 교육받아야 한다.

② 청소년들의 만남

다음의 국제청소년 만남을 개최하기 위해 보조는 통합된 할당지원 방식으로 지급

될 수 있다.

- 연방지역과 외국에서 개최되는 독일 청소년단체와 외국 청소년단체의 만남의 행사는 연방지역에서 개최되는 국제청소년 만남 행사에서 적용되는 베를린 여행비용과 같이
 - 연방지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 외국인 참가자와 독일인 참가자에게는 15DM까지
 - 외국에서 개최되는 행사때는 독일 참가자에게 여행비용의 60%까지 지불된다.
- 청소년단체의 봉사과 청소년 사회봉사는 공동작업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세미나와 다른 국제행사와 같이
 - 22DM까지
 - 여행비용의 75%까지
- 연방지역에서 다국가적으로 참석하는 유럽청소년 주간은
 - 22DM까지
- 지속성,참가자 범위, 방법적 교수법적 토대에 따라 상승된 요구에 상응하고 특 히 이에 근거를 주는 국제적 대책들에는
 - 30DM까지
 - 여행비용의 75%까지 지불된다.

외국에서 개최되는 행사에서 보조는 참가자마다 700DM을 넘지 않아야 한다. 부가적으로 통역자에 대한 장려금을 매 행사일마다 50DM까지 보조금이 계산될 수 있다. 이 금액을 넘어서는 통역자에 대한 액수는 연방장관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 국제청소년 만남 행사는 계획과 준비에서 4.5.1의 전제조건과 함께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의되어야 한다.

외국 참가자와 독일 참가자의 숫자관계는 쌍방의 프로그램일 때는 균형이 잡혀야 하고, 다수국의 참가한 대책일 경우에는 적당히 예외에 맞아야 한다. 함께 작업하는 청소년 지도자와 전문인력의 숙자는 전체 참가자 숫자와 적당한 관계에 있어야 한다. 독일 참가자의 최소연령은 14세이다. 예외는 사전에 연방장관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행사는 최소 5—30일 지속되어야 한다. 예외일 경우에는 사전에 연방장관의 동의를 있어야 한다.

③ 청소년 보호사업의 전문인력과 국제적 대책

청소년 보호사업의 전문인력과 국제적 대책들을 위해 보조는 위의 ②에 의해 비율에 따라 총합된 할당지원 방식으로 아니면, 비용계획과 재정지원 계획을 근거로 부족액 지원방식으로 지불되는데

- 청소년 정치관계를 장려하고 확대하는 것과 같은 새로운 복안을 개작하고, 경험을 교화하고, 정보를 유지하는 작업을 함으로써 청소년 보호사업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한 청소년 보호사업의 명예직 전문인력, 상근하는 전문인력, 시간제 고용 전문인력이 있는 다수국 행사와 쌍방행사에 지불될 수 있으며,
- 청소년 보호사업의 주도적인 협력자를 위한 국제전문 회의와 연구회의와 같은 국제청소년 보호사업의 청소년단체 지도자와 협력자를 교육시키고 지도하기 위해 지불된다.

참가자는 계획을 실행하는 점에서 주제에 대해 특별히 전문적인 관계를 나타내야만 한다.

④ 국제청소년 보호사업의 특별조치

국제청소년 보호사업의 특별조치를 지원하기 위해 보조는

- 위의 ②에 의한 비율에 따라 총합된 할당지원 방식으로,
- 비용계획과 재정지원 계획을 근거로 부족액 지원방식으로 지불되며
 - 특별청소년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 정부협상 틀내의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 발전도상국과의 청소년 정치적 공동작업 틀내의 대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불될 수 있다.

⑤ 여행비용

여행비용에 대한 보조비용은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2등석 기차여행에 적용되어 지불된다.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할 경우에는 실제 비용은 2등석 기차비용으로 계산

된다. 50Km 이상일 경우에 인터체인지 요금은 인정된다. 비행기 비용 산정이 승인된다면 독일 루프트한자의 상석에 상응하는 비행기 비용으로 승인되어야 한다.

2. 지방청소년 플랜의 방침 LJPI

1) 일반 장려방침

* 보조목적, 원칙

1.1 지방정부내의 최고 지방청소년국으로서 청소년보호사업의 제안들은 청소년국과 지방청소년국의 직무를 넘어 중요 지방에서 청소년 복지사업의 과제를 구체화하는 한 이 제안들을 야기시키고 장려할 중요성을 가 지고 있다. 이 지방은 예산안에서 보조금을 준비하고 평가함으로써 부분영역인 청소년 복지사업을 위한 이러한 과제들을 이행한다.

1.3 지방장려에서는 다음의 특별한 원칙들이 주목되어야 한다.

1.3.1 청소년 복지사업의 제안들은 원칙적으로 모든 청소년들(아동, 청소년 내지는 6-25세의 젊은이)에게 개발되어 있어야 한다.

1.3.2 보조는 사회적, 정신적, 육체적, 감성적 재질과 능력을 고양시키는 적절한 대책들로 나타난다.

1.3.3 나이에 맞게 청소년들에게 제안들을 계획하고, 실천에 옮길 때 공동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주어져야 한다.

1.3.4 청소년 복지사업의 수행자는 보조수령자로서 제정적인 수행과 명예직 직무수행을 해야 한다.

1.4 보조수령자의 독립성과 다양성, 자립적인 선택과 협력자들의 계속적인 교육과 같은 청소년 보호사업의 독립기관에서 이들이 가지는 권리는 손상받지 않고 남아 있어야 한다.

2) 개별 장려방침

- (1) 청소년 보호사업의 명예직 협력자와 같이 상근하는 협력자와 시간제 고용협력자들의 직업훈련, 직업준비, 전문분야 준비

* 보조목적, 원칙

양질화된 작업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사업과 청소년 사회보호 사업의 명예직 협력자와 같이 상근 협력자와 시간제 고용 협력자들이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교육을 실시한다.

- 개인적 성장과정과 연령때문에 사회교육 전문학교에서 교육을 기대할 수 없는 사람을 국가시험을 치러 검정고시 형식으로 교육자가 되게 준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질화된 교육과정
- 자신의 활동에 필요한 학문을 확대할 수 있는 기회를 협력자들에게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양질화된 계속적인 교양과정

- (2) 상근하는 전문인력을 이용한 청소년 보호사업의 양질화

* 보조목적, 원칙

지방에서 청소년 보호사업을 양질화시키기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행사와 스포츠행사가 계획되고 준비되고 실행된다. 명예직, 시간제로 고용하는 협력자들은 행사가 개최될 때 지원하고 상담하고 돌봐야 할 것이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근하는 청소년 교육강연자의 활동은 정치, 사회, 문화, 직업과 관련된 스포츠 청소년 보호사업의 영역에서 장려된다.

- (3) 음악교육과 매체교육을 위한 램프아이드 예술원의 문화청소년 보호사업

* 보조목적, 원칙

음악, 문화, 매체교육을 목표로 하는 청소년 보호사업을 양질화시키기 위해 램프아이드 예술원은 음악교육과 매체교육을 위해 장려된다. 이 예술원은 상근하는 협력자

와 시간제 고용 협력자를 대상으로 하는 과정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행사를 청소년 보호사업에서 실시한다. 이론과 실천을 결합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행사는 주로 직업을 수반하면서 실시되어야 한다. 이 분야에서 템와이드예술원의 과제는 새로운 방법과 창조력을 발전시키는 것과 같이 제도 와 단체들을 상담하는 작업이다.

(4) 청소년 보호사업에서의 국제청소년 만남

* 보조목적, 원칙

국경을 넘어 서로 다른 민족의 청소년들이 더 잘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으로서 참가자들의 공동의 삶, 배움, 작업을 가능하게 하는 청소년단체의 국제청소년 만남이 장려된다. 국제 청소년만남은 지도받으며 준비되어야 하며, 양질화된 프로그램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만남의 행사를 위한 대책이 가지는 호혜주의는 보증되어야 한다. 만남의 행사지도자는 특별한 경험을 국제청소년 보호사업에서 지시해야 한다. 참가자의 최소연령은 14세여야 한다. 대책들이 외국에서 실시될 때 최소 14일, 유럽국가에서(베너룩스 3국 제외) 실시될 때는 7일, 베너룩수 3국에서는 적어도 4일 지속되어야 한다.

(5) 독일 정치문제에 대한 정치적 청소년 보호사업

* 보조목적, 원칙

서로 다른 정치, 경제적 상황과 이를 수행하는 두 독일 국가의 사회체제의 정치, 경제적 상황을 직접적으로 관찰하기 위한 서베를린으로의 여행, 동베를린으로의 여행이라는 형식으로 잘 준비된 행사들이 장려된다. 이를 넘어 청소년들의 독일 내부 정보여행과 만남여행은 독일인의 공동체 소속감을 강화시키는데 기여해야 한다. 행사의 지도자는 동독에 대한 특별한 인식을 처리할 수 있어야 한다. 참가자는 여행전에 베를린 도시의 특수한 상황, 동독 국경상태와 같은 독일 정치의 실제 문제에 대하여 정보를 얻어야 할 것이다.

(6) 청소년 보호사업과 청소년 사회보호사업의 특별조치

* 보조목적, 원칙

청소년 보호사업과 청소년 사회보호사업의 계속적 발전과 개선을 위해 청소년 발전을 위한 공식적으로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청소년 정책적으로 중요한 주제와 문제제기를 토론허기 위해 청소년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학문연구와 출판 같은 적절한 행사가 장려된다.

(7) 청소년 교육기관의 청소년 보호사업의 양질화

* 보조목적, 원칙

지방에서 청소년 보호사업의 양질화를 위해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행사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청소년 보호사업의 협력자들을 위한 교육행사를 마련해야 한다. 학문적, 교육적인 전문인력, 청소년 보호사업의 교육목적을 지향하는 양질화된 준비, 실시, 평가가 있는 교육프로그램을 처리하는 교육시설이 장려된다.

(8) 청소년 보호사업에서의 필름서비스

* 보조목적, 원칙

청소년 보호사업에서 이용하기 위해 적당한 필름제공과 분야에 맞는 매체가 투입되도록 한다.

(9) 상근하는 협력자가 있는 공개적인 청소년 여가단체에서의 청소년보호사업

* 보조목적, 원칙

- 1.1 연합적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조직된 청소년 보호사업의 활동과 함께 청소년들에게는 다른사람들과의 대화, 기분전환을 포함하는 여가시간 형성을 위해 공개적으로 청소년 보호사업을 실시하는 것은 중요한 작업이다. 이것은 명예직 협력자와 같이 상근하는 협력자와 시간제 고용 협력자들이 있는 적당한 공개적인 청소년 여가단체를 필요로 한다. 시

설들은 여가를 방문하는 사람들이 여가시간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작업을 과제로 받아들인다. 교육적 제안들을 가지고 있는 협력자들은 이러한 작업들을 넘어서서 사회적 통합, 공동작업, 동의, 공동책임 같은 동료애적인 사회적 행동들을 숙련시키는데 도움을 준다. 이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근하는 협력자가 있는 공개적인 청소년 여가기관이 장려 된다.

- 1.2 공개적 청소년 여가단체는 모든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개별 방문을 할 수 있도록 개방되어야 한다. 이에 필요한 공간적, 개인적 요구를 우선적으로 보증할 때 이 기관은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진 청소년들이 단체로 방문할 때 적절하게 개방될 수 있다.
- 1.3 시설들은 그 작업의 방법과 범위를 이용하는 것과 같이 공간제공과 설비를 통해 양질화된 여가시간 작업과 교육작업의 필요에 상응해야 한다.
- 1.4 제공할 것들을 계획하고 관철시킬 때 방문자들의 공동작업을 위해서 수행자들에 의해 특별 공동작업위원회가 계획되어야 한다.
- 1.5 부모들과 도시단체들은 적절한 형식으로 청소년 보호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10) 상근하는 협력자가 없는 공개적 청소년 여가단체의 청소년 보호사업

* 보조목적, 원칙

- 1.1 청소년들을 위해 공개적으로 제공을 하는 작업을 강화하기 위해 양질화된 상근 협력자와 명예직 협력자의 지도아래 공개적 청소년 보호사업을 실시하는 청소년 여가단체가 장려된다.
- 1.2 시설들은 공개적 청소년 보호사업의 행사기간동안 모든 아동들과 청소년들에게 개별방문이 개방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기관의 공간프로그램과 그 시설들은 공개적 청소년 보호사업의 대책들에 적절해야 한다.

(11) 상근하는 교육 전문인력의 청소년 기숙사 담당

* 보조목적, 원칙

청소년 기숙사에서 청소년을 위한 정치, 사회, 문화적 청소년 보호사업같이 생활에 필요한 도움, 직업을 얻는데 필요한 도움, 여가시간을 형성하는데 필요한 도움을 주기 위해 상근하는 시설지도자 교육의 활동이 장려된다.

(12)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 편입하는 과도기에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사회교육적 도움

프로그램 1 : 학교졸업과 직업훈련 졸업을 보충하는 “교육과정”

* 보조목적, 원칙

상응하는 학교의 제공과 계속적 교육의 제공이 없는 그런 청소년들을 위해, 학업 중단 내지는 실업학교 졸업을 보충하기 위해 사회교육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과정의 실시가 장려된다. 교육적 보호는 개인교육, 집단교육 형식으로 생활, 직업, 여가시간을 돕는 방향으로 실시되어 참가자들의 품성을 안정화시키는 일에 복무한다.

프로그램 2 : 실업청소년과 실업에 위협받는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행사

* 보조목적, 원칙

실업청소년과 실업에 위협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현존 존재하는 사회교육적인 상담과 보호를 보충하기 위해 개인을 안정화시키고 사회화를 촉진하는 교육행사의 실시가 장려된다.

프로그램 3 : 직업을 얻기 위한 과정과 프로젝트 제공

* 보조목적, 원칙

학교에서의 실패와 직업훈련 노동시장의 어려움에서 겪는 결핍된 상황때문에 당황해 하는 청소년들의 경우에 직업적, 사회거 생활의 전망을 지원해 주기 위해 직업을 얻기 위한 지속적인 과정과 프로젝트 제공이 장려된다. 청소년들이 이 과정에 머물 수 있는 기간은 규정상 9달을 넘지 않는다. 주로 장려되고 있는 것은 직업교육, 일반교양, 직업준비 대책 등의 조치들이다. 참가자들은 규정상 과정에 들어올 때 21

제를 넘어서는 않된다.

프로그램 4 : 앞선 상담과 후속보호

* 보조목적, 원칙

실업청소년과 실업에 위협받는 청소년들에게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 편입해 들어가는 과도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청소년 실업을 직접적으로 해결하고 청소년 실업의 결과에 도움을 주는 것을 제공하기 위한 보충으로서 앞선 상담과 후속 보호가 장려된다. 이 때 상담은 규정상 청소년들을 직업적 내지는 일반교양면에서 양질화시키는데 복무하는 대책들과 결합되어 이루어져야 한다.

사회교육적 상담과 보호는 다른 직책들과 함께(예를들어 청소년국, 학교, 의회, 계속적인 교육을 수행하는 사람) 공동작업하면서 청소년들의 관심사를 고려하면서 실업청소년과 실업에 위협받는 청소년들을 위해 직업적, 사회적 전망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리고 청소년 실업을 극복하기 위해 지역적인 대책을 만들도록 해야 한다. 이 수행자들은 노동당국, 학교, 의회, 복지연맹의 대표자들이 속해 있는 지역 노동단체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끼쳐야 한다. 주무 청소년국은 투입된 전문인력의 작업을 특별히 실업 청소년들을 위해 모든 지역적 제공을 충분히 이용하고 계획함으로써 지원해야 한다.

프로그램 5 : 모델계획

* 보조목적, 원칙

1.1 학교에서 직업의 세계로 들어가는데 필요한 사회교육적 도움을 제시하는 새로운 형식은 3년까지 장려할 수 있다. 2년간 장려를 연장하는 것이 허가된다.

1.2 모델계획은 실업청소년과 실업에 위협받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방법적 내용적 발전을 인식하게 해 준다. 그리고 이것은 근본적으로 이 초안을 시험해 보아 지방까지 확대시키는데 적절해야 한다.

계획을 충분히 계획하고 평가하는 작업은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V. 일본 : 청소년단체활동의 운영과 평가

1. 청소년단체 조직과 운영

1) 청소년단체활동의 의의

청소년단체는 청소년이 가지고 있는 집단에 대한 욕구를 기초로 하여 어떤 목적을 중심으로 자주적으로 결성하고, 자연적 활동을 행하는 중간집단이다. 청소년은 그 집단에서 여러가지 영향을 받지만, 그것이 바람직한 집단이라면 청소년의 생활이 한층 풍부하게 되고, 좋은 인간관계의 태도가 길러진다.

청소년단체의 목적은, 단체에 따라 다소 다르지만 공통된 것은 청소년 개개인의 성장을 도모하는 것과, 사회의 발전 및 지역발전에 공헌하는 것이다. 즉, 하나는 회원상호의 교류 및 단체활동을 통하여 청소년의 생활방법을 고찰하고, 집단활동 속에서 모든 것을 바르게 판단하는 합리성과 주체성을 가진 청소년으로 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밝고 풍요로운 사회건설을 목표로 동료형성과 실천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것이다.

청소년단체활동의 의의는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1) 단체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사회인으로 되는데에 필요한 지식.기술을 몸에 익혀서 단체에 소속하는 기쁨을 통하여 안정된 태도를 몸에 익힌다.
- (2) 단체활동을 통하여 자기를 발견하고, 개성을 신장시켜가는 태도를 기른다.
- (3) 친밀한 대인관계에 의해 교우관계 방식을 체득하는 것과 더불어 동료가 당면하고 있는 문제에 신중히 대처하고, 협력하는 태도를 양성할 수 있다.
- (4) 단체활동 속에서 책임을 분담하고 모든 것을 완수하는 기쁨을 알 수 있다.
- (5) 단체의 일원으로서 행동함으로써 단체와 사회의 질서를 중시하고 행동하는 태도를 키울 수 있다.
- (6) 단체를 통하여 자원봉사활동과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있어서 청소년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함과 더불어 국가, 사회와 지역에서의 관심을 높힐 수 있다.

(7) 여가를 이용하여 스포츠, 레크리에이션 문화활동에 참여하고, 청소년문화의 창조와 계승에 참여할 수 있다.

(8) 일생동안의 친구를 얻을 수 있다.

즉, 청소년 집단활동에 참여하는 것은, 청소년이 동료와 접촉, 교류함으로써 스스로를 연마하고 그 단체활동을 통해서 규율, 협동, 봉사의 정신을 키우고, 사회의 일원으로 지녀야 할 태도를 배울 수 있다는 큰 의의를 가지고 있다.

2) 단체의 결성과 조직의 확립

청소년의 단체, 그룹, 씨클 등의 청소년집단에는 몇명의 청소년이 자연스러이 모여서 결성되는 자연발생집단과 처음부터 어떤 의도하에 결성된 의도적 형성집단이 있다. 어느 것이나 다음과 같은 사항이 동기가 되어 결성되는 경우가 많다.

- (1) 지리적인 거리가 가깝다고 하는 친근감
- (2) 공통의 관심 또는 신조를 가진다고 하는 공통감
- (3) 상호 개인적인 조건의 유사성에 의한 공감
- (4) 상호 부족한 조건을 보완한다든가 만족시키는 욕구와 필요
- (5) 상호 협동에 의해 혼자서 불가능한 사항에 대응하고자 하는 요구 및 필요
- (6) 공통 또는 동질의 소집단이, 특히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제휴조직을 만들고자 하는 요구와 필요

이러한 동기로 형성된 청소년단체가 조직으로서 확립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관점이 필요하다.

- (1) 단체의 목표를 명확히 한다. 단체로서 완수하고자 하는, 또한 규명하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 것이 중요하다.
- (2) 활동의 내용·영역을 명시한다. 단체의 목표방침에 기초하여, 무엇을 어느만큼 행하는가라는 활동내용, 그 양과 영역을 결정한다.

(3) 역할을 결정하고 명시한다. 단체의 성격, 방침 등에서 운영이 원활할 수 있는 역할분담이 명문화되고, 회원에게 명시되는 것이 필요하다.

(4) 운영상의 제규칙의 정비를 도모한다. 단체운영의 골자라고도 할 수 있는 제규칙을 성문화하고, 단체의 개요가 회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되는 것이 중요하다.

(5) 협력, 지원단체와 관련기관과의 연락제휴. 단체활동이 관계되는 과정 속에서 다른 단체와 기관, 사람들과의 관계가 생기고,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원을 받는다는 가, 협력을 얻어야만 하는 경우가 많다.

3) 단체의 조직기구

하나의 집단조직이 회장과 사무국 및 의결기관을 가지고 회계를 확립하고, 자주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것은 매우 일반적인 일이다. 또 누구나 이룰 수 있는 임무를 가져야만 한다. 다른 이상에 기초하여 완전한 조직화를 생각하지만 조직기구를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고, 활동에 따라 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만 회원의 의사를 바르게 반영하는 것이 가능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기구로 되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단체 규모와 성격에 의해서 다소 차이가 있는 것도 있지만 대개 공통된 조직기구로는 다음을 거론할 수 있다.

(1) 집행기관 : 회장, 부회장, 사무국(서기, 회계), 임원회(이사회)

(2) 의결기관 : 총회, 대의원회

(3) 활동기관 : 위원회, 전문부회, 사업부

집행기관은 회원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집행해가는 책임을 가지는 것이고, 단체의 의사 결정하는 것은 회원의 총의를 반영할 수 있는 의결기관이다. 활동기관은 집행기관과 하나가 되어 각 부문별 활동을 분담하고 계획하고 실행해 가는 것이다.

회장은 대외적인 단체를 대표하고, 내부적으로는 단체의 모든 임무를 통괄한다.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부재 또는 사고시에는 회장을 대리한다. 사무국은 회장들의 지시를 받아 단체운영의 사무를 행하는 것이고, 내외의 연락조정을 맡는

다.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서기, 회계 등 필요한 국원이 배치된다.

총회는 단체의 최고 의결기관이고, 회원이 전원출석하여 개최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회원의 대표자에 의한 대의원회에 의해 총회를 거치는 일도 있다. 역시, 임원회는 총회에서 부여된 권한과 규약이 규정된 권한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단체의 의사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고, 그 역할은 단체활동의 기획과 집행에 있다.

단체활동을 위한 기관은 단체의 목적 및 목표, 성격에 따라 다양한 형태가 조직된다. 광보위원회를 성정한다든가, 학습·체육·문화·여자부 등 전문부회를 설치하는 것 외에 조직강화와 조사연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일도 있다.

4) 단체규약의 작성

단체의 규약은 그 얼굴이고, 골격이고, 심장이다. 규약을 일독함으로써 단체의 전 내용이 이해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단체운영의 항상성을 부여하기 위해서도 규약은 반드시 필요하다.

규약은 단체의 목적, 구성원, 조직, 사업내용, 예산 등을 명확히 하는 것이고, 단체의 활동이 목적에 따르고 있는가 아닌가 반성 및 검토를 하게 하는 목표로도 된다. 규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정해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1) 단체의 명칭과 사무소(연락장소)

(2) 목적, 단체의 목적은 청소년의 사회생활에 밀착된 활동과 결합되는 것이어야만 한다.

(3) 회원, 구성원으로서의 자격과 입회, 퇴회의 수속 등

(4) 사업, 단체의 주된 사업내용을 정하는 것

(5) 조직기구, 단체의 주된 회의와 역할을 정하는 것

(6) 임원, 임원의 명칭 및 직무와 임원의 임기 및 선출방법 등에 대해 정한다.

(7) 회계, 회비는 단체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하는 것이고, 경제사정 및 회원의 부담능력 등을 살피서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8) 부칙, 단체에 따라서는 규약이 없다든지 있어도 구태의연한 규약은 그대로 사고 있는 예도 있지만 임원이 원래, 전회원이 규약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시대 및 단체의 실정에 따른 내용을 갖도록 세심한 배려를 할 필요가 있다.

5) 단체의 예산과 경리

청소년단체활동을 활발히 하기 위해서는 단체의 방침 및 계획과 더불어 활동에 필요한 경비가 필요하다. 단체의 경비는 활동계획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생 각나는대로 경리를 보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예산이란 한마디로 말 해, 일정기간 (회계년도)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의 견적이다.

수입재원의 기초는 자체재원으로서의 회비이다. 회비의 납입에 의해 회원에게 단 체에 대한 권리의식을 갖게하고, 단체에의 관심을 강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회비 는 단체가 활동하기에 충분한 액수가 필요하지만 단체의 실정 및 단원의 구성 등을 생각하여 총회에서 정말로 필요한가 아닌가를 검토하고, 전원의 의사로 결정하는 것 이 중요하다.

수입에 대해서는 회비 외의 사업수입, 보조금, 기부금, 공취부담금 등이 있지만 이것에 대해서는 확실한 수입액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부·현, 시정촌 등에서의 보조금에 대해서는 그 대상사업 및 용도를 명확히 구분하여 놓는 것이 필 요하다.

지출예산의 계획은 무리없이 일상생활이 활발하게 행해지도록 배려해야 한다.

예산서의 양식에 대해서는 특히 정해진 것은 없지만 어디까지나 공금을 취급하는 것이므로 정확하고 알기 쉽게 의심을 품지 않도록 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지방공공 단체에서 만드는 양식에 준하여 가능한 한 간단하게 하도록 공부하면 좋다. 수입부 에는 자체재원을 필두로 하여, 다음에는 보조금, 기부금, 잡수입의 순서로 배열한다. 또한 지출부에는 우선 사무국운영비 등 경상비로 시작하여, 사업비, 부담금, 예비비 등의 순서로 배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산의 집행에 대해 중요한 것은 수입이 예산에 없는 수입이상의 금액이어도, 수

입으로써 받아들이는 것이 가능하지만 지출예산은 비목에 없는 것 및 정해진 금액 이상의 지출은 해서는 안되는 원칙이 있다. 물론, 예산은 어디까지나 계획이고, 건적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산 그대로 지출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지출의 비목과 금액을 수정하는 경우에는 예산결정과 동일한 수속을 취하고, 적어도 임원회 등에서 멋대로 유용하는 것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예산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회원의 승인을 구하여 장래의 예산조정상의 참고로도 하기 위해 결산을 해야만 한다. 결산은 일정기간에 있어서 수입지출의 총액과 잔액도 명확히 하고, 예산과 대비된 결산서를 작성한다.

또한, 단체의 경리에 필요한 회계관계의 제장부를 정비하는 것은 사무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나 엄정한 회계와 적절한 예산의 집행에 부족한 것이 없게 하는 것이다. 최소한, 다음의 장부를 비치하는 것이 필요하다.

① 예산색인부 ② 현금출납부 ③ 수입부 ④ 증빙서류철

특히 증빙은 수입, 지출의 행위가 있던 일의 증거이므로 중요하게 보존해야만 한다. 또한, 그 증빙에는 반드시 지출비목을 기입하고, 그 지출비목 순으로, 더구나 지출월일 순으로 정리해야 만 제장부와의 대조 및 계산 때에 편리하다.

6) 광보활동

청소년단체활동의 통합은 조직적으로 행동적으로 회원상호의 목적 및 의견이 밀접히 제휴를 가지는 것에 의해 성립된다. 광보활동에 따라 회원상호가 가슴을 열고, 마음에서 말하고, 상담하고, 의견의 전달교류를 행하는 일은 특히 유효하고 바람직한 것이다. 또한, 한 사람의 회원의 주장 및 의견이 정확하고 보다 많은 회원에게 전달하기 이해 광보활동은 가장 필요로되는 것이다.

광보활동의 매체로는 광범위한 대상자에 대하여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지이다. 널리 사회일반의 사람들에게 어떤 사항을 이해시키려 한다면, 단체활동을 지지하게 하기 위해 회원 이외에도 충분히 의사전달을 도모하는 것이다.

기관지는 단체의 운영을 맡는 측의 사람들이 그 활동의 상태를 회원에게 알리기

위해 보고사항, 활동목표, 단체가 직면하는 과제 등을 중심으로 하는 것과, 회원의
요망과 의견, 주장 등을 중심으로 하고, 단체의 회원상호간의 의사전달을 주안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문집은 주로 회원의 주장 및 평상시의 활동기록, 문예작품, 감상문 등을 수록한
것으로 단체의 학습활동의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전시법은 벽신문, 그래프, 포스터, 표 등에 의해 단체활동을 주지시키는 방법이고,
읽는 것보다도 보는 형태를 취한다.

방송이용법은 방송시설을 활용하여 단체활동의 사항에 대해 방송하는 것이다. 라
디오, TV는 뉴스성이 없다고 실현이 곤란하지만 유선방송 등의 활용을 공부하는
것에 따라 충분히 가능하다.

그외에 신문, 잡지의 알람판을 활용한다든가 하는 수단 등도 고려할 수 있다.

2. 청소년단체활동의 기획과 전개

1) 활동계획 프로그램의 필요성

청소년단체 전체의 활동계획 또는 개별의 사업계획에 관한 일을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이 보통이다. 프로그램은 활동내용의 선택과 그 배열을 의미하지만 단체활
동을 계획적, 조직적으로 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필요한 것이다.

(1) 계획의 검토: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 의해 사업을 여러가지 각도에서 검토하
는 것이 가능하다.

(2) 정보의 전달: 계획서에 의해 계획작성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다.

(3) 대행의 가능: 계획서에 의해 책임자가 부재의 경우에도 그외의 사람이 대행하
는 것이 가능하다.

(4) 사후의 반성평가: 계획서에 기초하여 사후에 평가할 수 있다.

(5) 면밀한 계획 : 충분한 계획서라면 사업의 대부분은 성공했다고 할 수 있다. 무리한 계획은 실패를 초래한다.

2)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사상

(1) 기본방침 : 프로그램에 있어서는 단체의 활동목표를 기조로 하는 것, 때로는 충분히 자유로운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즐거운 경우도 필요하지만, 기본선에 입각하여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욕구조사 : 입안에 있어서는 회원의 관심과 욕구를 고려하는 것, 회원 한 사람마다 만족감과 자질의 향상은 단체전체의 사기향상에 관련된다. 특정인의 흥미 및 관심만으로 프로그램을 작성해서는 안된다.

(3) 기획방법 : 단체 전체의 것으로 하기 위해 회원이 프로그램의 작성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회원의 수가 많을 때는 기획위원회를 설치하여 회원의 의식을 집약한 뒤에 기획의 구체화를 도모하는 것이 좋다.

(4) 기업내용 : 프로그램의 단조화를 피하고, 변화를 주는 것, 처음에는 흥미를 끄고 있던 것도 같은 것을 반복한다면 신선함을 잃고, 싫증난다. 항상 공부에 집중하고, 새로운 것만이 아니라, 내용적으로 향상성·전진성을 함께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기본태도 : 프로그램의 기획·실시의 과정에서는 보다 좋은 인간관계를 만드는 것에 기본적 태도를 가지는 것, 단체활동이 그 목적에 따라 진행되기 위해서는 인간관계가 중요하다. 모든 기회를 잡아 보다 나은 인간관계가 만들어지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3) 프로그램의 종류

프로그램은 영역별과 기간별의 종류로 나눌 수 있다.

(1) 영역별 프로그램

- 종합계획 부문별 계획을 목표마다 정리한 것

- 부문별 계획 각 활동부문 마다의 계획(체육부.문화부.산업부 등)

(2) 기간별 프로그램

- 연간계획 월별로 사업명·내용·방법·장소 등을 나타낸다.
- 월간계획 기일별로 사업명·내용·방법·장소 등을 나타낸다.
- 사업별 계획 사업마다 내용·방법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다.

4) 프로그램의 항목

사업계획으로 포함될 만한 내용항목으로서는 다음의 것이 생각될 수 있다.

- (1) 명칭(계획안, 요강안)
- (2) 목적, 취지(무엇을 위한)
- (3) 주최, 공최(누가 할 것인가)
- (4) 일시(언제, 어느만큼의 시간으로)
- (5) 장소(어디로 가는가, 회장)
- (6) 방법(어떻게 하여)
- (7) 대상(누구를 위해 행하는가)
- (8) 경비(예산을 수립한다. 수지는 명확히)
- (9) PR(누가 쓸 것인가, 어떻게 배포하는가, 어디에 붙이는가)
- (10) 기타(안내, 준비, 정돈)

5) 단체활동의 내용과 방법

청소년단체의 활동내용은 단체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각각 다르지만, 공통된 내용도 적지 않다. 활동내용을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1) 단체의 목적달성을 주로하는 활동
 - 학습활동
 - 산업.생산.직업에 관한 학습
 - 일반교양에 관한 학습

- 예술·문화에 관한 학습
- 취미·생활기술에 관한 학습
- 단체운영활동
 - 일반사무
 - 회의, 행사
 - 광보
- 자원봉사활동과 커뮤니티 활동
 - 환경미화운동, 문화재·자연보호활동·교통안전운동, 아동회육성활동, 고향운동 등

(2) 회원의 친목·교류 등 집단유지를 주로 하는 활동

- 야외활동
 - 하이킹, 싸이클링, 캠프, 오리엔티어링(Orienteering) 등
- 스포츠 활동
 - 각종의 체육·스포츠 경기의 연습·시합 등
- 친목활동, 교환회, 환송영회, 생일모임, 크리스마스, 신년회, 망년회, 레크리에이션 등 활동내용에 따라 각종의 방법이 있지만, 활동 및 사업의 목표와 형태에 의해 몇가지 방법을 조합시켜 프로그램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강의·강화·강연
- 토의·토론·협의
- 실습·실기·실연
- 시찰·견학·조사·감상
- 연구발표·의견발표·창작발표
- 영상·투영·방송의 시청
- 회지·회보·보고서 등의 작성
- 단체숙박연수·훈련

또한, 각종사업에 붙여지는 명칭과 그 기본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강습회 : 새로운 지식·기능을 부여 전달하는 것과 함께 보다 높은 지식·보충을 목적으로 한 비교적 장기에 걸친 집회를 말한다.

② 연수회 : 이미 얻은 지식이 실제 활동에 의해 확인된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보다 높은 실천활동으로 향하기 위해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상호학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집회를 말한다.

③ 연구협의회 : 참가자가 서로 정보자료를 제공하고, 공동연구, 해결을 위해 협의하고, 실천을 위한 방향을 찾아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집회를 말한다.

④ 연구집회 : 참여자 각자의 경험 및 과제를 중심으로 하여, 조언 지도자가 함께 연구·조사하고, 공통의 성과를 거두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집회를 말한다.

⑤ 강좌 : 일정의 학습계획에 기초하여 대상을 정하고 비교적 장기에 걸쳐, 계속적 또는 조직적인 학습을 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집회를 말한다.

⑥ 대회 : 일정의 개최의도에 기초하여 비교적 다수의 참가자를 대상으로 하여 행해지는 것으로, 서로 실천의 성과를 서로 제공하고 과제의 공통점을 중심으로 연구토의하고, 실천활동과 실제에 있어서 의식의 태도 및 역할을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집회를 말한다.

6) 프로그램 편성상 유의점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생각에 기초하여 프로그램의 편성시에 특히 유의해야 할 관점은 다음과 같다.

(1) 초점성 : 그다지 총화적으로 무언가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증점적으로 좁히는 것

(2) 탄력성 : 한번 정해진 프로그램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현황에 따라 이해하는 것이 가능한 것

(3) 생활성 : 실제생활로 밀착된, 회원의 구체적 요구에 근거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

(4) 적시성 :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따라 가는 것, 의의 있는 사회적 행사 등

에 맞추어 가는 것이 중요하다.

(5) 발전성 : 회원에게 이것으로 끝났다고 하는 완결성이 아니라 연속적으로 특히 높은 요구에 관련된 사기를 가지게 배려하는 것

7) 프로그램의 기획자

프로그램을 기획할 때, 항상 주의해야할 사항은 열거한다면 다음과 같다.

- 항상 메모·노트와 연필을 지닌다.
- 넓게 바라보고 상세히 관찰
- 회의적 태도의 보유
- 다양한 방법
- 단념하지 않는다.
- 불완전함의 자각과 개선
- 사람을 본받아 공부
- 현장에서 생각한다.
- 회원의 말을 듣는다.
- 타인의 계획을 살린다.
- 최선과 최악의 경우의 상정
- 독창력, 상상
- 같은 일은 두번하지 않는다.
- 필요한 것을 목표로 한다.
- 많은 친구들과 잘 대화한다.
- 반대의 입장에서 잘 생각한다.
- 사실을 바르게 받아들인다.
- 습관에 얽매이지 않는다.

3. 청소년단체활동의 평가와 개선

1) 단체활동의 평가

평가는 활동의 과정, 결과의 가치판단이고, 프로그램이 어느 정도까지 목적이 달성했는가를 음미하고, 평정하는 일이다. 활동의 총괄이라고도 할 만한 일은 소홀히 해서는 다음 활동에의 발걸음을 확실히 이룰 수 없다. 평가가 가치의 판단인 이상, 그것은 회원 누구나가 긍정하는 타당성과 신뢰성을 가진 것이 요구된다. 청소년단체의 평가는 그 목적에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효과를 알기 위해 : 단체활동으로서, 어떤 사업이 실시한 결과가 예상한 목표에 어느정도 도달했느냐, 그것이 미친 영향 및 효과는 어떠한가를 알기 위해 행한다.

(2) 활동의 방향을 택하기 위해 : 회원의 욕구, 지역사회에 요청 등 객관적으로 취하고 단체활동의 새로운 방향의 수립을 하기 위해 단서로 삼는다.

(3) 간부임원의 지도지침으로 하기 위해 : 회원에 대한 지도내용 및 지도방법의 타당성, 회원에 대한 지도성의 적정에 대해 평가하고 그 결과와 금후의 지침으로 한다.

(4) 조직·운영의 개선에 기여하기 위해 : 단체의 보다 나은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어떠한 조직형태가 적합한가를 찾아 행하는 평가에서 단체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에 바람직한 조직운영의 방향을 모색한다. 또한, 평가를 누가 행하는가

즉, 평가의 주체에 따라 분류하면,

- 청소년단체의 지도, 원조의 입장에 선 사람이 행하는 평가
- 단체임원이 행하는 평가
- 회원 스스로 행하는 평가
- 사회일반에 의한 평가

등으로 분류된다.

2) 평가의 착안점

평가의 대상이 단체활동의 전 영역, 전과정에 걸쳐 있다면 누가 어떠한 목적에서 평가를 실시하는가가 확실히 되어야만 한다. 평가의 실시주체에 따라 그 착안점은 다르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단체 스스로 행하는 평가, 단체 및 지도원조하는 입장에 있는 사람이 행하는 평가를 전제로 하여 그 착안점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회원에 대하여

- 목적의식을 가지고 가입했는가
- 회원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 규약의 주요사항을 알고 있는가
- 집회의 출석율은 어떠한가
- 단체의 임원의 이름, 사무분담을 알고 있는가
- 단체의 목적 및 사업내용을 알고 있는가
- 회비를 납입하고 있는가
- 일상 행해지는 소집단활동에 참가하고 있는가
- 회원획득의 지원활동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가

(2) 단체임원에 대하여

- 회원의 의향을 존중하고 있는가
- 리더로서의 교양을 겸비하고 있는가
- 리더로서의 인격을 갖추고 있는가
- 리더쉽은 가지고 있는가
- 리더로서 필요한 사회능력(기획.운영)을 가지고 있는가
- 회의 및 사업의 출석현황은 어떠한가
- 타단체와의 우호적 관계를 지킬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 자주적 민주적 단체로서의 대외적 신뢰감은 어떠한가

(3) 단체의 활동·운영에 대하여

- 연간사업계획이 적정히 수립되어 있는가
- 전문부간의 사업내용의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는가
- 전업내용이 전원의 욕구, 지역사회 요청이 가미되어 있는가
-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활동, 문화활동, 교양활동, 체육·레크리에이션 활동의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 회원에 의한 소집단활동이 일상적으로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는가
- 지도자양성을 위한 사업계획이 짜여져 있는가
- 1년에 몇번은 광역에 있는 타단체와의 교류활동이 행해지고 있는가

(4) 프로그램에 대하여

- 프로그램은 회원 모두의 희망 및 요구를 만족시키고 있는가
- 회원이 모두 그것에 진심으로 참가하고 있는가
- 회원이 모두 그것에 참가하고,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지도, 훈련을 받고 있는가
- 레크리에이션의 여러가지 활동이 적당히 도입되고, 잘 활용되고 있는가
- 회원은 창조적인 자기표현을 위해 충분한 기회가 부여되고 있는가
- 회원이 서로 잘 알고 지내며, 친근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가
- 프로그램은 전체로서 변화가 풍부한가
- 회원 중에는 이기적인 동기로 그룹내에 당파를 만든다든가, 그것을 지배하려 한다는가 하는 경우는 없는가
- 지도자는 잘 그 임무를 담당하고 있는가
- 정기모임의 운영방식은 적절한가

그 외에 단체의 조직, 체제, 경리, 광보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생각할 수 있다.

VI. 중·동유럽 : 청소년조직 설립 지원을 위한 제안

Initiative aimed at supporting the setting up of youth structures in central and eastern europe

1. 제안의 배경 Basis for the initiative

동유럽에 있었던 획일된 체제아래의 기존 청소년 조직은 설자리를 잃어버렸으며 많은 조직들은 없어지기도 했다. 이러한 사태는 동서간의 청소년교류가 급속한 감소와 연계되어 있다.

시장 경제체제로의 전환기간 동안 COMECON 국가들에서 발생한 급속한 물가상승과 화폐가치의 하락은 청소년교류에도 영향을 주었다. 사실상 청소년 교류는 거의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획일된 정치체제하의 자산들은 새로운 정부에 의해서 여러번 국유화되었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들을 위한 어떤 배려도 없었으며, 여기에는 청소년활동을 촉진하는 어떠한 국가 또는 지역적 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경제적 상황은 점점 어려워지고 있으며 특히 청소년 조직의 경우 자발적인 협의체에 의존하여 기술과 재정자원들이 매우 제한되어 있는 실정이다.

중·동부유럽에서 청소년 조직들은 요원들의 기술면에서 보아 몇가지 문제가 있다. 청소년들은 경제적 전환과정에서 필요한 고용과 직업훈련을 다루는 조직에 자주 참가해야 하므로 다른 사회적 조직에 참여할 시간이나 재원이 없다. 따라서 개인적, 실제적 또는 조직적인 모든 면에서 취약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 사실 생활의 안정은 민주적 삶의 형태에 대한 훈련보다 우선한다.

독일 재통합이후 독일은 새롭고 신중한 책임을 가진다. 독일 재통합의 과정과 마찬가지로 금세기 초반 독일역사는 중 동유럽에서 발생한 개혁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특히 구소련의 정치적 변화이후 연방의 측면에서 새로운 의무 뿐만 아니라 유럽의 국제적 협력분야에서의 새로운 책임을 가지게 되었다. 그리고 중·동유럽국가의 개혁 방향을 실행하도록 출발시켰다.

2. 제안의 내용

1) 국가청소년정책의 필요조건

(1) 요원교류

○ 자원봉사자 또는 유급요원으로서 청소년 활동에 참여하는 중 동유럽 국가들로부터 독일 요원교류에 참여하도록 국가마다 편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지원한도는 해외 여행경비 및 숙식비 그리고 교습기자재를 부담해야 하는 것이며 주최국의 시설은 3개월 이상 동안 조직되어 있어야 한다.

○ 교류기간 동안 수혜자들은 자유로운 언어과정에 참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한다.

(2) 대변자와 대상물로서의 자원

○ 중·동부유럽의 대규모 도시들에서 새롭게 설립되는 청소년 조직들의 요구에 있어 훈련 세미나를 조직하는데 도울 수 있도록 국제적인 차원에서 대변자와 훈련자들이 연합해야 한다.

○ 여행경비와 숙식비 그리고 입장료와 기타비용, 즉 교습 기자재에 관계되는 것 또한 지원해야 한다.

(3) 제도적 지원

○ 독일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청소년 조직 발전과 축진을 위해 일하는 청소년 조직의 지도자들을 위한 잠정적인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는 독립

체제내에서 상호 동반자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부과된 요청에 대한 적절한 반응을 가능하도록 할것이다.

○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서 여행경비와 교습기자재 구입과 다른 장비비용을 부담하도록 규정이 만들어 져야 한다.

(4) 청소년교류의 결과로서 여행경비의 배상을 위한 규정들

○ 중·동부유럽의 참가자 여행경비중 50%에서 80%는 상환되어야 할 것이다. 연방정부는 이미 다른 국가들을 경험하는 청소년을 위해 비슷한 규정을 채택하고 있다 (여기에 동의하는 나라는 프랑스, 스페인, 이스라엘 등의 국가들이 있다).

(5) 연방청소년계획의 책임아래 국제청소년교류를 위한 자원들의 증가

이러한 맥락에서, 특히 국제 청소년교류를 위한 전세계적인 자원들이 상당히 증가되어야 한다는 사실은 피할 수 없는 일이다. 실로 몇년동안 활동의 발전과 생활의 비용에서의 증가에 대한 계산은 상정되지 않았다.

(6) 촉진 : 새로운 표적집단

청소년교류에 대한 관심의 중요성은 변화하며, 또한 다른 표적집단들의 경험에 기초를 두고 우리는 연방청소년프로그램에서 저연령층의 제한을 12세 이하로 내리도록 제안하고자 한다.

(7) 독일연방정부로의 입국조건

아직 풀리지 않는 문제들에 대해서 중·동부유럽국가들과 함께 대처하여 우리는 연방정부가 비자의무를 폐지하도록 요청하고자 한다. 이는 마치 관세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어도 청소년교류의 범위내에서는 필요한 일이다.

(8) 제안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연방정부의 요청

○ 국제청소년사업을 위한 독일의 국가위원회는 유럽회의 그리고 EC정책결

정자들이 청소년정책분야에서 각종 요구들을 지지하도록, 또한 이 제안의 발전을 위하여 유럽인들 수준에서 그 자체로 위임하도록 독일정부에 권유한다.

○ 국제청소년사업을 위한 독일의 국가위원회는 리스본에서 세계적인 상호의존성과 결속을 위한 개발지역에서 그리고 중·동부유럽에서 청소년 조직 사이 상호협력을 촉진하는 유럽중심의 회의를 지켜나가도록 정부에 요청한다.

2) 유럽공동체의 청소년 정책면에서 필요한 조건

(1) 유럽자유무역협회와 유럽지역협회의 청소년 조직요원들의 교류

○ 청소년활동은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사람들의 참여를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자원봉사 또는 전문적 기초로 그리고 유럽자유무역협회와 EC에서의 요원교류로부터 혜택을 받는 일은 필요한 것이다.

○ 수반되는 조치는 참여자들이 용돈처럼 여행경비와 숙식비 그리고 교습기재 모두를 부담하게 될 것이며 교류는 최소한 3개월간은 지속해야 한다.

○ 이 단계동안 참여자들은 자유로운 언어교육을 받을 기회를 가져야 할 것이다.

(2) 유럽연합의 청소년포럼에서 강연자들과 훈련자들의 측면에서 자원들

○ 유럽연합의 청소년포럼의 정보와 문서의 센타로서 Erik Eudeline센타는 중·동부유럽의 큰 도시들에서의 새로운 조직과 훈련, 세미나의 요청에 있어 대비할 수 있는 강연자들과 훈련자들은 자원목록을 가지고 있다.

○ 여행비용과 식비 그리고 숙박비, 봉급 그리고 교습교재와 관련된 비용 또한 보상되어질 것이다.

(3) 정보와 문서 그리고 교습기자재

○ 기존의 다른 센타와 협력하는 청소년 포럼의 Erik Eudeline 센타는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유럽의 청소년 활동에 대한 중·동부유럽에 청소년들의 조직화된

회의 가능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이 센타는 청소년활동의 참고자료를 정리할 것이다. 그런데 이것은 사정평가될 것이고 주목하는 분야에 따라 이 러한 관심들은 배열될 것이다. 이 센타는 중·동부유럽을 포함해서 문서를 다양한 언어로 번역하는 책임을 맞게 될 것이다.

○ 청소년활동들에서 전문가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교습기자재를 필요로 하는 모든센타 자원들에게 공급하는 것은 중요하다.

(4) 유럽연합의 청소년 교류프로그램인 Tempus Programme의 '행동강령 3'의 요구

○ 이 프로그램의 '행동강령 3'은 특히 청소년 교류자들에게 편리하고 오랜기간동안 그들을 격려할 것이다. 우리는 발틱공화국, 알바니아가 이 프로그램에 통합되게 되어 행복하다. 만일 이 프로그램에 지역사회의 독립국가들을 포함시키는 것이 가능하지 않다면 우리는 유사한 프로그램이 이들 독립국가들로부터의 목표 집단을 위해 준비하도록 요청한다.

○ 스위스, 오스트리아,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의 청소년 조직들 또한 TEMPUS의 '행동강령 3' 가까이에 있다.

○ 그러므로 이 강령에 할당된 자원들의 증가요청은 강력하다.

○ 국가지부들은 TEMPUS의 '행동강령 3'의 활동들에 관계된 자원의 할당과 요구를 받아들이기 시작해야 할 것이다.

○ TEMPUS 프로그램의 '행동강령 3'에서의 연령계층은 12에서 27세로 범위가 설정되어야 한다.

○ 청소년사회사업 또는 유럽청소년센타의 상호관리체계와 유사하도록 자금의 할당과 마찬가지로 프로그램 관리와 조직의 상호결정권리가 보장될 필요가 있다.

(5) EC와 유럽자유무역협회의 회원 기준

중·동부유럽 국가들과 함께 아직 풀리지 않은 문제들을 처리하는데 있어 우리는 적어도 청소년교류의 기본틀에서 관세와 마찬가지로 비자의무를 폐지하도록 EFTA

와 EC국가에 요청한다.

3) 유럽의회의 청소년정책 분야에서의 요청

(1) 제도적 지원과 활동의 촉진

○ 국제 청소년 조직을 위한 유럽의 제도적 지원과 유럽의회의 산하에 있는 그들의 상호조정체들(유럽국가청소년위원회의 의회와 유럽의 조정사무국)은 강력하게 증가되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이들 조직이 중·동부유럽으로부터 새로운 구성원들의 요구를 참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이다. 동부와 중부 유럽의 많은 조직들은 또는 적어도 그들의 조정체들은 국제적조정체에 대한 그들의 참여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지 않다.

○ 국제청소년조직들의 활동을 공급하기 위한 유럽의회의 재정적 자원들과 그들의 조정체는 대단히 부족하고 그래서 요구를 조절해야 한다.

○ 국제청소년사업을 위한 독일국가위원회는 독일 정부에 대해서 이러한 두 가지 분야에서의 보조금의 증가를 요청할 것이다.

(2) 유럽의 청소년 회관

자발적 또는 원론적인 기초위에서 서구유럽의 요원들과의 협력을 배제하지 않는 이 지역의 청소년 집단과 청소년 조직의 특별한 요구에 대해 반응할 수 있는 중 동 유럽에서의 두번째 유럽 청소년회관은 가능하면 빠르게 시작할 필요가 있다.

4) 국제적 차원에서의 국제청소년사업을 위한 독일국가위원회의 상호협력

다변적 수준의 요구를 현실화하기 위해 국제청소년사업을 위한 독일국가위원회는 YFEC와 CENYC의 청소년 포럼과 밀접히 협력하게 될 것이다.

각각의 국가 구성원 또는 장래 EC구성원과 EFTA 또는 유럽의회에 의한 정치적

청소년활동을 통하여 요구들이 단지 답변되는 것만으로도 독일국가위원회 (국제 청소년사업을 위한)는 국가청소년위원회의 지원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3. 부록 : 국제후원체제의 비판적 검토

국가의 수준이 부합되는 중·동부유럽에서는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어떠한 프로그램도 제공되기 어렵다. 독일연방공화국에서의 양면적인 청소년처우는 그러한 가능성을 포함한다. 더 나아가 유럽청소년기금(EYF)과 유럽청소년센타(EYC)는 중·동부유럽의 젊은이를 위한 어떤 훈련코스를 제공한다. 중유럽에서 두번째 유럽청소년센타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관한 논쟁은 그러한 프로그램에 관한 실제적인 요구가 이미 존재하는 활동들보다 분명히 더 높다는 것을 설명한다. 청소년재단과 조직 활동인원의 지속적인 교육을 위한 이러한 유럽조직체의 지위에 관한 논쟁은 재정적인 투자를 위해 기대하고 희망한 정치적인 위력에 관해 아이디어를 주었을 뿐 아니라, 대단한 수요가 어떻게 지속적인 훈련과 교육을 위해 있고 높은 기대가(서구)유럽구조에 자리잡게 되었는지 그러한 결정에 의존한다.

(서구)유럽청소년조직을 포함하여 양면적이고 다면적인 수준에서 조직화된 다른 국가들에는 지속적인 교육과 변화있는 활동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다. 국가위원회, 특히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항상 재정적인 수단과 하부구조(기술과 인원)가 보다 낮도록 그들을 관리하는 지도자 역할을 한다. 국제적인 청소년재단과 조직은 거의 스트라스부르크에 있는 EYF/EYC의 제한적인 능력에 배타적으로 의존한다.

상식에 따르는 모든 활동들은 최대한 "내면적인"기준에 따라 그들의 "효과"와 정당성 양자에 의해 분석된다. 각각의 구조는 함께 그리고 다른 사람과 조화를 이루는 대신에 그들 자신에 의해 작용하는 경향이 있다. 중·동부유럽에서 새로운 청소년조직과 협력할 것을 암시하는 자아비판적 소견은 비밀회담에서만 들을 수 있을 뿐이다. 청소년사업과 관련지어 유럽외국어의 불충분한 지식 뿐 아니라 불충분한 교

수능력과 조직화능력은 이 교재에서 자주 언급된다. 더 나아가, 중·동부유럽 국가들의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많은 참여자들은 그들의 모국에서 교사로 일하기 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개인적인 자격을 개발하는 이러한 코스를 고려한다. 이러한 문제에 관한 고정적인 배경은 직업의 불안정이고, 또한 중·동부유럽에서 새로운 청소년조직내의 자원자의 높은 변동에 기인한다.

다른 요인은 아마도 파트너들 각각의 요구를 충분히 조정하지 못한다는 사실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복잡한 이유는 새로운 청소년구조가 필사적으로 서구파트너를 찾고 있기 때문이고, 만약 그것이 그들 없이 보통의 활동들이 그들 자신의 흥미를 끄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 실현된다면 만족된다. 서구파트너들은 명백히 그들 파트너가 요청을 평가하는 데 있어 항상 올바르지도 않고 또한 그것들을 충분히 논의하지도 않는다.

현재는 이미 중·동부유럽에서 청소년조직에 있어서의 청소년 교류 프로그램 또는 훈련을 지지하기 위해 실재하는 어떤 기구들이 있다.

(독일의 역할과 유럽국가)

어떤 초국가적 제도들도 그들을 구성하고 있는 국가들의 상황에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유감스럽게도 이러한 사실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더욱 느껴지게 되며, 특히 청소년들 대표자 사이에서는 청소년정책 전략내에서의 통합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다. 유럽공동체의 많은 국가들에서 또는 유럽의회에서 청소년들의 후원과 진보를 위한 기구는 단지 초보적인 기구이거나 총체적으로 결여되어 있다. 반면에 다른 구성원의 상태에 있어서 정부는 그들의 처분에 신뢰를 가져야 한다. 예를 들면, 독일연방정부의 청소년계획 또는 지역 또는 구획 청소년계획과 마찬가지로 그러한 사례가 주의 청소년계획이 될 수 있다. 차이점은 다른 문화와 그들의 현재 유럽역사에서의 다양한 역할들 그리고 국가의 경제적 강화와 다른 요소들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어떤 정도에서는 독일연방정부는 청소년서비스에 민감한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

이다. 이러한 관심은 나찌즘의 재난 이후에 민주적인 사회의 설립 또한 청소년조직의 사업을 촉진하고 후원하는 수단에 의해서 이루어왔다. 독일의 재통합이후 청소년조직들이 기여하는 과정에서는 언어도단의 사회적인 차별성을 극복해야 한다. 이러한 도전은 또한 중·동부유럽의 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사회적인 문제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의식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대부분의 중·동부유럽국가에서 청소년 융화는 모든 국가들이 유무형면에서 같은 방법으로 다양한 분야로 부터 청소년들의 교환을 격려하기 위한 의무를 가지고 지난 4년동안 성취해 오고 있다. 이같은 일련의 활동에 동조하는 국가중에서 독일-폴란드 청소년재단은 가장 높은 외교적인 위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융화의 모든 것에 대한 공통적인 구성요소는 청소년협약체가 그들의 고안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협력적인 의사결정은 유럽의회의 정부위원회가 달성하지 못하는 것에 도달하려는 것과 유사한 것이다. 더 나아가 문제는 중 동유럽국가들이 일련의 교류를 향해 매우 실제적인 경향성의 자세를 취하는 것인데, 후원의 지주(뼈대)는 부분적이거나 거의 완전하게 사라지고 있다(조직구조의 와해, 천문학적인 물가의 상승과 파견국의 인플레이션을). 청소년교류프로그램의 재정은 청소년협약에 의해 예견되는, 파견국이 여행경비를 감당할 수 있는 규칙에 기초한다. 반면에 주최국은 체계비용을 부담한다. 이것은 일견하여 상황을 밝히는 조건들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현재 상황의 맥락안에서 구체적인 조건을 고려할 때에 그것은 청소년들을 위한 국제간의 접촉의 퇴보를 불가피하게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쌍방의 동의에 부가적인 구성요소는 계약 동반자 모두 같은 양의 후원자원을 공급해야 하는 조건이다. 독일연방정부와 동쪽의 이웃들 사이에서 거대한 경제적 불균형에 직면함에 있어 이것은 불가피하게 청소년 후원차원이 경제적으로 취약한 동반자에 대한 수입에 따라 맞춰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국가들에게 영향을 주는 기존의 사회적인 요구의 일치는 아니다.

독일연방정부처럼 유럽공동체의 다른 국가들은 각기 쌍무적인 동의를 가지는데 이것은 마치 중·동부유럽의 국가와의 관계와 같다. 이와 같은 예로는 영국과 폴란드의 최근 발표된 협약을 들 수 있다.

중·동부유럽에 관심을 돌린 정도로써 유럽과 국가수준에서의 모든 후원배열에 대한 공통된 관점은 그들이 다른 하나와 조정되어지지 않는데 부가해서 대상과 조직에 하자를 내는 것이다. 그들은 어떤 행동을 촉진시키거나 또는 특수한 요구들을 충족시키도록 갖추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기구들에 의해서 최근의 지원들은 우리의 논의 밖에 있다.

게다가 청소년조직들과 그들의 국가적 그리고 국제적인 산하협의체는 또한 현재까지 활동을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하고 그들 모두 존재하는 범위에서 그들의 동반자의 각각의 요구와 마찬가지로 중·동부유럽의 국가들에서 청소년 정책의 실체성들을 적응시켜야 한다.